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 1.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8-03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 1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구책임자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집필책임자 :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정보호 및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

공동연구자 :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이건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영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곽배희 박소현 채규만 현혜순 신연희 정춘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머 리 말

21세기이후, 각국의 성폭력 범죄대응 패러다임은 사후통제 및 위기대처 중심으로 부터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정책으로, 국가 사법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다 기관 협력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성폭력 범죄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새삼 성폭력 범죄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2005년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정책들이 다각도로 진척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위 “전자팔찌”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법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성폭력 대응체계는 여전히 사후처리 또는 위기개입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재범억제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문적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생산은 미흡하였다. 2002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정책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 개발 및 법정부적 차원에서의 성폭력 방지 종합계획 마련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조사연구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연구는 국가 성폭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전략적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유형별 발생실태 및 숨은 범죄율, 성폭력 피해현황 및 보호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방정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연구는 당 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인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총괄 책임 하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원내·외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기획 및 총괄 (김승권·조애저·김유경)

제1장 서론 (김은경)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김은경)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김은경·전영실·현혜순)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현황(김은경·강은영)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강은영)

제6장 성폭력 피해조사(채규만·현혜순)

제7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전영실)

제8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김은경)

본 조사연구의 수행에 참여한 전문조사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시설 조사에 참여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및 상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또한 표본추출 및 자료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한 손창균 부연구위원, 도세록 연구위원, 최성용 연구원과 연구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정경희 연구위원과 박세경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조사연구가 폭력의 예방과 근절, 피해자의 효율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해자 처우 및 재범억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폭력 관련 복지기관의 시설환경, 운영 및 인력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등 주요 영역에서 한층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약	21
제1장 서론	7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6
제3절 연구수행체계	80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82
제1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82
제2절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	90
제3절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00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121
제1절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121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3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3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176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76
제2절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191
제3절 소결	211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16
제1절 조사개요	216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6

제3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244
제4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276
제5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285
제6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295
제6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305
제1절	조사개요	305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10
제3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313
제4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333
제5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351
제6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362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371
제8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389
제7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400
제1절	조사개요	400
제2절	성폭력상담소	408
제3절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435
제4절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461
제8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477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477
제2절	정책 제언	504
참고문헌	527
부 록	545

표 목 차

〈표 1- 1〉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7
〈표 1- 2〉 성폭력 피해자조사의 조사내용	7
〈표 1- 3〉 조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8
〈표 1- 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의 조사내용	8
〈표 4- 1〉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17
〈표 4- 2〉 성폭력범죄의 지역별 발생현황(시도별)	19
〈표 4- 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 현황(1997-2006)	181
〈표 4- 4〉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281
〈표 4- 5〉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율(1997-2006)	481
〈표 4- 6〉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기소율(1997-2006)	581
〈표 4- 7〉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781
〈표 4- 8〉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내용(1996-2005)	981
〈표 4- 9〉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1996-2005)	191
〈표 4-10〉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391
〈표 4-1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성별(1997-2006)	491
〈표 4-1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691
〈표 4-13〉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991
〈표 4-14〉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602
〈표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102
〈표 4-16〉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전회처분상황(1997-2006)	302
〈표 4-17〉 성폭력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1997-2006)	502
〈표 4-18〉 성폭력범죄의 공범수(1997-2006)	602
〈표 4-1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1997-2006)	802

〈표 4-2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별(1997-2006)	902
〈표 4-2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1997-2006)	012
〈표 5- 1〉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27
〈표 5- 2〉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연령별 동부/읍면부별 가구수	28
〈표 5- 3〉 지역별 조,사구 분포주	28
〈표 5- 4〉 지역별 가구분포(90%자료)	28
〈표 5- 5〉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28
〈표 5- 6〉 모집단과 표본의 연령별 분포	27
〈표 5- 7〉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분포	27
〈표 5- 8〉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분포	28
〈표 5- 9〉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29
〈표 5-1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9
〈표 5-11〉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29
〈표 5-1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28
〈표 5-1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24
〈표 5-14〉 전체인구의 성폭력 피해율	27
〈표 5-15〉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28
〈표 5-16〉 강간/강간미수/심한추행/가벼운추행 피해율	29
〈표 5-17〉 공식통계 성폭력범죄 발생율과의 비교	21
〈표 5-18〉 미국과 한국의 여성 성폭력 피해율 비교	28
〈표 5-19〉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4
〈표 5-20〉 심한추행 피해율	25
〈표 5-21〉 가벼운 추행 피해율	26
〈표 5-22〉 성희롱 피해율	27
〈표 5-23〉 연령별 성기노출 피해율	28
〈표 5-24〉 연령별 음란전화 피해율	28
〈표 5-25〉 연령별 스토킹 피해율	29

〈표 5-26〉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0
〈표 5-27〉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1
〈표 5-28〉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22
〈표 5-29〉	남성의 성폭력 유형별 가해실태	23
〈표 5-30〉	남성의 연령별 성폭력 가해실태	25
〈표 5-31〉	성폭력 충동	26
〈표 5-32〉	남성의 성폭력 충동	26
〈표 5-33〉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충동	27
〈표 5-34〉	범행수단	28
〈표 5-35〉	피해자 대응	29
〈표 5-36〉	대응하지 못한 이유	29
〈표 5-37〉	가해자 특성	30
〈표 5-38〉	피해자 특성	30
〈표 5-39〉	신체적 피해 후유증	31
〈표 5-40〉	정신적 피해 후유증	31
〈표 5-41〉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31
〈표 5-42〉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32
〈표 5-43〉	가벼운 성폭력 피해후유증의 내용	32
〈표 5-44〉	성폭력유형별 신고율	33
〈표 5-45〉	신고하지 않은 이유	34
〈표 5-46〉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32
〈표 5-47〉	고소취하 여부	32
〈표 5-48〉	성폭력유형별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률	33
〈표 5-49〉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에서 받은 지원내용	33
〈표 5-50〉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의 도움 정도	34
〈표 5-51〉	성폭력유형별 의료기관 이용률	34
〈표 5-52〉	의료기관 이용실태	35

〈표 5-53〉	전체인구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
〈표 5-54〉	여성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28
〈표 5-55〉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
〈표 5-56〉	여성의 지역 및 주거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8
〈표 5-57〉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29
〈표 5-58〉	응답자 특성별 친고죄폐지에 대한 태도	29
〈표 5-59〉	응답자 특성별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8
〈표 5-60〉	응답자 특성별 부부강간처벌에 대한 태도	28
〈표 5-61〉	성폭력 인지도	29
〈표 5-6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인지도	28
〈표 5-63〉	성폭력 허용도	30
〈표 5-6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허용도	31
〈표 5-65〉	이중적 성의식	32
〈표 5-6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중적 성의식	33
〈표 5-67〉	성역할 고정관념	31
〈표 5-6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31
〈표 6- 1〉	조사대상자의 구성	33
〈표 6- 2〉	사회인구학적 특성	31
〈표 6- 3〉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중복응답)	33
〈표 6- 4〉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34
〈표 6- 5〉	강간·유사성교 피해관련 사항	36
〈표 6- 6〉	강간·유사성교 피해 관련사항	39
〈표 6- 7〉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2
〈표 6- 8〉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34
〈표 6- 9〉	성희롱 피해 관련사항	37
〈표 6-10〉	성기노출 피해 관련 사항	33
〈표 6-11〉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	32

〈표 6-12〉 저항여부 및 효과	31
〈표 6-13〉 가해자 반응 (복수응답)	33
〈표 6-14〉 피해 후 대응 내용(단위: %, 명)	33
〈표 6-15〉 피해 후 관련 기관 지원 사항 (중복응답)	33
〈표 6-16〉 합의해 주지 않은 이유	34
〈표 6-17〉 신체적, 정신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 (중복응답)	34
〈표 6-18〉 신체적 피해내용	36
〈표 6-19〉 심리적 피해내용	36
〈표 6-20〉 심리상태 수준	37
〈표 6-21〉 우울감 수준비교	39
〈표 6-22〉 성폭력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9
〈표 6-23〉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39
〈표 6-24〉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중복응답)	39
〈표 6-25〉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내용	39
〈표 6-26〉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내용	39
〈표 6-27〉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내용	39
〈표 6-28〉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내용	39
〈표 6-29〉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중복응답)	39
〈표 6-30〉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내용	39
〈표 6-31〉 과거 성폭력 피해 영향 내용	39
〈표 6-32〉 정부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	39
〈표 6-33〉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	39
〈표 6-3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39
〈표 6-35〉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욕구	39
〈표 6-36〉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기타 사항	39
〈표 6-37〉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9
〈표 6-38〉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39

〈표 6-39〉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31
〈표 6-40〉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이용횟수 및 만족도	32
〈표 6-41〉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33
〈표 6-42〉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34
〈표 6-43〉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 서비스 만족도	35
〈표 6-44〉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35
〈표 6-45〉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35
〈표 6-46〉 상담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37
〈표 6-47〉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사항	39
〈표 6-48〉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39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9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39
〈표 6-50〉 보호시설 이용 평가	39
〈표 6-51〉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서비스 만족도	39
〈표 6-52〉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39
〈표 6-53〉 성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필요성	39
〈표 6-54〉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39
〈표 6-5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요구사항	39
〈표 6-56〉 피해 후 어려움	39
〈표 6-57〉 피해 후 증상 호소 내용	39
〈표 6-58〉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39
〈표 6-59〉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39
〈표 7-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1
〈표 7- 2〉 성폭력상담소 조사표	42
〈표 7- 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조사표	42
〈표 7- 4〉 윈스톱 지원센터/해마라기센터 조사	43
〈표 7- 5〉 시설위치	43

〈표 7- 6〉 운영주체	41
〈표 7- 7〉 법인의 유형과 이사회 역할	41
〈표 7- 8〉 시설위치별 운영주체	45
〈표 7- 9〉 건물 소유형태와 면적	46
〈표 7-10〉 시설 위치별 건물소유형태	46
〈표 7-11〉 운영주체별 건물소유형태	47
〈표 7-12〉 시설 위치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8
〈표 7-13〉 운영주체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48
〈표 7-14〉 시설 위치별 채무 현황	49
〈표 7-15〉 운영주체별 채무 현황	49
〈표 7-16〉 운영주체별 지원피해자 유형	49
〈표 7-17〉 피해자 일시보호 가능여부	41
〈표 7-18〉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유무	41
〈표 7-1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3
〈표 7-2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1
〈표 7-2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5
〈표 7-22〉 의료기관 연계현황	45
〈표 7-23〉 시설 위치별 의료기관과 연계현황	45
〈표 7-24〉 경찰 연계현황	47
〈표 7-25〉 시설 위치별 경찰과 연계현황	48
〈표 7-26〉 네트워킹 주체기관	48
〈표 7-27〉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현황	49
〈표 7-28〉 소송사건 비율 분포	49
〈표 7-29〉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41
〈표 7-30〉 시설 위치별 협의체 구성여부	41
〈표 7-31〉 설립유형별 협의체 구성여부	41
〈표 7-32〉 시설 위치별 협의체 참여여부	42

〈표 7-33〉 운영주체별 협의체 참여여부	42
〈표 7-34〉 협의체 운영 주관기관	43
〈표 7-35〉 상담소 운영일수 및 운영 시간 현황	44
〈표 7-36〉 필요한 지원의 실행 비율	45
〈표 7-37〉 실시 프로그램 내용	45
〈표 7-38〉 장애인 피해자 대상 서비스	47
〈표 7-39〉 아동 피해자 대상 서비스	47
〈표 7-40〉 외부강사 참여 관련 현황	48
〈표 7-41〉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9
〈표 7-42〉 사례관리 관련 현황	49
〈표 7-43〉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9
〈표 7-44〉 종사자의 보수 현황	41
〈표 7-45〉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1
〈표 7-46〉 업무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2
〈표 7-47〉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3
〈표 7-48〉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관련 현황	44
〈표 7-49〉 응답자 특성	45
〈표 7-5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분포	45
〈표 7-5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 관련 사항	47
〈표 7-52〉 시설의 건물·소유형태	48
〈표 7-53〉 별도 공간 마련 여부	48
〈표 7-54〉 피해자 치료비	49
〈표 7-55〉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49
〈표 7-56〉 건물 또는 운영 관련 채무 유무	49
〈표 7-57〉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41
〈표 7-58〉 시설 운영에 대한 거주자·퇴소자들의 의견수렴여부	42
〈표 7-59〉 성폭력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44

〈표 7-60〉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주관 기관	41
〈표 7-61〉	지역 내 주 연계 기관	45
〈표 7-62〉	연계가 어려운 기관	45
〈표 7-63〉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45
〈표 7-64〉	시설 운영의 어려움	47
〈표 7-65〉	보호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48
〈표 7-66〉	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48
〈표 7-67〉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9
〈표 7-68〉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지원정도	50
〈표 7-69〉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상담건수	50
〈표 7-70〉	프로그램 실시여부	41
〈표 7-71〉	외부 전문가 활용여부	42
〈표 7-72〉	외부 전문가 사례비지급방법	42
〈표 7-73〉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3
〈표 7-74〉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실시	44
〈표 7-75〉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44
〈표 7-7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율 및 수용률	45
〈표 7-77〉	지난 1년간 평균 입소기간	45
〈표 7-78〉	거주자 입소기간에 대한 의견	45
〈표 7-79〉	종사자의 보수 분포	47
〈표 7-80〉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48
〈표 7-81〉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8
〈표 7-82〉	보수교육관련 사항	49
〈표 7-8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9
〈표 7-84〉	응답자 특성	41
〈표 7-85〉	센터의 위치	42
〈표 7-86〉	시설 및 지원 피해자 유형	42

〈표 7-87〉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현황	46
〈표 7-88〉 피해자 지원 표준매뉴얼 유무	44
〈표 7-8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46
〈표 7-90〉 연계가 중요한 기관	46
〈표 7-91〉 연계가 어려운 기관	47
〈표 7-92〉 의료기관 연계현황	47
〈표 7-93〉 경찰 연계현황	46
〈표 7-94〉 네트워킹 주체기관	46
〈표 7-95〉 필요한 지원 수행정도	46
〈표 7-96〉 실시 프로그램 내용	40
〈표 7-97〉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44
〈표 7-98〉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44
〈표 7-99〉 피해자 방문 경로	42
〈표 7-100〉 지난 1년간(2006.1 ~ 2006.12) 지원건수	274
〈표 7-101〉 종사자의 보수 분포	43
〈표 7-102〉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43
〈표 7-10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44
〈표 7-104〉 직원 휴가 관련 현황	46
〈표 7-105〉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46
〈표 7-106〉 응답자 특성	46
〈표 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	57

그림 목 차

[그림 1- 1] 연구수행도	18
[그림 3- 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8
[그림 3- 2] 여성폭력 지원시설 수 변화	18
[그림 3- 3] 여성폭력 상담실적	19
[그림 3- 4]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제공인원	19
[그림 3- 5] 집중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수	19
[그림 4- 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발생추이	18
[그림 4- 2] 전체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971
[그림 4- 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981
[그림 4- 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1997-2006 평균)	181
[그림 4- 5]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1997-2006 평균)	381
[그림 4- 6]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률(1997-2006)	481
[그림 4- 7]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1997-2006)	681
[그림 4- 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평균)	781
[그림 4- 9] 전체범죄의 1심선고 추이(1996-2005)	981
[그림 4-10]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 추이(1996-2005)	991
[그림 4-11] 전체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 추이(1996-2005)	191
[그림 4-1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평균)	391
[그림 4-1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가해자 비율(1997-2006)	591
[그림 4-14] 전체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791
[그림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791
[그림 4-16]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평균)	991
[그림 4-17]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평균)	102

[그림 4-1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평균)	202
[그림 4-19]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1997-2006)	402
[그림 4-20]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1997-2006)	502
[그림 4-21]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단독범 비율(1997-2006)	702
[그림 4-2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연령분포(1997-2006 평균)	802
[그림 4-2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1997-2006)	902
[그림 4-2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 추이(1997-2006)	112
[그림 5- 1]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태도	0
[그림 5- 2]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2
[그림 5- 3]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4
[그림 6- 1] 저항한 결과의 효과	3
[그림 6-] 가해자 반응	3
[그림 6- 3]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4
[그림 6- 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6
[그림 6- 5] 피해 후 증상	9
[그림 8- 1] 치료감호소 개청 후, 정신감정 실적 추이	2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이후, 범죄통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사후대처 중심으로부터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여성폭력방지 특히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 정책수립(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 본 연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발생 실태, 성폭력 피해현황 및 보호지원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향후 성폭력에 대한 국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획됨. 본 성폭력 실태조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유형별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방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자기보고식 성폭력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발생률 및 유형별 발생 실태를 밝히고,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을 파악함.
- 실제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지원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방안을 제시함.
-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지원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현행 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함

- 성폭력 관련 이론적 쟁점 및 국내외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성폭력 관련 선진국의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성폭력을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방안 등을 제시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행정 및 범죄통계 수집분석, 19~59세까지의 성인인구표본을 통한 자기보고식 성폭력범죄피해실태조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성폭력보호지원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제2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 성폭력을 둘러싼 법적인 범죄개념과 법적 분류, 연령별 유형론,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론에 대한 개념정립

□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

- 성폭력에 대한 주요 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함. 여기에서는 강간에 대한 네 가지 사회학적 관점들, (1) 성별불평등론(gender inequality theory) 또는 가부장제론 (2) 포르노그래피론(pornography effect theory) (3) 문화적 누출효과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4) 남성성이론(masculinity theory)을 중점적으로 다룸. 이 네 가지 이론들은 각각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성폭력 발생에 대해 개별적인 설명력을 제시함.

□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성폭력 가해요소들과 관련한 쟁점들, 전통적인 성역할, 강간신화, 애착, 알콜, 아동학대 피해경험, 폭력가해경험, 사이코패시, 일탈적 성적관심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함.
- 성폭력 피해 및 영향으로서 “강간의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연관된 주요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함.

제3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 최근 성폭력 가해자 처벌위주의 사후적 대책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로 정책기조가 전환됨. 성폭력을 5대 폭력 포함 관련부처가 협력, 범정부적인 차원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것은 사회상황에 적절히 부응한 의제설정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생산은 미흡하였다. 성매매 방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대응정책개발은 지체된 경향이 있음. 2002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정책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및 패러다임 전환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관련정책은 지난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시도는 있었으나,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지역사회중심 교육과 예방(Education and Prevention) 정책의 중요성 : 선진 각국의 성폭력정책에는 예방스펙트럼을 통한 규범 및 문화 바꾸기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함. 특히 통합적인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전증대와 연결하여 발전되고 있음. 지역사회내의 위기수준별(1차-2차-3차 수준별) 및 필요대상들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됨.
- 의료기관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와 성폭력검사관 제도 : 최근 각국의 성폭력 대응모델은 성폭력에 연관된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가장 통합적인 수준의 관리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강간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SAE(성폭력 검사 프로그램)을 조합시킨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음. 이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치료 프로그램은 반드시 생존자들을 치료를 제공하면서 더 이상의 정신적 또는 의학적 상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치료를 위한 최고의 실천모델의 실행은 보건관리 제도의 모든 단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임.
- 형사사법과의 연계(Linkage with Criminal Justice) : 성공적인 성폭력 예방정책은 지역사회 해결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내실화됨과 동시에 지역사회내 사법집행기관 및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연결망 속에서만 실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함. 가령, 외국에서는 의료기관 중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 있어서 성폭력 검사관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고발했을 때 보다 나은 증거수집과 발전된 형사사법 성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형사사법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과 결합되어 발전되고 있음.

제4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현황

□ 성폭력 범죄 증가추세

-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되고 성폭력이 5대 폭력에 포함('06.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증가추세 : 사법기관에 공식 보고된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난 10년 사이 인구10명당 15.1건에서 27.7건으로 83.4% 증가함.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은 전체범죄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강력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사법기관에 공식 보고된 성폭력사건의 주된 피해자연령은 20대(33.3%), 16~20세(20.0%), 30대(17.9%)의 순으로서 전체범죄(30대, 40대, 20대의 순)에 비해 상당히 낮음. 성폭력범죄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도 약 8%나 됨.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0대 및 40대 피해자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20대 피해자는 증가추세 나타냄.

□ 성폭력 범죄자 특성 변화

- 지난 10년간 검거된 성폭력범죄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각각 26.8%, 27.4%), 40대(17.3%), 10대(12.5%)의 순으로 나타남. 10년간 추이 변화를 보면, '10대'와 '20대'는 감소하고, '30대'는 보합, '40대 이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성폭력범죄자는 전체범죄 가해자에 비해 연령이 훨씬 낮음.
- 그러나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 간 집단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음. 10대청소년 성범죄자(강간범) 발생인원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추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 2005~6년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어, 학생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응 필요성
- 공식 보고된 성폭력범죄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건 비율이 높음.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50%대로 나타남. 이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등 서비스전달체계에서 파악된 피해자-가해자관계유형과는 상당히 대조적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가해자현황을 보면, 다수의 성폭력이 안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심리적 친밀도가 높고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친족관계나 애인 및 선후배 간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임.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 구속율은 32-59%로서 전체범죄 2-5%, 강력범죄 4-18%에 비해 상당히 높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구속율은 지난 10년동안 세 범죄유형 모두에서 상당 수준 낮아짐. 특히 성폭력범죄는 1997년 47.5%에서 2007년에는 28.8%로 낮아짐.
- 기소율의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강력범죄 기소율이 61.1%에서 38.2%로 크게 낮아진 반면,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50.5%에서 43.7%로 소폭 감소.
- 성폭력범죄자들은 1심에서 약 2/5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 약 1/3가량이 유기징역 선고를 받음. 지난 10년간 나타난 전체범죄의 1심선고상의 변화특성은 ‘집행유예’의 대폭감소와 ‘재산형’의 대폭증가로 요약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200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증가하고, 반면 ‘유기징역’은 소폭 감소하는 현상
-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0%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 60%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40%대를 보임. 10년 동안 성폭력범죄 집행유예율은 약 10%, 전체범죄는 약 20% 감소함 (※ 집행유예율이란 무죄나 재산형을 제외하고 유기징역 선고인원 對 집행유예인원의 비율).

제5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 본 연구는 전국 가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함. 이를 위하여 성폭력 행위의 유형을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3,608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하였음. 또한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 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성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였음.
- 조사는 가구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를 대상으로함. 조사결과 9,847가구가 조사완료되어 가구조사완료율은 98%이며,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는 13,608명임. 조사는 2007년 8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80일간 이루어졌음.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본의 대표성 분석
 - 분석에 앞서 수집된 표본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에 대한 대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분석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음. 조사대상자들은 남성이 42.0%, 여성이 58.0%이며, 연령은 30대 29.3%, 40대

27.0%, 50~64세 26.6% 19~29세 17.1%임. 73.1%가 유배우자이고, 미혼이 18.9%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80%에 이르는 반면 ‘중학교 중퇴·졸업자 이하’는 약19%에 불과함. 직업면에서는 무직이 35.6%이고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을 합하면 약30%에 이룸. 평균 수입은 285만원이고, 중앙값은 231만원으로 나타났다. 약3.4%인 469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됨.

제3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 성폭력 피해실태

- 지난 1년간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여성 1,000명당 2.2명이 6.1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9.7명이 42.7건의 부부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인남녀 1,000명당 심한 추행 피해는 2.9명, 8.9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15.0명, 34.7건, 성희롱 피해는 6.9명, 21.3건, 성기노출 피해는 10.7명, 21.2건, 음란전화 피해는 28.3명, 88.7건, 스토킹 피해는 5.4명, 25.5건으로 나타남.
- 여성만을 대상으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19~64세 성인여성 1,000명당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2.2명, 6.1건, 심한추행 피해는 4.7명, 15.1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24.6명, 52.5건, 성희롱 피해는 11.2명, 34.9건, 성기노출 피해는 19.2명, 36.5건, 음란전화 피해는 32.0명, 83.7건, 스토킹 피해는 8.4명, 44.9건, 부부강간 피해는 9.7명, 4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성폭력관련법으로 규율되는 강간·강간미수‘와 ’강제추행(심한 추행과 가벼운 추행)’의 3가지 성폭력 유형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 남녀 1,000명당 17.9명이며, 피해건수는 46.7건임. 여성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은 성인여성 1,000명당 29.1명, 피해건수는 73.7건임.
- 범죄공식통계상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3,57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임. 반면 본 조사결과 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은 4665.9건임. 따라서 본 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공식 통계보다 강간·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면에서 110.7배, 10만 명당 피해율 면에서는 168.4배나 많음. 법적 처벌은 되고 있으나 비교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노출, 스토킹, 음란전화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을 포함한다면 공식통계보다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장애인 성폭력피해율을 보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강간미수는 장애인들의 피해율이 높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피해율이 높음. 장애인 인구 1,000명당 5.8명이 5.8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는데 이는 피해사건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례수 면에서는 약 2.6배 많은 수치임. 심한추행 피해율은 전체인구보다 사례수 면에서는 2.7배 많고 피해건수는 유사하며, 음란전화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8배, 사건수 면에서 2.2배, 스토킹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4배, 사건수 면에서 1.1배, 부부강간 피해율은 사례수 면, 사건수 면에서 모두 1.8배 많음.

□ 성폭력 가해실태

- 가장 많이 보고된 가해행위는 ‘폭행’으로 남성 응답자의 5.7%가 지난 1년간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 4.4%, ‘부부강간’ 4.2%, ‘성희롱’ 2.1%이다. ‘음란전화’, ‘스토킹’, ‘강제추행’은 각각 0.3%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강간미수, 강간, 아동성폭력은 0.1%이다. 성기노출은 단 한 명도 가해경험을 보고하지 않았음.
- 남성응답자의 1.3%는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 남성이 성폭력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성폭력 행위특성

-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서 가해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다수인 비율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유형보다 높았음.
-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의 가해자는 모두 남자이고,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은 90% 이상이 남성이 가해자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희롱(14.4%), 음란전화(43.5%)와 스토킹(24.3%)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존재함.
- 강간·강간미수와 가벼운 추행의 가해자는 30대와 40대, 심한 추행과 스토킹은 2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성희롱, 성기노출,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40대와 50대가 많음. 다만 음란전화는 가해자 연령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절반가까이 이르며, 추정되는 경우 가해자연령은 20대 혹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성폭력 유형에 따라 면식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심한 추행(80.0%), 성기노출(95.8%), 음란전화(98.0%)는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강간·강간미수, 스토킹, 부부강간은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음. 반면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비면식범과 면식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체적으로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5.0%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관계유형은 전배우자 전애인으로 40.6%에 이르고, 업무상 아는 사이가 19.9%, 동네사람이 9.6%, 그 외 아는 사람이 15.0%였음. 가벼운 추행은 비면식범 비율은 65.6%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6.8%로 가장 많고, 그 외 친구나 선후배가 5.8% 였음. 성희롱은 비면식범 비율이 50.4%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7.1%로 가장 많아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대표적인 면식범 유형임을 알 수 있음. 스토킹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비율은 13.8%에 불과하며, 친구나 선후배가 17.5%, 전배우자나 전애인이 10.2%, 업무상 아는 사이가 9.8%이고 많은 수는 그 외 아는 사람이었음(38.4%).

- 강간.강간미수,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비율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란전화(43.7%), 스토킹(21.8%), 성희롱(20.8%)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가 넘으며, 가벼운 추행도 17.3%로 나타나고 있음.
-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 음란전화의 피해자는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상대적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아서 20대의 비율이 높음.
-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하면 미혼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70%를 넘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은 60%대이며, 성기노출 50%대임.
-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심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 (77.3%), 강간.강간미수,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은 60%대로 나타나고 있음.
- 피해자의 교육수준은 보면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전문대졸 이상자인 경우가 50%대로 가장 많음. 반면 강간.강간미수, 음란전화,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고졸자의 비율이 전문대졸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제4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 성폭력 피해 후유증

-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피해자 중 10.5%는 신체적 피해, 40.7%는 정신적 피해, 20.5%는 사회적 피해후유증을 보고하였음.

□ 성폭력 피해 사후조치

- 경찰 신고율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3%로 나머지 97.7%는 숨은 범죄로 남음. 이 중 강간.강간미수 7.1%, 스토킹 신고율 6.8%, 심한 추행 5.3%이

며, 가벼운 추행 4.7%, 성기노출 4.3%, 그리고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함.

-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이용률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1.6%에 불과하다. 다만 성폭력 유형별로 이용률이 다소 상이한데,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7.1%, 스토킹 피해자의 5.6%, 성희롱 피해자의 4.5%가 이용하였음. 이용자 중 65.4%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4.5%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강간.강간미수 피해자는 14.3%, 심한 추행 피해자는 5.3%, 부부강간 피해자는 1.6%임.

제5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성인 남녀의 17.0%이며, 성인 여성들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1%이다. 여성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며,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두려움을 많이 느낌.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

-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친고죄 폐지, 성희롱 처벌,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 조사하였음. 조사대상자들은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87.7%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폐지에 찬성하고 있음.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65.1%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30대와 40대가 처벌을 지지하고 있음.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38.7%가 찬성

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차별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제6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 성폭력 인지도

- 성폭력 인지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함.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해자관계의 친밀도’, ‘피해자의 저항정도’, ‘피해여성의 원인제공요인(性歷, 품행)’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다섯 가지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음. 분석결과 성폭력인지도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높아지며 특히 저항유무 보다는 피해자의 음주나 밤늦은 귀가, 성력(性歷)과 같은 원인제공요인이 인지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애인 관계 등 가해자-피해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낮음.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높음.

□ 성폭력 허용도

- 성폭력 허용도는 눈짓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와 포르노그래피, (접촉성) 가벼운 추행, 스토킹,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부부간간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음. 분석결과 허용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이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와 집요한 구애행위, 부부간간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성폭력 허용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스토킹의 한 유형인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행위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음란전화의 순으로 나타남.

제6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제1절 조사개요

□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된 후 우리사회는 현재까지 꾸준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개입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07년 4월 현재 전국에는 202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7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으며 이중 65개소의 상담소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상담실적은 57,865건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중 입소된 성폭력 피해자는 353명임.
- 성폭력 피해는 피해 유형별, 관계별, 연령별 특성이 다양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필요함.
-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임.

□ 조사의 내용

- 본 조사 연구의 내용은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장애유무, 가족관계, 직업, 결혼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 성폭력 피해유형임
- 가해방식, 피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및 피해연령, 피해에 대한 대응,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영향, 정부의 피해자 지원제도 실태, 상담소의 피해자지원 실태, 보호시설의 피해자지원 실태,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 실태임

-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지원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피해실태, 피해대응, 피해영향, 정부의 지원제도,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상황과 향후계획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 심리척도 평가척도는 자존감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분노수준 척도, 피해후유증 척도를 사용하였음.
-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3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 중에서 입소자 87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고, 상담기관은 전국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85개 상담소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상담기관의 2배수로 표본 선정하여 상담기관의 내담자 192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피해자들로 구성.
- 조사대상자는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서울과 광역시, 전체 표본 192명 중 서울이 35명(19.5 %)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4명(12.5%)으로 두 번째임. 광역시로는 부산이 18명(9.4%)이 가장 많고, 인천(7.3%), 대구와 광주(각 각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4명, 2.1%)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도별로 볼 때 많게는 12.5%(경기도)에서 적게는 1.5%(충북)의 표본을 전국적으로 추출하였음.

□ 조사방법

-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29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 성폭력 상담소에 192부를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96부를 배포하여 87부를 회수하여 총 192부가 회수되었음.
- 심층인터뷰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02명의 피해자들과 인터뷰하였고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고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음

제2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97.4%(186명)가 여성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43.4%(82명)가 컴퓨터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나이는 출생순위별 자녀들을 모두 합하여(75명) 나이를 파악한 것으로, 기혼자 42명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명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192명)의 16.1%에 달한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대부분(응답자의 77.7%에 해당하는 16명), 기혼은 응답자의 22.3%인 42명임.

제3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 피해유형별 피해율

-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70.8%), 강제추행(51.6%), 성희롱(26.6%). 성기노출(16.1%), 음란전화(3.6%), 스토킹(3.1%)의 순임. 강간 또는 유사성교와 같은 가장 심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률(70.8%)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 상담기관 및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피해내용으로 다른 형태의 피해 없이 강간 및 유사성교만 경험한 경우는 77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1%에 해당함. 강제추행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6.7%임.
- 성희롱만을 당한 경우는 5.2%, 음란전화만을 당한 경우는 1.0%, 스토킹 피해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함.
- 강간 및 유사성교와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5%이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함께 성희롱의 경험도 있는 경우는 10.4%, 강간 및 유사성교와 성

기노출 경험을 한 경우는 10.9%, 그리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음란전화,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5%와 2.1%임.

- 강제추행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희롱은 15.6%, 성기노출 13.0%, 음란전화 2.6%, 스토킹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기노출 10.4%, 음란전화 2.1%, 스토킹 2.1%임.

□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 강간 및 유사성교의 유형으로는 성기삽입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피해 발생 시기는 1개월 이내가 11.1%, 3개월 이전이 19.2%, 6개월 이전이 30.2%로 1년 이전이 46.4%로 나타나, 피해자의 53.6%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임.
- 가해방식으로는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했다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했다가 34.6%이고, 심신을 무력화하는 방법이 27.2%로 물리적인 심리적인 피해를 제압시키는 방식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피해 유형을 보면,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6%로 가장 많고,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응답이 27.9%,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18.4%로 나타나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 사건발생 장소로서 가장 많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피해자의 집으로 36.8%이고, 다음이 가해자의 집으로 14.1%임.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22.1%)과 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알고 지내는 사람이 77.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21.3%로 나타남.

- 가해자의 나이는 사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대가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가 34.3%로 나타남.

□ 강제추행 피해실태

- 강제 추행의 가장 많은 형태는 강제 키스와 강제 애무로 각 각 38.4%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기밀착이 19.2%, 기타가 6.1%인데 기타로 제시된 애용은 성기나 유방 애무, 손가락으로 성기 삽입을 시도했음.
- 강제추행의 발생시점은 조사 당시(2007년 11월1일 기준)로 할 때 최소한 2주 이상인 것으로 보임. 1년에서 3년 전에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고, 5년~10년 전과 3개월에서 6개월 전이 13.5%에 이르고,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경우도 10.4%에 이름.
- 강제추행도 강간이나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42.4%만이 1년 이내에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임.
- 가해방식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가 27.1%로 가장 높으며, 술에 취해있거나 잠자는 틈을 이용했다가 19.8%로 나타났음.
- 피해유형은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고,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31.6%,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20.0%,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7.4%,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3.2%의 순.
- 함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20.2%이고, 없다는 79.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로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40.6%에 이르며, 가해자의 집이 11.5%로 강제추행 피해 역시 52.1%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27.7%이고, '멘 정신이었다'가 59.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대개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 강제추행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96.8%이고 여자가 3.2%이며 남자 가해자만을 볼 때 가해자 1명인 경우가 8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24.0%이고, 20대 18.8%, 40대 16.7%의 순으로 강간 및 유사성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편임.

□ 성희롱 피해 실태

- 성희롱 피해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1.4%로 제일 많았고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경우가 27.57%,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이 27.7%로 가장 많았으나, 술집 등 유흥업소가 10.6%,이며, 직장, 사무실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이 8.5%, 가해자의 집이나 학교, 학원이 6.4%로 나타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반면, 성희롱은 주로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46.8%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 18.8%, 직장동료나 상사 14.6%,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10.4% 순이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은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21.3%, 19.1%, 60대가 6.8%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성인에 의한 성희롱이 72.7%로 나타났음.
- 가해자의 학력에서는 대학학력 이상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응답자의 29.4%가 이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은 차례대로 고등학력이 16.7%, 중등학력이 10.4%, 초등학력이 6.3%로 각각 나타났음. 그러나 37.5%가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성기노출 피해실태

- 성기노출 피해 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5.5%로 가장 높고,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55.8%로 나타났음.
- 여러 대상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12.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체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40.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도 20.0%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이 25.8%, 직장동료나 상사,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이 모두 9.7%, 친구나 선후배는 6.5%, 동네사람이 3.2%로 보고되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도 각각 22.6%, 16.1%로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이하도 12.9%를 차지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 영향분석

-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에 관해서 개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한 결과 불안(14%), 가해자에 대한 분노(14%)가 가장 높았고, 대인기피(10%),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10%)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그 밖에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죄책감 등에 증상을 호소했음.

제4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 성폭력 피해 대응에 관한 사항

— 저항여부 및 효과

- 피해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들이 49.7%의 피해자들이 저항했고, 약 50%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음.
- 저항한 경우, 85.3%가 적극적 저항을 했음. 그 내용으로는 저항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41.1%, 소리를 지른 경우 23.2%,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경우 12.6%로 나타났음.
- 소극적 저항으로 가해자를 설득하려고 시도하기 8.4%, 무조건 빌고 애원하기 8.4%, 기지를 발휘해서 생리를 핑계 대기 2.1%, 가해자를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저항 결과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면하지 못한 경우가 52.1%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 폭력은 심하게 입었다가 10.6%로 62.7%가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음.
- 다행히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 상해도 입지 않은 경우가 9.6%로 나타났음.
- 저항하지 못한 이유로,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까봐 등 28.8%. 놀라움과 공포로 몸이 굳어서 21.2%, 남이 알면 창피할 까봐 11.5%,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1.5%,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가 11.5%로 나타났음.

— 저항하였을 때 가해자의 반응

-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폭력이나 구타, 강제적으로 강간, 협박, 흉기 사용, 성기삽입 시도와 구강성교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자신의 욕구를 집요하게 충족하려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소리 지르자 도망하는 경우는 겨우 7.7%였음.

— 피해 후 대응

- 응답자들의 84.3%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고 15.7%만이 침묵했음.
-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자는 가족이 45.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가 42.2%, 친구나 애인 21.6%, 시설 종사자 14.1% 순이었음.
-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도와준 경우 24.9%, 상담소에 연락해 준 경우 24.9%를 제외하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고 (27.6%),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지를 해주었음(21.1%). 그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믿어주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한 경우 등(22.2%)도 있었음.

— 피해 후 관련기관 지원 사항

- 피해 후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58.8%, 수사나 법적인 지원 35.7%, 의료적 지원 34.6%로 나타났음.
- 상담소 서비스의 질적인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77.6%, ‘다소 도움이 되었다’ 19.2%로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통해서 96.8%가 ‘대체로 만족한다’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찰에 신고 된 경우가 53.3%로, 신고 되지 않은 경우(46.7%)보다 높았고, 경찰에 신고 된 대부분의 경우(87.7%)는 경찰은 수사나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음.
-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가해자 처리 결과는 징역형이 가장 많았는데(31.8%),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음(50%).

— 합의해 준 이유

- 자가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온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었음.

— 합의 해 주지 않는 이유

- 합의를 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에 대한 처벌과 사건을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가 제일 컸고, 상대방을 처벌해서 심리적인 보상과 보복하기 위

한 동기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로 한 경우도 있었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기타 이유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방법을 몰랐다가 가장 많았음.

□ 성폭력 피해 영향에 관한 사항

— 신체적·정신적·사회생활에서의 피해

-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58.3%,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87.0%,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78.1%로 나타났음.
- 신체적인 피해는 구체적으로 성기 부위의 상처가 54.5%로 가장 많았고, 성기와 신체 부위에 상처가 25.0%, 임신 22.3%, 낙태 22.3%로 나타났음.
- 피해 후 병원 치료는 56.6%만이 받았고 43.3%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음.
- 응답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63.5%,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증 40.1%,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5.3%, 순결상실감 28.1%로 성폭력의 문제를 순결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3.4%, 자살 기도, 자해 도 19.2%로 나타나 성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음.
-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가 45.3%,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0%,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킴.

— 심리상태 수준

- 우울수준은 상담소평균(63.78), 보호시설(59.29)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었지만,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분노는 응답자들의 평균(29.00)이 보호시설 응답자들의 평균(25.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음.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감 수준
 - Beck의 우울증 척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심한 수준의 우울 집단이 43.8%, 중등도 우울집단이 19.3% 이었고 63.1% 정도의 응답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저항한 집단과 저항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존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음.
 - 피해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강간 및 유사성교를 당한 집단 1과 강제추행 등을 당한 집단 2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음.

제5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

- 조사대상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 43.7%, 강제추행 36.5%, 성희롱 17.2 성기노출 19.3% 순으로 나타났음.

□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84명이 과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보고해 피해율은 43.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9.7%, 11회 이상이 26.5%였으며, 6~10회가 13.1%였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이 23.2%,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이 17.7%였음.

- 당시 가해자 나이는 19세미만이 26.1%, 20대가 22.6%, 30~40대가 25%였고 50대 이상은 14.3%로 나타나, 미성년자 가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1.4%, 10~15세 미만이 36.9%, 15~20세 미만이 22.6%로 나타나 80.9%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의 피해가 58.3%로 나타나 그 피해후유증의 심각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적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줌.

□ 강제추행 피해실태

-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피해 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36.5%이며, 2~5회가 28.6%, 11회 이상이 22.8%, 6~10회가 10.0%였음. 강제추행 역시 강간 및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61.4%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0%,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3%로, 동일한 사람에게 당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사건당시 가해자 나이는 20대 미만이 20%로 청소년기의 가해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대가 17.1%, 30~40대가 37.2%, 50대 이상은 15.7%로 나타났다.
-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0.6%, 10~15세 미만이 36.8%, 15~20세 미만이 26.8%로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가 84.2%로 어린 시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성희롱 피해실태

- 과거의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7.2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9.4%, 6~10회가 27.3%, 11회 이상이 15.2%로 2회 이상의 피해

가 81.9%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의 33.3%로 가장 높았고,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3.3%,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0.0%로 나타나 결국, 76.6%가 2회 이상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40대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미만 18.2%, 50대 이상이 15.2%로 나타나 성희롱은 중장년 이상의 가해자가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은 20세 미만이 80.6%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세 미만 아동 피해도 22.6%로 나타났음.

□ 성기노출 피해

- 과거의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9.3%이며, 피해횟수는 1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2~5회가 36.1%, 11회 이상이 33.3%, 6~10회가 5.5%였다. 성기노출의 경우, 다른 피해보다 1회 피해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2.3%로 가장 높았고,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6.5%,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8.8%,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5.3%로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로 다른 피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음.
-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대와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5~20세 미만이 50.0%, 10~15세 미만이 23.5%, 10세 미만이 14.7%로 나타났음.

□ 과거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내용을 보면, 성기 삽입이 40.2%로 가장 많았고 강제애무가 30.5%, 강제키스가 27.3%, 성기밀착이 22.7% 이었고, 구강성교 11.7%, 강간미수 9.7%, 성기에 이물질 삽입 8.4%, 항문성교 7.1%로 보고됨.
- 가해자의 유인 방식은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27.7%로 가장 높았고, 때리는 등의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17.8%,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16.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피해자를 물리적이든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력화 시켜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장 많이 보고 된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20.3%이고, 가해자의 집이 15.6%였고, 나머지 사건 발생장소로는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공동주거지나 숙박업소, 직장, 사무실 등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9%, 32.3%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친족이나 친부, 양부,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피해 몇 시간 전 만난 사람이나 친구, 선후배, 애인, 배우자나 직장동료 등이었다. 그러나 무응답은 47.4%로 보고되었음.
-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맨 정신인 경우가 3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 7.8%, 술에 취해 있었다 6.8%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7.4%였음.

□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응답결과는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18.8%, 무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으로는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5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47.1%, 친구, 친척, 선배가 39.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게 말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음.

- 또한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상담소에 연락한 경우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가 49.7%⁴, 병원에 치료받게 한 경우가 30.9%로 나타났음.
-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수치스러워서가 22.2%로 가장 높았고, 혼이 날 것 같아서가 22.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6.7%, 가해자가 무서워서 14.8%, 귀하가 잘못된 것 같아서 13.0%,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1.8%였고, 기타는 3.7%로 응답하였음.

□ 과거의 성폭력 피해영향

- 과거 피해자에 영향을 준 것에 관해서 개방질문 식으로 응답 하게 한 결과,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우울, 분노감정이 가장 많았고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 면도 많았고, 아주 심각한 것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사고도 있었고, 가족 불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자존감 실추, 수치심, 죄책감, 임신 낙태, 직장의 어려움 등 피해자의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이 결과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반영함.

제6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 정부의 지원제도 이용 및 필요성

- 최근 1년간 정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향후 이용의사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약 94%의 응답자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4.8%가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보였음.
- 약 98%의 응답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원했

고, 90% 실제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93%의 응답자가 직업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요구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응답자 자신의 신체 건강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 성폭력 관련 상담소 필요성은 98%의 응답자 필요성을 주장하고, 94%의 응답자 역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여성 긴급 전화에 대한 필요성(97%)과 이용의사(76.3%)도 비교적 높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필요성(97%)도 높았고 이용할 의사도(80%) 높았음.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이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의 확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해바라기, 윈스톱 지원 센터에 관한 필요성 역시 높았지만(97.0%), 실제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해바라기 센터(65.3%), 윈스톱 지원센터(74.6%)의 이용의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 향후 정부의 지원제도의 우선순위

- 현존하는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1순위는 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이었고,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이 2순위, 빈곤 가장 생활지원이 3순위,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가 4순위 이었음.

□ 저가 임대 주택 입주 의사

- 주거지원에 관한 욕구가 두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쉼터 이용자들이 상담기관 이용자들에 비하여 정부에 의한 저가 임대주택이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화 욕구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대한 욕구 조사에 의하면,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강화에는 응답자의

100%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충하는 면에서도 9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반, 국민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인식 개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였음.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부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시설의 확대와 동시에 전문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실현해야 함.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타 의견

-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밝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제안 사항은 가해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음. 특히 10대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했는데, 이 연령대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한다. 즉 중고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군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좀 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인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도 자신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함을 강조했음.
-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 피해자를 배려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음.

□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의 순위 별 내용을 보면, 1순위로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2순위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라고 응답했음.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에 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가 94%,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95%로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강화 94%, 장애 유형별 전문 상담자 지원체계 강화가 93%로 나타났음.
-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해야 하고 장애인 강간 조항에서 항거 불능이라는 용어 삭제도 강하게 요구했음. 즉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적 의식차원에서 교육과 이들을 위한 시설, 상담자들의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함.

□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는 1순위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을 요구했고, 2위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기관 확대를 들었고, 3위는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이었음.
-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예방과 지원 정책을 중·장기 과제로 실현해야 할 것임.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이용 만족도

- 성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한 횟수와 만족도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여성 장애인 상담소, 이주상담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91~100% 정도의 만족도를 보고했음.
- 여성 긴급전화 1366(58.4%), 원스톱 지원센터(73%), 해마라기센터(67%)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 상담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는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32.0%), 공공 기관(20.0%), 매스컴(22.1%)순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상담소 이용에는 주변의 친구들의 권유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음. 또한 상담소를 찾은 이유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32.8%),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26.0%), 및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기 위함(12.7%) 순이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음.

□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관해서 응답자의 95%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며, 상담소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78.5%)과 의료적 법률적 지원(12.9%)이었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의 역할 중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 치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심리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소수의 응답자가 의견을 피력했는데,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과 비체계적인 상담절차,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을 예들 들었음.
- 상담소의 환경 개선과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97%가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경우에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데 걸리는 시간(79%), 상담소 방문을 위한 교통편(67%)에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고 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상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들은 심리치료, 집단

상담 및 교육,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성폭력 대처 교육 분야, 취업 지원 등에 전반적으로 92~99%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의료 기관소개 등은 89.5%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 법률적인 지원(89%),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98%), 집단 상담 교육(8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90%) 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치료비 지원(88%),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81%) 분야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했다지만,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의 욕구(757%)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직업 지원 기대를 낮춘 것으로 해석됨.

□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

-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응답자는 1순위는 개별 상담 및 치료, 2순위는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 3순위는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순위를 보고해, 응답자들은 상담소 기능에 심리치료 분야 강화를 원하고 있었음.
- 상담에 질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면접 상담의 강화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내담자의 정서적인 지지를 겸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했고, 사후 관리를 포함한 추후 상담도 원하고 있었음.

□ 성폭력 보호시설의 이용 만족도

- 성폭력 관련 보호기관에 입주하면서 성폭력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 만족도는 성폭력 상담소는 89%, 여성 긴급전화 81%, 성폭력보호 시설 92%, 청소년 성상담소 88%, 해바라기센터 75%, 원스톱 지원센터 93%, 여성 장애인 관련 상담소 100%로 다양한 만족도를 보였다.
-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는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됨.

□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위

-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39.1%)과 정부기관(2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 원스톱 지원센터(12.6%)이었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9.2%)는 적었음.
- 보호 시설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및 상담을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있었고(40.2%), 가해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26.4%)도 있었음.
- 보호 시설에 대한 입주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17.2%)과 2~5년 이내가 가장 많았고, 1주일 이내(12.6%)와 2주 이내(9.2%)이었음.
- 보호 시설 입주자들은 62.1%가 보호 시설 입주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고, 보호 시설 연장 희망 기간을 16~30일(35.3%)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1~45일(26.5%)이었음.
- 보호 시설의 이용자들은 보호 시설에서 평균 1개월 정도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됨. 보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함.

□ 보호시설 이용 평가

- 78%의 응답자들이 보호 시설의 이용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호 시설에서 피해 후유증 치유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면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64.4%)고 보고 했고 가해자와의 격리(8.0%) 면에서는 비교적 낮게 보고 했음.

□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83%의 만족함을 보고

하였고,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7%, 위생상태의 만족도는 79.4%, 건물의 안정성의 평가에도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하였음. 이는 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음.

- 보호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70%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호시설이 거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면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 직원들이 거주자에게 관심을 가지고(80%), 거주자를 존중하며(82%), 필요한 직원들을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면의 만족도(77%)들이 대체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는 78%, 개별 상담 및 치료는 88%, 집단상담 및 치료는 93%,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87%, 성폭력 대처 훈련은 89%, 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소개는 86%,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정보제공은 87%가 만족스럽다고 보고 했음.
-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는 개인과 집단상담과 치료 서비스 분야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를 향상해야 함을 제시해 줌.
- 시설에서 제공하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치료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아니기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극복과 자신감 향상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심리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보호시설의 서비스 필요성

- 성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에게 보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법률지원에 관해서는 91%, 개별 상담 및 치료 분야 90%,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 92%, 예술 문화 프로그램 91%, 성폭력 대처교육 분야 87%,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93%,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및 소개 88%, 퇴소 후 정착 지원 90% 의 응답자들이 서비스 확장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경우에 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결과 입소자들은 다시 한 번 개별 상담과 심리치료를 1 순위로 강조했고, 법률 상담과 지원 연계, 퇴소 후 정착 지원, 집단 상담 교육, 예술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요구했음.
-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성폭력에 관한 응급조치에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에 와있음을 시사함.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요구 사항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입소자들을 상대로 개방 질문을 통해서 시설 개선에 관한 요구 사항을 표현하도록 한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 거부하면서 바라는 것은 시설 개선 즉 잠자는 조건 개선, 목욕탕 등 시설 개조와 시설의 위치가 유흥가에 인접한 곳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도 표현했음.

제8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 심층면접 분석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후 증상, 향후 계획,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 심층 인터뷰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은 감안해서 이들의 감정 및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훈련을 받은 조사관들이 직접 실시했고, 다음은 응답자 102명에 관한 인터뷰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석 결과임.

- 성폭력 피해 증상은 불안에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이었음. 즉 불안, 우울, 대인 관계 어려움,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좌절감, 낮은 자존감, 자신감의 결여, 억압, 순결감 상실, 생활의 변화 등이었음.
-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아직도 이들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불안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함.
- 쉼터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중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 또는 사촌 오빠인 경우에 친족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더러워졌고, 순결을 상실했다는 사고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음.
- 응답자들은 성폭력 피해 결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및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음.
-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출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있었음.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데 청소년들일 경우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입소 후의 생활 변화

- 피해자들은 대체로 입소 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 했고, 어떤 입소자는 적응 문제로 인해서 퇴소하고 싶은 욕구를 밝히기도 했음.

□ 보호시설의 상담 프로그램

-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은 예술치료나 운동을 겸한 요가, 비즈공예,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심리적 충격과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치유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상담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지적됨.

□ 향후 계획

- 대체로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인 심리치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욕구를 밝혔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성폭력도 예방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를 밝혔음.

□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 학업을 할 수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취직할 계획이나 직업 교육 또는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 36%이었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20% 이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선호하는 직업

- 장래에 계획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에 관해서 102 명의 응답들이 장래 희망직업에 사회봉사나, 복지사, 또는 선교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성폭력 상황을 자원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건전한 일이었음.
- 일반직에는 기술교육, 베이커리, 인테리어 디자인, 공무원 등의 직종에 관심을 보였고, 이들 중에는 예술 계통의 직업에도 선호를 보였고, 작가, 예술가/시인, 또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음.

□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 입소자들은 의식주, 경제 지원 (13명), 퇴소 후 정착지원 (7명), 어머니와 같이 살도록 주택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음(5명).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6

명)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14%가 심리 의료 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음.

□ 장애인 대상의 심층 면접 결과 분석

-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봉사활동, 학교 적응, 직업 교육, 자립 등 다양했고,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나 기대가 좀 결여되는 듯한 소망을 밝힌 것으로 보임.
- 장애인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쉼터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바랐고, 일부는 학습과 직업 교육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음.
- 또한 장애인피해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쉼터의 확대, 전문상담, 의식주 문제, 지원금, 지속적인 지원체계, 편견 없는 정부 지원 정책, 학습지원 등이었음

제7장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기간

- 전국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158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개소,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16개소로 총 194개 시설임. 우편으로 회수된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개소,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 14개소 등 총 135개 시설임.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음.

□ 조사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각각은 특성이 다르며, 고유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므로 통일된 설문지를 통해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설을 크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구분하였음. 이렇게 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설문지의 구성은 시설유형별로 각각 시설에 대한 일반 사항, 운영 및 관리, 지원제도, 이용자 사항(보호시설은 거주자 사항), 종사자 사항,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음. 전체적인 항목은 동일하지만, 항목 내에서의 개별적인 질문들은 시설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질문들이 포함되었음.

제2절 성폭력상담소

□ 일반사항

-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를 보면, 중소도시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도시가 33.3%, 농어촌이 13.7%의 순임. 농어촌의 비율이 가장 낮는데, 농어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성폭력상담소들이 작년(2006.1~2006.12)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지만 후자가 조금 더 많았음. 이를 시설위치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비율이 55.6%로 절반이상이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47.1%, 28.6%였음.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결과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즉 재정부족과 후원금 모금의 부족에 대

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음(90%대). 재정적인 측면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음(70%대). 즉 적은 수의 직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담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음. 다음으로는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정규직원 부족(60%대),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상담시간의 부족(50%대)이었음. 성폭력 상담소의 정규 직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인력부족의 문제나 시설홍보, 상담시간의 부족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상담소가 절반 이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

- 성폭력상담소의 기관간 연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면, 먼저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과 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비율이 높았음. 이는 연계가 중요한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지원제도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들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개별상담의 경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90.2%로 가장 많았음. 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도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79.2%, 70.6%로 많은 편임. 인성교육과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40%대로 나타났음. 가해자 교육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28.4%였음. 사례관리는 항상 실시한다와 가끔 실시한다가 각각 53.1%, 39.8%였으며, 예술치료와 정신과 치료는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40%대이고,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은 10~20%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실시하는 비율이 낮았음.
- 외부강사 참여관련 현황을 보면,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79.8%로 많은 편이었음.

-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비율은 77.0%였으며,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 사례관리건수는 20이하가 43.6%로 가장 많았음.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담당인력부족이 55.0%, 기관 간 연계미흡이 30.0%였음. 사례관리를 통한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소의 인력 충원과 기관 간 원활한 연계가 특히 중요할 것이라 볼 수 있음.

□ 종사자관련 사항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39.1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6.96시간이었음.
-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는 87.4%인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시간이 있는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훈련방식에 대해 보면,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을 병행한다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었음. 다음으로는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이 27.0%,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이 23.6%였음.
-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낮은 급여수준이 73.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시급한 개선사항 역시 급여수준 개선이라는 응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제3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일반사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2.9%, 중소도시가 47.1%였으며, 농어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농어촌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물형태를 보면,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35.3%였

으며, 상가건물이 11.8% 등이었음.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대상이 된 피해자보호시설의 재정지원 관련사항을 보면, 부족하다는 경우가 58.8%, 매우 부족하다는 경우가 41.2%로 100%의 시설에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 보호사업을 감당하기에 인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알아 본 결과, 부족하다(70.6%)와 매우 부족하다(17.6%)를 합한 비율이 90% 가까이 되어서 대부분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시설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1~2명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서 주로 연계하는 기관을 알아 보면, 전담의료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도 여성복지담당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보면, 대체로 연계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경찰, 법률구조공단, 응급구조단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조금 더 연계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재정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미흡이 23.5%, 열악한 시설 공간 및 환경이 11.8%였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인력 확충이 41.2%, 시설의 공간확보 및 환경개선이 17.6%,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11.8%,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사후관리 강화, 시설의 적극적 홍보가 각각 5.9% 등이었음.

□ 지원제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 항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88.2%), 사례관리와 진학교육(각각 70.6%), 진로지도 및 상담(64.7%), 직업훈련, 폭력대처교육, 성교육(각각 58.8%), 양성평등교육(52.9%),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29.4%)의 순이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경우는 88.2%였으며, 10%를 조금 상회하는 시설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경우가 64.7%였으며,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35.3%였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실시한 경우가 75.0%였으며, 25.0%의 시설에서는 사례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자 사항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난 1년(2006.1~2006.12) 입소율을 보면 평균 76%로 나타났음. 수용률은 시설입소 희망자 대비 수용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의 평균 수용률은 약 83%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간(2006.1~2006.12) 거주자들의 평균 입소기간을 알아 보면, 평균 입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를 합한 비율이 70%를 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반면 입소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없었는데,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에 따라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 종사자 사항

-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현재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남. 즉, 현재의 급여수준이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합한 비율이 9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66.79시간이었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주당 18.80시간이어서 초과근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58.8%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2%는 없었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시설의 경우 그 방식을 보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44.4%, 시설 내 자원활용, 시설 내 교육+외부위탁이 각각 22.2%였음.

제4절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 일반사항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위치를 보면, 대도시가 64.3%, 중소도시가 35.7%였으며, 농어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센터가 14개 밖에 되지 않으며, 도시 중심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임.
- 피해자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상담원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면, 그러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절반씩이었음. 원스톱지원 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필요할 것이라 볼 수 있음.

□ 운영 및 관리

- 조사대상이 된 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해 보면, ‘정규직원 부족’의 경우 100%의 센터에서 어려움이 있다(‘있는 편이다’와 ‘매우 많다’를 합한 비율)고 응답하였음. 또한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78.6%),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78.5%), ‘시설공간의 부족’(78.6%), ‘이용자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71.4%)도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70%대를 보임. ‘전문인력부족’(69.3%),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61.5%)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60%대였으며, ‘과중한 업무’는 57.1%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 병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연계가 가장 어려운 기관은 검찰, 법원이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임.

□ 지원제도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모든 센터에서 항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신과 상담은 항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가끔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음.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항상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음. 사례관리는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하는 비율이 84.6%였으며, 성폭력관련 조사연구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사항

-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난 1년간(2006.1-2006.12) 평균 지원건수를 보면, 서비스 건수는 평균 1245건이었음. 지원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상담 건수가 평균 54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건수가 307.93건, 심리치료

건수가 287.67건, 법률지원건수가 181.31건의 순이었음.

□ 종사자 사항

- 종사자들의 월급을 보면, 대부분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였음.
- 센터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51.00시간이었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13시간으로 나타나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이 된 센터들의 경우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가 78.6%였으며,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는 21.4%였음.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 교육방식을 보면, 자체내 자원활용+외부위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내 자원활용과 외부위탁 각각의 방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각각 27.3%였음.
- 조사대상이 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낮은 급여 수준’이었으며(35.7%), 이 외에 열악한 근무환경, 직원 보수교육이 각각 21.4%를 차지하였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력충원이 57.1%, 급여수준 개선이 28.6% 등으로 나타남.

제8장 정책제언 및 결론

□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 성폭력 관련정책이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함. 중장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4가지 기본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함. ① 입법정책(입법부) -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의 실효성 제고; ② 예방환경정책(교육부·행자부·문화부) -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의식전환, ③ 피해자보호정책(여가부·법무부·행자부) - 피해자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대책; ④ 가해자재범억

제(법무부·행자부·청소년위원회)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비

□ 성폭력 관련법제의 정비

-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규정하고, 저항의 유무보다는 동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성폭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형법으로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조항 포함과 처벌법과 보호법의 분리입법,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의 확대, 아내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규정,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보호 조치 규정 마련 등 법 개정작업이 시급함. 이밖에 양형기준법의 도입 및 취약 계층 성폭력 피해자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이 요구됨.

□ 성폭력 예방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사회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성 행사나 의례화된 일회성 강의보다는 여러 경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학교기반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행자부 및 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교육을 통합,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 교육체계의 도입이 요구됨. 즉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 폭력예방교육 전담교사 육성 및 교육시간확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 마련 등이 시급함
- 연령별·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진(전문강사은행)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기반을 통하여 교사대상 직무교육 및 부모대상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각 대상별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운영계획에 교육시간이

확보되도록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60시간 이상)개설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추진상황 점검 시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상황 점검 실시 및 학교관리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사범담당자·의료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 보육 및 교육시설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성폭력 피해 의료 지원 협력’이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공립 병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
- 의료인들의 인식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담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는 병원 측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협조했을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
-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강화 : 의료지원금을 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이를 암호화하는 등 비밀보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비 지급 업무담당자의 효율화 : 현재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는 일선 상담소에 일임. 따라서 상담소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지급, 지급 이후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를 위한 업무를 상담소의 여타 업무와 함께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음. 여성가족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원스톱 지원센터처럼 진료현장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에 대한 제도 현실화 :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은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임.

□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체계의 개선

- 법률지원 업무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 보완
- 성폭력 수사전담제도의 효율적 운영 : 성폭력 피해 수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단지 경·검찰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반한 수사 방식의 전문성임. 따라서 성폭력 수사전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의지 있는 인력 배치와 교육이 시급함
-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 :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뢰 관계있는 자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동석할 것이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

□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쉼터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검찰,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의료계 등 지역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형성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활성화와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취업, 직업훈련, 주거지원) 마련, 피해 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지역 내 연계망의 업무를 위한 지침 수립, 피해자 공동 지원 사례 관리 등의 정책 수립필요.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유 서비스 강화 :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

대로 후유증에 관한 본 연구 결과 63%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응답할 당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 피해자들은 악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함.

-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반복적이라는 것을 감안 하면, 데이트 성폭력, 아는 사람과의 성적인 경계성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함.
-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성 강화 : 현재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2개소가 있다. 성폭력 상담소가 많이 설치되어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기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함. 따라서 이제는 정부 지원 상담소는 서비스 구역을 설정하거나 할당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의 확충보다는 상담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① 성폭력 상담사들의 전문화, ② 성폭력 상담사들의 대우 향상, ③ 성폭력 상담원 심화 교육 강화, ④ 성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의 마련과 자격관리제도의 도입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강화가 필요함.
- 원스톱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의 확충 : 성폭력 발생 후 즉각적으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의 불편, 대기자가 많아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 등 때문에 불만을 들어냄. 따라서 한 곳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장이 필요함.
- 장애인 피해자들에 특화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거 문제, 생계 문제, 후속 관리 등 심리적, 사회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함.
-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지원센터의 확장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만13세 이상 아동(미성년)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될 필요가 있음. 형법의 의제강간의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함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아동피해자 지원

을 위한 통합적 국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가해자 재범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사방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급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06. 8. 정부발의안)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날로 흉포화·누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성폭력범죄자 전담 수용·치료시설은 전무함.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자에게 확대·적용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처벌 및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 선고율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6. 12. 22.)하였고, 법률시행 후 2년 내인 2008년까지는 양형기준이 제정될 예정임.
-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교육체계 마련: 현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보호관찰의 대상에게는 교정교육 등과 같은 처우가 집행되고 있는 반면, 실행선고를 받은 수감자에게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
-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집중보호관찰·사후관리 강화 : 실제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실효성 있

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한편, 고위험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집중보호관찰 지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있음. 또한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팔찌)의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 사후관리 등이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 가해자의 연령, 가해행위의 특성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이 요구됨. 특히 최근 성폭력가해자의 저연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성년가해자에 특화된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말 이후이다. 1988년 변월수, 김부남 사건, 1991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의 피해와 피해자 보호쟁점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적 토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 법은 형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성폭력 범죄규정의 문제점과 친고죄 규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저연령화 경향을 나타내면서 그 심각성 및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0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제정,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성매수 행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는 연쇄 아동성폭력 및 학생간 집단성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강구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이후, 범죄통제 패러다임에 있어서 사후대처 중심으로부터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여성폭력방지 특히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 정책수립(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 정책개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성폭력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발생률 및 발생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발생실태, 성폭력 피해현황 및 보호지원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향후 성폭력에 대한 국가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유형별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방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첫째, 성폭력의 유형별 발생실태 및 ‘전국성폭력 발생률’을 파악

둘째,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적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파악

셋째, 성폭력 유형별 예방 및 대응책을 개발을 개발

넷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강구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규모로 성폭력 발생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구표본에 대한 “성폭력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태파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식적 발생통계를 통한 접근방법이다. 이는 성폭력의 공식적인 보고율 또는 노출가능성과 관련된 일반적 요인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기는 했어도 해결되지 못한 소위 암수범죄로서의 성폭력을 포함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지하다시피, 성폭력은 숨은 범죄율이 매우 높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국가기관들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통계수치들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발생추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소위 “자기보고식 범죄피해조사방법”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조사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인 피해유형 및 피해정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성폭력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발생률(숨은 범죄율) 및 유형별 발생실태를 밝히고,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을 파악, 실효적인 피해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실제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을 경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지원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지원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현행 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검토해보았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 이론적 쟁점 및 국내외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성폭력 관련 선진국의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성폭력을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선진국의 성폭력 관련 제도 및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선진국 제도를 한국사회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외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다. 또한 성폭력 발생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이론을 논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세 가지 유형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가정폭력실태조사와 통합 추진하는 표본 실태조사와, 성폭력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조사, 그리고 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조사이다.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발생률을 분석하고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및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폭력범죄 발생시 상황적 특성을 분석한다. 성폭력범죄의 유형별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을 파악하고 성폭력 피해보호시설의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예방대책을 모색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모색하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출한다.

〈표 1-1〉 성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 연령, 교육수준, 국적 ·장애 유무, 소득수준, 결혼기간, 가족구성, 주거형태, 지역 등 ※ 조사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특성파악
성폭력의 인식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식, 성폭력의 발생원인 등 성에 관한 인식, 관련법·지원정책·지원기관 등 인지도
성폭력 경험에 관한 사항	·가해 또는 피해 유무 ·가해·피해 정도 등
성폭력 경험 시 발생요인	·가해자: 가해 시 발생원인, 발생장소, 피해자 유형 등 ·피해자: 발생원인, 발생장소, 가해자 유형
성폭력 경험 시 대처방식	·폭력에의 반응: 소극적·적극적, 능동적·수동적
성폭력의 영향	·개인생활, 가족생활, 사회생활 등에의 영향
성폭력발생 시 지원서비스 이용여부 및 효과	·경찰, 피해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도움정도 등 ·도움에의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지원욕구 등

〈표 1-2〉 성폭력 피해자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국적, 결혼상태, 장애 유무, 자녀 수, 고용상태, 가족배경 등 ·지역사회 환경특성
폭력관련 사항	·발생장소, 발생시점, 폭력정도, 대처방법, 신체적·정신적 증상 등 ·가해자 특성 (기억가능 여부, 기억불가능 이유)
가해자 관련 사항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에 대한 현 상태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 태도
보호시설 관련 사항	·입소 경위, 입소 이유, 입소 기간 ·입소시 자녀동반 여부, 동반자녀의 연령 ·비입소 자녀 유무 및 관계 ·퇴소 후 계획 등
지원제도 관련 사항	·지원시설 이용기간 ·의료비·법률구조·프로그램·직업훈련 등 혜택 여부 및 만족도, 지원관련 요구사항 등

〈표 1-3〉 조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구분	개소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173
	통합상담소	29
	여성긴급전화1366	16
	원스톱지원센터	14
	아동성폭력전담 해바라기센터	3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
계	252	

〈표 1-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의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시설에 관한 일반적 사항	·소재지, 설립연도, 설립유형, 시설 면적, ·정·현원, 외국여성 및 장애여성 수, ·정부지원 여부, 자가임대 여부, 시설 채무 유무 등
시설종사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 수, 종사자 학력·자격·경력, ·근무연수, 보수수준, 기타 근무환경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입소 경위, 입소 이유, 입소 기간, ·자녀 동반 여부, 퇴소 후 계획 등
지원제도 관련 사항	·운영일수, 운영시간, ·급·간식, 프로그램 등 지원 여부 ·프로그램 내용·외부강사 활용 여부 ·요구사항 등

2. 연구방법

가. 성폭력 관련 문헌연구

우리나라의 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정책추진 실태,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성폭력에 대한 대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의 주체적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제도 및 정책의 도입가능성을 판단한다.

나. 행정통계 수집 및 분석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특

성을 파악한다.

다. 실태조사

전국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에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ED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표본을 추출한다.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를 활용하고 가구명부를 참조한다.

일반가구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의 표본규모는 한개 조사구당 50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200개 조사구의 약 10,000가구로 하며, 표본조사구 추출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조사구 수는 264,207개 조사구이며 총가구수는 15,835,032가구로 집계 ◦ 표본추출 방법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지역특성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7대 시의, (2) 기타 시 (3) 군의 읍·면으로 분류하고 각 조사구의 주된 주택 특성에 따라 2가지의 주택형태로 분류 - (1)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 (2) 아파트 조사구 ◦ 조사구의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에 의하여 전체 모집단 조사구를 6개 층으로 층화하고, 모집단의 각 조사구는 가구 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각 조사구의 가구 수를 5로 나누어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사용 ◦ 6개 층(조사구의 지역특성과 주거형태) 내에서 각 모집단 조사구를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추출하고, 행정구역을 분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시도)별로 층화 추출한 효과를 얻도록 함

전문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주관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약 200명의 전문조사인력 중 일부를 활용하며, 연구진에 의하여 직접 선발 및 교육한다. 10 가구조사팀(40명)을 구성하며, 각 팀은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하

여 조사수행과정 및 조사결과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조사대상가구는 전국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이며 이 중 9,847가구(완료율 98%)가 조사완료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6일 ~ 10월 29일(80일간)이었다.

조사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PC+에 의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성폭력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분석 결과를 기본적으로 제시하였다.

라.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심층조사

성폭력 피해자 약 1,000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전문상담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마.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실태조사

상담소 104개, 보호시설 17개 원스톱 등 16개소의 지원시설에 대해 우편조사 실시하였는데, 연구진에 의하여 작성된 조사표를 발송하고 자기기재식으로 기입한 후 회송하도록 하고 반송봉투 및 반송우표를 동봉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일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확인조사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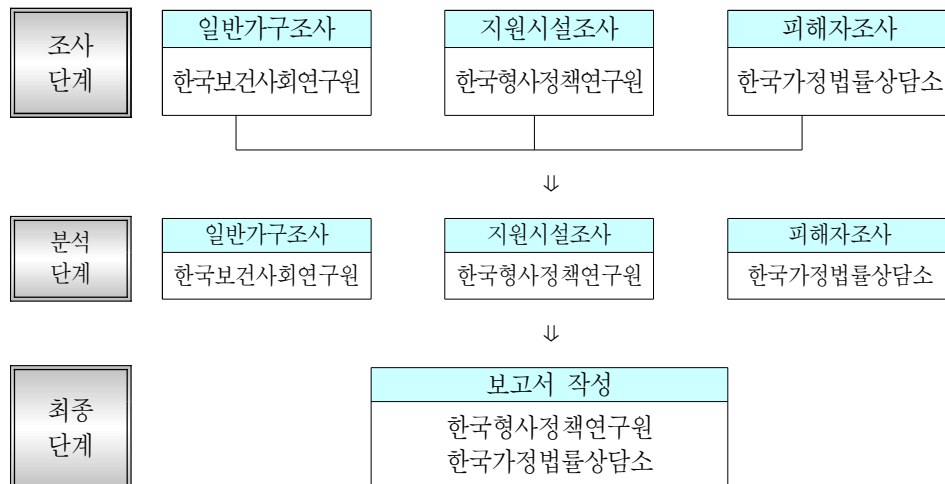
제 3 절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3개 기관이 ‘일반가구에 대한 성폭력실태조사’, ‘성폭력관련 지원시설조사’, ‘성폭력 피해자조사’의 3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단계의 일반가구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

폭력관련 시설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조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수행하였다. 둘째, 분석단계에서는 각 조사수행기관이 조사자료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보고서 작성의 책임기관에게 이관되었다. 셋째, 최종단계는 보고서 작성단계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실태조사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공동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가정법률상담소의 연구진과 협의·조정하여 완료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도



제 2 장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역사적으로 성폭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되어 왔으나 성폭력 문제를 직면해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부주의와 결함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과 국내의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한국사회는 최근 20~3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짧은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 마련, 복권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의 적극적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성폭력 재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법률적 의미의 성폭력 개념과 유형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정의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이경자 외, 1992).

성폭력의 구체적인 법률적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 강간 :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단,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 305, 306조).

- 특수강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흥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 강제추행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298조).
- 성희롱 :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직접적인 신체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¹⁾, 장난전화, 침묵전화 :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 음란전화: 성과 관련된 내용, 성적 호기심 질문, 성적인 욕설, 성관계 질문하기
 - 비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협박전화, 일방적 욕설,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전화

1)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함.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검색 혹은 번색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분쟁 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278건,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 2004년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 연령별 유형분류

가. 아동 성폭력

아동 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다.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라는 용어로 정의되기도 한다. 아동 성폭력의 약 70%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발생한다. 피해연령은 유아(1~7세), 학령기 아동(8~13세)으로 나눌 수 있다. 피해유형은 강간, 성추행이 주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나타난다. 가해자는 주로 친족, 동네사람, 학교나 주변사람, 학교교사나 강사, 경비원, 학교 및 학원의 기사나 관리인 등 약 70% 이상이 아는 사람이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 가해자 집, 공동거주지, 공원,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서 발생하며, 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유인방법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위협, 흥기,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인 방법(유인, 질문, 놀이, 금품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 폭력적인 방법이 많다. 아동 피해가 많은 이유는 피해자의 물리적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이다.

많은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비밀로 지키라며 회유하거나 과장된 협박을 한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폭력이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까닭에 아동 성폭력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이 공포심을 갖는다거나,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성기 등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폭력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나.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한 마을의 13세 소녀가 14명의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력을 당해 자살 기도를 한 사건을 비롯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성폭력으로 인해 임신하고 교실에서 출산한 사건, 중학교 교장의 여학생들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나 성인의 성폭력 피해에 비해 윤간이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다.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배나 불량배 등의 집단 폭행, 강도, 흥기 사용, 침입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 사용 여부, 동의 여부, 저항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로 취급되어 엄한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과 방어 능력이 있다는 이중적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관계에 있어 동년배나 선배 등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는 미팅,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원치 않는 성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호감을 가지고 만난 경우나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비디오방에 간 경우 동의된 성관계와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본인도 자책감을 많이 갖는다. 간혹 여성 청소년들이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단란주점, 사진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고용주나 고객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2005).

다. 성인 성폭력

성인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은 어린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위기개입의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어,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폭력 경험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통념상, 성인은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저항을 불능케 할 강력한 폭행, 협박 등 증거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강간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특히 가해자와 데이트 중이거나 같이 술을 마신 경우, 음주로 인사불성인 상태, 피해 장소가 가해자 차량, 여관, 피해자 집, 가해자 집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행동과 품행에 대한 책임을 의심받게 되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심하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맥락

에서 성인 피해자는 성폭력 상황에 대한 충격과 혼란, 당황, 수치감과 자책감, 분노, 배신감 등의 총체적인 감정들이 혼재되어 상당기간 회복이 어렵다.

3.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분류

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강도, 택시기사, 지나가는 사람 등)이다. 피해정도가 심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가해자의 차번호, 옷차림, 용모 등을 기억해두고 소지품, 머리카락, 체모 등 최대한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서 폭행할 수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크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인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다. 가해자의 신분이 밝혀 지지 않은 경우 성병감염, 임신, 에이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사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해 장소에 안전장치를 보강한다든가 피해 장소에서 잠시 떠나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한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과 지속적으로 강간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와 감정적 혼란을 가져오는 ‘강간 외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을 경험한다(Burgess and Holmstorm, 1979). 피해여성들은 단기적으로는 며칠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년 동안 공포, 불안, 우울, 불안,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의 어려움, 태도나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겪을 수 있다.

나.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추행에서 강간까지 포함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되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약 30%가 친족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대부분 학령기(8~13세)이다.

실제로 친족 간에 일어나는 성인과 어린이와의 성적 행위는 성인여성이 당하는 강도와 마찬가지로 강요, 폭력을 수반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심리적 손상만큼 심각하다. 또한 어린이의 ‘동의’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어린이와 성인과 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요된 선택에 불과하다(현혜순, 1997).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주요 가해자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제일 많고 삼촌, 사촌 등의 친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배우자는 경제, 사회적, 심리적으로 무능하여 이를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채규만, 2004).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늘어가면서 의부에 의한 성폭력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딸을 성폭력 하는 아버지들은 가족 내에서 생활전반에 걸친 통제를 가하며, 무력한 어린 딸의 속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며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가해자가 오빠나 친삼촌인 경우 남아선호의식이 강한 친족 내에서는 여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만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지지해 주며,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엇갈려 혼란스럽더라도 주위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다. 데이트 성폭력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데이트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데이트 강간은 첫째, 상대를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 둘째, 의식 불명이거나, 잠자는 상태, 술이 취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성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 있을 때. 셋째,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적 성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가 2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피해 장소가 숙박업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자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을 따라간 것은 성관계 허용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화간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고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 또한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거부를 내성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데이트 폭력은 임신, 낙태 등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힘들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라.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폭력이란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근무기간'이라 함은 단순히 근무시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 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결국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직장 내의 성희롱은 대체로, 성차별적인 언어와 행동, 상관의 위치를 이용해서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성적인 농담 등이 포함된다. 직장 내의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이란 교육관련 기관이란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육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교육자라 함은 교사나 강사를 말한다. 여기에서 교사는 유치원, 학교, 대학 등 제도교육권 내의 교육자를 의미하고 강사라 함은 사설 학원, 과외, 체육관 등 비공식기관에서의 교육자를 말한다.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 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성희롱은 강의 도중에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성차별적인 발언, 여학생들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한 기분 나쁜 응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학의 경우 교수에 의한 조교, 대학원생, 대학생 피해가 학내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특히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예·체능 계와 논문지도, 실험, 임용문제 등으로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 피해가 빈번하

다. 또한 대학교 내에서 동급생·선후배에게 당하는 피해도 다양하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성폭력을 규정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영향력을 받는,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혼란스럽고, 학생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다.

제 2 절 성폭력을 설명하는 제 이론들²⁾

오늘날 한국사회는 각종 폭력범죄의 만연, 조직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숨겨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으로 황폐화된 교육환경, 각종 환경파괴, 사이버 테러와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온갖 폭력적 양상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준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의 성폭력범죄 발생률은 대단히 높은 사회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발생현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주류범죄학은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맥락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성차에 기초한 범죄현상, 즉 성폭력(강간)에 대해서조차도 성-중립적인 설명들(standard gender-neutral explanations), 가령 일상생활이론이나 문화적 타락, 사회해체, 포르노그래피, 범죄통제 등과 같은 요인들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중립적인 접근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왜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가담경향이 높은지, 특히 남성지배적인 범죄와 여성의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해명하는 데는 매

2) 여기에 정리된 이론적 논의는 김은경(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장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우 제한적이다. 여기에서 바로 ‘성(sexuality)의 사회적 구성’이 성폭력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작업은 성폭력에 대한 주요 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서는 강간에 대한 네 가지 사회학적 관점들, (1) 성별불평등론(gender inequality theory) 또는 가부장제론 (2) 노골적인 성표현물 또는 포르노그래피론(pornography effect theory) (3) 문화적 누출효과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4) 남성성이론(masculinity theory)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네 가지 이론들은 각각 사회구조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성폭력 발생에 대해 개별적인 설명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경쟁적인 이론들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이론들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론적 체계로 통합하는 좀더 강력한 설명력을 지니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구성, 무엇보다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네 가지 이론적 관점의 연관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1. 성별 불평등론(가부장제론)

페미니스트이론에 따르면, 성폭력(강간)은 가부장제사회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Brownmiller, 1975). 가부장제적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적 근거에서 출발하고, 남녀의 관계는 지배관계로서 개념화된다.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는 여자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사회제도(가족, 이성애, 매매춘 등)에 유래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성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들에게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힘(권력)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하고, 기존의 성적 계층화체계를 유지시킨다고 주장한다(Adamec and Adamec, 1981; Barry, 1979; Brownmiller, 1975; Riger and Gordon, 1981; Russell, 1984; Sanday, 1981). 여성을 남성을 위한 성적 그리고 재생산력을 지닌 소유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강간이 더 잘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남성이 자신들의 권력과 위세를 고수하고,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통하여 성적 권리를 실행한다.

또한 강간이 전통적인 성역할 특성(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Burt, 1980; Check and Malamuth, 1983; Cherry, 1982; Russell, 1975; Weis and Borges, 1977) 어느 사회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성적 특성과 성적 역할을 갖기를 기대하며, 따라서 그것들이 내면화되는 조건에 대하여 일정한 규범들이 있다. 이러한 규범적 특성을 소위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배 및 공격성과 같이 남성성(masculinity)표현과 연관된 규범들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도록 고무시킨다는 것이다. 성적 스크립트의 획득이 성역할 정체성의 발달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의 성적 행위는 지배 및 공격성과 관련된 전통적인 남성적 특성으로부터 고취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은 몇 가지 점에서 진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성별 불평등의 역동성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별 불평등의 모습과 양상은 각 사회와 문화 내에서 일의적이거나 단일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이 세계에서 강간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라 성별불평등 정도가 일반적으로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수준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한국사회도 분명히 과거의 가부장제적·남성우위적 성적 질서로부터 점차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성폭력 문제가 이전보다 긍정적인 해결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간과 성별 불평등간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자칫 문제의 본질에서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각 사회 내에서 성역할이 구조화되는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성별 불평등이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성역할 체계 및 구조화의 다양성 :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이른바 ‘남성성이론’에는 두 가지 가정이 깔려 있다. 하나는 범죄는 상징적으로 남성다운 것이며, 남성다운 것은 범죄에 많은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여성다움’은 동조성을 강조하므로 비행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전개되면,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강간범이다(all men are potential

rapists)’라는 페미니스트의 유명한 슬로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도식은 너무 단순하다. 물론 성폭력이 대체로 남성의 힘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견해보다는 좀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성적 질서의 편성과 관련하여 남성성에 대한 분화된 사고가 요구된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와 그 통제대상이 되는 ‘예속적 남성성(subordinated masculinity)’, 또는 ‘선한 남성성(good masculinity)’과 ‘악의적 남성성(evil masculinity)’의 형상화와 그 연관관계 등이 성적 질서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문화의 특수성 : 성폭력은 각 사회 내에 구성된 젠더(gender) 뿐만 아니라 성별(sex) 또는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이해와 결합되어 있다. 물론 이 양자는 상호에 대한 준거기반이 된다. 한국에 있어서 성폭력의 문제는 제도화된 성별 불평등과 더불어 이중적인 성문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흔히 ‘야누스적인 성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금기적 성문화와 색골적 성문화의 편의적 혼재’ 현상은 한국적 성문화의 골격을 이룬다.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가정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 성금기적인 문화는 음성적으로 ‘성의 상품화’가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는 흔히 성적 방종문화(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의 추구)를 유도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범주화-‘좋은 여자 대 나쁜 여자’, ‘모성중심적 여성 대 음핵중심적 여성’-가 사회관계에 중심적인 힘을 발휘할 때, “심정 없는(에피소드적) 팔루스적 지배” 표현으로서 성폭력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포르노그래피론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강간하도록 만든다(Brownmiller, 1975; Dworkin, 1981, 1985; MacKinnon, 1984; Morgan, 1980; Ratterman, 1982)고 이론화한다. 이 이론은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은 포르노에 섹시즘(성차별주의)과 남성지배가 찬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이미지는 남성적 성폭력을 증진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가정은 포르노가 여성을 성적으로 객체화시킨다는 점이다. 성적 객체화란 여성의 몸을 과편화시키고, 여성을 비인간화하여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심지어 포르노는 폭력을 에로틱하게 표현한다. 요컨대, 여성이 성폭력의 적절한 피해자로서 동일시되는 것은 성적 대상화(객체화)과정을 통해서이다. 세 번째로,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행을 묘사한 것은 일종의 행위모델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폭력적 포르노가 점차 우세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폭행당하고 강간당하는 것을 여성들이 즐긴다는 ‘강간신화’의 이미지가 상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포르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양극적인 견해로 몰고 가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다. 노골적인 성표현물(포르노)에 대한 태도는 도덕적 신념과 가치, 정치적 철학적 지향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르노와 사회문화적 퇴락, 포르노와 성폭력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지만, 역사를 이에 대해 별다른 응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포르노가 직접, 간접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증진시키고 특별히 여성적대적인 공격성을 촉진한다는 신념도 포기되기는 어려운 듯 하다(김은경, 1994 참조).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은 좀더 진지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포르노가 위험스럽다”는 분명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포르노와 강간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의문시하는 여러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 가령, 1970년 음란물과 포르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 조사들, 1985년 캐나다에서의 [포르노와 매춘에 관한 특별위원회], 1986년 미국의 [포르노에 관한 법무장관 위원회(일명, 미즈위원회)] 모두는 비폭력적 포르노 접촉에 따른 행위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Baron, 1987). 더욱이 포르노접촉과 그 유해성에 대한 실험연구 및 그 검토결과들 또한 상당히 모순적이다. 포르노접촉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경험적인 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소비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논쟁은 더 엉키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험결과들에서 일치하는 점은 ‘성적 노골성, 선정성’의 행위효과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반면, ‘폭력’과 결합된 성표현물(에로틱화 된 폭력)은 확실히 공격적 성향

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즉, 성이 아니라 폭력이 반사회적 효과를 양산해내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매체로서의 포르노 : 비교 문화적 조사는 포르노의 가용성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소프트 포르노는 널리 접근 가능하고, 뉴스나 잡지 등 대중매체에 일상적으로 드러나 있다(Abramson and Hayashi, 1984). ‘생생한 강간과 결박’을 주제로 한 성인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포르노는 흔히 젊은 여성에 대한 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성인영화가 성공을 거두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하나는 젊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매체에서의 생생한 강간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일본보다 매우 높은 강간율을 기록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해석하여, 포르노의 폭넓은 가용성이 성폭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포르노의 효과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적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대체로 무해하며, 성적 환상과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라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Linz & Malamuth, 1993). 두 번째 모델은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여성을 객체화하고 가치를 하락시키며, 에로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제들을 내면화시키도록 이끈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사회책임모델에서 도출된 것이다(Linz & Malamuth, 1993).

3. 문화적 유출이론(Cultural Spillover theory)

문화적 누출효과이론(Baron and Straus, 1987)은 강간에 대한 지지가 성폭력을 직접 관용해주는 믿음이나 태도(가령, 강간의 신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강간을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또 다른 문화적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에서 신체에 대한 무력사용, 가령 학교에서의 체벌, 매스미디어의 폭력, 정부에 의한 폭력사용 등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 강간 또한 발생하기 쉽다. 성적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위한 폭력이 빈발하고 일상화되는 정도는

강간과 같은 행위에도 연관될 수 있다.

전(前)산업사회에 관련된 몇 가지 연구결과들은 문화적 누출효과 이론과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Lambert et al.(1959)은 문맹사회에서 양육과정에서의 체벌사용과 처벌적인 신성(신격)숭배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Sanday's(1981)는 156개 부족사회의 분석을 통해서, 남성주의(maschimo)의 강조, 비(非)-성적인 폭력수준과 강간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Reiss(1986)도 마초 문화적 패턴을 지닌 사회에서 더 높은 강간발생률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문화적 누출효과이론의 또 다른 증거는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접촉효과와도 연관된다. 몇 차례의 헤비급 권투경기의 대대적 방영이후 살인사건의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음이 그 예이다(Phillips, 1983).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강간율은 폭력을 허용하고 관용하는 문화적 영역에서 누출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훈육이나 응징으로서의 폭력 사용'에 대해 높은 관용도를 지닌다. 이러한 인식 저변에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 즉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동란, 오랜 군사통치 등이 깔려있다. 이러한 역사 경험 속에서 강압적인 지배, 복종의 권위주의적 논리가 관철되면서, 이와 함께 폭력에 대한 피-가학적 심성과 태도도 배양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위주의적 전통 하에서 일정한 유형의 폭력은 관습적으로 허용되거나, 적어도 관용되는 분위기가 있다. 부모와 교사의 체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상사의 부하에 대한 강압과 폭력,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가부장제적·권위적 지배체제를 강화시킨다. 한국사회에서 특히 아내구타와 체벌은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령,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 두들겨야 맛이 난다'라든가, 또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는 식의 말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념을 반영하듯,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매우 높다.

가정의 폭력적 환경, 특히 부부간의 불화 또는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력적 훈육방식은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elles & Straus(1979)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거나, 부부가 서로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할 때, 이를 경험 혹은 목격하는 등의

폭력적 사회화 과정을 겪는 것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사랑과 폭력을 연결시킨다. 어린이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때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다. 둘째,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교훈이다. 셋째, 이러한 교훈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세계관에 작용하며, 신체적 처벌의 경험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규범을 제공한다(김은경, 1997; 1999b).

특히 신체적 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성별 불평등과 결합하게 되면,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흔히 체벌에 대한 일반적 관용과 가부장적 구조와의 결합은 종종 자녀에 대한 훈육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소유 및 징벌권이 있다는 관념을 강화, 아내구타에 대한 높은 허용도로 이어진다. 이는 가부장제적 구조를 통하여 남성 권위를 강화시키는 맥락과 연관된다.

4. 남성성 이론

성폭력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차를 자연주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회적 성(gender)’의 형성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성차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성역할 사회화’ 개념을 통하여 조명할 수 있다. 남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역할과 관련하여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기대 받고 양육되며, 그러한 보살핌 속에서 특정한 성역할을 준비한다. 각 성에 연관된 특성을 소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 관계’가 구조화될수록, 성(sexuality) 역시 흔히 남성의 관점에서만 기술된다. 남녀의 섹슈얼리티 역시 성역할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구조화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쵸(Macho)이미지의 강화’와 ‘여성 순결성의 찬미’이다.³⁾ Coveney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구성된 남성의 성의 특성으로 성적인 주

3) 실제 조사연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관계는 일종의 비행으로서 매우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비행은 남녀에 따라 서로 달리 이해됨. 남자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비행은 비난받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일종의 ‘남성다움’의 과시로서 오히려 자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나 여자청소년

도권을 찾는 권력(power), 강간환상이나 포르노의 탐닉에서 보이는 공격성(aggression), 매매춘 등을 정당화하는 데서 나타나는 성과 사랑의 분리, 성기접촉에 초점을 두는 성기지향성(penis orientation), 여성을 존중하거나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여성을 성적인 물건으로 봄(objectification), 여성의 신체 일부나 옷 등을 여성 전체와 분리시켜 성적 만족을 추구(fetishism), 남성의 성은 통제할 수 없기에 자극을 받으면 반드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을 당연시함(uncontrollability) 등으로 제시한다(Coveney, 1984:9-21).

물론 주류범죄학에서도 남성성(masculinity)과 범죄와의 연관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오고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하위문화적 생활영역과의 관련 하에서만 논의될 뿐 그 밖의 차원에서는 무시되었다. 더욱이 성별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초-남성성(hyper-masculinities)’, ‘마치스모(machismo)’와 같은 다소 모호한 개념들은 하류계층 남성성과 동의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남성성’은 단일한 실체도 아니고 남성 성역할의 한 부분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Gilmoer, 1990, Messerschmidt, 1993, Jefferson, 1996). 성에 대한 단순한 이분법적 개념화는 남성지배적인 범죄와 여성의 피해자화(victimization)를 이론화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사실상 ‘남성성 및 여성성’의 구성과 실천,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범죄학저널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6, no. 3)에서는 이제까지 발전된 페미니스트(feminist)들의 논의를 토대로 ‘남성성과 범죄’라는 특집을 통해 논의의 지평을 넓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J. Kersten(1996)의 논문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 글은 호주, 독일, 일본 세 나라의 성범죄 가시성의 차이를 ‘남성성’을 규정하는 몇 가지 요인들, 즉 재생산(procreation), 보호(protection), 부양(provision)이 각 사회의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

들에게 있어서 성비행은 혼전 순결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심리적인 손상과 사회적인 부적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즉 “내 몸은 더러워졌고 깨진 유리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는 ‘손상된 상품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가출이나 윤락업소로 유입되거나 약물남용등 기타 비행으로 빠져드는 등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중적인 성문화 속에서 소위 ‘강간신화(rape myth)’의 문화적 수용은 성폭력 유발을 더욱 가속화함.

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밝힘으로써,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호주의 높은 강간보고율에 대비하여 일본에서의 낮은 강간보고율에 초점을 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에서 ‘남성성’을 개념화하는 문화적 주류는 [사무라이 에토스(ethos)]의 변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호주 국가주의(Australian nationalism)의 ‘수렵사냥꾼 정서환경(bushman and digger ethos)’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남성성 구조는 호주나 미국과 같은 개척사회의 남성성보다는 덜 동성애적이고 ‘마치스모(machismo)’를 덜 강조한다. 이들은 오히려 ‘모성적’ 가치 패턴-이해, 타자에 대한 보살핌과 신뢰성의 강조, 감정적 헌신 등을 더 주요한 가치로 표출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또한 일본 문화 내에서 성(sexuality)과 결혼에 대한 이해, 특히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집단관련성 등이 낮은 성폭력 발생에 기여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호주의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위기 속에서, 남성지배적 문화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던 전통적 기능이 결여되면서 ‘남성성’의 정체성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남성지위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욕구가 성범죄율 증가와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Giddens(1992)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폭력의 많은 부분이, 가부장적 지배의 연장선상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부장제적 해체로 인한 불안전감과 부적합성으로부터 연원한다는 점을 현대사회에서의 친밀성 구조양식의 변동과정을 통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즉, 성폭력은 여성들의 공모가 시들해져 가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파괴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양성에 대해 모욕적이던 ‘분리되고 불평등한’ 구분들이 실제 붕괴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선 성폭력이 성적 통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상황에서 들어맞는 말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가부장제적 전통에 대한 여성공모가 약해지면서, 좌절된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새로운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성의식에 집착하여, 팔루스적 권력지배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폭력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폭력은 남성다움의 새도-매조키즘적 전이로서도 해석할 수 있다.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사회변화나 개인의 지위변화로 인해 그 이미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 및 무권력감으로부터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 3 절 성폭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성폭력 가해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⁴⁾

가.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성폭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Lisak와 Ivan(1995)은 연구를 통해 성적 공격에 대한 ‘성별 사회화’이론의 요소들이 지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별 사회화이론에 따르면, 소위 여성적 특성을 거부하는 남성일수록, 친밀성과 타인에 대한 정서적 연계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여기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공격적인 남성과 비교해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은 스스로를 덜 여성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친밀성에 대한 욕구, 감정이입의 능력이 낮았으며, 강간신화를 더 강하게 승인하였다.

Santana와 그의 동료들(2006)은 보스턴에서 헬스센터에 나오는 18~35세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조사대상자는 히스패닉이 74.9%, 흑인이 21.9%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다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보고한 남성은 조사시점으로부터 과거 3개월 동안 위험 성행동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을 더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위험 성행동감소, 이런 인구들에서의 IPV 예방중재에서 유용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Jewkes와 그의 동료들(2006)은 강간의 유형을 파트너/비파트너 강간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양유형의 강간 모두 여성에게서 정서적 친밀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강간이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남성다움에 대한 이념과 관련되는 것이며, 단지 기회주의적 범죄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강간예방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의 사회화(상호존중을 가르치는 것 등)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여기에 정리된 선행연구들은 전영실 외(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장 제1절의 논의를 요약·정리한 것임.

Senn 등(2000)은 캐나다에서 19~82세의 남성 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 사회화변수들이 강압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기의 신체적, 성적 학대피해, 형제자매 학대에 대한 목격, 청소년기의 보다 많은 수의 성적 파트너가 남성이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강압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정서적인 표현성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남성 역할의 측면들이 특히 강압적 행위의 발달에서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화를 통해서 정서표현이 적절하게 형성된다면 강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강간예방은 늦은 것이며, 어린 시절에 가족과 초등학교에서 중재노력이 시도되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과 관련된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 연구를 통해서도 시도되었다. Simonson과 Subich(1999)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낯선 사람, 아는 사이, 데이트, 부부강간 시나리오를 주고 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부부강간 시나리오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강간으로 덜 인식되고, 덜 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피해자 권리위반이 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덜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덜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강간 시나리오를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기여를 넘어서 성별이 강간인식의 예측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부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인지도와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의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사회화가 중요하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지지가 성폭력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녀간에 구별된 성역할태도보다는 평등주의적 가치와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필요한 가치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강간신화

강간신화는 Burt(1980)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다. 그는 강간신화를 강간, 강간피해자, 강간범죄자에 대한 편파적 고정관념적이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Lonsway와 Fitzgerald(1994: 136)는 강간신화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데 기여하며,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지지되는 태도와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강간신화는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첫째, 범죄의 부인과 사소화(하찮게 함)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간신화를 통해 범죄자로부터 피해자에게로 비난을 향하게 하면서 정당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사회가 성폭력의 실제와 정도에 직면하는 것을 가로막게 만든다. 둘째, 강간신화는 “공평한 세상”(just world)의 한 예로 묘사되어왔다. 이는 세상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고, 나쁜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간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기능 중의 하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사회통제이다(Lonsway and Fitzgerald, 1994: 136-137). 이렇듯 강간신화는 범죄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게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의 발생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강간신화가 성폭력을 인식하는데 관련되는 만큼 살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강간신화와 성폭력가해의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일례로 Abbey(1998)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통적인 강간신화에 대한 신념이 성폭력가해에 관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애착

Lyn과 Burton(2004)은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애착과 성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첫째 가설은 애착이 성범죄와 관련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가설은 애착상태가 성범죄 특성과 관련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구금된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불확실한 애착의 비율이 성/비성적 범죄자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높지만, 불확실한 애착이 성범죄자인지의 여부와 유의미하게 관

련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의 결과는 애착상태가 누군가가 성범죄를 범하는지의 여부에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애착유형이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다는 둘째 가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남성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보다 애착이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애착상태와 피해자와의 친밀성, 범행수법이나 범죄의 심각성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의 함의도 제시하였다. 임상가들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애착이 부적절한 성행위와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는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한 수준은 성범죄자들에게 그들의 애착 불안전성을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충족되지 않은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알콜

알콜 자체는 성폭력과 관계에서 원심요인(예, 음주빈도, 알콜오용 경향)이나 근접요인(폭력전 음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범죄자의 사건당시 음주가 성폭력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Brecklin과 Ullman(2001)은 미국 강간사건에서 알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전국 폭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은 1995~96년 기간 동안 미국에 사는 18세 이상 여성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폭력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여기서의 성폭력은 응답자가 평생에 항문, 구강, 질 성교를 강요받거나 위협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5가지 질문에 의해 평가되었다. 8000명의 여성 응답자 중 1,446명(18.1%)이 성폭력을 보고하였는데, 1,446명 중 3.2%(46명)는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보고하지 않아서, 폭력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 1,241명(85.8%)은 하나의 가해자 유형에 의한 폭력을 보고하였으며, 159명(11.0%)은 둘 이상의 가해자 유형에 의한 폭력을 보고하였다(예, 낯선 사람과 남자친구).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 가해자 유형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으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한 범죄자에 의해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에 의해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폭력특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것은 제외하였으며, 남성범죄자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만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폭력결과는 세 가지 척도로 분석하였는데, 강간 결과(시도된 강간/완성된 강간) 이 사건동안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이 사건동안에 입은 상해로 의료적 치료를 받았는 지로 질문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행위(음주, 공격성)가 성폭력결과에 더 중요한 결정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음주는 보다 큰 강간완성의 가능성과 관련되었다. 또한 범죄자의 공격성은 피해자 상해와 의료적 치료의 가장 강한 예측인자였다. 반면 사건당시 피해자의 음주나 피해자의 이전 음주는 폭력결과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음주범죄자가 비음주범죄자보다 강간을 하는 경향이 높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시된다. 우선, 범죄자들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자신과 피해자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문화가 알코올과 관련된 성적 공격에 대한 변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공격자를 술취한 것으로 인식하는 피해자의 경우 덜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또한 알코올이 남자의 성적 열망을 통제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신화, 음주범죄자는 더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신화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피할 수 없다거나 부가적 상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해자의 보고에 의해 범죄자 음주를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범죄자-지향적 중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Jewkes와 그의 동료들(2006)도 범죄자의 음주와 강간에 대해 연구한 결과, 파트너/비파트너 강간 모두 심각한 알코올소비와 관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폭력은 매우 빈번하게 알코올소비와 관련되며, 알코올은 탈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Jewkes et al., 2006).

Norris와 그의 동료들(2002)은 음주와 성폭력의 관계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기

대가 성폭력과 관련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성행위와 관련해서 알콜에 대해 갖는 기대와 직접적인 알콜소비 모두 남성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에서 행동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논의에 의하면, 알콜소비가 더 성적으로 동기화되거나 폭력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음주시에 이런 신념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폭력을 할 위험이 클 수 있다. 알콜이 섹슈얼리티를 강화한다는 신념은 알콜소비의 증가로 이끌고, 이는 자기보고식 성폭력의 보다 큰 가능성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Norris et al., 2002: 688). 이들의 연구는 알콜의 약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알콜과 관련된 평소의 기대가 성폭력과 관련해서 하나의 관련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은 아니지만 알콜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알콜의 약리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Chermack and Taylor, 1995). 성폭력도 공격적인 행위에 속하므로 알콜이 성폭력과 관련되는 것을 시사해 주는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외에 평소의 음주가 성폭력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Abbey(1998)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빈번하고, 심각한 일상적인 알콜소비가 남자대학생의 성폭력가해와 관련되는 것을 밝혀냈다(Abbey, 1998).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의 음주(범행당시나 평소)가 하나의 관련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콜 자체의 약리적 효과와 알콜에 대한 기대가 성폭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음주와 성폭력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Horvath와 Brown(2006)은 1999~2004년 동안에 경찰에 보고된 강간사례 표본을 이용해서, 알콜과 약물을 포함하는 강간이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알콜과 성폭력의 관련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나 이전 파트너 등과 같이 이전 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알콜이 강간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 파트너, 이전 파트너에 의한 강간은 가해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술 취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강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다른 요인(가정폭력 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가해자의 관계가 친구, 모르는 사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술 취했을 때 강간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rvath와 Brown은 이러한 결과가 범죄자가 성폭력을 위해서 취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취함을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알콜, 약물사용여부에 따라 범죄자의 행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피해자가 알콜이나 약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범죄자는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감금하고, 묶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이런 상태의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많이 저항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감금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Horvath and Brown, 2006: 226). 피해자의 음주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에서 상대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마. 아동학대 피해경험

학대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학대경험과 성폭력간의 관련성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겠다. 형사사법분야 전문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신념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구금된 중범의 대다수가 아동기 신체적 학대나 방임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동기 성학대와 이후의 범죄행위, 특히 성범죄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Weeks and Widom, 1998: 346-347).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구금된 중범의 배경요인 중 아동기 피해의 정도를 아는 것이 원인이나 인과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정책 입안자나 교정담당자에게 적절한 처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Weeks and Widom, 1998: 348)

Weeks and Widom(1998)은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뉴욕주의 중구금 시설에서 301명의 중범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금된 성인남성 중범의 대다수가 초기 아동기(12세 이전) 피해의 일부 형태들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또한 조사대상자들 중 성범죄자는 비성범죄자보다 아동기 성학대의 피해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어린 시절 다른 사람이 부과한 것이 아닌 자신이 시작한 성적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한 것이다. 성범죄자는 비성범죄자보다 이런 경험들을 성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성학대의 경험은 더 많으며, 성학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Jewkes와 그의 동료들(2006)은 미국의 강간범에 대한 연구들이 낯선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일반적으로 구금된)과 아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일반적으로 대학생)을 구별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양 유형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는 양 유형의 강간이 아동기의 불운한 경험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Ford and Linney(1995)도 이와 유사하게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신체적·성적 학대 경험,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서 발견되며, 이는 성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됨을 제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가해간의 관계가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다. Loh와 Gidycz(2006)는 아동기 성학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며, 남성에 대한 연구는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다.⁵⁾ 이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성폭력과 남성의 이후 데이트 폭력 가해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아동기

5) 한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아동학대가 이후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essman-Moore and Brown, 2004; Hetzel and McCanne, 2005; Cyr et al., 2006). Messman-Moore와 Brown(2004)은 925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성학대 피해경험을 보고한 여성은 성학대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성인기 강간피해를 보고하는 것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함. 아동 성학대는 가족기능의 영향을 고려할 때조차 성인피해의 예측인자였으며, 가족기능과 독립적으로 강간피해를 예측하는 아동학대의 유일한 형태였음. 이 외에 정서적 학대 또한 성인 강간피해의 유의미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남. Hetzel과 McCanne(2005)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아동기 동안의 모든 유형의 학대가 성인 성적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는 그것만 경험되거나 성적 학대와 결합되든지 간에 성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성인 성적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Cyr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성학대의 지속 및 학대과정에서의 폭력 등이 유의미하게 데이트 폭력피해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 줌. 이러한 연구들은 성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에 있어서도 아동학대가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임.

성적 피해의 부정적 결과들이 남녀에게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기에 성적 피해를 입은 성인은 약물남용, 디프레션과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적 가해나 피해와 관련해서는 남녀에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아동기 성폭력경험이 있는 여성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뒤이은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기 성폭력경험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성인기의 가해와 관련된다. Loh와 Gidycz는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남성에게 있어서 아동기의 성적 피해가 성인기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에 이어 이들은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약 5%는 14세 이전에 아동기 성적 피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아동기 성적 피해는 14세 이후의 성적 공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고적인 다변인 분석에서, 가해경험은 아동기 성적 피해, 모자녀 갈등 해결전략, 데이트 갈등해결전략을 포함하는 모델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 갈등해결전략만이 성적 공격의 안정적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또한 양변인 분석에서 데이트 갈등해결 전략은 아동기 성적 피해와 관련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은 아동기 성적 피해를 경험한 남성이 성인기에 보다 큰 성폭력 가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념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만, 또한 아동기 성적 피해와 이후의 성폭력 가해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한다. Loh와 Gidycz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아동기 성적 피해와 성인기 성폭력가해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Chandy와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에 의하면, 성학대경험이 있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불충분한 학업수행, 비행, 위험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남자청소년에게 있어서 보호요인은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관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Chandy et al., 1996).

Loh와 Gidycz(2006), Chandy와 그의 동료들(1996)의 연구는 아동기 성학대와 이후 성폭력 가해가 관련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 Lafond는 성학대의 피해자가 미래의 성학대자가 되며, 성폭력범죄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성적 피해의 비율이 높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성학대가 미래 성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의 대다수는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소녀는 소년보다 4~5배 더 학대를 당하지만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의 단지 낮은 비율만을 차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Lafond, 2005: 38). 또한 성인 성범죄자의 70%는 과거 성학대의 피해자가 아님을 제시하였다(Lafond, 2005: 40). 이러한 논의는 성학대 피해와 성폭력 간에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련성속에서 고찰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바. 폭력가해 경험

일반적인 폭력가해와 성폭력 가해가 관련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최인섭·김성연(1998)이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구타경험이 있는 남성일수록 강간, 심한 성폭력, 가벼운 성폭력 경험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gen과 Bukovec(2006)은 학대남성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에 등록된 229명 남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 53%는 적어도 한 번 파트너를 성적으로 공격하였다. 성폭력을 한 사람은 폭력을 행한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 중에서도 심각한 행위를 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wkes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험은 강간 가능성과 매우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폭력 역시 하나의 폭력행위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사. 사이코패시(psychopathy)

성폭력은 사이코패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own and Forth, 1997; Kosson et al., 1997; Lalumiere and Quinsey, 1996; Porter et al., 2000). 사이코패시는 대인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이코패시의 핵심적 특징으로

는 심각한 애정적 결핍과 사회적 관습,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결여가 제시되고 있다(Porter et al., 2000: 218). 싸이코패시는 많은 사람에 의해 생애 초기에 표현되며, 생애기간을 통하여 지속되는 심각한 인성 장애로 간주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형적으로 충동적, 이기적, 센세이션 추구, 무책임함으로서 묘사된다(Brown and Forth, 1997: 848). 이러한 사람은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며, 타인을 지배하길 좋아하는 사람인 경향이 있다(Lafond, 2005: 40). 싸이코패시는 성적 강압의 강력한 위험지표로 나타나며(Lalumiere and Quinsey, 1996: 44), 종종 재범의 예측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Lafond, 2005: 40).

성폭력범죄자와 싸이코패스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Brown과 Forth(1997)는 캐나다 성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싸이코패스와 성범죄자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표본은 캐나다 전체 성범죄자에 비해 보다 심각한 정도의 범죄자가 약간 더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싸이코패스 강간범은 비싸이코패스 강간범과 구별되는 특성과 공유되는 특성 모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싸이코패스 강간범의 특성을 보면, 비싸이코패스 보다 일찍 범죄를 시작하며,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좀처럼 외로움, 거부감, 죄책감 등의 감정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별된 특성 외에 비싸이코패스와 차이가 없는 면들도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싸이코패스가 이전 성범죄의 수나 성범죄 시작연령과는 관련되지 않았으며, 싸이코패스 강간범들이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싸이코패스 강간범들은 비싸이코패스 강간범들과 비슷한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싸이코패스가 강간범의 구별된 유형을 필연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가학적 강간범들은 비-싸이코패스적인 것만큼 싸이코패스적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싸이코패시의 부재가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Brown and Forth, 1997: 855).

Porter와 그의 동료들(2000)은 구금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별로 싸이코패시를 분석한 결과, 강간범죄, 강간/아동치환을 같이 범한 사람은 아동에

계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보다 싸이코패시 점수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집단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보다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 집단이 아동치한보다 만성적, 다양한 반사회적 생활양식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Porter와 그의 동료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치한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싸이코패시가 성범죄 재범을 예측하는데 별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일탈적인 성적 관심, 사회적 기술의 부족도 성폭력 가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제시된다. Lalumiere와 Quinsey(1996: 33)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병원에 수용되거나 구금된 강간범들의 상당 비율은 일탈적인 성적 선호를 보여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Lalumiere and Quinsey, 1996). 또한 성범죄자들은 타인과 친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aves et al., 1992).

2. 성폭력 피해실태와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반적 성격과 행동에 걸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채규만, 2004). 즉 성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자의 인생전반에 걸쳐 자존감에 치명적 상처를 입음으로써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항상 낙인과도 같은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현혜순, 1997).

Burgess(1979)는 성폭력 피해자는 강간피해 후 지속적인 긴장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Burgess가 말하는 증상은 강간이 진행되는 동안 느꼈던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 심리적 외상(trauma)으로 강간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와 감정적 혼란을 말하며 ‘강간의상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이라고 재개념화 하고 있다(현혜순, 1997 재인용). 피해여성들은 단기적으로는 며칠에서 장기적으로는 수년 동안 공포, 불안, 우울, 불안, 모욕감, 복수심, 성관계의 어려움, 태도나 생활습관의 변화 등을 겪을 수 있다.

가. 정서적 영역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측면의 후유증은 불안, 신뢰감 상실, 위축감, 우울, 무력감, 분노, 죄의식 등으로 나타나며(Poter, Blick & Sgroi, 1979), 이것은 악몽, 수면장애 등 실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 불안 강박증

성폭력 피해여성은 한동안 모든 남자가 혐오스럽고 성적인 피해 장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나 장면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놀라는 등의 과잉적인 불안 반응을 보인다. 가해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이거나, 피해 당시의 상황 즉 특정한 냄새, 날씨 등의 조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은 강간 피해여성들은 가해자와 인상이 비슷한 남자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피해당한 장면에 대한 기억이나 연상에서 오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강박적인 관념이나 행동에 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싶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가 더럽다고 느껴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거나, 수차례 목욕을 하기도 한다.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는 불안한 나머지 변비증이 있어서 화장실을 2~3시간 정도 오래 사용하기에 가족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불안한 나머지 자신의 집 유리창이나 문단속을 수십 번씩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강간을 당한 여성들은 특히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불안감보다는 무력감이나 우울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2) 순결상실감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준다. 아직까지도 성폭력 피해를 여성의 존재가치의 상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결혼자격이 박탈되는 것과 동시에 '더러워진 몸', '더 이상 가치 없는 버려진 여자'로 자신을 비하하고 낙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우울증과 무력감, 분노를 동시에 동반하는 혼란된 증상을 보인다.

3) 무력감/우울증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순결이 상실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몸은 더럽혀졌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은 피해자들에게 우울감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폭력을 멈출 수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좌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피해자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특히 심하다.

특히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아동기 의지, 욕구,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꺾여온 과정이기 때문에 통제력 상실과 무력감과 관련이 깊다(Finkelhor & Brown, 1985). 어린 시절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어린이라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이들은 학대에 저항하거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어린이들은 작고, 의존적이고, 경험이 없고, 인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미숙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어린이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대체로 권력적인 어른에 의해 유린당한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실패할 때 어린이들은 학습된 무력감을 발달시킨다(Elliana Gil, 1990). 결국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에 위축되고, 신체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거나 분리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과거의 피해상황에서 힘을 느끼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중심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존재는 드러낼 수 없고 감추어야 하고, 사회적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피해여성들은 자신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믿고 행동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외적 환경이나 내적 욕구에 대한 통제력, 성에 대한 통제력(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통제력을

느끼지 못한다.

4) 수치심과 죄책감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인하여, 자신이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자신을 수치스러워 한다. 성역할 사회화는 여성에게 순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여성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성’의 상징인 신체부위의 공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낳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여성은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수치로 여기고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알아도 쉬쉬하면서 숨기고 심지어는 피해여성을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나무라거나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성폭력이 자신이 유발하여 일어났거나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한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주도면밀한 계획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보다 힘이 강한 성인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면에서 느끼는 죄책감으로는 성폭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경우에 또는 성관계시에 자신이 성적으로 느낀 성적 흥분이나, 감정 때문에 자신도 능동적으로 성폭력에 가담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이 있다. 이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반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밝혀진다. 즉 우리의 신체 중 성기관은 자극을 받으면 성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가해자에 의해서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흥분을 느낀 것은 정상적인 신체반응이지 죄책감을 느낄 사항이 아니다.

5) 분노감 / 배신감 / 적개심 / 복수심

성폭력 피해여성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강한 감정 중의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적

개심, 분노감, 복수심이다.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를 직접 찾아내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노감을 가슴속에 품고 살다가 오히려 심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동기에 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친부모나 친척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한 근친 강간의 경우는 나중에 자신이 당한 것이 가장 신뢰했던 가까운 사람한테서 성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강한 분노를 느낀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분노감은 곧바로 우울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분노감에서 오는 강한 공격적인 감정을 내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우울감이 깊어져 공격이 심해지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적개심이나 분노감은 어느 문화권의 여성을 막론하고 공통적인데, 분노감의 표현에서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성폭력 피해여성은 즉시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공개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한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피해자가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피해여성들은 성폭력 피해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마음속에 품고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6) 낮은 자아존중감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존심이 낮을 때는 불행을 느낀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관이다. 피해자들의 치명적인 피해 중의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상실이다. 이들은 자신은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더럽혀졌고 아무에게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이제는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젊은 시절에 강간을 당하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게 되며 때로는 윤락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자포자기적 사고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자신은 회복할 수 없이 더러워졌다는 잘못된 순결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는 성관계가 아닌 폭력범죄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바꾸

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자신의 자존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인지적 영역

1) 해리

피해자들은 피해의 상황과 정도에 따라서 사고의 영역에도 피해가 따른다.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는 자신의 피해 상황이 자신의 현실이 아니고 마치 남의 일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다중인격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리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들은 눈빛이 변하고 순간 현실을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심리치료 도중에 자신의 피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연상하면서 해리의 경험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2) 왜곡된 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을 갖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경험을 한 후 자신과 환경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을 했지만 성폭력의 결과로 ‘자신이 신체적으로 더러워졌다’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된다. 이러한 생각이 지나치면 자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이나 주위 환경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잘 파악하여서 그러한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대체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왜곡된 사고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

- 성적인 피해를 당한 것은 수치스럽고 내게 책임이 있다.

- 가해자가 나를 사랑했기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나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 나는 순결을 잃었으니 살 만한 가치가 없다.
- 내가 옷차림이 야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 그 때 그 장소에 내가 없었더라면...
- 내가 빨리 부모님에게 성폭력 사실을 알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린 것은 내 책임이야...
- 성폭력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완벽할 텐데, 내 모든 불행은 성폭행 때문이다.
- 성폭행 시에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다.
- 어린 시절 성폭행 당할 때 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다.

— 대인관계에 대한 왜곡된 사고들

-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 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 모든 남자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 남자들이 나를 길거리에서 쳐다보는 것은 나에게 성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 나에게 일어난 성폭력 피해의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모든 남자들은 동물이고 도둑놈들이다.
-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내가 성폭행 당한 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과 주위 세상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심한 경우 정신과적으로 발전해서 때로는 실제로는 물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느끼는 환각과 아이의 울음소리 등의 환청을 들을 수도 있다.

다. 대인관계

1) 대인관계의 기피

대인관계를 포함한 이성 관계를 기피하고 고립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피해여성

의 경우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해 오면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지나치게 의심하고 기피한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남자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있다. 성폭력 피해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은 경우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경우도 많다. 대인관계의 기피는 이성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동성의 관계까지 확대된다. 특히 친한 친구지만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항상 무엇인가 숨겨야하는 자신이 싫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만의 고민 때문에 고립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2)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이용당하고 배신당했기 때문에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남자에 대한 혐오감과 두려움은 이성과의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한다. 남녀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를 개방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멀리하고 거절할 것이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라. 신체적 영역

1) 자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약 30%는 자해하는 신체반응을 보인다.

2) 섭식장애

피해자들 중 자주 보이는 행동 중의 하나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과 음식을 먹고 나서 살찔까 봐서 토해내는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음식을 거부하는 데는 성폭력에 대한 죄책감, 자기비난 등의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와도 상관이 있다.

마. 성적인 영역

1) 부부 성생활 및 성적인 문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강간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덮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면, 과거에 억압하거나 부정했던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표면에 올라와서 부부의 성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대체로 강간 피해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여성의 경우 부부간 성행위의 기피, 불감증, 고통스런 성행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경우 조루증 또는 발기불능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면 그 동안 잠재적인 성에 관련된 기억이 재생되어 성행위 중에 불안해질 수도 있고, 구토증을 보일 수도 있다.

2) 성애적인 행동

이동의 경우 자신이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에게 성적으로 유혹적인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적으로 가학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성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친밀감을 느끼면 쉽게 성관계를 허락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다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 즉 이들은 성행위와 호감을 잘 구별하기 못한다. 또한 이들은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에게 거절 당할까봐 쉽게 성적으로 허용해주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3) 성폭력 가해행동

성폭력 피해자는 또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 가해자의 경우 어린 시절에 당한 성폭행의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4) 성 중독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여성에게서 받고자 심한 여성편력 증상을 보인다. 즉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이들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부족하기에 한 여성과의 장기적인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과의 일회성 만남을 추구하면서 여성과 강박적인 성관계를 하게 된다.

바. 약물남용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런 감정을 달래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여성 마약 중독자 중의 약 44%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한다(Jehu, 1985).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증을 술로 풀려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알코올 중독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아무에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가 없다. 고통을 혼자서 끌어안고 살다보면 내적인 긴장이 쌓이고 따라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긴장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 3 장 성폭력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황

제 1 절 국내 성폭력 방지정책 추진현황

1. 성폭력 관련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말 이후이다. 1988년 변월수, 김부남 사건, 1991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의 폐해와 피해자 보호쟁점 등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1994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적 토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 법은 형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성폭력 범죄규정의 문제점과 친고죄 규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적 토대를 기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정책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말부터 여성폭력 발생방지 환경조성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시키는 것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02)의 주요정책과제로 삼았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성폭력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되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⁶⁾이 마련되었다(김승권 외, 2002:58).⁷⁾

6) 본 종합대책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발생 및 진행과정에 따라 신고환경의 접근성 강화,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등 주요과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부처별 실천과제들이 제시됨.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 장애인성폭력피해 전문상담소 7개소를 신설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기능을 하는 성폭력상담소 16개소를 지정함. 그밖에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법·제도의 정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서비스의 확충 및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하였고, 성폭력을 예방·근절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

또한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저연령화 경향을 나타내면서 그 심각성 및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00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제정,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성매수 행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는 연쇄 아동성폭력 및 학생 간 집단성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강구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척되었다.

먼저, 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07)에서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세부정책과제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성희롱 피해예방과 구제강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정 책 과 제	세 부 과 제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지 지원
	관련 법제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피해예방과 구제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2006년에는 ‘용산 아동 성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의 4대 폭력(학교·정보지·사이버·조직폭력)근절대책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국무조정실 주관(’06. 5. 11)으로 5대 폭력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 추진키로 하고, 여성가족부 주관에 [성폭력대책단]을 구성하였다. 그 동안 ‘성폭력근절 및 피해자보호대책’은 3차(1차 ’06.7; 2차 ’07.1; 3차 ’07.7)에 걸쳐 열렸다. 3차에 걸친 성폭력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세부정책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운영,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의 확충 등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 바 있음.(김승권의, 2002:58).

세 부 과 제 (1차)	세 부 과 제 (2차)
성폭력 범죄자 단속 및 재범 방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단속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 유형별 보호서비스 강화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자료: '5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개정('06.8)

또한 2005년 12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신상등록제도와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06년 10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소위 '유사강간행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규정(제8조의2)을 신설하였으며, 성폭력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으로서, 2007년 4월 2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였다. 이 법률들은 '성폭력 범죄'에 한층 강화된 형사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대책'('06.2)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세부과제들을 보완·수립하였다.

세 부 과 제
①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및 가해자 교정 강화
②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③ 아동 성범죄자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④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치료기관 설치 확대
⑤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⑥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지정

2. 추진실적

가. 입법정책의 변화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관련 입법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6. 10. 27 개정('06.10.27)되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 신설하였고,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피보호자 추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의 유포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공익의 침해정도가 심하여 당사자의 처분에 처벌여부를 맡기기 어려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폐지하는 입법변화를 가져왔다.

- ▲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 ▲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 친고죄의 범위 축소
-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 ▲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 ▲ 수사·재판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범위 확대

둘째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일명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07.4.)되었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감독 T/F를 확대재편, '위치추적전자장치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 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착수('07.7.)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08.6.), 위치추

적 시스템 시범운영('08.7.) 및 제도시행('08.10.) 등이 그 주요 업무내용이다.

- ▲ 가석방·가중료, 집행유예단계에서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토록 하고, 징역형 종료 후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대해 재범위험성 있을 것을 명문화 (부착기간은 징역형 종료나 면제 집행면제 후 5년)
 - 가석방 단계: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부착
 - 가중료 단계: 가중료 결정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단계: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명령시 기간 내에 전자장치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 부착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부착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 범위 최소화

셋째, 아동·청소년대상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7년 7월 개정('07.7.2)하였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1년 8월~2006년 12월까지 고위험군 5,652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중 11명이 취업제한을 받았다. 새로운 법 개정으로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2회 이상 금고이상 실행 선고자의 신상정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관리하고, 피해자·보호자·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에게 열람을 허용하고, 청소년성범죄자는 유치원·학교·학원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청소년성범죄자의 친고죄를 폐지,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다.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 및 기간(5년→10년)확대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 및 열람권자 확대
 - 청소년보호자 등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
-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 및 기간(5년→10년) 확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추가포함
- ▲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단순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
- ▲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및 피해청소년 보호절차 마련

넷째, 최근 매스미디어에 드러나듯 심각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아동들(12세미만)의 범죄가담이 심심치 않게 빈발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촉법소년(12~14세) 뿐만 아니라 12세미만의 아동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12세미만의 아동범죄 및 조발 비행자를 적절하게 처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와 개입'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단계의 중간처우(지역사회 중심처우)를 거치지 않고, 급격히 교정시설로 수용되는 문제점으로 결국, 재범율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2007년 11월 23일 제4차 소년법 개정에서는 (1)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 소년의 연령하한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고, (2) 연령인하에 따라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 12세 이상(법원안은 10세 이상)에게 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1월 이내의 소년원송치(쇼크구금) 등을 추가, 보호처분 유형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형사미성년자 대책을 강화하였다.

이밖에 법무부와 경찰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위해, 2006년 6월 15일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외출 제한명령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자치단체와 협조, 다세대 주택가·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 및 가로등 878대 설치('06 11월말)하였다. 또한 치안수요 많은 1급 지 24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계 우선 설치(67명) 및 「여성·학교 피해자 윈스톱 지원센터」 여경 파견(66명)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재판결과, 집행유예·벌금 등 경미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위해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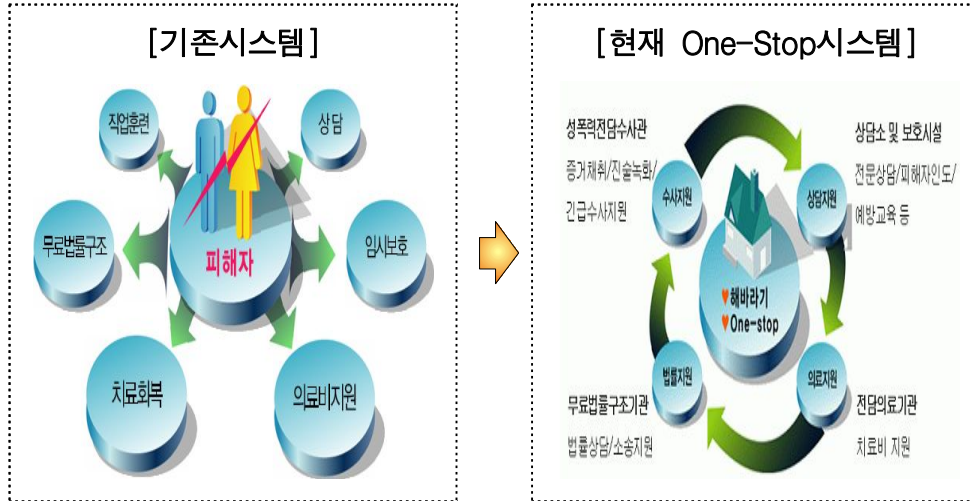
나. 피해자 보호정책의 변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06.10.)하였다. 이에 검찰과 경찰에서는 성폭력전담검사 및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각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경찰교육기관에서는 「성폭력 수사전문과정」 신설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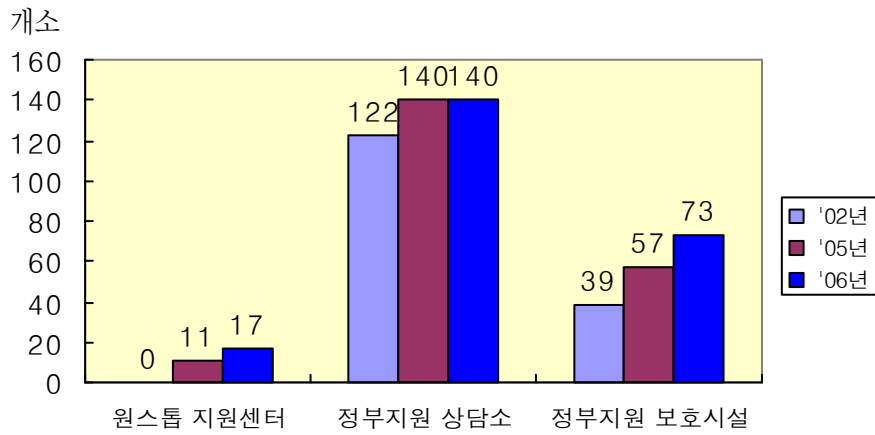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진술녹화기법 등 수사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 서도 2007년 11월 성폭력전담검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또한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확충(매년 5개소씩)함과 더불어 녹음·녹화 조사를 확대, 전국 55개 지방검찰청중 30개소에 설치를 완료('06.12.31)하였다.

한편, 상담·의료·법률·수사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여성가족부(예산확보, 상담지원), 경찰청(수사지원 및 센터운영, 여경 상주), 병원(부지·건물제공, 의료지원) 등 3자 협약에 따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원스톱 지원센터(2007년 말 현재 14개소)를 설치하였다. 긴급한 구조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인 '여성긴급전화 1366'(16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청소년·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체제로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센터 또는 인근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한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상담을 위한 [이주여성1366센터(06.11.9)]를 설치, 국번 없이 1577~1366을 누르면, 365일 24시간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자국어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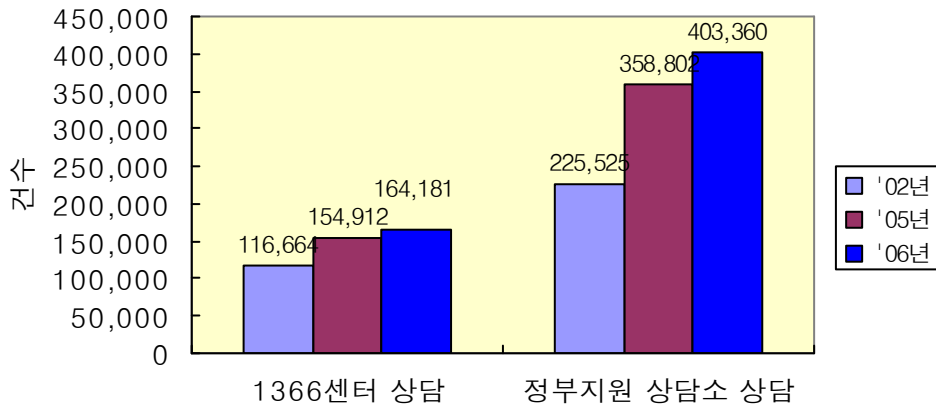
[그림 3-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그림 3-2] 여성폭력 지원시설 수 변화



[그림 3-3] 여성폭력 상담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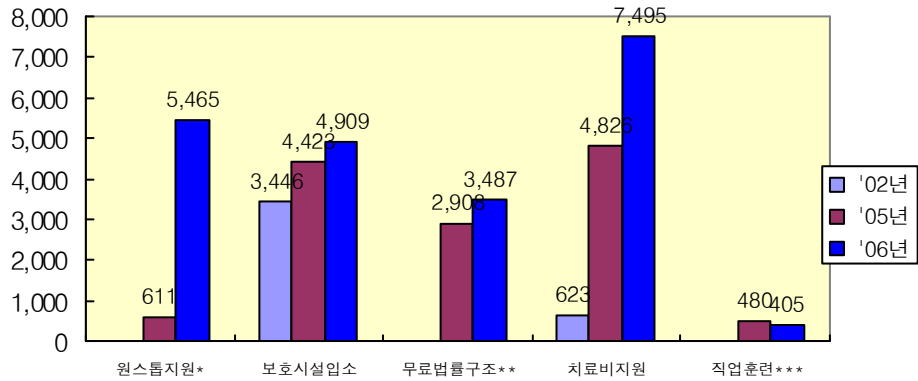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07)

성폭력에 노출된 13세 미만 피해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은 '04년부터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3개소)'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04.6~'06.12의 2년 6개월 동안 이용인원 1,875명, 조치건수 14,295건(피해자 1인당 평균 7건 지원)이었다. 한편,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43개소)과 아동보호종합센터(16개소) 확충 및 전용공간(그룹홈)을 설치하였고, 현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응급구조와 피해후유증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무료법률구조는 '03년부터, 직업훈련지원은 '0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05년부터 운영한 One-Stop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1인당 평균 3건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원스톱 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3개소)를 포함, 각종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관련예산은 ('02년) 55억원 → ('05년) 176억원 → ('06년) 202억원으로 확충되었다.

[그림 3-4] 여성폭력 지원서비스 제공인원



*출처: 여성가족부 ('07)

한편, 분야별 피해자보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소·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관리, 운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함과 더불어 피해자 응급처치 및 의료지원 매뉴얼 개발·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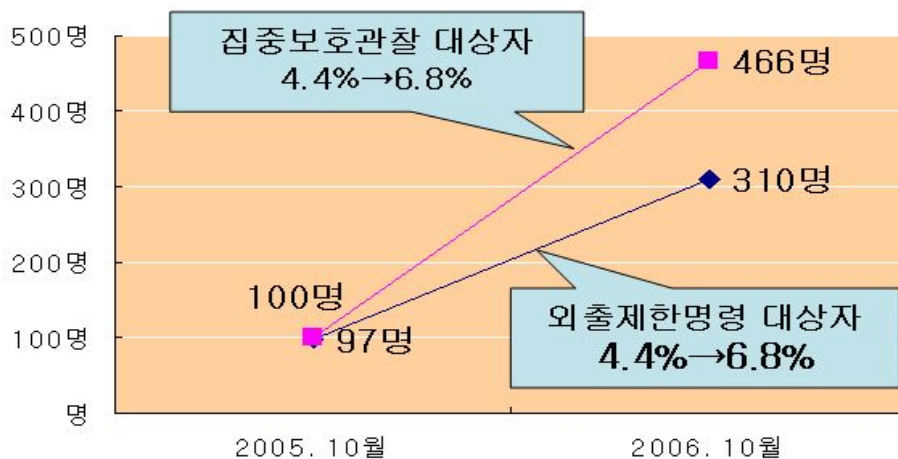
다. 성폭력범죄자 교정처우 및 재범억제정책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개정」('06.8)에서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및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외출제한명령'이란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야간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음성을 등록한 후 '외출제한 명령 음성감독시스템(CVS)'에 의해 매일 집안 체류 여부를 확인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치료·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부는 교정기관별로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개발('05년), 성폭력 상담소 및 아동성폭력 전

담센터에서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시범 운영('06년, 11개소, 220명 교육)한 바 있다. 또한 교정국에서는 성폭력사범 수형자 교화대책을 수립('06.3.15)하고, 37개 교정기관에서 545명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교화프로그램 운영(수료 447명)한 바 있다. 또한 미성년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부모동반 미성년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후 교정시설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5] 집중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수



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민의식 개선

2007년 정부는 날로 흉포화해가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2월 22일) 선포하였고,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 서명운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국민인식확산과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문화 개선협의회」 구성('07.3)·운영하며, 시·도 중심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시·군·구로 확대('07년, 50개)하고,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지역감시 및 연계체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예방 교실 운영 및 아동성폭력 대처요령 영상물 제작·배포하였고, 성희롱 예방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자격취득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무화('06.7.13)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전략으로서, 주요 도심 전광판 및 지하철에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동영상 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캠페인 및 아동권리에 대한 TV·라디오 광고 등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하였다.

3.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미완성

성폭력 가해자 처벌위주의 사후적 대책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다. 성폭력을 5대 폭력 포함 관련부처가 협력, 범정부적인 차원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것은 사회상황에 적절히 부응한 의제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통해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회현실을 바꾸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생산은 미흡하였다. 성매매 방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대응정책개발은 지체된 경향이 있다. 2002년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 정책 환경변화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책개발 및 패러다임 전환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미흡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후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사건 지원이나 위기개입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전문적 개입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개발하고, 방향성 있게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우선적으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권익증진사업예산총액이 2003년도 154억원에서 2007년 617억원으로 상승되었다(이는 복권기금이 2004년 98억에서 2007년 212

역으로 상승된 것이 큰 요인). 하지만 성폭력지원시설관련 보조금은 2003년 16억(62개소)에서 2007년 21억원(75개소)으로 소폭 상승한데 머물렀고, 이 또한 시설운영비 지원과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슈를 우선적으로 정책화하고 있지 못하였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의 형식과 내용 역시 제자리 걸음상태에 머물러 있다. 통합상담소 추진은 국민의 정부 말기에 추진된 정책으로서 민간(NGO)과 혼선을 유발했던 정책으로서, 참여정부 이후에도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중단됨으로써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조치 미흡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은 50~60%로 전체범죄(40~50%)에 비해 약 10%가량 높음. 재범자 중 전회처분상황을 보면, '형집행종료'가 32~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소유예'로 3~5%였다.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합의나 합의금공탁이 있을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관행 개선이 요구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조기확인(Early identification of offenders) 및 개입제도가 부재하다. 범죄학 연구는 젊은 성폭력사범들이 보다 일찍 확인되고 적절한 관리(treatment)가 주어지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젊은 사람들이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위험성을 판별해 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확인 이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지표가 없다. 외국의 SAFE and STOP 프로그램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에 대한 평가와 관리(treatment)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기확인이 가능한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빈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제도가 미흡하다. 특히 성도착증 환자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유용한 정책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소아기호증(pedophilia) 등 성도착증 환자이나 재범률이 높으나, 처벌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청소년가해자 및 성인대상 성폭력범에 초점을 둔 특화된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도 요구된다. 현재 성폭력가해자 관리프로그램은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adolescent treatment programmers) 및 성인대상가해자 등 집단별로 특화된 처우·치료를 위한 입법정책 및 인프라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유형별 보호·지원시설의 다원화 및 질적 수준 미흡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 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운영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시설별 전문성이 미흡하다. 상담원 훈련내용, 기관 및 자격요건의 완화로 상담원의 양적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는 낳았지만, 훈련내용에 대한 평가 등 사후관리 부족으로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 질향상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야간운영이 가능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추후 발생할 법률적 절차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가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현재 3개소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불급하고, 피해여성과 동반아동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지급하는 등, 계획수립 시 수요에 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성폭력 관련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지만,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를 비롯하여 외국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이들의 문제발생 빈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예산반영 및 대상에 특화된 서비스지원체계 마련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트성폭력 등을 포함 피해자가 비난받은 성인성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2차 피해 및 가해자의 합의강요에 의한 피해 발생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피해자 2차 피해를 위해 성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06.10. 성폭력특별법 개정)되었으나, 성폭력 전담검사 및 수사관 지정, 교육이 여

전히 미흡하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녹화진술제도 도입 등 피해자 조사단계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녹화진술비디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

친고죄 규정 및 불구속 수사를 악용한 가해자의 합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07.7)되었으나,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친고죄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바. 합리적 예산편성 및 재정기획의 안정성 부족

사업재원인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 조성재원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기금사업과 정부예산사업 간의 유사·중복성 문제 및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미흡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들은 학교에서의 피해-가해에 대한 예방교육으로부터 가해자교정처우 프로그램,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제도,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까지의 연속성을 따라 놓여있다. 이러한 연속성을 가로지르는 개입들(interventions)은 다양한 범주의 기관들에 흩어져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등이 관련되어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정부전반에 의한 통합적·협력적 접근이 발전되고 있지 않다. 또한 계획들이 예방에서 관리까지의 그 지속성에 따라 계획들이 바르게 정해지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기관들이 성폭력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지만 성폭력을 줄이고 성폭력에 대응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총괄조정기획 및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

특히 성폭력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여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치료처우에 있어서, 법무부와 유기적 협조관계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성폭력예방 및 대응정책 개발 부족, 지자체별 현황 파악 및 실태조

사, 평가환류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아직 여성폭력을 지역사회의 핵심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차원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잔존,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 정책효과성 평가지표체계 미흡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치료·교정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분적인 만족도 조사는 있지만, 폭력행위감소 및 사회복귀율 등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증 사례연구나 비용-편익(B/C)분석이 거의 없다. 정책평가를 위한 합리적 지표체계 미흡으로 예산효과성 검증이 부실하다.

자.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교육의 한계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사전 예방노력 등 적극적 개입이 미흡하다. 각급 학교의 성교육은 연간 10시간(성폭력 예방교육은 2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전담강사 부족, 교육자료 부족, 형식적 시행으로 교육효과 또한 의심스럽다.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폭력의 발생원인, 대처요령, 인권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체구조, 성별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다.

현행 학교기반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학교 측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이해와 기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관계성'에 대한 교육은 사회 전반의 일반성인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성인들이 건강한 관계성을 위한 행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교육·치료기관 책임자는 아동 성폭력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율은 아직 저조하며,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폭력·음란물 노출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차. 성폭력방지를 위한 통합적 정책대응의 필요성

성폭력과 아동 성 학대는 피해자와 그 가족, 친구들 그리고 사회전반에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을 지닌다. 성폭력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것은 동시에 공공보건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인지적 정의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관련정책은 지난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시도는 있었으나,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4가지 기본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입법정책(입법부) -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의 실효성 제고
- 예방 환경정책(교육부·행자부·문화부) -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의식전환
- 피해자 보호정책(여가부·법무부·행자부) - 피해자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대책
- 가해자 재범억제(법무부·행자부·청소년위원회)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1) 성폭력 예방교육의 극대화, (2)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 및 접근용이성 확대, (3)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 등 우리의 정책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정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확인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 접근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제 2 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 미국의 성폭력 대응정책

가. 성폭력 예방스펙트럼(Sexual Violence and the Spectrum of Prevention)⁸⁾

전미여성폭력조사기구(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6명 중에 1명의 여성, 33명 중에 1명의 남성이 일생동안 한번이상 강간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당할 뻔 한 적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미국 전국성폭력지원센터(NSVRC)에서는 성폭력 종식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6단계의 예방스펙트럼의 중요성을 2006년에 새롭게 제기한 바 있다. 즉 개개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함에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규범을 존중과 안전, 평등과 건강한 관계와 성(sexuality)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규범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총체적인 예방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범죄통제정책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폭력예방 전략을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의 주도적 솔루션은 특정 사회의 필요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과 종종 높은 수준의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사회의 개입들과 협력 파트너들을 포함시킴으로 종합적인 지역사회 접근방법은 혼자 하는 교육보다 더 넓은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성폭력예방스펙트럼은 지역사회해결을 지향하는(toward a community solution) 실천전략으로서, 성폭력 예방정책을 개발하는 입법자 및 실천활동가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Larry Cohe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것은 광범위한 규모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자 디자인된 것으로서, 개인적 수준의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 및 규범을 포함한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스펙트럼은 6단계의 개입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 전략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예방, 교통안전,

8)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Rachel Davis, Lisa Fujie Parks, Larry Cohen(2006), Sexual Violence and the Spectrum of Prevention: Towards a Community Solution,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영양공급, 물리적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문제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용, 전반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도록 돕는다.

여섯 가지의 예방 스펙트럼의 활동들은 조정개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단계들이 함께 사용될 때 이 스펙트럼은 보다 강력한 전환의 힘을 가진다. 스펙트럼의 각 단계들 간의 상호 관련성, 또는 시너지(synergy)는 대변인들이나 실천활동가들로 하여금 최상의 예방활동의 결과를 가지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제 6단계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1, 2단계에 대중의 인식향상과 교육을 통한 지원 그리고 3, 4, 5단계에 해당하는 변화를 위한 각 영역들의 협력해서 변화를 위해 일할 때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직적 실천과 정책변화 같은 활동들이 개인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각 레벨 간의 시너지는 규범 내의 변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규범이 조직적 실행과 정책의 변화를 만들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규범은 제도들이 행동을 규정할 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규범에 동의할 때 나타나게 된다. 때때로 제도상의 정책 개정은 가치관과 태도의 단계적 변화 또는 주어진 규범의 바람직한 가치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정보의 발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책변화는 용인되는 행동으로 이해되는 것을 변경시켜버림으로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용기를 준다. 그리고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규범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1) 레벨 1-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강화

개인의 지식과 기술의 강화하는 것에는 정보와 기술을 전수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이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특히 지역사회의 규범과 실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작은 언급들조차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의사의 한마디 충고가 사망률, 위험행동들과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방식의 행동양태를 늘려준다. 의사들, 아동보호 전문가들 그리고 교사들은 안전을 확충시키는 행동들에 대해서 요구할 기회를 가진다. 건강관리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건강한 관계와 성(sexuality)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그들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적절한 행동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개업의들이나 생활지원전문가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나 운동선수들,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학생들에게 건강한 관계와 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윙스팬과 피마지역사회(Wingspan & Pima Community)의 보건부 그리고 남아리조나의 에이즈(AIDS) 기금, CODAC에서 공동 운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인 EON은 2004년 한해동안 매월 이루어지는 건강한 성(sexual health workshop) 워크숍에 136명을 참가시켰다. 행동관리 직원들과 청소년활동가들이 진행한 워크숍에서 역동적인 관계는 빈번한 토론주제였는데,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협상·의사소통 기술 등을 습득하는 활동들, 그리고 건강한 성에 관한 정보의 습득과정에는 또래의 지지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74%의 참가자들은 EON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그들의 성적 파트너들과 보다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레벨 2-지역사회의 예방교육 확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대하는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교육은 개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할 뿐 아니라 더욱 안전한 행동, 규범, 정책들을 위한 핵심지지 그룹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 있는 ‘강간과 학대방지 지역사회(Communities Against Rape and Abuse)’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원, 책임을 위한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유색인종,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지역사회 실행팀’을 조직하였다.

매년 미국 전역에 이루어지는 NSVRC’s의 “성폭력 인식의 달(sexual assault awareness month)”은 국가의 지원으로 어떻게 지역사회 교육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대중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은 인식을 확장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성공적인 예방 정책의 실행지원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중 매체의 영향력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성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유타 대학의 남학생들, 단과대학과 교직원들은 ‘그녀의 입장이 되어보기’ 위한 여성신발신고 걷기를 하였다. 이러한 걷기운동을 통해 성폭

력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남성들로 하여금 그 예방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또래집단의 교육을 위한 성금을 모으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연출을 통해 지역 매체의 관심을 끌어 솔트레이크 지역신문에 기사화 되는 것을 포함해 언론의 관심을 가지고 왔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또한 입법 담당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고 보다 폭넓은 변화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회 교육의 실행사례로서 워싱턴 시의 “남성이 강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Men Can Stop Rape, Washington D.C.)”를 들 수 있다. MCSR의 캠페인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청소년 테이트 성폭력과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형성에 있어 청소년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교육한 캠페인이다. 주제에 따라 조직된 ‘나의 힘은 당신을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캠페인은 남자들이 힘,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강해질 수 있는 가를 강조하는 캠페인이었다. 이 캠페인의 포스터는 새로워 보이는 모습을 전달하고 청년들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과 다른 남자들과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캠페인의 긍정적인 이미지 역시 폭력의 가해자로서 유색 남성들에 대한 편견과 다른 신화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교육 노력은 다른 차원의 여러 수준들의 활동과 명백히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3) 레벨 3-서비스제공자들 교육하기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의 전문영역과 정보, 기술, 동기들을 지역사회구성원이나 의뢰인들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 서비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부모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행동과 그에 따른 상처 및 병리현상들에 대해 충고하도록 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만의 성폭력예방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도록 교육받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버지니아 보건복지부는 사회생활 서비스전문가들에게 어떻게 남성과 소년들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다.

실천가들 간의 훈련 및 네트워크 형성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강화되었다. 예

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성폭력방지연대(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의 예방 네트워크는 웹상의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 조직되고, 무료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메일전송을 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적절한 훈련과 더불어 의사, 교사, 법 집행가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가 등은 예방정책의 매우 효과적인 옹호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성폭력 예방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자들, 건물소유주들/관리자들, 영화 제작자들, 도서관 사서들, 노인센터의 직원들 그리고 레저 센터의 직원들, 방송국의 DJ, 교도관, 바텐더 그리고 보험정책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 예방훈련으로 이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보다 잘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은 예방차원의 관점에서 성폭력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을 것이며 두려움이나 잘못된 신화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공급자들 교육하기”의 대표적 사례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존중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성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촉진하는 초등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교들은 학교 행정가들, 상담교사들, 학교자원 담당자, 교사, 학부모 대표 등과 리더십 팀을 형성하고, 이 팀은 긍정적인 학교풍토를 촉진시키고, 괴롭히기, 성적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이러한 폭력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학교 직원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2003년에서 2004년 동안 3,575명의 학교 행정가들, 학교 구성원, 학부모와 다른 전문가들이 훈련을 받았다. 참가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강력하게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은 이러한 훈련이 그들의 인식을 높였고 그들의 기술을 확장시켰으며 보다 그들 학생들의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4) 레벨 4-연대와 네트워크 육성하기

연대와 네트워크는 주도적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적 기관 및 요소들을 집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배후에서 핵심 대중을 증가시키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도와

며 집단 내의 불필요한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 각 영역과 부분들을 아우르는 연대는 한 곳의 단체가 해낼 수 없는 확장된 목표를 수행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폭력에 대해 음악과 비디오를 통해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해 교육하는데 힙합 예술가들을 참가시켜 시작한 캠페인('Take back the music')을 들 수 있다. 전국에 걸쳐 전형적인 지역 연대는 회원조직으로 종교기관, 수감자 인권 지구, 장애인 권리 기구, 노인 학대 예방 위원회 등을 포함해 그들의 조직을 확장시켰다. 마치 직소퍼즐이 모든 조각이 함께 모일 때만 이것이 온전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연대의 각 기관은 중요하다.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신뢰와 영향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미네소타의 “성폭력 예방실천 협의회(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ion council)”가 그 대표적인 실천사례이다. 이들의 첫 노력은 청소년 개발, 건강관리, 공중보건 시스템 그리고 남성 리더십 개발에 집중하였다. 회원으로는 공공시스템, 인적 서비스, 교육, 공공안보, 공중보건 그리고 피해자와 유색여성, 지방단체, 가해자 처우관리담당자, 연구자, 예방 담당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5) 레벨 5-조직 관례(practice) 바꾸기

기관들, 사업체, 정부, 종교기관, 학교, 사법기관, 스포츠조직, 미디어, 재단들,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조직들의 관례를 바꾸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온다. 조직의 규범과 관례를 바꿈으로 그 조직은 사회 규범에 폭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 모범적 행동을 제안하거나 행동을 장려한다.
- 다른 기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 관련 정책에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 사회적 인식을 높인다.
-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예방의 범주 안에서 가장 이해가 부족하고 자주 무시된다. 하지만 조직 내 관례나 관습에 대한 변화는 다른 성폭력 예방노력에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서 광고 캠페인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높일 수 있다면, 미디어 판매에서 여성과 유색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광고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건강관리기관들은 직장 내 반폭력 정책과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영화관들은 성폭력을 일반화하거나 널리 보여주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거나 영화를 보러 오는 이들을 위해 건강한 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후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기관들은 게임장에서 알코올 음료판매를 줄인다거나 운동선수들에게 폭력 예방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청소년들의 좋은 역할 모델로서 운동선수들이 청소년과 함께 하도록 해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조직이나 사업체를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관례 바꾸기’의 주요 실천사례로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케힐라지역공동체(Kehilla community) 교회’를 들 수 있다. 케힐라 교회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 폭력, 어린이 학대,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성직자 직권남용 등을 다루기 위해 ‘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것을 적용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정책 개요는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기관 간, 사람 간의 비폭력적 방법으로 관계 만들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학대예방 교육이 종교 서비스, 종교 프로그램, 종교 상담 등에 통합될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 정책은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될 것이며 웹-사이트에 공지되었다. 목회자, 행정가 그리고 교사들은 훈련되었고 교육 행사와 정기적인 치유 프로그램들이 열렸다.

6) 레벨 6-법률과 정책에 영향력 행사하기

이 단계에서는 결과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진일보의 기회를 지닌다. 정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몇몇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입법과 정책의 변화로 이를 강화시

킬 수 있다. 다른 경우, 조직의 관례에서 더 나은 시행 또는 변화가 기존의 법률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미국의 원주민집단 내 성폭력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사우스 다코다의 캔글레스카(Cangleska)는 직접 지역보호구역의 9개의 지역구를 활발하게 주정부 공청회에 참여시키고, 핵심의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사우스 다코다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연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다른 성폭력 방지정책 노력들은 주요 예방책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정책 입안자들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데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의 옹호자들은 메사추세츠의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비용효과 보고서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방자치 모임들이 전적으로 정책입안자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는 대신에 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도록 주요한 예방책의 가치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다. 옹호자들이나 실천활동가들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은 주 또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그러나 유용한 정책은 종종 지역사회 내에서 발전되어 나온다. 지역 정책들은 개별적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지며 보다 광범위한 정책입안을 위한 실험실로서 인식을 높여주고 지지해주고 실천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적당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나아가 지역사회는 주정부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종종 막아버리는 관료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수년 전에 위치타지역 성폭력센터(Wichita Area Sexual Assault Center)와 안전한 공동체연맹(the Safe Communities Coalition)은 11세에서 18세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와 함께 작업을 해서 혁신적인 교과과정으로 성폭력방지교육과 건전한 행동을 위한 강의, 프로젝트, 역할게임을 포함하고 있는 “폭력예방단계별과정(Steppin‘up to Violence Prevention)”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교사들에게 퍼졌으며 마침내 지역 교육청의 임원들에게까지 관심을 받게 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2002년에는 교육감은 프로그램 스텝들에게 전체 지역 학교의 괴롭히기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을 고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치타(Wichita) 지역의 교육구 내의 정책변화는 주 전역의 타 교육구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위원회(Assault against Women)는 시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과 성폭력 예방정책을 한 번에 한 학교씩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성공적이며 지역구 전체와 주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 변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역정책 변화의 또 다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의 목표는 명백하게 성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판매처를 줄여 알코올의 위험 유발 요소가 줄어들도록 하였다 이들 연대는 지역할당 법을 바꾸고 신규 주류 판매처 200여 곳의 신규 개점을 3년 동안 금지하였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7%의 폭력관련 범죄, 약물관련 범죄, 경범죄들, 그리고 문을 닫게 한 주류 판매소 4 블록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던 성매매와 같은 악덕을 줄일 수 있었다. 지역 정책 변화 다른 예들로서는 정부 시설 등에 해당하는 컨벤션 센터라던가 스포츠 시설 그리고 공공장소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들이 있다. 많은 폭력예방 옹호자들은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총기전시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유사한 전략은 성폭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광고나 행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뉴욕의 통합적 성폭력 법의학(FORENSIC HEALTHCARE) 치료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성폭력 법의학적인 보건관리 프로그램(FHP:forensic healthcare program)과 SAE(sexual assault examiner)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성폭력 대응기술을 지원하는 병원기반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병원 응급실은 성폭력의 피해자, 특히 범죄 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받게 되는 주된 공간이다. 병원은 이러한 의학적 응급상황에서 주요 역할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뉴욕 주법은 병원들에게 강간위기 대응단체나 성폭력지원기관과 연락망을 형성하도록 요구하고, 서비스의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변호인(advocate)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1년의 성폭력 개정법안은 주정부에 의해 전문적인 성폭력 검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뉴욕시에는 이미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뛰어난 치료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5곳의 자치구역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브루클린의 경우 1997년 1급 강간의 발생비율이 제일 높았지만 단 하나의 응급실만이 통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브롱크스는 두 번째로 높은 1급 강간범죄의

발생률을 가졌지만 1997년 이후 단 하나의 병원이 통합적 치료를 시작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뉴욕시는 FHP 모델을 통하여, 성폭력 법의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가지는 병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성폭력 검사관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이끌어 줄 단계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돌봄의 환경 만들기]라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본 모델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실제 뿐 아니라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는 법의학 훈련된 성폭력 검사팀
- 24시간 전화 지원을 하는 강간 위기 피해자를 대변하는 자원봉사팀
-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원들, 훈련된 검사관들, 자원봉사 대변자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응급팀
- 기다리거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응급실 가까이에 있는 사적인 공간
- 피해 생존자를 위한 옷과 교통편
- STD, HIV 및 임신예방을 포함한 무료 검사와 의학적 상담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 응급 진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돌봄
- 지속적인 질적인 보장
- 자료의 수집
- 형사사법체계와의 연계

1) 성폭력 검사자 팀(Sexual Assault Examiners Team)

성폭력 검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검사할 수 있는 의학적인 전문가들을 말한다. 이들 개개인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학적, 과학적 전문지식과 정신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감정적 평안(well-being)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옹호자)에 의한 시기적절하며 민감한 의학적·과학적 검사이다.

피해생존자는 반드시 보호를 성공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관리, 적절하고 효

과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병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시기적절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숫자의 법의학적으로 훈련된 의학적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한다. 훈련된 직원은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와 같은 의사나, 등록 간호사, 보조의사 또는 레지던트(Medical Resident)와 같은 전문가들의 범위에서 채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검사는 피해 생존자의 심리적, 의학적 필요조건들이 모두 보살펴져야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복잡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훈련된 의사들과 더불어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검사를 지원하고 이것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때 법의학적 검사를 위한 훈련은 '보조 검사원'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의학 분야의 직원들은 반드시 뉴욕시 보건부가 승인한 5일짜리 성폭력 검사관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각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교관(preceptorship) 시스템을 통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훈련은 피해 생존자에 대한 민감성, 심리학적 정신적 외상, 다양성과 장애에 관련된 문제들, 사법적 과정과 법정에서의 검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2) 강간위기대응자(Rape Crisis Advocates)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최소한 몇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의학적 검사를 하는 동안과 그 이후 시간에 훈련된 자원봉사 지지팀(대변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지지팀(대변자)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른 지원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변자들은 아마도 성폭력 피해자와 형사사법제도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완충자로서 활동하는데 아마도 경찰과 피해자의 인터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변자들은 또한 피해 생존자와 그들을 돕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심리학적 또는 의학적 후속과정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 외에도 대중 교육이나 기금마련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간위기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다.

- 24시간을 지원을 보장하는 적절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
- 전화 요청에 따라 12시간 교대로 활동하는 대변자들
- 자원봉사자들의 소진방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조율하는 전담코디네이터
- 뉴욕시 보건부에서 승인한 30시간의 훈련과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훈련
- 대변자들이 그들의 집에서 응급실까지 오고 가는 교통편

대변자들은 서류전형, 사전 훈련면담 예비서비스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과제수행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별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그 선별 프로그램은 반드시 미래적인 자원봉사자의 성숙도와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 그리고 다른 범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대변자가 한번 선발되면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연간평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규율과정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에 의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뉴욕주 보건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것 같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보건 당국에 의해 승인된 30시간의 훈련을 그들이 첫 과제에 참여하기 전에 받아야만 한다. 또한 그들은 매년 10시간의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주제는 반드시 각 훈련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훈련, 감독과 프로그램 직원과 대변자들을 위한 동료에 의한 감독을 위해 계획된 시간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의 요인이 된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전문 직원들이 언제나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확립된 계획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변자 프로그램은 다루어진 사례들에 대해 반드시 정형화된 보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변자 대비 직원의 비율은 1:30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변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풀타임 직원 또한 이에 맞춰 늘어나야 한다. 추가로 임용된 직원은 또한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서비스와 SAE(sexual Assault Examination)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 준비된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 2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액의 현금은 12시간 당번시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전화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욕 주 보건당국은 자원봉사자들에게 b형 간염과 풍진 등을 적절하게 검사할 수 있는 연차 건강체크를 요구한다.

3) 훈련과정(Training)

훈련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4단계의 기본 훈련과정이 효과적인 통합적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뉴욕시 보건부가 승인한 성폭력 검사자 5일 훈련과정은 의료팀의 전원이 피해자를 검사하고 이 검사를 돕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성범죄 증거채집 장비 (Kit) 사용에 완전한 숙달과 증거 수집을 위해 요구되는 17단계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피해 생존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실제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는 민감성 훈련, 필요한 자료수집과 질적 보장을 위한 기준에 대한 개요, 그들이 증언하게 되는 사례의 법정 진행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 OB-GYN residents와 같은 다른 의료 직원들에 대한 훈련, 이러한 훈련은 강간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최선의 경우는 이러한 훈련과정들이 병원의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이나 내부 서비스 교육기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 자원지지자(대변자) 훈련은 30시간 뉴욕주가 승인한 훈련과 10시간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 경비원부터 데스크 모든 비-의료 분야의 직원들을 위한 일반 직원 훈련으로 이것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싸우게 될 정신적, 실제적 문제들을 교육한다.

4) CSAT 프로그램 행정지원(Program Administration) 및 전담 코디네이터

통합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다음의 일을 책임지는 전임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한다.

- 프로그램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
- 검사관 능력에 대한 검토 (만약에 코디네이터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료 또는 간호 감독관이 필요할 수 있다)
- 직원들에 대한 채용, 감독, 선발

-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훈련
- 상담과 의료의 후속조치들에 대한 시행
-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 서비스의 질적 보장
- 자료 수집
- 관련 정책과 과정을 이들을 돌보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부서로 통합

통합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는 훈련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본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을 통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뉴욕주 보건당국 승인한 5일짜리 SAE(sexual Assault Examination) 훈련은 모든 검사관들에게 첫 번째 훈련과정이다. 그 다음에 골반검사와 강간검사는 최고수준의 치료를 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성폭력 검사관의 부재로 대신 역할을 해야 하는 의료 직원에게는 심리적 외사장애에 대한 정부, 강간 피해자의 감성에 대한 치료, 뉴욕 주의 증거수집 키트사용법, 의료기록 작성, 형사사법 진행 기록, 강간날짜, 약물테스트, 에이즈, 임신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책과 과정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관여 수준에 따라 훈련프로그램은 비밀보장과 기본 치료 그리고 피해 생존자에 대한 민감성 등을 교육한다.

5)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 및 추가적 지원과 치료의 지속

통합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최소한 반드시 응급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피해 생존자도 일반 대기실에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병원 도착 수분이내에 검사실로 옮겨져야 한다. 사적인 공간을 보장하는 문은 있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추가적인 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처를 입었다면 훈련된 의료 인력이 지원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응급실과 연결되어 있는 특별실이나 검사실이 아마도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적(private) 영역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 생존자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치료시설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이다. 또한 증거키트의 보관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

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보다 긴 기간이 피해자가 고소할 지를 결정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지만 공중 보건법은 최소한 30일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반드시 옷 특히 속옷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생존자들의 옷은 증거를 위해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집까지의 안전한 교통편 역시 필요한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학적 상담서비스와 후속 의료지원 서비스는 이것을 장려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응급치료를 받을 때 왜 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되어야 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방문 일정을 적합한 전문 의료진과 정해져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 STD, HIV, 임신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실험은 후속 의료조치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들에 대한 비용이 피해 생존자에게 부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 또는 그룹 상담을 위해 진단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선정은 성폭력 치료의 통합적인 영역이다.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나 적절한 병원의 의료진이 이러한 진단과 판단에 책임을 진다. 이러한 진단은 보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 생존자들은 ‘an additional intake’를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상담기록이 의학적 기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한다. 통합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반드시 앞서 설명된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응급진료를 받은 모든 피해 생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신들이 응급조치 이후의 후속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지원 시스템

미국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보호시설을 제공하기와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미국 전역에서 비슷하다. 다음은 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지원 센터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버지니아(Virginia)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

미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LAWS(the Loudoun Abused Women's Shelter)는 버지니아(Virginia) 주에 있는 런던카운티(Loudoun County)에 1985년 3월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자녀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창설된 기관이며, 연중 약 1500명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버지니아(Virginia) 주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감소하기 위해서 주 전체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AWS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불안, 공포,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도와주고 있다.

— 법적 지원(Legal Services)

1993년에 LAWS는 폭력을 당한 여성을 법정에서 무료 변호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주 검사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법적인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학대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 여성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해줌.
-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자문과 지원
- 가해자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하는데 도와 줌.
- 성폭력 및 가정 폭력 가해자들에게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도와 줌.
- 아동을 위한 도움도 제공함
- 치료 및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도와 줌

—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24시간 핫라인 가동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
- 위기개입 : 핫라인에서는 성폭력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4시간 위기상담을 제공
- 숙소제공 :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자녀들과 일시적으로 지낼 쉼터 제공
- 전문가심리상담 제공 : 폭력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중심 전문상담 제공

— 또래 집단지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 추후 및 적극적인 지원 실시 :

피해자들에게 음식, 의류,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퇴소한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 애완용 동물을 위한 위기센터

피해 가족들에게 애완용 동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 개입
- 어머니를 동반한 아동들에 대한 주거지 제공
- 건전한 가정을 위한 상담 제공
- 연령에 적합한 일상적인 활동 제공
- 또래 집단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지도 하에 방문 서비스 제공

— 성폭력 서비스

강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장기적인 성폭력 생존자들에게는 다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24 시간 위기 전화 가동
- 성인과 아동을 위한 개입
- 친족 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제공
- 개인 상담 제공
- 지지그룹 제공
-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 경찰 보고를 위한 지원

- 법정, 병원, 다른 기관에 동행 방문
- 위기의 쉼터 제공

—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를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부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또는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이들의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기업, 주위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 등을 자세히 경제적인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만, 미국에서 1996년도 범죄 피해자들을 처리하는데 의료비, 임금 손실, 고통, 삶의 고통과 질적인 삶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45억 달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Miller, Cohen, and Wiersema, 1996). 이 중에서 성적인 피해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강간에 의한 피해이다. 성폭력피해 비용은 아동 성폭력 피해 비용을 제외하고 연중 약 12억 7천 달러라고 추정한다(Miller et al., 1997). 한 사람에게 대한 성폭력 비용은 11만 달러라고 추정했는데, 강간 한 건당 처리 비용이 약 8만7천 달러이고 강간당한 피해자는 여러 번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오레곤(Oregon)주의 학제 간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규모로 학제 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당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오레곤(Oregon)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한다.

- 지원자(advocates)
- 청소년 법률(juvenile justice)
- 경찰(law enforcement)
- 검찰(prosecutors)
- 교정(corrections)
- 가해자 치료 및 관리(offender treatment / management)

- 인권지원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간호사 및 의료진(nurses and medical staff)
- 기타 성폭력 생존자 또는 가해자에 종사하는 사람들

오레곤(Oregon)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평가간호사 프로그램 (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일명 SANE Program)]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것은 성폭력사건 및 가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평가하는 자료는 법정에서 활용되어 법정에서 증언이 가능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레곤 주는 “SANE 자격제도(Certification & Re-certification)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정증언평가 자격제도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미국의 법적인 제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주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비밀을 보장하면서 하루 24시간 가능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지원자들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위기 개입(Crisis Response)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병원까지 교통을 제공하거나, 동행하면서 도와준다. 경찰에 보고하도록 도와주고 위기 시 보호시설을 안내해 준다. 비평가적인 태도로 정서적인 지원을 해준다.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기도 한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준다.

— 장기적 지원(Long Term Support)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은 일대일의 정서적인 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 추가적인 의료 및 법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법정에 동석하고 재판의 전 과정에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 가해자의 선고 등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명령도 받아

준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사회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성폭력에 의한 외상 치료 및 자기관리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마디로 성폭력의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Support for Others Involved With the Survivor)
성폭력피해자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 파트너, 친구도 성폭력피해의 후유증을 경험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주변 인물들의 간접적인 피해후유증을 도와주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관해서도 도움을 준다.

2. 영국의 성폭력 대응정책⁹⁾

가. 성폭력방지 실천방안(Action Plan) 추진배경

최근 영국의 내무성은 지난 수년동안 이루어진 영국의 성폭력 발생실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서, 성폭력방지를 위한 국가종합대책(Action Plan)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성폭력 문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약 21%의 여자아이들과 11%의 남자아이들은 성학대 형태의 경험을 한다.
- 성인이 된 후, 23%의 여성과 3%의 남성들이 성폭력(sexual assault) 피해를 경험하고, 성인이 된 후 5%의 여성들과 0.4%의 남성들이 강간(rape)을 경험한다.
- 장애아동, 실종아동들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에 노출된 아동들이 보다 많은 아동 성학대를 경험하게 된다.
- 성인 성폭력에 있어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매춘에 종사하는 이들,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술에 취한 여성들이 더 많은 성폭력을 경험한다.
-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남성들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들이다. 이들 양쪽 모

9)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HM Government (2007),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April 2007, Home Office 홈페이지 참조.

두 성적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 여성들이 다른 범죄들보다 걱정하는 것은 강간이다.
- 성폭력과 어린이 성학대가 가지고 오는 직접적인 육체적 건강의 결과는 직접적인 육체적 상처와 성적 감염, 강제적 임신 등을 들 수 있다.
- 장기적인 성폭력과 학대의 결과는 후기 심리적 외상 장애, 근심과 공포의 엄습, 우울증, 사회적 공포, 학대, 자학과 자살, 가정폭력과 몇몇 경우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학대는 또한 교육의 태도와 학교 출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 전반적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2003~04년도에 약 85억 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했고 강간 별로 76000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은 손실과 피해자가 직면하는 장기적인 건강문제에 따른 건강 서비스 비용이다. 이는 문제들을 빨리 관리하는 것이 그 비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강간을 경험한 성인 중에 40%가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며 성적 학대를 경험한 31%가 그들의 학대경험을 숨긴 채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그들이 받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받고자 하는 곳들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의 감당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많은 사람들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아동들에 대한 성적학대가 일반적으로 낮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이다. 강간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가정폭력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가정 내 살인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 1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 중 단지 15%만이 경찰에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된 강간 범죄자들 가운데 6% 미만이 성범죄에 대한 유죄를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위협이 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영국 내무성은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가장 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성폭력의 광범위한 관련성을 고려, 범정부적 실천방안(Action Plan)을 작성, 각 부처가 성폭력 방지포럼의 일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를 유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실천방안(Action Plan)은 역사적인 또는 최근의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과 학대의 형태들을 다루며 이러한 폭력에 영향을 깊숙이 받게 되는 여성, 남성,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불평등, 특히 여성을 향한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대표하는 성(gender)에 기반한 폭력의 지속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본 실천방안(Action Plan)은 목표 수행에 있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지역 수준에서 성(gender)에 기반한 여러 폭력형태들을 다루는 일과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 것인가를 관계기관의 책임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 영국의 성폭력방지실천방안 2007

- 성폭력과 학대에 대한 예방을 극대화하고
- 성폭력과 학대의 피해자들이 지원사업과 건강서비스에 접근을 확대하며,
- 성폭력과 학대에 사법적 정의를 위한 대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 본 실천방안(action plan)의 목적

- 성폭력과 학대에 관련해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사회구성원에게 알려주고
- 우리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해야 하는 실천방안을 확인하며
- 보다 많은 고려들을 필요로 하는 현재의 작업에 존재하는 차이(gaps)를 확인하고
- 투명성을 늘리고 목표 수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 성폭력과 학대를 막는 통전적인 전략 및 방법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 실천방안에 참여하는 주요 실행기관 및 파트너십들 간의 책임과 역할

주요 실행기관 및 파트너십들 간의 책임과 역할은 정해놓은 온라인 실행지침에 의해 지원된다.

- 경찰,
-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 법원(Courts)
- 전국범죄자관리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지역 행정당국(Local Authorities)
- 자발적인 지역사회 조직단체(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Organizations)
- 성폭력위탁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s : SARCs)
- 일차보건소 및 지역보건국(Primary Care Trusts or Local Health Boards in Wales)
- 법의학서비스제공자(External Forensic Service Providers and Forensic Practitioners)
- 범죄 및 무질서 근절 파트너쉽(Crime Disorder Reduction Partnerships)
- 지역 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s)
- 지역 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나.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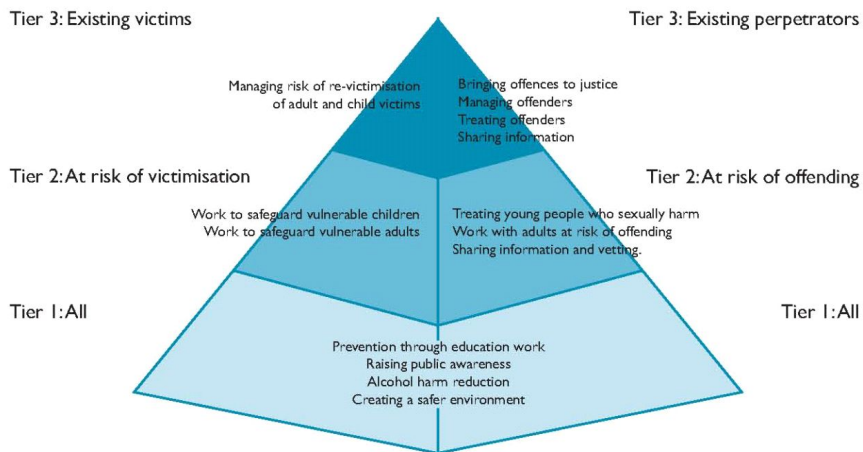
1) 예방(prevention)

성폭력과 학대에 관한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의 확산과 이와 결합된 결과물들을 줄이는데 있다. 예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실천방안(Action Plan)의 핵심목표이다. 아래의 모델은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성폭력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 모델은 피해와 가해 양측에서 있어서 위험의 단계에 따른, 성폭력과 학대를 예방하는 개입의 다른 단계들을 구조화하고 있다.

— 2007~'08간의 예방 주요 활동

- 다기관 공공보호체계(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통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관리
- 성폭력 가해자나 성 학대를 한 젊은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수행

- 어린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새로운 조사와 제한하는 계획 수행
- 작년에 출판된 ‘어린이 보호하기 위한 연대활동’에 관한 지도와 새로운 어린이들에게 추가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확인하고 개입하는 새로운 일반적인 평가 체계(Common Assessment Framework)을 수행
-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성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와 일하는 것



2) 건강과 지원

성폭력과 학대는 정신보건과 성 보건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되며 따라서 이에 대해 다루는 것은 공공보건 문제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을 다루는 적절한 서비스, 예를 들어 성폭력위탁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와 같은 성폭력 직후 피해자에게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조직들이 중요한 장기적 지원과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성폭력과 학대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지만, 이 분야의 역량이 확

대되고 지속되는 것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영국의 실천방안(Action Plan)의 두 번째 목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만역 피해자들이 총체적이고 협력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면 협력의 중요성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건 서비스들 사이의 전력과 서비스 준비의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역량을 만드는 것과 옹호와 대변을 통한 개인 피해자들의 필요에 대해 통전적인 대응을 조직하는 것은 목표의 주요 요소들을 이룬다.



- 2007~'08년간 피해자들의 보건지원 서비스 증대를 위한 주요 활동
 - 가족부의 기금을 바탕으로 125만 파운드를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 부문 조직을 위해 준비
 - 의료 치료와 법의학적 자료수집, 상담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성폭력 위탁센터(sexual assault referral center)의 네트워크를 확대(2003년에 5개 인데 2008년까지 40개까지 확보)
 - 38곳의 가족부의 기금으로 지원되어 만들어져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독립 성폭력 고문인(independent sexual violence adviser)에 대한 평가
 - 성폭력과 학대의 자원활동적 부문으로부터 서비스를 위임 받는 것과 이동 성학대에 대한 서비스를 위임하는 일차보건소(Primary Care Trusts)를 위한 안내문을 만드는 것

- 폭력과 학대의 희생자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성학대 희생자와 어린이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 그리고 성폭력의 성인 피해자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국가적 지원의 기본지침을 개발하기

3) 사법적 대응

성폭력에 있어서 불기소율(attrition rates), 특히 강간범죄에 있어서의 이 비율은 매우 높다. 성 범죄는 신고하고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증대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신고를 늘리고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는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보다 많은 성범죄자들을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2007~'08년간 형사사법 대응의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

- 성폭력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증거를 모으는 훈련된 수사관들을 위한 훈련의 국가적 첫 공개
- 최선의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찰과 성폭력전담 전문가 역량을 강화
- 심각한 성범죄를 성공적으로 기소하도록 모든 법정변호사들에게 성범죄대응훈련강화
-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수행관리형태 및 공권력을 지원해 주는 가족부와 경찰서장 연합의 공동지원팀 도입

- 상처받기 쉬운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공하고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약한 목격자들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욕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매개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하는 특별법안을 확대하기
-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위탁센터와 성폭력지원단체 및 변호인들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 가석방위원회가 성폭력 범죄자들을 고려하는데 있어 피해자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개인 진술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변호지원을 소개하기

4) 모니터링하기

실천방안(Action Plan)은 각 목적과 관련된 많은 진단 지표를 가지고 있다. 본 실천방안(Action Plan)을 수행하는 정부의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진단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천방안(Action Plan)은 범정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다양한 실행기관들의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다양한 수행관리 형태를 포함한다.

3. 뉴질랜드(New Zealand)의 성폭력 대응정책

가. 성폭력방지 Action Plan 추진배경

뉴질랜드의 2001 전국폭력피해조사(NZNSCV 2001)에 따르면,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성폭력이나 성적인 침해는 남자들보다 확연히 높다. 조사대상 남성의 5%만이 일생동안에 성적 침해나 폭력을 경험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20%가 경험한다. 특히 17세~24세의 젊은 여성들(26%)과 마오리 여성(23%)들의 피해경험이 높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따르면, 성폭력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고 그들과 아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성폭력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번 일어난다. 피해여성의 40%는 17살 이전에 성적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했으며, 일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은 서로 아는 사람들에서 그리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 보고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보다 아는

사람에게 폭행당할 위험은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고,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유죄판결자 182명 중에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모르는 아동인 경우는 오직 6.5%뿐이었고, 첫 피해자와의 관계가 하루 이내였던 가해자의 비율은 29.5%인 반면, 36.7%의 성폭력범자들은 첫 피해자와의 관계를 1년 이상 지속시켰다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성폭력 대응 및 예방정책은 다양한 범위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피해와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방안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자(offender) 처우프로그램, 법 개정과 성폭력사범의 행동에 대해 감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제도,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나. 주요 실천전략

뉴질랜드 성폭력 대응정책은 크게 5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① 교육과 예방, ② 성폭력가해자 교정처우, ③ 법제도적 개정정비, ④ 가해자 사후관리, ⑤ 피해자 지원서비스 등이다.

1) 교육과 예방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당하지 않은 행동인가를 교육하고 건강한 관계성과 어떻게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것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계획은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건강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인식은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 학대에 대한 대응 또한 형성되고 있다.

— 학교에서의 성과 성 학대에 대한 교육은 보건체육교육과정(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의 한 영역으로서 제공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성적 발달과 건강·인간관계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본 건강교육과정은 법에 따라 학교의 위원회가 학교공동체와 함께 자문할 것을 법적으로 정한 유일한 교육영역이다. 비록 학부모들은 서면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과정 속의 성교육 제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있지만, 일단 동의되면 학교는 학생들의 참가를 위한 학부모 동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본 교육과정에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준비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은 준비되어 있지만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들의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 특별히 성 학대 예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Keeping Ourselves Safe: KOS)”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15년 동안 운영되면서 교육을 제공하고 학령기 연령의 아이들에게 성적, 육체적 폭력에 대해 인식하고 저항하는 폭력의 본질과 발생에 관한 믿음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경찰 청소년교육서비스(Police Youth Education Service)에 의해 무료로 학교에 제공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연령 대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맞춰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이다. 모든 학교가 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학교기반 예방실천 계획은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내적 외적 위험을 다루기 위해 ‘안전한 학교정책들’의 정책들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몇몇 학교들은 또한 학교 사회사업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학대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Netsafe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등 새로운 기술들이 성적 희롱이나 폭력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공격의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충고를 제공하고 있다.

2) 가해자 교정처우(Offender Treatment)

성폭력 가해자 재범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이 있다. 몇몇은 교도소 기반 프로그램이며 몇몇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의해 이루어진 클라이스트처치와 오클랜드(Christchurch & Auckland) 교도소의 아동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로그램들의 주목적은 성폭력 사범들이 그들의 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들의 폭력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이들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오클랜드(Auckland) 프로그램은 총체적 접근법인 마오리족의 티탕가(Tikanga)를 사용함으로써 마오리와 비-마오리족 모두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마지막 평가는 통제집단의 21%와 비교할 때, 석방 후 2~4년 동안 5%만이 재범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낮은 재범율을 보여주고 있다. 클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비율이 1996년 평가 때보다 50%이상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 “올바른 생각(Straight Thinking)”은 성폭력가해자에 내재한 재범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성 또는 범죄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된 욕구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 동기를 증진시켜 준다.
- 지역사회는 가해자처우(treatment) 프로그램은 윌링튼(Wellington) 스톱(STOP)에 의해 운영되는 성폭력 근절 프로그램과 안전사회 네트워크(SAFE Network)에 의해 운영되는 SAFE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대상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들은 폭력 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성적 공상들과 사고의 양태들을 시험해 보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그들의 피해자에 대해 공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충동을 조절할 것인가를 배우도록 장려한다. 본 STOP와 SAFE프로그램은 또한 11살에서 13살까지의 성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가족들이 그 성학대의 효과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돕는다. 최근의 평가는 이것이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줄이는데 이들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 테 위로(Te Wero)는 웰링턴의 STOP이 운영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마오리 남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마오리인 직원에 의해 운영된다. 오클랜드(Auckland)의 SAFE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마오리족 남성을 위해 마오리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테 푸타마 아라치 랑가타히(Te Poutama Arahi Rangatahi)는 가장 성적 학대에 심각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아동·청소년·가족 지원국(Department Child and Youth and Family Service)의 보호관리하에 버나르도(Barnardo's)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 안전거주 관리시설'이다.

3) 법제도 개정 및 정비

사람들 사이의 성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최근 급증하였다. 최근 제안된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성별이나 폭력 가해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학대 범죄(offences)를 금지토록 규정한다(현행법으로는 오직 남성만이 1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적인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다양한 폭력을 포함해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여성들도 처벌받게 될 것이다).
- 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성 접촉을 규정하는 폭력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근친상간,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소녀와의 성관계, 16세 이하와의 성관계, 12세 이하와의 성관계 그리고 심각한 저 능력자와의 성관계 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들에 법이 적용될 것이다.
- 확장된 범죄의 범주에는 풀사나운 행동들도 포함된다.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소녀들과의 성관계, 저-능력자와의 성관계, 강요에 의한 성 접촉 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죄들에 이 법은 적용될 것이다.

- 형법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약 또는 알코올의 과도한 영향으로 성적인 행동에 동의할 줄 능력이 없는 환경과 정신건강이나 육체적 지적인 손상 때문에 사람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동의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 금지된 관계간의 성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근친상간 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금지된 관계에는 동성간의 관계를 포함하게 될 것(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간, 조부모와 손자)이며, 젊은 사람에게 권력 또는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16세 이하 성적 지배(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가족간 성학대를 새로운 범죄로서 규율하게 될 것이다.

4) 성폭력 가해자 관리(Offender Management)

성폭력 가해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지역사회에 재통합될 때 미래 재범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적 개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장된 감시감독
 2004년 11월에 도입된 가석방(확장된 감독)과 양형에 대한 개정 법안은 고위험의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상당히 확대시키고 있다. 2002년 양형법(Sentencing Acts)에서는 고질적인 아동성폭력 가해자는 예방적 제재로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하여 장기형을 선고 받았다. 새롭게 제안된 제도는 예방적 제재로서 선고하는 것에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확장된 감독제도는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의해 야기되는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성폭력 사범의 사법적 처우이후에 저질러질 수 있는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실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DUNEDIN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구체화된 기관간의 정보공유

지역사회의 기관간 정보공유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2년 10월과 11월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는 실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공유의 협약을 관련기관들에게 요구하였다.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어떠한 정형화된 합의가 관련 기관들 사이에 없으므로, 현재 정보교환 방법검토 및 최선의 정보교환 방법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운영의 의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Dunedin Best Practice Pilot에는 교정국(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아동·청소년·가족지원국(the 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경찰(Police), 사회개발·주택 조합대표국(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representative in Dunedin) 등이 포함되었다. 시범운영은 가석방 기간 동안의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리(management)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관간의 협력 및 강화된 정보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The Ministry of Justice)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정국(the Department of Corrections)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주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현재 시범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특히 정부기관간의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는가가 평가되고 모니터링되고 있다.

5) 피해자 지원서비스(Responding to Victims)

— 경찰의 성학대처우(Police Sexual Abuse Treatment) 팀과 아동·청소년·가족지원국(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은 성폭력과 학대 상황(특히 어린이를 위해서) 긴급위기대응서비스(Crisis Response Services)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가족법(Children, Young People and their Families Acts)]의 돌봄과 보호지원 속에서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은 만약 어린이와 청소년이 진정으로 그들이 받는 돌봄과 보호에 만족한다면, Care and Protection Resource Panel과 더불어 상담을 하고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을 모이도록 한다. 가족집단회합에서

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돌봄과 보호에 있어서 문제해결방안들을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부서(어린이 청소년 가족 서비스 부)는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한다.

- 돌봄과 보호의 청사진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성 학대에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고안된 것이다. 본 청사진에는 학대와 방치를 다루는 지역 사회와 공식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찾고 있다. 본 청사진은 돌봄과 보호 공동체, 이들 돌봄과 보호의 정책들이 작동될 맥락에서의 원칙들, 돌봄과 보호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목표 그리고 실행계획들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 뉴질랜드의 강간위기대응(New Zealand Rape Crisis)은 비영리 기구들의 연합체로서 상담과 지원을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제공하며 성폭력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대시킬 교육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대상자 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일한다.
- 전국 여성쉼터연합회(The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는 24시간 일대일 대면상담과 인터넷지원, 변호활동 및 쉼터를 성폭력·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여성쉼터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향한 폭력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건보상기구(the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의해 지원받는 상담서비스는 성학대의 많은 피해생존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ACC의 상담사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지속적인 상담을 생존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들의 필요(Need)는 지속적인 상담으로 의뢰인이 혜택을 받는 ACC 정기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경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여행지급수당, 그들이 치료에 참가하는 동안의 어린이 보호, 심각한 빈곤의 경우 거주보호 등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피해자 지원(Victim Support)은 일반적인 지원서비스, 사고, 긴급 또는 범죄의 모든 피해자에게 24시간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반적 지원서비스이다. 피해자 지원은 모든 피해에 대응하며 그리고 이것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가를 제공해 주는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은 종종 전문기관의 위탁 서비스로 활동하고 또한 불특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 피해자들은 또한 생명라인, 청소년라인, 사마리탄(lifeline, Youthline and the Samaritans)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위기긴급전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또한 직접적으로 받거나 위탁기관에 의해 받을 수 있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안전 그룹(the Internet Safety Group)은 넷세이프 헬프라인(NetSafe Helpline)이라는 특정한 도움 전화를 온라인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체계

오스트리아 통계국의 여성안전통계(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omen's Safety Australia, 1996)에 의하면, 15.2%의 여성이 15세 이후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사회 조사에 참가한 6,300명의 여성 중 1.5%가 조사를 하기 전 12개월 내에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18~24세 여성은 2.5%가 성폭력을 경험해서 젊은 층의 여성이 성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성적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점은 세계적인 공통점이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장애인과 원주민들은 성폭력을 당한 위험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특히 시골에 있는 장애 여성들이 도시의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2005년 전국 범죄 및 안전실태 조사(National Crime and Safety Surveys 2005 of Australia)에 의하면 2005년에 18세 이상의 여성 중에서 조사할 당시 12개월 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0.3% 이었다. 약 72,000 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 했다. 이 수치는 1995년 도의 수치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오스트리아 여성 중 성폭력을 경험한 젊은 여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겪는 성폭력 후유증으로는 산부인과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 소화기 계통의 문제, 약물 중독, 우울증, 섭식장애, 자살 위험 등이 높았다.

피해자들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지역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언어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확립, 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 경비에 대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일인당 약 1,000달러가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일인당 소요되는 경비는 4,500달러로 추산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성폭력 피해 일인당 모든 치료비는 평균이 2,500달러이고 국가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억 3천만 달러로 추정한다(Mayhew, 2003).¹⁰⁾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사회중심 교육과 예방(Education and Prevention) 정책의 중요성

선진 각국의 성폭력정책에는 예방스펙트럼을 통한 규범 및 문화바꾸기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적인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전증대와 연결하여 발전되고 있다.

규범에 대해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폭력이 전형적이고 그 가능성이 매체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해 강화될 때 이것은 보다 잘 일어날 수 있으며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규범이 안전한 행동의 의지를 꺾고 건강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관계성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관련된 규범의 변화 없이는 성폭력 예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의 변화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접근법을 통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지역

10) Mayhew, P. (2003). Counting the Cost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No. 237

사회는 성폭력 예방을 원하며(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예방스펙트럼을 따라 개입(intervention)을 수행하고 발전 시킴으로 지역사회는 보다 통합적인 성폭력 예방 전략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위기수준별(1차-2차-3차 수준별) 및 필요대상들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들 대상으로는 재학아동, 청소년, 교사, 상담사, 이민자, 노동자, 비영리단체의 전문가, 지역사회 의료담당자, 경찰관 및 사법실무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피해 및 가해 양 영역 모두에 대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자원들을 공공화 시키고, 대상자별 접근가능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방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여러 그룹들과 그리고 자원봉사 대변자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2. 의료기관 중심의 다기관 협력체계와 성폭력검사관 제도

최근 각국의 성폭력 대응모델은 성폭력에 연관된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가장 통합적인 수준의 관리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하여 강간위기지원서비스(Rape Crisis Support Service)와 SAE(성폭력 검사 프로그램)을 조합시킨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치료 프로그램은 반드시 생존자들을 치료를 제공하면서 더 이상의 정신적 또는 의학적 상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치료를 위한 최고의 실천모델의 실행은 보건관리 제도의 모든 단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의료기관의 대응시스템에 중요한 변화를 필요로 하며, 특히 성폭력 검사관(SAE) 프로그램의 도입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미국 및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발전된 통합적 의료기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들은 연관 기관들 간의 협력전략, SAE(성폭력검사관)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구체적 내용, 가장 통합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프로그램과 SAE 프로그램의 결합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공해 준다. 피해자생존자, 피해자지원기관, 보건행정 및 형사사법실무기관 등의 광범위한 연대는 폭력의 생존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

3. 형사사법과의 연계

성공적인 성폭력예방정책은 지역사회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내실화됨과 동시에 지역사회내 사법집행기관 및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연결망 속에서만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가령, 의료기관 중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에 있어서 성폭력 검사관 프로그램은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고발했을 때 보다 나은 증거수집과 발전된 형사사법 성과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형사사법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과 결합되어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법 집행기관, 지역 변호사 사무실, 가족법원 직원들이 함께 받는 교차 훈련 등 서로의 다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각 시스템의 필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제 4 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성폭력범죄 현황

본 장에서는 공식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10년간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에서부터 검찰 처리 및 법원 선고 추이와 성폭력범죄와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다. 성폭력범죄는 범죄 고유의 특성상 숨은 범죄가 많아 공식통계자료를 통해 범죄발생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식통계자료는 성폭력범죄의 추이와 특성이 파악 가능한 유일한 전국적인 데이터이며,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사법기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리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을 살펴보고, 이어 제2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정리하려고 한다. 모든 분석에는 전체 범죄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한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 1 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 성폭력발생 공식적 보고현황

가. 발생 추이

성폭력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전체범죄의 최근 10년 동안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¹¹⁾ 또한 [그림 4-1]은 전반적인 변화추이 파악을 용이하게 하

11) 『범죄분석』에는 강도강간은 강도범죄로 분류 집계하고,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본 분석에서

기 위하여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모두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97년 1,588,613건에서 2004년 2,080,901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2006년 현재 1,829,211건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를 보면 1997년 3388.3에서 2006년 현재 3733.7로 약 10.2% 증가하였다.

〈표 4-1〉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단위: 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건수	1,588,613	1,765,887	1,732,522	1,867,882	1,985,980	1,977,665	2,004,329	2,080,901	1,893,896	1,829,211
범죄 발생비	3388.3	3757.9	3660.1	3893.3	4135.6	4100.5	4142.3	4283.1	3882.3	3733.7
강력 건수	42,729	49,975	59,367	68,475	70,018	67,777	75,446	74,685	76,005	171,365
범죄 발생비	91.1	106.3	125.4	142.7	145.8	140.9	155.8	153.9	155.8	349.7
성폭력 건수	7,120	7,886	8,830	10,189	10,495	9,435	10,365	11,105	11,757	13,573
범죄 발생비	15.1	16.7	18.6	21.1	21.8	19.6	21.4	22.9	24.1	27.7

주: 발생비: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반면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강력범죄는 42,729건에서 171,365건으로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 7,120건에서 13,573건으로 증가하였다. 발생비를 보면 강력범죄는 1997년 91.1에서 2005년 155.8로 71.0%가 증가하였고¹²⁾ 성폭력범죄는 1997년 15.1에서 2006년 27.7로 83.4% 증가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증가율은 전체 범죄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강력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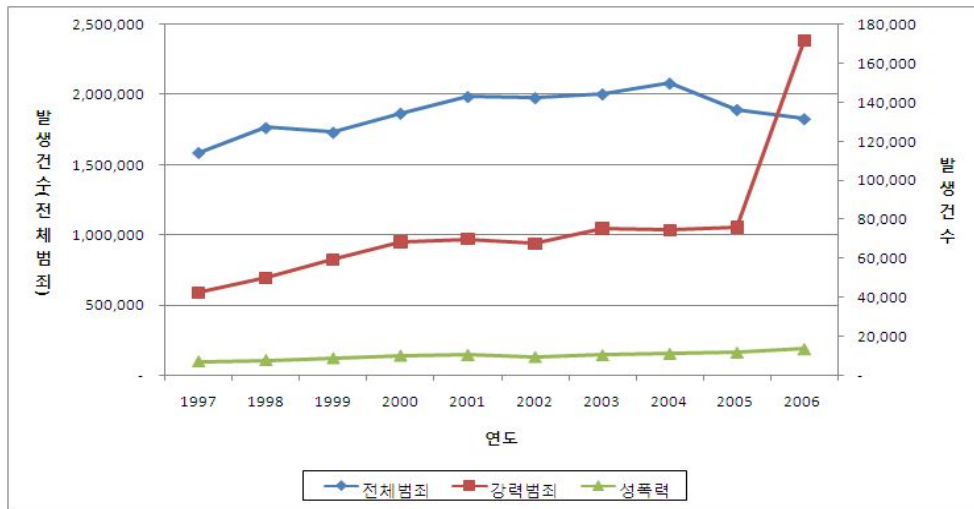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의 경우,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10,000건을 넘어섰다. 2002년 9,43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공식적인 성폭력 보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실제 성폭력사건이 증가한

제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발생실태에는 강도강간은 포함되지 않음.

12) 공식통계 집계에 따르면 2006년 강력범죄 합계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공식통계 집계 과정이나 범죄분석 발간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2005년까지의 증가율을 계산함.

것인지 아니면, 사법당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적발률 및 피해자들의 고소율이 높아진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림 4-1]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발생추이



나. 지역별 발생현황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약20~28%가 집중되어있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0~18%, 세 번째로는 ‘도시 이외’ 지역이나 1997년 11.4%에서 2006년 8.6%로 점차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0년 동안 전체범죄는 서울지역에서 평균 24.2%가 발생하였고, 경기도에서 평균 26.3%가 발생하였다.

이번에는 지역별 발생률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지역을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 외 지역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10년간의 발생률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그림 4-2]는 전체 범죄의 지역별 발생추이이다. ‘서울’과 ‘광역시’는 보합 내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그 외 지역’은 범죄발생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4-3]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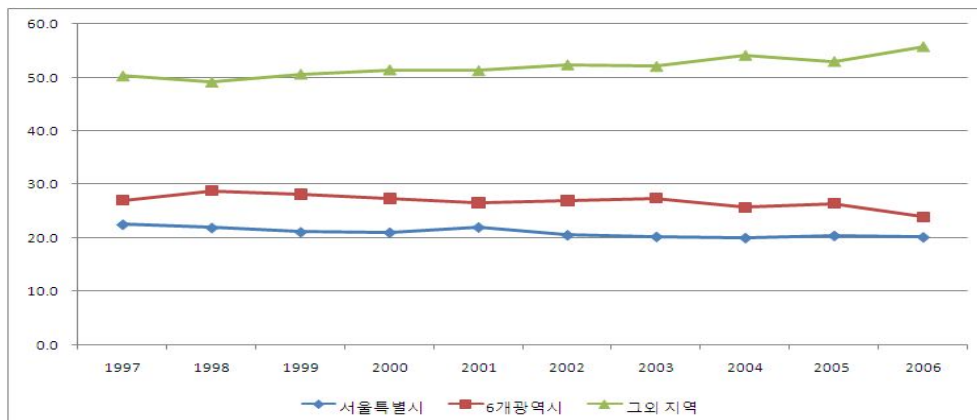
‘광역시’ 지역은 보합 수준이고 ‘그 외 지역’은 감소하다가 2006년에 증가한 반면, ‘서울’지역의 발생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성폭력범죄의 지역별 발생현황(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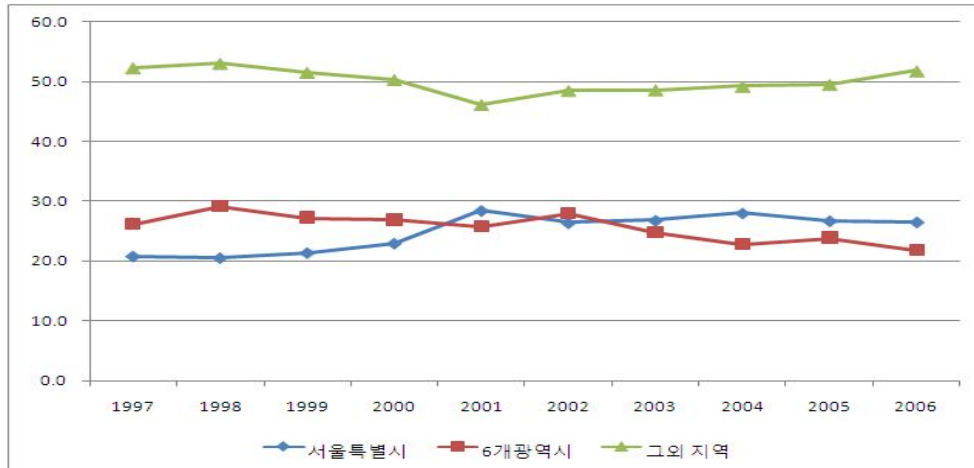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서울	20.8	20.5	21.3	22.9	28.4	26.4	26.8	28.0	26.7	26.5
부산	6.8	7.4	7.8	7.6	7.6	6.3	5.9	7.3	5.5	6.6
대구	4.6	6.7	4.1	4.5	4.0	6.3	3.9	3.9	4.4	3.2
인천	5.7	4.9	5.7	5.3	5.3	5.5	5.6	5.2	6.0	6.3
광주	3.5	4.1	3.7	3.8	3.6	4.4	4.1	2.1	3.4	1.9
대전	2.8	2.9	3.2	2.7	3.0	3.1	2.7	1.9	2.3	1.8
울산	2.8	3.0	2.7	2.9	2.1	2.3	2.4	2.2	2.2	2.1
강원도	1.7	1.8	2.1	2.0	2.1	1.6	1.5	1.6	1.6	1.6
경기도	14.0	12.9	11.4	11.2	10.4	14.8	15.9	15.7	18.2	16.9
경상도	8.7	7.7	7.6	8.2	7.4	7.4	6.9	7.3	7.2	7.2
전라도	5.0	5.1	5.2	4.5	3.8	4.0	4.3	4.3	3.8	4.0
충청도	2.5	3.1	3.0	3.2	3.0	4.6	4.4	3.6	3.7	5.7
제주도	1.3	0.9	1.2	1.2	1.0	1.2	1.3	1.8	1.6	1.3
기타도시	7.7	9.0	8.8	7.1	6.4	6.8	6.9	6.6	6.6	6.4
도시이외	11.4	12.6	12.2	13.0	12.0	8.1	7.3	8.3	6.8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2] 전체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그림 4-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지역 분포(1997-2006)



다. 범죄발생시간

이번에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표 4-3>에는 하루 24시간을 새벽, 아침, 낮, 저녁, 밤, 미상의 여섯 시간대로 나누어 10년간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는 ‘밤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33~4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오전’으로 18~21%대이며,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낮시간’으로 12~15%대이다. 또한 10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보면 ‘새벽’과 ‘아침시간’ 발생률이 다소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1997년 ‘새벽’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8.9%였으나 2006년에는 13.7%가 되었고, 아침 발생률 역시 2.5%에서 7.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미상의 비율이 낮아졌다는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1997년에는 발생시간 통계의 무려 1/4이 미상으로 처리되었고, 1999년에는 30%대에 이르렀지만 2004년 이후 10%대로 낮아지면서 다른 범주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지난 10년 동안의 발생시간을 좀더 명료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4-4]에는 5개 시간대별 10년 평균치를 막대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난 10년간 전체범죄의 40.6%는 밤에 발생하였고, 26.7%는 ‘낮’에 발생하였으며,

7.3%는 ‘저녁’에, 5.5%는 ‘새벽’에, 3.9%는 ‘아침’에 발생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38.5%는 ‘밤’에 발생하였으며, 20.3%는 ‘낮’에, 11.0%는 ‘새벽’에, 5.4%는 ‘저녁’에, 4.4%는 ‘아침’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상의 특성은 다른 범죄와 달리 ‘새벽시간’의 발생률이 높고, ‘낮시간’ 발생률이 낮다는 것으로, 특히 ‘새벽시간’에는 전체범죄 발생율과 비교할 때 약 2배 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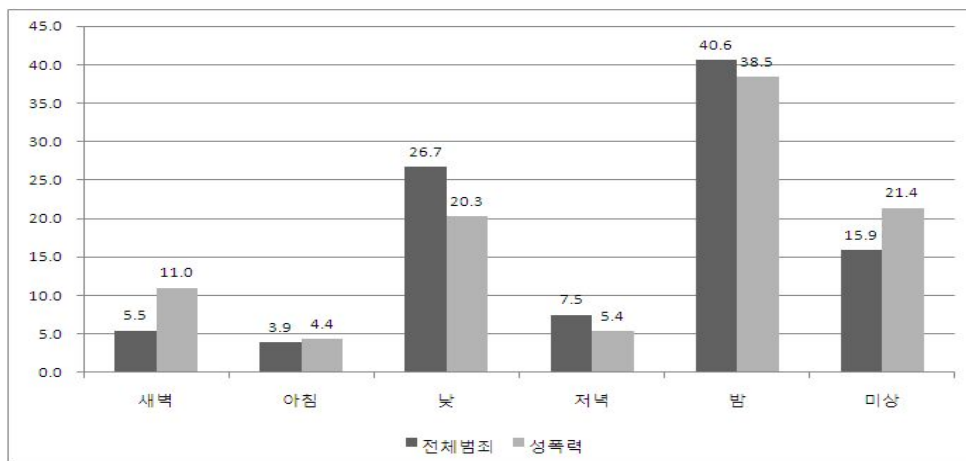
〈표 4-3〉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 현황(1997-2006)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새벽	8.9	8.2	9.8	11.0	10.8	10.7	10.2	12.6	13.9	13.7
아침	2.5	2.4	2.5	2.9	3.1	5.2	5.4	6.1	6.4	7.1
오전	18.8	20.1	19.1	20.5	19.1	20.5	20.1	21.5	21.2	21.7
오후	5.3	6.8	6.1	7.2	6.5	6.4	6.2	6.2	5.7	6.2
낮	13.5	13.3	13.0	13.3	12.6	14.1	13.9	15.3	15.5	15.5
저녁	4.9	4.9	4.8	4.3	4.1	5.2	5.5	6.5	6.1	7.8
밤	39.9	40.3	41.6	39.2	39.4	32.9	33.3	39.1	40.2	38.9
미상	25.0	24.1	31.0	22.1	23.4	25.5	25.4	14.2	12.2	1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새벽: 4시~6:59/ 아침: 7시~8:59/ 낮:9시~17:59/ 저녁: 18시~19:59/ 밤: 20시~3:59

[그림 4-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1997-2006 평균)



라. 범죄발생장소

<표 4-4>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집안, 노상, 상점 및 시장,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사무실, 교통수단, 공사장·창고·공지, 야외, 기타의 아홉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생비율을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발생장소는 ‘집안’으로 23~28% 수준이며, 두 번째로는 ‘숙박 및 유흥업소’, 세 번째는 ‘노상’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옥외보다는 옥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집안’, ‘노상’, ‘숙박/유흥업소’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사장/창고/공지’와 ‘야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교통수단’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지하철, 택시, 버스 등 교통수단 내에서의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자가용 보급률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는 3.5%였던 것이 2006년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4>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현황(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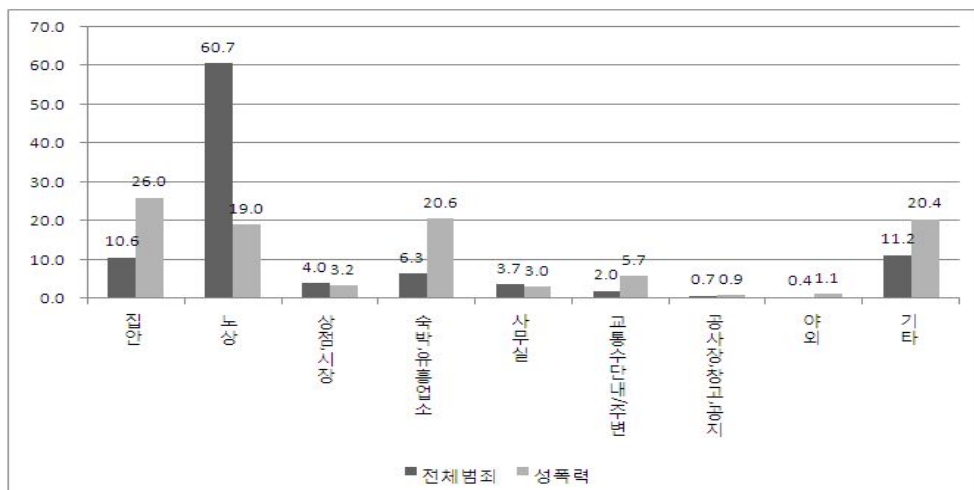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집안	28.2	23.4	25.9	25.2	23.0	27.2	25.4	26.5	27.1	27.7
노상	15.9	38.4	15.7	17.5	18.8	16.7	16.9	16.3	17.	16.7
상점, 시장	2.4	7.3	3.7	3.1	3.5	2.8	3.3	2.3	2.2	1.9
숙박/유흥업소	21.9	8.2	22.3	21.9	23.1	20.1	18.4	23.3	23.5	23.6
사무실	3.3	3.4	3.2	3.2	3.6	2.6	2.6	2.8	2.7	2.6
교통수단	3.5	4.6	3.3	3.5	3.3	7.3	8.9	7.7	6.8	8.2
공사장, 창고, 공지	1.8	0.6	1.2	1.1	1.1	1.0	1.0	0.5	0.5	0.5
야외	2.6	0.5	1.9	1.4	1.4	1.1	1.1	0.7	0.4	0.3
기타	20.4	13.5	22.9	23.0	22.3	21.2	22.6	19.8	19.6	1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학교, 군부대, 구급시설 등임.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를 10년간의 평균치로 그래프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4-5]와 같다. 10년 동안 검거된 전체범죄 중에서 무려 60.7%는 ‘노상’에서 발생한 반면, 검거된 전체 성폭력범죄의 26.0%는 ‘집안’에서 발생했고, 20.6%는 ‘숙박/유흥업소’에서, 19.0%는 ‘노상’에서 발생하였다. 공식통계의 특성상 강도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은 것은 면식범, 특히 가까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범죄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장소상 나타난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은 집안이나 숙박/유흥업소 등 옥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노상, 즉 옥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림 4-5]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1997-2006 평균)



2. 검찰 처리 현황

가. 구속률

<표 4-5>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속률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범죄의 구속률은 2~5%, 강력범죄 구속률은 4~18%, 성폭

력범죄 구속률은 32~59%로 성폭력범죄의 구속률이 가장 높아, 강력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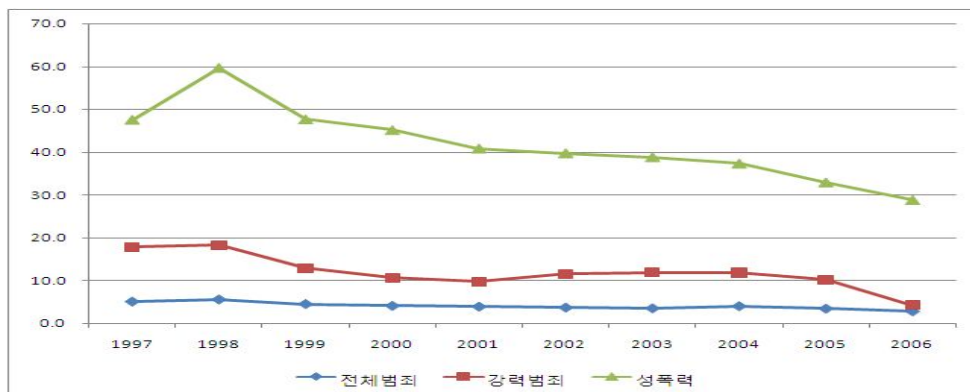
[그림 4-6]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구속률이 크게 변화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 범죄유형 모두에서 구속률은 상당 수준 낮아졌는데 전체범죄는 1997년 5.1%에서 2006년 2.9%로 낮아졌으며 강력범죄는 17.8%에서 4.3%로 떨어졌다. 이 같은 경향은 성폭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여서 1997년 절반정도를 구속 수사하였던 반면(47.5%), 2007년에는 1/4가량만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28.8%)

〈표 4-5〉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율(1997-2006)

(단위: %)

년도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1997	101,446 (5.1)	10,221 (17.8)	3,101 (47.5)
1998	122,777 (5.6)	12,125 (18.2)	4,692 (59.6)
1999	105,202 (4.6)	10,562 (12.8)	4,742 (47.6)
2000	92,747 (4.1)	9,250 (10.6)	4,591 (45.1)
2001	92,209 (4.0)	8,416 (9.8)	4,091 (40.8)
2002	86,255 (3.8)	9,410 (11.5)	3,559 (39.7)
2003	82,443 (3.6)	10,620 (11.9)	3,804 (38.8)
2004	73,113 (4.1)	7,802 (11.8)	2,674 (37.3)
2005	50,593 (3.5)	6,138 (10.2)	2,218 (32.9)
2006	39,648 (2.9)	6,256 (4.3)	2,285 (28.8)

[그림 4-6]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구속률(1997-2006)



나. 기소율과 불기소 세부사항

1) 기소율

기소율 역시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비교하여 보았다(표 4-6 참조). 구속율과 달리 기소율은 전체범죄, 성폭력범죄, 강력범죄의 순으로 높지만, 각 범죄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약40~6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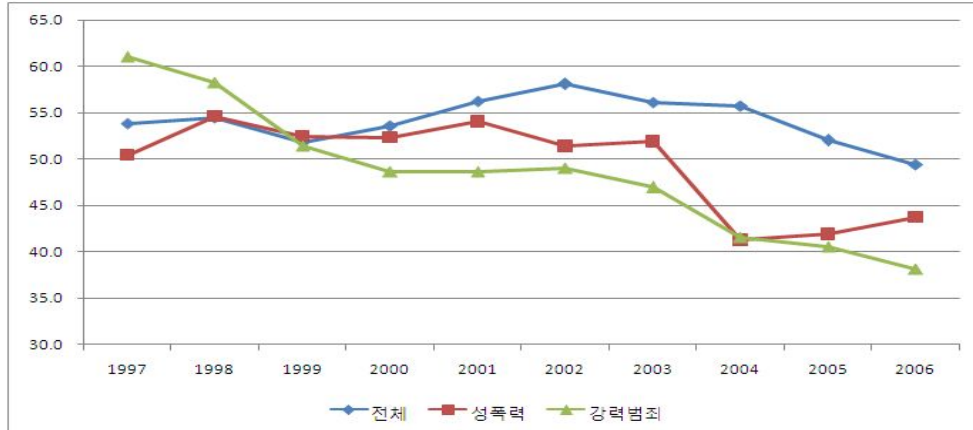
그러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4-7 참조). 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7년 50.5%에서 2003년 51.9%까지 꾸준히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 이후 전년도에 비해 10%가량 감소하여 41.3%가 되었고 2006년에는 43.7%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범죄의 기소율은 1997년 53.8%에서 2006년에는 49.4%로 변화하여 보합 내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강력범죄는 기소율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61.1%에서 38.2%로 변화하였다.

〈표 4-6〉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범죄의 기소율(1997-2006)

(단위: %)

연도	전체범죄	강력범죄	성폭력
1997	53.8	61.1	50.5
1998	54.5	58.2	54.6
1999	51.8	51.4	52.5
2000	53.6	48.6	52.3
2001	56.3	48.6	54.0
2002	58.1	49.1	51.4
2003	56.1	47.0	51.9
2004	55.7	41.6	41.3
2005	52.0	40.6	41.9
2006	49.4	38.2	43.7

[그림 4-7]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전체 범죄의 기소율 추이(1997-2006)



2) 불기소 세부사항

이번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알아보았다. 불기소 세부사항으로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 4-7>의 성폭력범죄 불기소 세부사항을 보면 ‘공소권 없음’의 경우가 가장 많고 ‘혐의 없음’이 그 다음이며, ‘기소중지’가 세 번째 순위를 나타내며,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그림 4-8]에는 10년간의 각 범주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전체범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 비율이 28.3%, ‘기소유예’ 비율이 29.7%, ‘혐의 없음’ 비율이 26.23%, ‘기소중지’가 20.0%인데 비해, 성폭력범죄는 ‘공소권 없음’ 비율이 무려 65.0%에 이르며 ‘혐의 없음’이 17.6%, ‘기소중지’가 8.6%이고 ‘기소유예’는 6.2%에 불과하다.

이같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소권 없음’ 비율과 ‘혐의 없음’ 비율이 높고 ‘기소유예’ 비율이 낮은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은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단순 추행이나 단순 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에 의해 고소취하가 가능하고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벌이 어렵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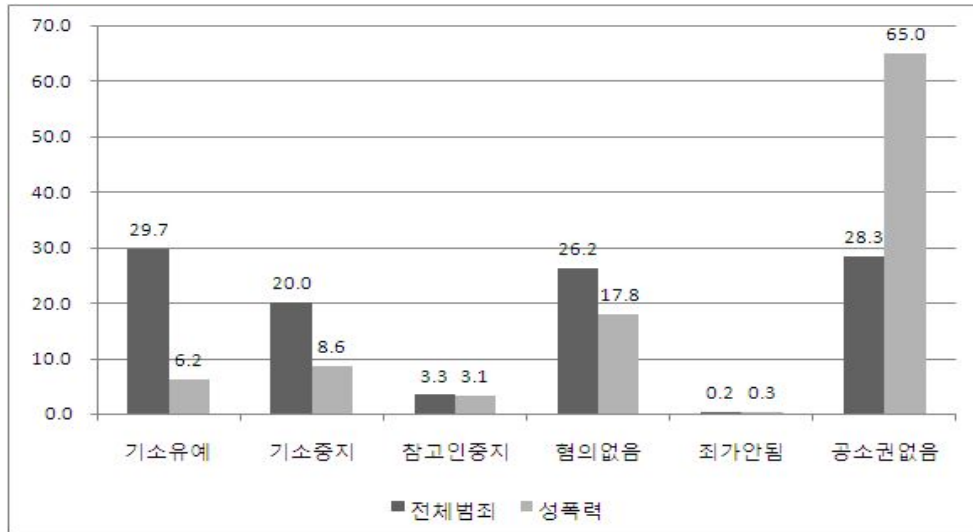
의 구성과 범죄입증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범죄는 현행범이나 의사의 진단서 첨부이 가능한 강간이 아닌 경우 특히 강제추행이나 신고를 늦게 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해도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표 4-7〉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단위: %)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불기소계
1997	3.9	13.0	3.4	15.9	0.2	63.6	3,150
1998	5.0	8.9	4.1	16.5	0.2	59.5	3,799
1999	7.1	11.1	5.3	17.7	0.3	58.5	4,490
2000	6.8	10.4	4.1	17.4	0.3	61.0	4,529
2001	6.9	8.6	3.2	11.5	0.7	62.1	4,252
2002	7.1	8.4	2.4	16.7	0.5	65.0	4,079
2003	6.8	8.0	2.6	17.5	0.3	64.9	4,382
2004	5.2	6.2	2.3	21.6	0.1	73.1	4,508
2005	6.4	5.9	2.1	21.6	0.2	71.5	4,508
2006	7.0	5.6	1.8	21.9	0.3	70.8	5,076

[그림 4-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불기소 세부사항(1997-2006 평균)



3. 법원 선고현황

이하에서는 검찰 처리내역에 이어 법원선고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1심 선고내용, 집행유예율,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¹³⁾

가. 1심 선고내용

<표 4-8>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지난 10년간 1심 선고내용 추이를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유기징역/금고’의 비율이 높고, 재산형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1996년 39.6%에서 2000년에는 49.8%, 2003년에는 50.4%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40.7%로 집계되었다. 유기징역은 39.6%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2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5년 현재 31.4%이다. 즉 성폭력범죄자들은 1심에서 약 2/5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 약 1/3가량이 유기징역 선고를 받는다.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1심선고상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9]와 [그림 4-10]을 제시하였다. 전체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나타난 1심선고상의 변화특성은 ‘집행유예’의 대폭 감소와 ‘재산형’의 대폭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유기징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체범죄의 ‘집행유예’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가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성폭력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이를 입증하듯 집행유예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성범죄자는 아니더라도 특정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나 누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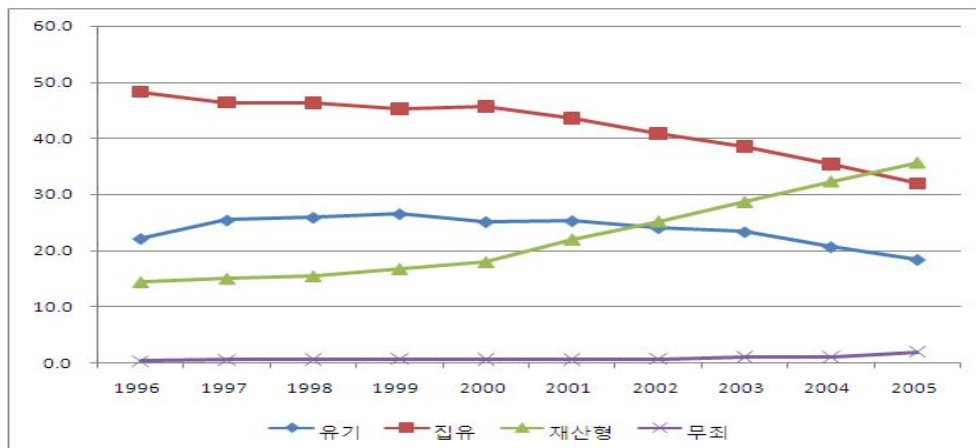
13) 범죄발생과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범죄분석』의 경우 2006년도 통계자료까지를 이용하였으나, 법원선고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범죄백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시점까지 2005년도까지의 통계만이 제공되고 있어, 선고현황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추세를 분석하였음.

〈표 4-8〉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내용(199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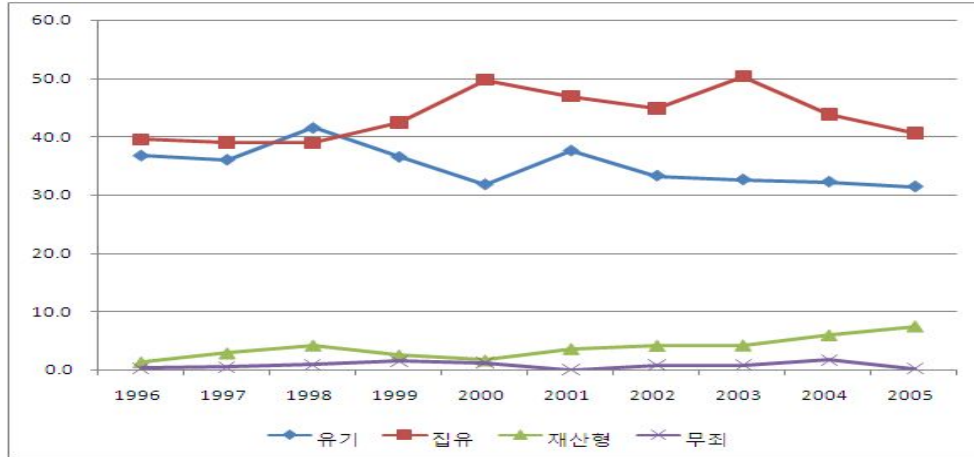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형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기	0.1	0.1	0.1	0.0	0.0	0.2	0.1	0.2	0.1	0.1
유기징역	36.8	36.1	41.6	36.6	31.8	37.7	33.3	32.6	32.3	31.4
집행유예	39.6	39.0	39.0	42.4	49.8	47.0	44.9	50.4	43.9	40.7
부정기	1.7	2.0	1.1	1.2	1.0	-	-	-	-	0.0
재산형	1.3	2.9	4.2	2.5	1.6	3.6	4.2	4.2	6.0	7.5
무죄	0.4	0.6	0.9	1.5	1.2	0.0	0.9	0.8	1.7	0.3
선고유예	-	-	-	-	-	0.0	0.0	0.2	0.6	1.5
공소기각	-	-	-	-	-	6.4	0.1	7.4	11.0	11.6
소년부송치	9.2	8.6	7.4	2.3	1.7	1.9	0.1	1.8	0.8	1.3
기타	15.8	10.9	5.8	13.4	12.8	2.6	16.6	2.4	3.6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9] 전체범죄의 1심선고 추이(1996-2005)



[그림 4-10] 성폭력범죄의 1심 선고 추이(1996-2005)



나. 집행유예율

이번에는 집행유예율의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4-9>을 제시하였다. 집행유예율이란 1심 선고내용 중에서 무죄나 재산형을 제외하고 유기징역 선고인원 대(對) 집행유예인원의 비율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0% 초반 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 60%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40%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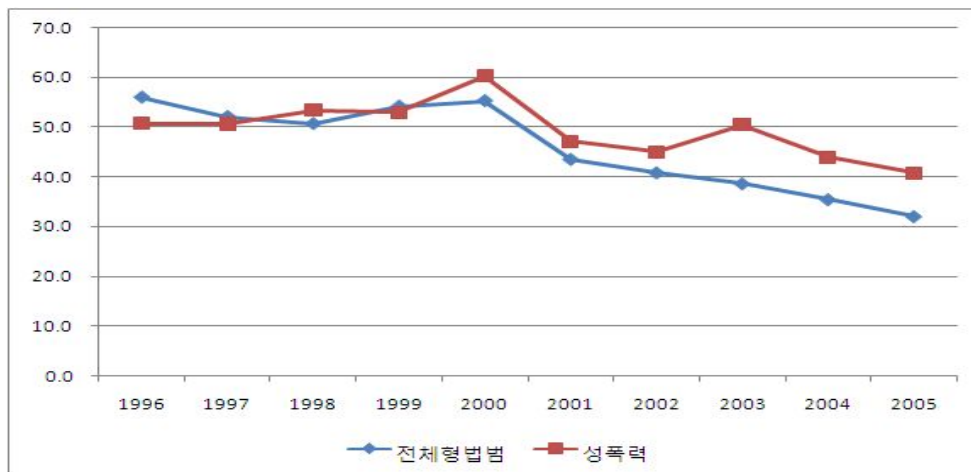
[그림 4-11]을 보면 전체범죄와 성폭력 범죄 모두 집행유예율이 지난 10년간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약 10% 감소하였으나 특히 전체 범죄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거의 20%에 달한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성폭력범죄와 전체범죄 모두 2001년이다. 단지 199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전체범죄의 집행유예율이 성폭력범죄보다 높지만, 2002년부터는 역전되어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이 전체범죄보다 높아지고 있다.

〈표 4-9〉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1996-2005)

(단위: %)

년도	유기징역선고인원	집행유예인원	집행유예율
1996	2,635	1,337	50.7
1997	2,586	1,309	50.6
1998	2,710	1,388	53.3
1999	1,894	1,002	52.9
2000	1,873	1,129	60.2
2001	2,053	965	47.0
2002	1,997	896	44.9
2003	1,967	991	50.4
2004	1,795	788	43.9
2005	1,830	744	40.7

[그림 4-11] 전체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 추이(1996-2005)



제 2 절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본 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해자 특성으로는 연령, 직업, 교육수준, 혼인관계, 생활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전과 및 재범특성과 같은 범죄경력 특성, 그리고 범죄동기를 살펴보았다. 피해자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죄공식통계에서 역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 때문에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도 범죄공식통계 자료의 한계상 피해자 특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초정보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포함된 변수의 일부는 미상이나 기타 항목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1. 가해자 특성

가. 가해자 연령

<표 4-10>에는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범행당시 연령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의 7개 범주로 나누어 10년간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성폭력범죄는 20대와 30대 가해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이전의 순이다.

지난 10년간 나타난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변화는 바로 평균연령의 증가, 즉 범죄자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전체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연령의 증가와 신체적 건강의 향상은 40대 이후 범죄자들이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폭력범죄 역시 성공가능성을 높여주었고, 이같은 현상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인 변화추세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범죄자 연령은 '10대'와 '20대'는 감소하고, '30대'는 보합, '40대 이후'는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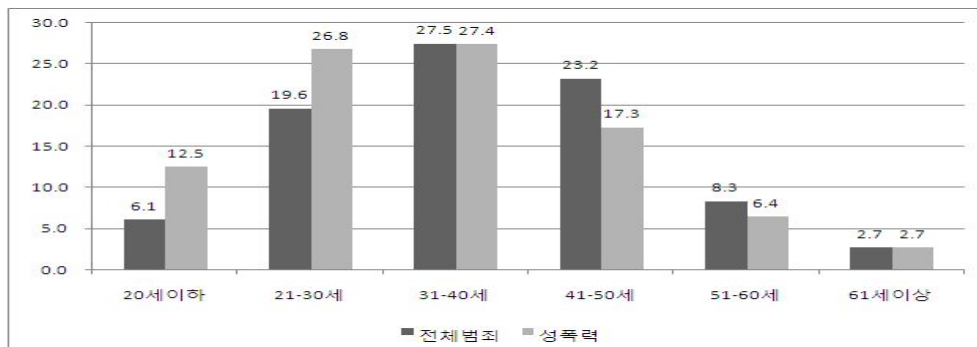
〈표 4-10〉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세이하	15.2	11.2	16.3	15.5	13.8	12.4	10.8	9.9	9.6	10.3
21-30세	33.5	32.4	30.2	27.7	25.7	26.7	24.9	23.1	22.0	22.1
31-40세	25.6	29.0	26.1	26.5	28.2	27.4	27.8	27.3	28.3	28.1
41-50세	12.1	13.3	13.1	14.5	17.5	17.8	19.7	20.8	22.2	22.0
51-60세	4.7	5.3	5.2	5.7	5.9	6.1	6.8	7.5	8.3	8.4
61세이상	1.8	1.9	2.3	2.4	2.6	2.6	3.0	2.9	3.3	4.1
미상	7.1	6.8	6.8	7.7	6.3	7.0	7.1	8.6	6.3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 같은 사실은 [그림 4-12]의 그래프에서 보다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을 각 연령대별로 평균을 구하여 보면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성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에 비해 가해자 연령이 훨씬 낮다. 10년간 검거된 성폭력범죄자들의 26.8%가 ‘20대’였고, ‘10대’도 12.5%로 ‘1, 20대’가 약 4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범죄 25.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반면 ‘40대’는 17.3%, ‘50대’는 6.4%로 전체 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 ‘30대’는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가해자 비율이 각각 27.5%와 27.4%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 비해 폭력범죄의 가해자가 나이가 어린 경향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성적 폭력이라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연령(1997-2006 평균)



나. 가해자 성별

가해자 연령에 이어 이번에는 가해자 성별분포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는 범죄 특성상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낮아 0.3~0.7%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여성범죄자 비율이 1997년 0.3%에서 2006년 0.6%로 변화하였으나 비율의 절대수치가 워낙 적은 데다 미상 비율이 달라 증가추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표 4-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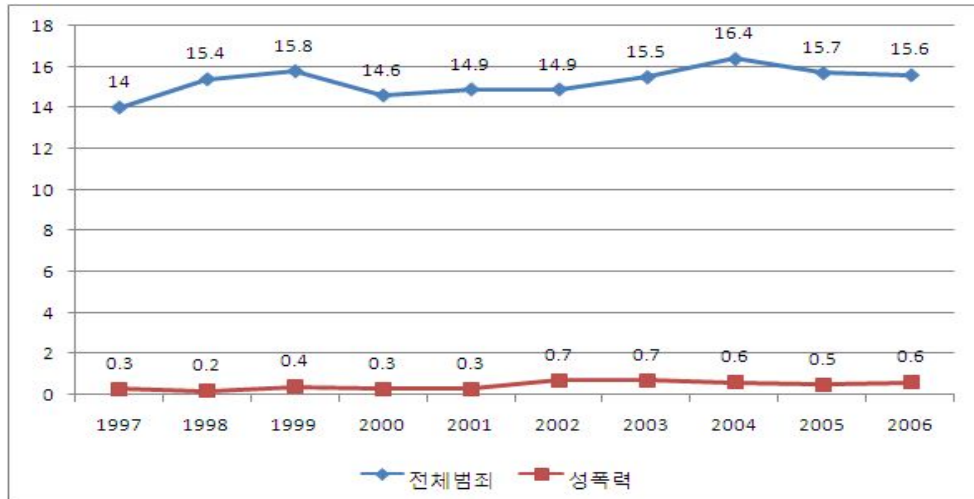
이 같은 추이는 [그림 4-13]의 그래프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진다. 성폭력범죄자는 다른 범죄에 비해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고 그 비율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전체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약1.6%정도 여성범죄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11〉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성별(1997-2006)

(단위: %)

	남	여	미상	계
1997	97.1	0.3	2.6	100.0
1998	97.0	0.2	2.8	100.0
1999	96.4	0.3	3.3	100.0
2000	96.3	0.3	3.4	100.0
2001	96.6	0.4	3.0	100.0
2002	95.4	0.7	3.9	100.0
2003	95.1	0.7	4.2	100.0
2004	95.4	0.6	4.0	100.0
2005	96.0	0.5	3.6	100.0
2006	96.7	0.6	2.6	100.0

[그림 4-1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가해자 비율(1997-2006)



다. 가해자 교육수준

세 번째로 분석할 가해자 특성은 교육수준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은 ‘고졸자’가 가장 많아 34~4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학력집단은 ‘대졸자’로 12~22%, 세 번째로는 ‘중졸자’로 11~1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수준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범죄자들의 교육수준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졸 이하’의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대졸 이상자’의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까지는 ‘중학교 졸업자’ 비율이 ‘대학교 졸업자’ 보다 많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전되어 ‘대학교 졸업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미상비율이 해마다 일정치 않아 일관된 경향을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표 4-12〉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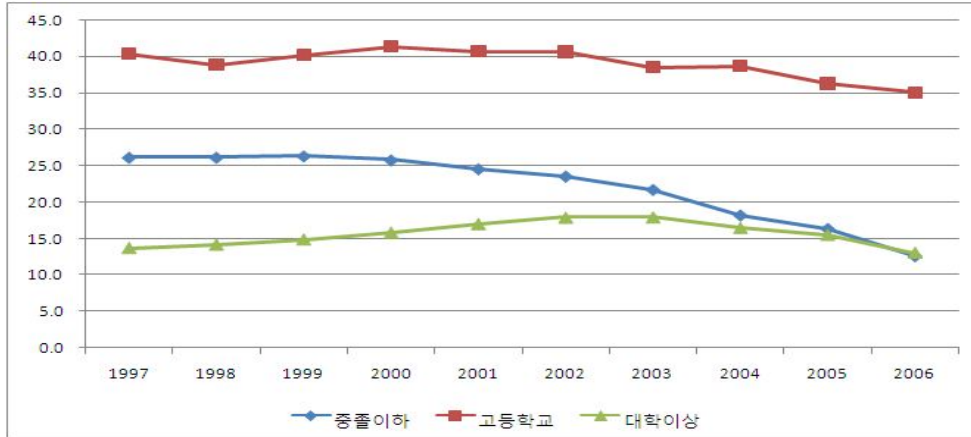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취학	1.7	1.6	1.7	1.7	1.5	1.4	1.5	1.2	0.9	0.8
초등학교	12.0	11.2	11.6	11.1	11.1	10.4	9.7	6.4	7.9	5.8
중학교	18.8	17.9	17.0	17.1	15.3	16.1	14.9	11.9	11.6	11.2
고등학교	41.4	40.9	42.4	40.6	40.9	40.8	39.4	36.4	36.4	34.6
대학	12.2	14.0	14.5	16.4	19.5	19.7	22.5	21.7	20.9	20.0
대학원	0.5	0.5	0.8	0.9	1.1	1.0	1.3	1.1	1.1	1.0
기타	1.0	0.7	0.9	1.3	1.0	0.9	0.7	1.1	0.4	1.0
미상	12.2	13.7	11.1	10.8	9.7	9.6	10.1	18.5	20.8	2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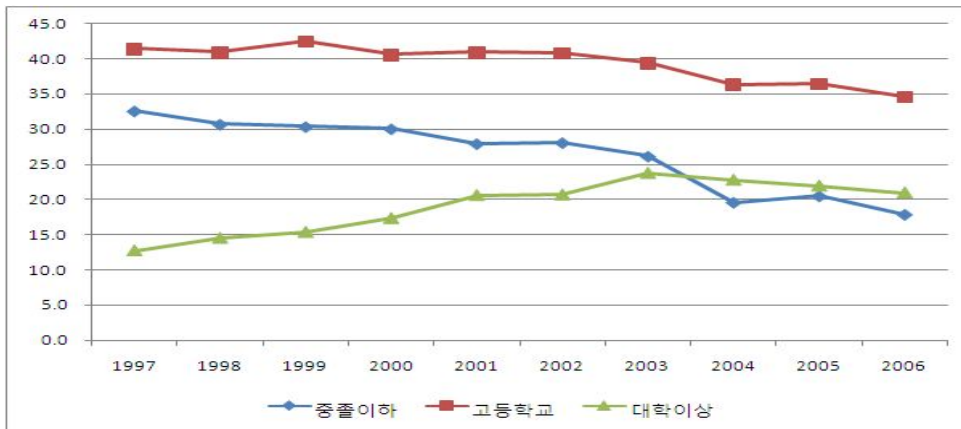
위의 표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교육수준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추세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 4-14]와 [그림 4-15]에는 고졸, 중졸, 대학이상 졸업자 범주만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의 변화추세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나타난 전체범죄 가해자와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교육수준 추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과 ‘대학교이상 졸업자’ 비율의 변화양상에 있다. 전체범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난 10년 동안 38-40%선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고, ‘대학교이상 졸업자’는 보합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커서 1997년 41.4%에서 2006년에는 34.6%로 약7% 낮아졌고, 이와 동시에 ‘대학교 졸업자’ 비율은 크게 증가하여 1997년 12.2%에서 2006년에는 20.0%로 약8% 늘어났다.

따라서 전체범죄의 가해자들과 비교할 때 성폭력범죄자들은 ‘중학교 졸업자의 급격한 감소’, ‘고등학교 졸업자의 완만한 감소’와 더불어 ‘대학교 이상 졸업자 급속한 증가’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결국 성폭력범죄자들의 학력수준의 향상 속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전체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그림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교육수준(1997-2006)



라. 가해자 직업

가해자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바로 직업이다. 가장 많은 직업군은 ‘미취업’으로 전체 모집단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업군은 ‘판매직’으로 16~20%이며, 세 번째는 ‘생산직’으로 12~18%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7년 이후 2006년에 이를 때까지 직업분포 면에서는 소수 직업의 소폭 증감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에는 앞서 살펴본 표의 8개 직업을 6개의 직업으로 묶어 좀더 단순화하고 10년간의 평균 비율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이 그래프를 통해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직업분포의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전체범죄는 지난 10년간 검거된 사건 중에서 가해자가 ‘미취업’이 22.2%, ‘판매서비스직’이 26.2%, ‘농어업/생산직’이 16.7%, ‘사무직’이 12.5%, ‘전문/행정관리직’이 5.6%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미취업’인 경우가 33.3%로 1/3에 이르고, ‘판매/서비스직’이 23.5%, ‘농업/생산직’이 17.5%, ‘사무직’이 13.0%, ‘전문/행정관리직’이 4.1%이다. 먼저 전체 범죄자의 경우에는 ‘판매직’과 ‘미취업자’ 비율이 유사한 비율로 가장 많고, ‘생산직’과 ‘사무직’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미취업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직’, ‘생산직’, ‘사무직’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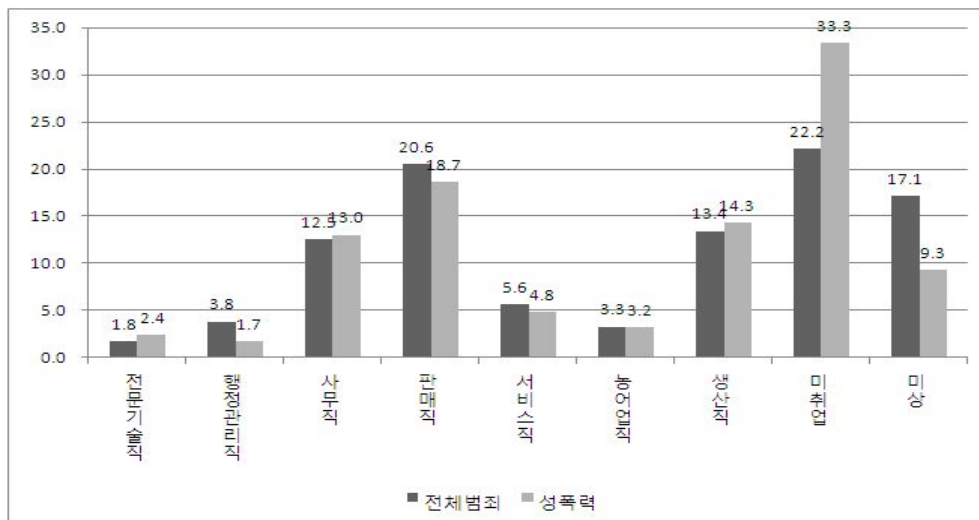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자는 평균연령이 낮아 미취업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특성은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결국 재범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 방안을 마련할 때 특히 직업유지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출소 후에도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4-13〉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문기술직	2.8	2.4	1.9	2.0	2.3	2.2	2.3	2.5	2.7	3.0
행정관리직	1.3	1.3	1.3	1.3	1.6	1.4	1.4	2.2	2.8	2.8
사무직	11.4	9.5	9.2	10.7	12.4	12.5	12.5	13.0	14.0	14.8
판매직	19.5	21.0	18.7	19.1	16.8	20.5	21.1	16.4	16.5	17.0
서비스직	5.1	6.0	5.0	5.0	4.4	3.7	4.5	4.9	4.7	4.7
농어업직	3.4	4.2	3.5	3.5	2.7	2.5	2.3	5.5	2.6	2.4
생산직	18.7	14.0	13.7	13.7	13.4	14.1	14.6	14.0	13.9	12.9
미취업	28.5	30.7	40.5	35.1	34.2	32.5	31.6	31.9	33.7	34.3
미상	9.2	10.9	6.0	9.5	8.5	9.7	9.8	12.6	9.0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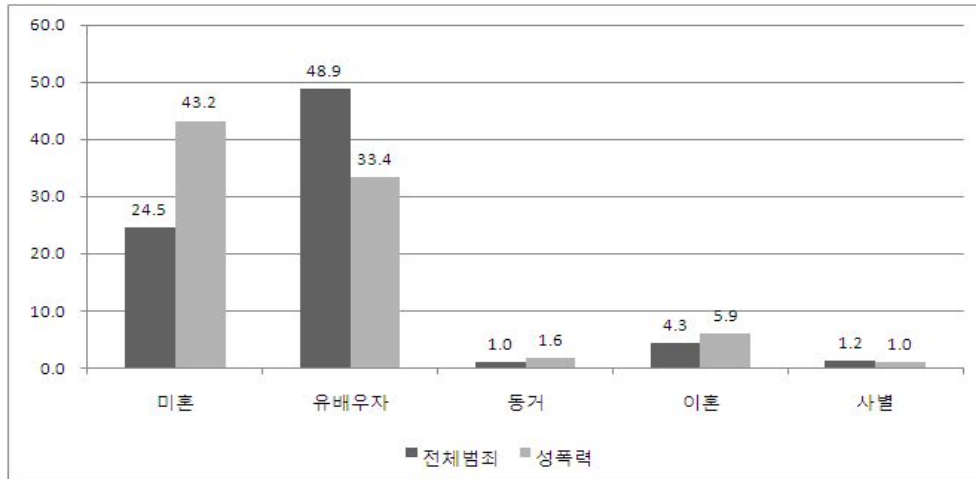
[그림 4-16]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직업(1997-2006 평균)



마. 가해자 혼인관계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혼인관계 추이를 제시하면 <표 4-14>와 같다. 먼저 혼인유무만을 살펴보면, 혼인한 경우가 51~60%, 미혼인 경우가 29~48%로 결혼, 동거 등 혼인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혼인관계(1997-2006 평균)



바. 가해자의 생활수준

이번에는 <표 4-15>를 통해 가해자들의 생활수준을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자들은 생활수준이 하층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층, 상층의 순이다. 그러나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다소 변화가 보이는데 생활수준이 하류인 경우 60%대에서 2004년 이후부터 50%대로 감소한 반면, 중류인 경우는 24%대에서 26%대로 다소 상승하였다.

<표 4-15>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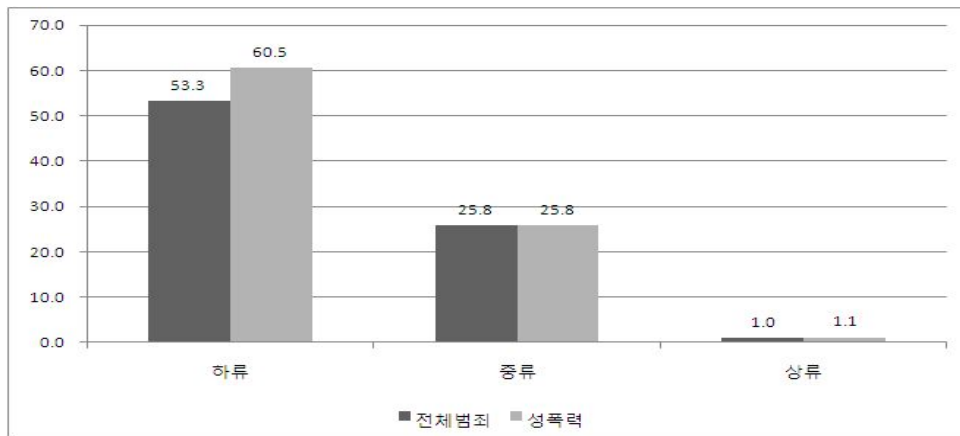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하류	64.0	63.6	65.1	63.5	63.5	63.2	64.7	54.5	53.1	50.2
중류	24.4	24.5	24.4	25.6	27.2	26.7	25.8	26.6	26.3	26.8
상류	1.3	0.9	0.9	1.1	1.0	1.0	1.1	1.3	1.1	1.1
미상	10.3	11.0	9.7	9.8	8.3	1.1	8.3	17.6	19.5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18]에는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가해자들의 생활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지난 10년 동안 검거된 전체 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들의 생활수준 평균치

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여 비교해보았다. 10년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에서 53.3%는 ‘하류’, 25.8%는 ‘중류’, 1.0%는 생활수준이 상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60.5%는 ‘하류’, 25.8%는 ‘중류’, 1.1%는 ‘상류층’이다. 즉 성폭력범죄자들은 전체 범죄자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4-18]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가해자 생활수준(1997-2006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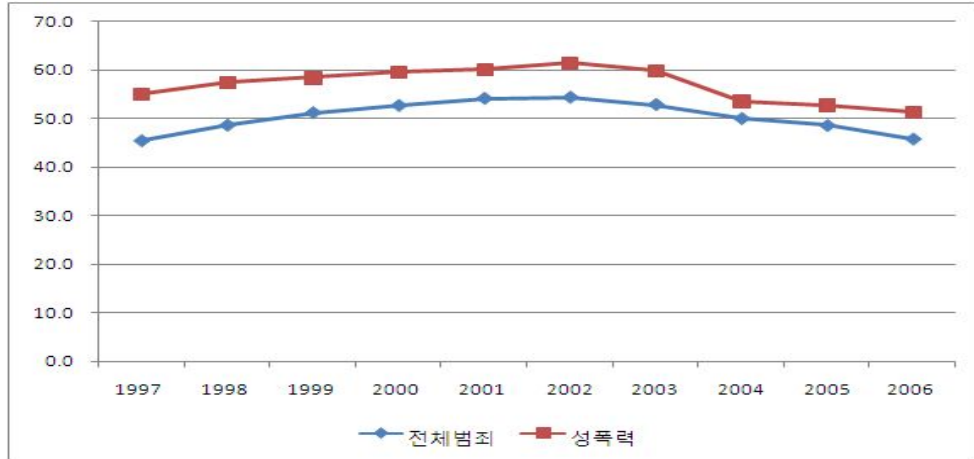


사. 가해자 전과: 전회처분 상황

이번에는 가해자의 전과, 즉 전회처분 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과를 초범과 재범으로 나누고, 다시 재범을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석·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집행정료, 감호소출소로 세분화하여 그 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표 4-16>의 전체범죄 가해자 전회처분상황을 보면 ‘초범’비율은 지난 10년간 0.0~32%이고, ‘재범’비율은 51~61%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초범에 비해 재범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초범비율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0.1~1.1%로 매우 낮다가, 2004년 이후 30%대로 상승하였다는 점으로 이것은 미상비율이 2003년까지 40%에서 2004년 이후 10%대로 감소하였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과가 파악되지 않은 가해자 중 많은 수가 실제로는 초범

[그림 4-19]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재범자비율 추이(1997-2006)



아.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

<표 4-17>은 재범자의 재범기간과 재범종류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재범자 종류를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종범죄 전과(10%대)보다는 이종범죄 전과(80%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아도 2, 3% 정도의 증감만 나타날 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들의 약 50%가 재범자이고 이들 중에서 약 14%만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던 ‘동종재범자’이고, 나머지 약 86%는 성폭력범죄 이외 범죄를 저질렀던 ‘이종재범자’임을 알 수 있다. 재범기간 면에서는 동종재범과 이종재범 모두 3년이 초과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이내와 2년 이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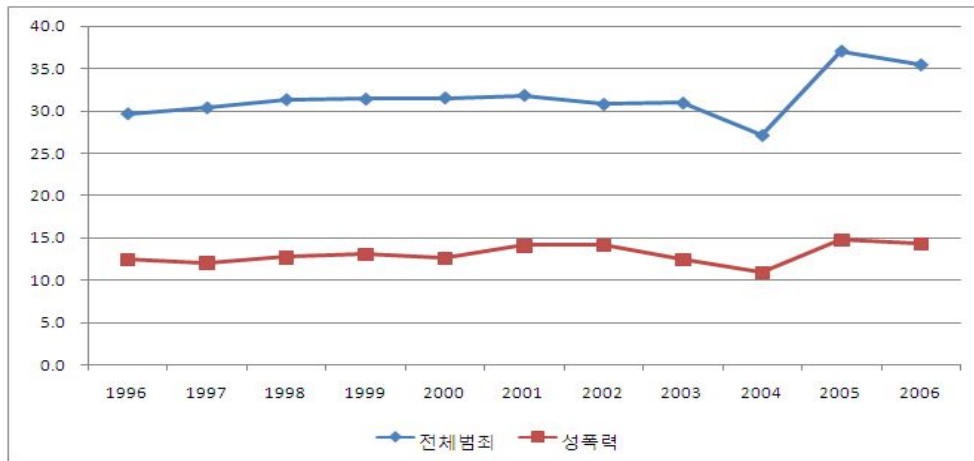
[그림 4-20]은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모두의 동종재범률 추이를 도표와 한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범죄가 성폭력범죄보다 동종재범률이 15~20% 정도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큰 폭의 증감 없이 30%대를 유지하다가 2005년과 2006년 5%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자 중에서 동종범죄율은 큰 폭의 증감이 없이 지난 10년 동안 보합세를 유지해왔다. 단지 2003년과 200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4-17〉 성폭력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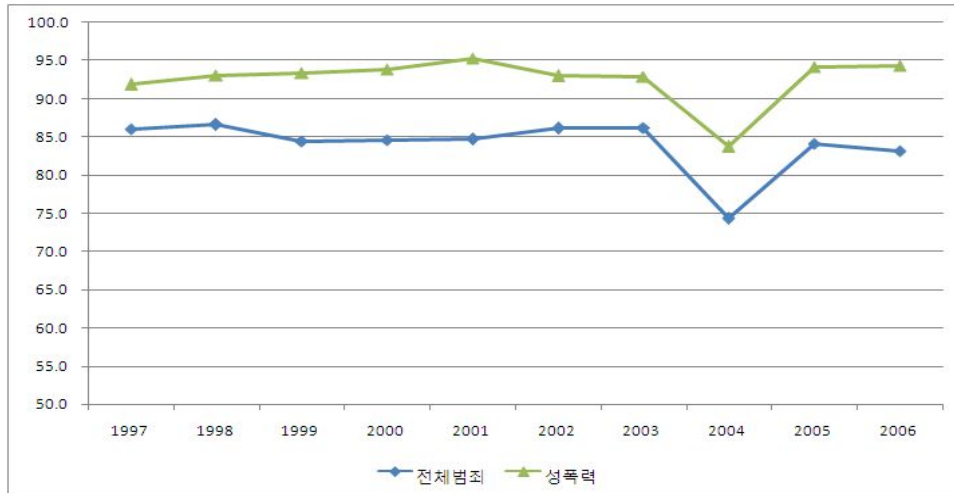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동종 소계	12.1	12.7	13.1	12.6	14.1	14.1	12.4	10.9	14.7	14.3
1개월 이내	0.9	1.0	1.2	0.9	1.2	1.7	1.1	0.5	0.5	0.7
3개월	0.9	2.5	2.6	1.5	1.1	0.8	0.7	0.6	0.7	0.6
6개월	0.7	0.6	0.9	1.2	1.6	1.2	0.9	0.5	1.1	0.5
1년 이내	1.7	1.5	1.7	1.8	1.7	1.9	1.6	2.1	3.0	3.4
2년 이내	1.7	1.4	1.4	1.5	1.9	1.7	2.1	3.0	2.5	2.4
3년 이내	1.3	1.1	1.2	0.9	1.2	1.4	1.5	1.2	1.8	2.3
3년 초과	4.8	4.5	4.1	4.7	5.5	5.4	4.5	3.0	5.0	4.3
이종 소계	87.9	87.3	86.9	87.4	85.9	85.9	87.6	89.1	85.3	85.7
1개월 이내	2.0	2.0	2.0	2.8	2.6	3.3	3.0	1.6	2.1	2.1
3개월	4.2	4.3	4.7	5.2	4.1	3.8	4.1	2.9	3.4	3.3
6개월	7.1	7.3	6.7	6.8	6.4	6.3	6.1	4.0	4.8	3.9
1년 이내	12.5	12.9	13.7	12.1	11.7	12.3	11.1	11.6	16.3	15.8
2년 이내	13.8	12.7	13.0	12.3	12.7	13.1	13.3	37.3	12.8	12.8
3년 이내	9.7	7.8	8.1	8.6	7.5	8.1	8.9	7.7	9.9	11.8
3년 초과	38.6	40.4	38.7	39.6	40.9	38.9	41.1	23.8	35.9	3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20]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동종재범율(1997-2006)



[그림 4-21]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단독범 비율(1997-2006)



2. 피해자 특성

가. 연령

첫 번째로 살펴볼 피해자 특성은 연령이다. 피해자 연령은 유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의 세부 범주를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성폭력범죄는 ‘30세 이하’가 가장 많고(25~43%) 그 다음이 ‘20세 이하’이며(13~26%), 세 번째로는 ‘40세 이하’가 많다(13~22%). 다시 말해서 성폭력범죄는 20대, 16~20세, 30대의 피해자가 많다고 하겠다.

10년간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전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0대의 비율(‘20세 이하’와 ‘15세 이하’)과 40대의 비율(40세 이하)이 감소하는 대신 20대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22]는 10년간의 평균치로 피해자 연령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20대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후로는 전체범죄의 피해자 비율이 더 높아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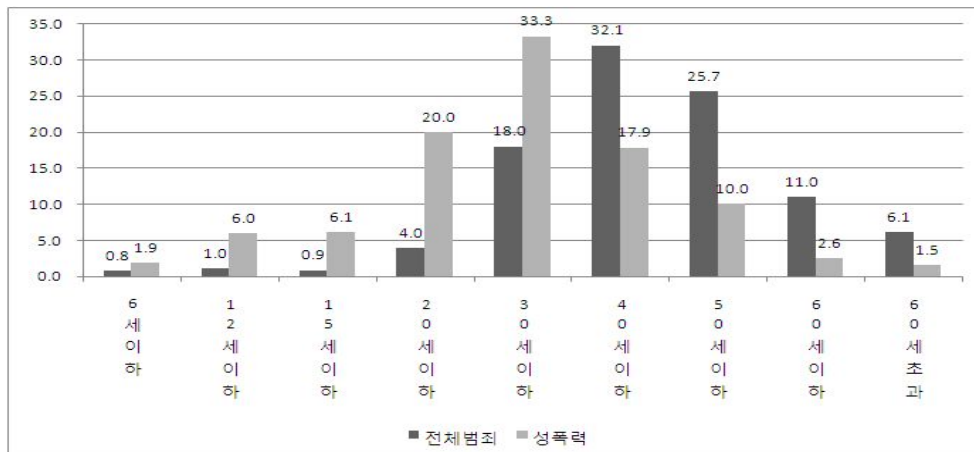
연령이 낮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발생한 총 성폭력범죄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20대 인 경우가 33.3%, 16-20세가 20.0%, 30대가 17.9%, 40대가 10.0%, 12세 이하 아동이 6.0%, 6세 이하 유아가 1.9%, 60대 이상이 1.5%이다. 반면 전체범죄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많아 32.1%, 40대가 25.7%, 20대가 18.0%, 50대가 11.0%, 60세 초과가 6.1%, 16-20세가 4.0%, 15세 이하가 0.9%, 6세 이하가 0.8%, 12세 이하가 1.0%이다.

〈표 4-19〉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1997-2006)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세 이하	2.4	2.6	2.3	2.0	1.5	1.6	2.0	1.2	1.7	1.3
12세 이하	5.7	6.7	5.7	6.6	5.2	7.5	6.6	5.0	5.0	5.8
15세 이하	10.8	9.0	8.3	8.5	4.6	2.7	4.3	3.0	4.6	5.6
20세 이하	24.6	25.3	26.6	23.1	19.9	14.5	16.2	13.3	19.4	17.4
30세 이하	26.4	25.9	27.3	27.8	34.9	33.9	37.0	43.2	38.1	38.3
40세 이하	22.0	19.2	16.9	18.7	19.9	18.1	18.9	17.6	14.2	13.4
50세 이하	8.5	8.2	8.8	9.7	9.3	10.4	11.1	11.5	11.2	11.7
60세 이하	2.1	2.2	2.6	2.2	2.7	2.5	2.6	2.9	2.7	3.2
60세 초과	1.2	1.0	1.5	1.4	1.5	1.8	1.4	1.6	2.0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22]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연령분포(1997-2006 평균)



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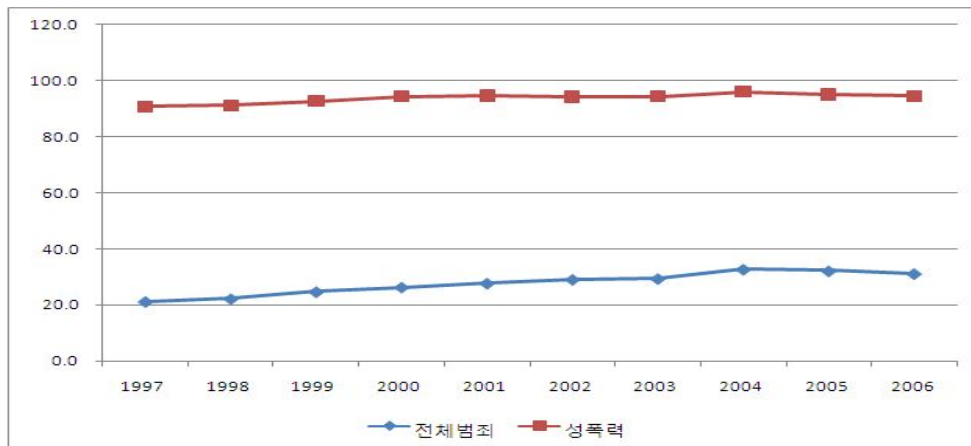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고(90~96%),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훨씬 낮다(3~9%).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997년 9.1%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3.9%까지 감소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그림 4-23]의 여성피해자 비율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먼저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비교해보면 전체범죄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70%인 반면 성폭력범죄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90%대이다. 성폭력범죄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분석결과라 하겠다. 10년간 추이면에서는 성폭력범죄보다는 전체범죄에서 여성피해자 비율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약10%).

〈표 4-20〉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별(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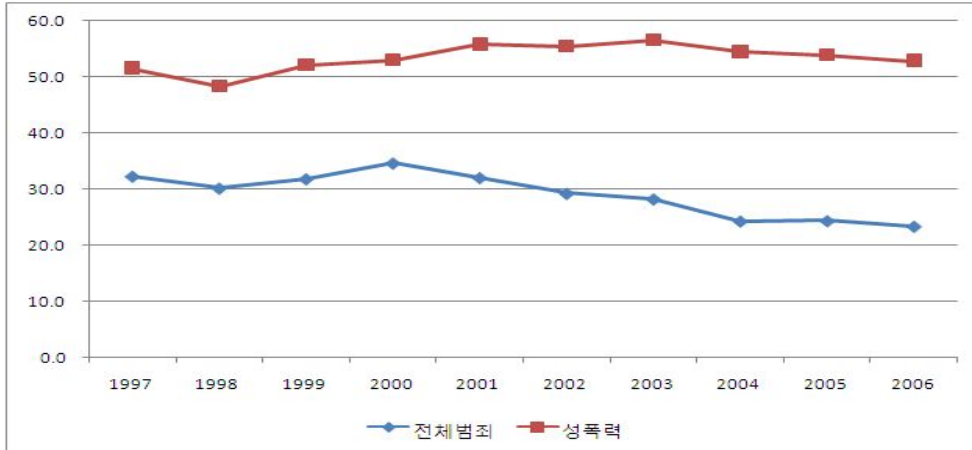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성	9.1	8.8	7.2	5.5	5.3	6.7	5.4	3.9	3.8	3.9
여성	90.9	91.2	92.8	94.5	94.7	94.3	94.6	96.1	95.1	9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4-23]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여성피해자 비율(1997-2006)



[그림 4-24]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의 비면식범 비율 추이(1997-2006)



제 3 절 소결

이 장에서는 범죄공식통계 자료 분석을 통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발생에서부터 검찰 처리 및 법원 선고에 이르는 과정상의 특성, 그리고 성폭력범죄와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식적으로 보고된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10년간 7,120건에서 13,573건으로 증가하였고,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15.1에서 27.7로 무려 83.4%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범죄 발생비 증가율 10.2%, 강력범죄 발생비 증가율 71.0%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로 성폭력범죄 억제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성폭력 보고율이 높아지는 것이 실제 성폭력사건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당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적발률 및 피해자들의 고소율이

높아진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평균 24.2%), 다음으로 ‘경기도’(평균 24.2%)가 많다. 10년간의 발생률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는 서울 지역 발생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집안’으로 평균 26.0% 수준이며, 두 번째로는 ‘숙박 및 유흥업소’(20.6%), 세 번째는 ‘노상’(19.0%)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는 옥외보다는 옥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지난 10년간 ‘집안’, ‘노상’, ‘숙박/유흥업소’의 비율은 유사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공사장/창고/공지’와 ‘야외’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교통수단’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 처리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범죄의 구속율은 2~5%, 강력범죄의 경우 4~18%, 성폭력은 32~59%로 성폭력범죄의 구속율이 가장 높아, 강력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구속율은 세 범죄유형 모두에서 상당 수준 낮아졌는데 성폭력범죄는 1997년 절반정도를 구속 수사하였던 반면(47.5%), 2007년에는 1/4가량만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28.8%).

둘째, 구속율과 달리 기소율은 세 범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40~6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체범죄의 기소율(1997년 53.8%에서 2005년 49.4%)과 성폭력범죄의 기소율(50.5%에서 43.7%)은 소폭 감소한데 비해, 강력범죄는 기소율이 61.1%에서 38.2%로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불기소 사건의 세부사항을 보면 전체범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28.3%), 기소유예(29.7%), 혐의 없음(26.23%), 기소중지(20.0%)가 대체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성폭력은 “공소권 없음” 비율이 무려 65.0%에 이르며 혐의 없음(17.6%), 기소중지(8.6%), 기소유예(6.2%)는 훨씬 적다. 공소권 없음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성폭력은 범죄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많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성폭력범죄자들은 1심에서 약 2/5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 약 1/3가량이 유기징역 선고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전체범죄의 1심선고상의 변화특성은 ‘집행유예’

의 대폭 감소와 ‘재산형’의 대폭 증가로 요약되지만, 성폭력의 경우에는 200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유기징역’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섯째, 집행유예율이란 1심 선고내용 중에서 무죄나 재산형을 제외하고 유기징역 선고인원 對 집행유예인원의 비율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0% 초반 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에 60%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40%대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은 집행유예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분기점이다. 10년동안 성폭력범죄는 약 10%, 전체범죄는 약 20% 감소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0년간 검거된 성폭력범죄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각각 26.8%, 27.4%), 40대(17.3%), 10대(12.5%)의 순이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10대’와 ‘20대’는 감소하고, ‘30대’는 보합, ‘40대 이후’는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는 전체가해자에 비해 연령이 더 낮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여성범죄비율은 범죄고유의 특성상 0.3~0.4%로 매우 낮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전체범죄는 14.0%에서 15.6%로, 성폭력범죄는 0.3%에서 0.6%로 변화하였으나 가해자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비율이 해마다 달라 증가추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셋째, 성폭력범죄자들은 ‘고졸자’가 가장 많아 34~42%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학력집단은 ‘대졸자’로 12~22%, 세 번째로는 ‘중졸자’로 11~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범죄자들의 교육수준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들은 ‘중졸자의 급격한 감소’, ‘고졸자의 완만한 감소’, ‘대졸자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져, 전체범죄자와 비교할 때 학력수준의 향상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성폭력범죄는 전체범죄와 비교할 때 미취업자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10년간 통계치를 보면 ‘미취업’인 경우가 33.3%로 1/3에 이르고, ‘판매/서비스직’이 23.5%, ‘농업/생산직’이 17.5%, ‘사무직’이 13.0%, ‘전문/행정관리직’이 4.1%이다.

다섯째, 전체 범죄의 가해자는 1/2이 유배우자(48.9%), 1/4이 미혼인 반면(24.5%), 성폭력범죄자는 2/5가 미혼이고(43.2%), 1/3이 유배우자(33.4%)로 미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10년간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미혼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반면

‘혼인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생활수준상의 특성을 보면, 10년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에서 53.3%는 하류, 25.8%는 중류, 1.0%는 생활수준이 상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60.5%는 하류, 25.8%는 중류, 1.1%는 상류층이다. 즉 성폭력범죄자들은 전체범죄자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일곱째, 전체범죄의 재범자 비율은 40~50%, 성폭력 범죄의 재범자 비율은 50~60%로 성폭력범죄자가 전체범죄에 비해 약 10% 가량 많다. 1997년 이후 성범죄자 재범자 비율은 2002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보합추세가 되었다. 구체적인 전회처분상황을 보면 재범자 중에는 ‘형집행종료’가 32~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소유예’로 3~5%대이다.

여덟째, 재범종류를 보면 전체범죄와 성폭력범죄 모두 동종보다는 이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비율면에서 전체범죄 동종재범은 30~40%인데 비해 성폭력범죄는 10~15%대로 전체범죄가 더 높다. 재범기간 면에서는 동종재범과 이종재범 모두 3년이 초과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년 이내와 2년 이내가 많다.

아홉째, 전체범죄의 단독범 비율 80%대이고 성폭력범죄의 단독범 비율은 이보다 많은 90%대로 공범이 있는 경우는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범 수는 2명, 3명, 4명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열째, 피해자 연령은 전체범죄가 30대, 40대, 20대의 순이라면, 성폭력범죄는 16~20세, 20대, 30대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다. 구체적으로는 10년간 발생한 총 성폭력범죄사건 중에서 피해자가 20대인 경우가 33.3%, 16~20세가 20.0%, 30대가 17.9%, 40대가 10.0%, 12세 이하 아동이 6.0%, 6세 이하 유아가 1.9%, 60대 이상이 1.5%이다. 10년간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총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10대의 비율과 40대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20대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열한째, 피해자 성별 면에서는 전체범죄는 남성 피해자 비율이 70%인 반면 성폭력범죄는 여성 피해자 비율이 90%대이다. 다만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1997년 9.1%였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3.9%로 감소하였다.

열두째,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다. 전체범죄의 비면식범 비율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2%에서 22%로 약10%정도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변화 없이 5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제 5 장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주요 변인의 구성과 측정

가.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가구조사를 통하여 만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행위를 ‘강간 및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의 여덟 가지 유형별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로 경찰신고, 상담소 및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성의식 전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제 조사는 표집과 실사과정 모두 가정폭력실태조사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성폭력 설문지 역시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응답자 조사표, 응답자 배우자 조사표, 미혼자 조사표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대상 집단별로 차이 없이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변인들의 범주와 주요 변수들을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범주	변수 및 세부조사항목	
성폭력 피해실태	피해유무 및 피해횟수	8개 성폭력 유형별(강간 및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스토킹, 부부강간) 피해유무와 피해횟수
	구체적 피해특성	- 가해자 특성(가해자 연령, 성별, 가해자 수, 가해자 피해자 관계) - 성폭력 행위 특성(범행수단, 피해자대응, 피해유형) - 사후조치 특성(상담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기관 이용유무 및 만족도, 경찰 신고 유무 및 만족도, 미신고 이유)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일반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가해실태	가해유무 및 가해횟수	강간 및 강간미수, 부부강간, 강제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스토킹, 아동성폭력, 성인 및 미성년자와의 매매춘, 일반 폭력가해경험
		성폭력 중동지수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	친고죄폐지 문제, 언어적 성희롱의 처벌문제, 부부강간의 처벌문제	
성의식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이중적 성의식,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혼인상태, 장애유무 등	

나. 주요변인의 측정

1) 성폭력 피해실태의 측정

① 성폭력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에서부터 강간에 이르는 연속선적 개념이라고 보고 성폭력행위를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여덟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지난 1년간 피해유무와 피해횟수를 조사하였다.

첫째, ‘강간’이란 남성이 상대방(반드시 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것을 말한다. 단, 13세가 되지 않은 여성을 간음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또한 ‘강간미수’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거나 혹은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의미한다.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기 위한

전 동작이 있었다면 강간미수로 볼 수 있다.

둘째, ‘심한 추행’은 유사성교와 심한 추행의 두 가지 성폭력 피해유형을 포함한다. 먼저 ‘유사성교’란 강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성기 이외의 신체에 성기나 이물질 등을 삽입하는 성폭력 행위이다.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기 혹은 항문에의 이물질 삽입이 포함된다. 또한 ‘심한 추행’이란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혹은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것으로 성적 키스, 성기접촉, 성기의접촉, 성적 포옹 등이 포함된다. 심한 추행과 강간미수 간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유형분류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다.

셋째, ‘가벼운 추행’이란 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단, 신체의 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는 정도를 넘어서 여러 부분을 만지거나 지속적인 쾌감을 위해 신체의 특정 부분을 계속 만지는 행위는 심한 추행으로 분류된다.

넷째, ‘비접촉성 성희롱’이란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다섯째, ‘음란전화’는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스러운 말을 담고 걸려오는 전화를 말한다. 구체적인 전화내용과 상관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전화통화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을 받았다면 음란전화로 본다.

여섯째, ‘성기노출’은 여러 사람 혹은 한 개인 앞에서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고 서 있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단 이때 성기를 접촉한 경우에는 추행으로 분류된다.

일곱째,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구애하거나 음란한 말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언제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 싫다는데도 계속적으로 선물공세를 하는 경우, 거절에 대해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덟째, ‘부부강간’이란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기 삽입

형태의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강간은 처벌법이 없으나 강간개념과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 피해자는 부녀자, 가해자는 남성으로 한정된다.

각 유형별 성폭력피해 실태를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가장 심각하고, 따라서 가장 피해율이 낮은 성폭력 유형인 강간부터 질문하였는데, 이는 가벼운 성폭력 유형부터 질문 할 경우 동일한 피해사건을 중복적으로 표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②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인 특성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특성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가해자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연령과 성별, 가해자 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포함되었다

둘째, ‘성폭력 행위관련 요인’으로는 범행 수단, 피해자 대응, 피해유형(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을 조사하였다.

셋째, ‘사후조치 관련 요인’에는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의 이용 여부와 만족도, 그리고 경찰 신고 여부와 경찰조치의 만족도, 미신고 이유가 포함된다.

2)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측정

성폭력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지와 함께 한 사회의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는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는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와 ‘나는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이나 강도, 절도, 사기 등 범죄피해를 입을까봐 두렵다’는 두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떠한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3) 성폭력 가해실태의 측정

중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지난 1년간의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함께 조사하였다. 성폭력 유형에는 강간, 강간미수, 부부강간, 강제 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스토킹, 아동성폭력 이외에도 성인 및 미성년자와의 매매춘 경험과 누군가를 때려본 경험을 함께 조사하였다.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전혀 없다’, ‘1회’, ‘2회’, ‘그 이상’으로 나누어 질문하여 가해경험 여부와 빈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또한 강간 충동을 조사하였다. 강간충동은 잠재적인 강간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응답자들에게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와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는 두 문항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 측정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문화가 성폭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 문제가 기존의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최인섭, 김성언 1998). 법률적 규정 역시 이러한 성문화의 산물이며 이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기제이기 때문에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전반에 관한 법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인들은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는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조사되었는데, 첫째는 친고죄 폐지 문제, 둘째, 언어적 성희롱의 처벌문제, 셋째, 부부강간의 처벌문제이다.

5) 성의식의 측정

성의식은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이중적 성의식, 성역할 고정관념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각 의식특성은 선행연구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인섭, 김성언 1998; 김은경 2000).

①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인지도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강행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성폭력 인지도란 개념적 인지도로서 각 행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어떻게 인지하는가, 즉 각 사례유형을 성폭력이라고 보는지 여부와 각 사례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폭력 인지도를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는데 첫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태도 및 저항유무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성폭력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성폭력인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섯 가지 문항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한적한 곳에서 애인과 데이트를 하는 여성이 애무를 주고받은 후 싫다고 말했지만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며 거부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함. 부하직원은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상사의 성적 요구에 응한 경우’,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위협받자 두려워서 저항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 ‘한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여행지에서 만나,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억지로 성행위를 하고 이에 여성이 저항하자 돈을 쥐어주고 떠난 경우’이다.

②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행위 허용도로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 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관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규제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련된 평가의 측면이다. 행위 허용도는 실행 및 규제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가치판단을 담고 있으므로 성폭력에 대한 규제 및 대책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폭력 허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주요한 일탈 및 범죄행위 11가지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눈짓이

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행위, 가벼운 성추행, 포르노그래피의 강요, 스토킹, 성인 및 미성년자와 매매춘, 음란전화, 부부강간 등이 포함된다. 각 사례에 대하여 ‘절대 허용될 수 없다’에서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③ 이중적 성의식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고정관념 중의 하나는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다르다는 믿음과 관련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이한 성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성행위에 있어서 남성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여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여성은 혼전순결이나 혼인 후 정절을 지키는 경향이 있으나 남성은 생리구조상 이를 지키기 어려워 남녀에게 다른 성규범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의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둘러싼 이중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의 혼전 순결’, ‘남성의 혼전 순결’, ‘기혼 여성의 혼외 성관계 금지’, ‘성관계의 여성주도’의 네 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④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 및 성적 특성들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중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특히 남녀의 차별적 역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정체성과 가족내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다섯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다섯 문항은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이다.

6)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측정

그 외에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혼인상태, 장애유무 등의 변인을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가정폭력 피해조사와 공통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가구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결과 9,847가구가 조사 완료되어 가구조사완료율은 98%이다. 조사는 2007년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80일간 이루어졌다.

가. 표본설계의 개요

1) 모집단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과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표모집단은 조사자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모집단으로 조사의 목적과 시행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사모집단은 특정한 조사조건하에서 실제조사가 가능한 모집단을 말하며, 여기서 특정한 조사조건이란 조사의 구성요건, 하부그룹, 조사지침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전국 가족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이며, 조사모집단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 중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로 정의된다.

2) 표본의 규모

전국 가족실태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전국의 표본가구에서 일반 가구원(가구주 및 배우자), 20세 미만의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구당 폭력발생 비율을 준거로 표본 조사구 또는 표본가구

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집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표본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즉, 모집단의 가정폭력발생비율을 P 라 하면, 전국의 가구 수를 약 1430만가구로 추정할 경우 총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 = t^2 \frac{PQ}{D^2}, \quad Q = 1 - P.$$

여기서 P 는 전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모집단 비율이고, $Q = 1 - P$ 이며, t 는 t -분포의 $\alpha/2$ 점이다. 또한 D 는 허용오차를 나타낸다.

그런데 모비율 P 를 알 수 없으므로, 분산이 최대가 되는 모비율 $P = 0.5$ 를 대입시키고 추정오차의 한계를 0.0031로 하면 최종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 = 4 \times \frac{0.25}{0.0031^2} = 10,4059(\text{가구})$$

결과적으로 약 10,000가구의 표본을 산정할 경우 추정오차의 한계는 주어진 값보다 약간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사구당 평균 60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67개 조사구를 필요로 하지만, 조사의 현실성과 가정폭력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조사구당 약 50가구를 조사하여 총 200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결정하였다.

3) 표본의 대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2007년 현재 신도시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인근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체절차는 먼저 조사원과 조사지도원이 연구원으로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예비조사구로 보유하고 있는 조사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나. 표본배분

주어진 허용오차에 따라 표본규모가 결정되면, 모집단의 층별 분포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표본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층별 변동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

장 합리적인 표본규모를 배분함으로써 추정치의 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가족생활실태조사의 경우 권역별(서울,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권) 또는 지역별(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유연하게 층화하여 표본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1) 모집단 분포

전국 가족생활실태 조사의 목표모집단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 자료를 KOSIS를 통해 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5-2>와 같다. 전국의 추계 가구수는 15,887,128가구이고, 이중 동부는 12,744,940 가구로서 전체의 약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부는 총 3,142,188가구로 1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고령층이 읍면부 지역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0~40대 연령층은 동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2>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주연령별 동부/읍면부별 가구수

	전국	동부	읍부	면부
총 가구수	15,887,128	12,744,940	1,318,939	1,823,249
계	13,705,152	12,744,940	1,318,939	1,823,249
15세미만	1,682	1,383	148	151
15~19세	69,108	59,090	4,749	5,269
20~24세	418,659	374,780	21,673	22,206
25~29세	898,993	800,391	57,106	41,496
30~34세	1,616,964	1,401,599	133,196	82,169
35~39세	1,969,152	1,685,893	170,697	112,562
40~44세	2,187,353	1,867,929	174,750	144,674
45~49세	2,181,976	1,843,999	162,581	175,396
50~54세	1,640,407	1,350,767	122,559	167,081
55~59세	1,338,332	1,055,776	106,564	175,992
60~64세	1,116,154	821,429	98,252	196,473
65~69세	995,110	652,686	100,789	241,635
70~74세	740,700	439,825	81,809	219,066
75~79세	430,682	240,956	49,634	140,092
80~84세	206,888	109,836	25,091	71,961
85세이상	74,968	38,601	9,341	27,026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다음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지역별, 도부읍면부별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지역별 조,사구 분포주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165	141,619	95,546	190,895	106,832	84,063	46,270	34,787	11,483
서울	49,330	32,175	17,155	49,330	32,175	17,155	-	-	-
부산	18,122	10,788	7,334	17,718	10,530	7,188	404	258	146
대구	12,098	7,047	5,051	11,386	6,702	4,684	712	345	367
인천	12,683	7,054	5,629	12,422	6,820	5,602	261	234	27
광주	6,777	2,976	3,801	6,777	2,976	3,801	-	-	0
대전	7,251	3,804	3,447	7,251	3,804	3,447	-	-	0
울산	5,039	2,689	2,350	4,238	2,275	1,963	801	414	387
경기	49,712	26,252	23,460	40,714	20,472	20,242	8,998	5,780	3,218
강원	7,853	4,843	3,010	4,780	2,401	2,379	3,073	2,442	631
충북	7,483	4,446	3,037	4,542	2,178	2,364	2,941	2,268	673
충남	9,848	6,490	3,358	3,494	1,628	1,866	6,354	4,862	1,492
전북	9,254	5,529	3,725	6,192	2,743	3,449	3,062	2,786	276
전남	9,221	6,285	2,936	3,994	1,816	2,178	5,227	4,469	758
경북	13,995	9,506	4,489	6,969	3,840	3,129	7,026	5,666	1,360
경남	15,824	9,542	6,282	9,164	5,023	4,141	6,660	4,519	2,141
제주	2,675	2,193	482	1,924	1,449	475	751	744	7

주 : 한국복지패널조사구 517개 조사구 제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구 90%자료로부터 전국적으로 237,165개 조사구(일반 및 아파트 조사구)중에서 동부와 읍면부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는 190,895(80.5%)개 조사구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부는 46,270(19.5%)개 조사구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본 배분시에는 동부의 표본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표 5-2>에서 연령별 분포를 고려할 경우 동부지역의 20~40대 연령층이 많이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역별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의 약 4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일 권역별로 표본을 배분할 경우 전체의 약

41%가 수도권 지역의 가구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충청권(충남북, 대전)의 경우는 약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지역(전남북, 광주, 제주)은 11.7%, 영남권(경남북, 부산, 대구, 울산, 강원)은 30.7%로 파악되었다.

〈표 5-4〉 지역별 가구분포(90%자료)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14,227,895	8,357,257	5,870,638	6,346,081	5,197,491	2,011,176	673,147
서울	2,998,524	1,932,703	1,065,821	1,932,703	1,065,821	-	-
부산	1,071,908	621,858	450,050	608,513	441,322	13,345	8,728
대구	737,251	421,538	315,713	402,336	292,453	19,202	23,260
인천	736,242	397,764	338,478	383,651	336,834	14,113	1,644
광주	415,204	180,113	235,091	180,113	235,091	-	-
대전	433,676	224,467	209,209	224,467	209,209	-	-
울산	307,624	161,744	145,880	137,724	121,885	24,020	23,995
경기	3,016,413	1,543,458	1,472,955	1,222,610	1,277,948	320,848	195,007
강원	461,462	286,205	175,257	142,807	141,946	143,398	33,311
충북	449,252	266,549	182,703	134,150	145,159	132,399	37,544
충남	586,854	385,075	201,779	100,370	115,954	284,705	85,825
전북	543,299	316,295	227,004	157,840	211,435	158,455	15,569
전남	543,371	366,739	176,632	101,763	132,538	264,976	44,094
경북	828,628	556,606	272,022	226,122	192,359	330,484	79,663
경남	937,926	564,030	373,896	302,358	249,679	261,672	124,217
제주	160,261	132,113	28,148	88,554	27,858	43,559	290

주 : 한국복지패널조사구 517개 조사구 제외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

다음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중 가구자료는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로 분석한 결과 <표 5-4>와 같다. 가구수 분포는 통상적으로 조사구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은 하지 않고, 동부와 읍면부의 조사구 가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14백만 가구 중 일반조사구에 분포한 가구가 전체의 58.7%이며, 아파트는 41.3%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2005년 조사당시와 현시점간에는 어느 정도 포괄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규모대비 변동지역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축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2) 표본의 배분과 표본가구의 선정

① 표본배분

지역별 조사구 분포와 지역별 연령대 비율을 감안하여 조사구 및 가구분포에 따라 비례배분(proportional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하였다. 특히 지역별 조사구 수는 전체 표본 가구수 약 10,000가구를 조사구별로 배분하되,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별, 동부·읍면부별로 배분되도록 하였다. 표본조사구배분결과 조사구수 10개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역별로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역별 통계생산이 불가능하므로 단지 광역단위 차원의 표본 배분이 되도록 지역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5-5〉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00	119	81	162	90	71	40	29	10
서울	42	27	15	42	27	14	-	-	-
부산	15	9	6	15	9	6	0	0	0
대구	10	6	4	10	6	4	1	0	0
인천	11	6	5	10	6	5	0	0	0
광주	6	3	3	6	3	3	-	-	0
대전	6	3	3	6	3	3	-	-	0
울산	4	2	2	4	2	2	1	0	0
경기	42	22	20	34	17	17	8	5	3
강원	7	4	3	4	2	2	3	2	1
충북	6	4	2	4	2	2	2	2	1
충남	8	5	3	3	1	2	5	4	1
전북	8	5	3	5	2	3	3	2	0
전남	8	5	3	3	2	2	4	4	1
경북	12	8	4	6	3	3	6	5	1
경남	13	8	5	8	4	3	6	4	2
제주	2	2	0	2	1	0	1	1	0

총 200개 조사구를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로 비례 배분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지역이 약 47.5%인 95개 조사구가 배분되었고,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은 12%인 24개 조사구, 충청권(충남북, 대전)은 10%인 20개 조사구,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북, 대구, 강원)은 30.5%인 61개 조사구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배분결과로 볼 때 모집단의 조사구 분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표본가구의 선정

전체적으로 200개조사구에서 조사구당 25가구를 가구명부에 기재된 가구 순으로 계통 추출하여 총 10,000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구내 가구 수가 60가구인 경우 $60/50=1.2$ 로서 출발점을 2번째 가구로 정하면, 다음가구는 5번째 가구를, 두 번째 표본가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총 25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60번째 이상의 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순환계통추출방식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만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중 무응답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본가구의 앞 번호 또는 다음 번호의 가구를 표본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다. 추정방법

1) 가중치

① 추출가중치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구의 90%를 이용하여 23만여 조사구중 400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므로 1차추출단위의 추출확률은 $P_a=200/237165=0.0008432$ 이 된다. 따라서 PSU당 가중치는 평균적으로 1185.96이 되며, 만일 지역별로 PPS로 PSU를 추출할 경우 지역별 조사구 수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게 된다. 또한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지역 또는 읍면 지역의 조사구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추출가중치는 조사구가 뽑힌 지역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즉, 예를 들면 서울지역의 종로구와 성동구의 조사구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서 추출된 조사구의 추출 가중치는 다르게 산정된다.

② 무응답 가중치

조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응답은 표본수를 축소시키며, 무응답 편향으로 인해 추정량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무응답 가중치는 응답확률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무응답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하면, 응답 가구가 속한 층의 응답률을 구해 무응답가중치로 활용할 수 있다. 추출 가중치 w_1 과 더불어 a 번째 가구의 응답률을 r_a 라 하면 추출가중치와 응답률을 곱한 $w_2 = w_1 \times r_a$ 가 가구의 응답률까지 고려한 가중치이다.

③ 사후층화 가중치

마지막으로 표본설계당시의 모집단 분포와 조사후 모집단 분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외부의 변수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량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사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즉 가구의 성별, 직업, 연령 과 같은 정보를 외부자료로부터 얻었다면, 그 정보를 현재 추정치의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w_3 라 하면 최종 가중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구하여 최종 가중치로 활용하며, 이를 추정치 계산에 적용해야 한다.

2) 추정산식

전국적으로 가정 폭력발생률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 지역별 추정비율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고, 유형별 폭력비율은 지시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bar{y}_G = \frac{\sum_h \sum_i \sum_j w_{hij} y_{hij} I[hij \in G]}{\sum_h \sum_i \sum_j w_{hij} I[hij \in G]} \quad (1)$$

여기서 G 는 폭력발생 집단으로 정의 수 있고, 또한 $I[hij \in G]$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식(1)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hat{v}(\bar{y}_G) = \frac{\sum_H \frac{n_h}{(n_h-1)} (1-f_h) \sum_{j=1}^{n_h} \left[W_{hiG} (\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 (\bar{y}_{hsG} - \bar{y}_G) \right]^2}{\left(\sum_H \sum_{j=1}^{n_h} W_{hiG} \right)^2} \quad (2)$$

여기서 가중치의 합은 $W_{hiG} = \sum_j w_{hij} I[hij \in G]$ 이고, 그룹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bar{y}_{hiG} = \frac{\sum_j w_{hij} y_{hij} I[hij \in G]}{\sum_j w_{hij} I[hij \in G]} \quad (3)$$

만일 조사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을 조정한 가중치를 $w_{hij}^* = w_{hij} \times r_{hij}$ 라 하면 이 값을 위의 추정량의 w_{hij} 대신 대입하여 무응답 조정이 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r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의 j 번째 가구의 응답률이다. 이때, 개별 가구의 응답률보다는 각 층내의 조사구별 응답률을 이용하여 무응답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다.

$$r_{hi} = \frac{h\text{층의 } i\text{번째 조사구에서 응답한 총 가구 수}}{h\text{층의 } i\text{번째 조사구내의 총 가구 수}} \quad (4)$$

3)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이러한 오차의 측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표본오차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한다. 이

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은 대체로 분산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계산하거나,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눈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표본오차의 산정공식은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며, 통상적으로 표본변동계수(CV)로 측정된다.

② 비표본오차의 관리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나눈다. 표본오차는 오차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천적인 오차로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추출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밖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총칭해서 비표본오차라 한다. 조사구를 층화추출에 의한 확률표본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이므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함께 발생한다. 조사를 계획할 때는 이러한 오차들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들 모든 오차를 동시에 관리하기는 어렵다. 표본설계 시에는 추출방법에 따라 표본오차를 계산하게 된다. 표본오차는 측정 가능하여 관리가 수월하지만 비표본오차는 그렇지 아니하다. 표본오차와는 달리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어려워서 사전에 비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조사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비표본오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서 비표본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한다.

A) 포함오차

포함오차(coverage error)는 추출틀이 노후화 되었거나 불완전해서 목표모집단의 모든 단위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포함오차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정에 편향이 생긴다. 포함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목표모집단의 일부 단위가 추출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과소포함(undercoverage) 또는 미포함(noncoverage)이라 부른다.

- 추출틀에 있는 일부 단위가 목표모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이들은 부적격 또는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표본 추출 전에 확인하고 이들을 추출틀에서 제거한다.
- 추출틀에서 두 개 이상의 단위가 목표모집단에서 동일한 단위와 대응이 될 때, 이러한 경우를 과대포함(overcoverage)이라 한다.

본 조사에 사용되는 추출틀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시점과 인구주택총조사 종료시점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포함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조사구의 변동은 조사현장에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조사구내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추정에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 포함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추출틀을 제공하는 통계청의 역할이고 본 조사에서는 가장 최신의 추출틀을 사용하여 포함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제공된 추출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 무응답오차

최근 들어서 조사 환경의 변화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무응답오차(nonresponse error)가 생긴다.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가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이라 하고, 조사에 응한 가구에서 일부 조사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이라 한다. 가구 단위의 무응답은 무응답 가구를 다른 가구로 교체(substitution)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만 일부 조사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중치를 조정해 준다. 표본에 결측이 생기더라도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주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게 된다.

조사를 수행하면서 무응답 현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가중치 조정에 반영하고 향후 조사에도 참조한다. 무응답률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에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C) 응답오차

과거 조사에 의하면 일부 표본가구의 응답자들이 조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표본가구에서 제공된 자료가 조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일부 다른 경우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응답의 오류는 가구의 실제 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데,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설문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응답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거나 조사원들을 철저히 교육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응답자가 응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응답을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응답을 요구해서 응답자들이 진실되게 응답하지 않고 부정확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하면 오히려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 설문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응답자들에게 민감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일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는 확률화응답기법과 같은 방법들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D) 기타

앞에서 언급한 오차들이 비표본오차의 주요 원인들이지만 그밖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아래 사항들을 잘 살펴서 오차를 줄이도록 한다.

— 교정 및 코딩

표본 기업체가 일단 응답을 하면 다음 작업은 응답이 완전하도록 응답교정을 한다. 일부 응답에 대해서는 코드를 지정하여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코딩은 문어체 응답을 문자나 숫자로 대체하여 표시해주는 작업이다. 코드는 컴퓨터 처리에 사용되고 분석에 이용된다. 교정과 코딩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정(editing)/코딩(coding)” 혹은 “교정자(editor)/코더(coder)”로 표시한다. 교정/코딩 과정은 수작업이나 기계작업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수작업에서는 응답이 정해

진 수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는지, 다른 응답과 일치하는지, 응답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올바른 순서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 자료입력

자료입력의 사전작업은 데이터 수집, 수작업 교정/코딩 작업과 유사하다. 자료 입력자는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분량이 많고 복잡한 설문지가 이용되는 대규모 조사에서는 자료입력 지침서를 만든다. 지침서에는 조사와 자료입력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설문지의 설명, 입력되어야 할 양식들의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입력자에 대한 교육에서는 작업 지침의 검토와 설문지가 수작업 교정자/코더로부터 도착하기 전에 예행 연습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자료처리

원시자료가 분석에 바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시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사용한다. 대규모 자료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측정치의 단위와 연관된 항목의 자료만을 사용하기도 한다.

— 분석

조사 전 과정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집적되어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는 단계이다. 조사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비교적 쉬운 기술 통계량(총계, 평균, 비율 등)에서부터 복잡한 통계량(회귀계수, 상관계수 등)까지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의 주목적은 연구모집단의 특성치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얻는 가이다. 자료처리 과정에서부터 최종 분석단계까지 발생하는 오류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차 발생의 모든 요인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조사 후에 자료검토를 통하여 이들의 오류를 발견하여 바로 잡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절에서는 본격적인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수집된 표본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평가하고,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세 변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13,608명이 포함되었다.

1. 표본의 대표성

먼저 조사된 표본이 모집단의 분포를 대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07년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인구 32,196,207명이다. 표본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간의 비교는 성별, 연령, 지역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비모수 검증(nonparametric test)인 카이자승 검증(Chi-Square test)을 통하여 표본의 성별 분포에 대한 대표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6>과 같다. 대표성 검증은 우선 '표본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같다'는 영가설을 설정한 후, 영가설에 따른 표본의 기대빈도를 구하였다. 이어서 실제 표본수와 표본의 기대빈도를 비교하여 카이자승 값을 구하고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카이자승 값은 524.379이고 유의도가 0.001 수준보다 작아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표본의 연령분포와 모집단의 연령분포가 상이하며, 표본이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네 연령집단의 기대비율은 22-25%로 유사하나, 표본의 빈도는 19~29세는 17.1%로 훨씬 낮고, 반면 30대 이후 연령의 비율은 기대빈도보다 높아, 20대 이하 인구가 과소 표집 되고, 30대 이상 인구가 과잉 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연령집단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6〉 모집단과 표본의 연령별 분포

연령	추계인구(%)	기대빈도(%)	표본수(%)
19 - 29세	8,084,022(25.1)	3,416(25.1)	2,326(17.1)
30 - 39세	8,084,022(25.1)	3,416(25.1)	3,983(29.3)
40 - 49세	8,286,179(25.7)	3,497(25.7)	3,679(27.0)
50 - 64세	7,357,510(22.9)	3,116(22.9)	3,620(26.6)
계	32,196,207(100.0)	13,608(100.0)	13,608(100.0)

주: Chi-square=524.379, df =3, p < 0.001

〈표 5-7〉은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대표성 검증결과 카이자승 값은 402.727이고 유의도가 0.001 수준보다 작아 표본과 모집단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표본의 성별분포와 모집단의 성별분포가 다르며, 표본은 성별면에서 대표성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모집단의 기대비율은 남자가 50.9%, 여자가 49.1%이나 표본의 비율은 남자가 42.0%, 여자가 58.0%로 남성인구가 과소 표집되고, 여성인구가 과잉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분포 역시 본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다.

〈표 5-7〉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분포

성별	추계인구(%)	기대빈도(%)	표본수(%)
남자	16,376,086(50.9)	6,926(50.9)	5,721(42.0)
여자	15,820,121(49.1)	6,682(49.1)	7,887(58.0)
계	32,196,207(100.0)	13,608(100.0)	13,608(100.0)

주: Chi-square=402.727, df =1, p < 0.001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하면 〈표 5-8〉과 같다. 검증결과 카이자승 값은 415.094이고 유의도가 0.001 수준보다 작아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표본의 지역별 분포와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가 상이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과소 표집 되었고,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은 과잉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결과 분석에서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

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5-8〉 모집단과 표본의 지역별 분포

지역	추계인구(%)	기대빈도(%)	표본수(%)
서울특별시	7,031,936(22.2)	2,986(22.2)	2,605(19.3)
부산광역시	2,402,027(7.6)	1,020(7.6)	1,061(7.9)
대구광역시	1,634,184(5.2)	694(5.2)	682(5.1)
인천광역시	1,735,431(5.5)	737(5.5)	694(5.2)
광주광역시	930,704(2.9)	395(2.9)	398(3.0)
대전광역시	982,552(3.1)	417(3.1)	417(3.1)
울산광역시	712,358(2.2)	302(2.2)	393(2.9)
경기도	7,235,792(22.8)	3072(22.8)	2886(21.4)
강원도	917,678(2.9)	390(2.9)	465(3.5)
충청북도	926,871(2.9)	394(2.9)	451(3.3)
충청남도	1184308(3.7)	503(3.7)	497(3.7)
전라북도	1060547(3.3)	450(3.3)	350(2.6)
전라남도	1031156(3.3)	438(3.3)	516(3.8)
경상북도	1628001(5.1)	691(5.1)	813(6.0)
경상남도	1967349(6.2)	835(6.2)	912(6.8)
제주도	333991(1.1)	142(1.1)	325(2.4)
계	31,714,885(100.0)	13,465(100.0)	13,465(100.0)

주: 지역별 추계인구는 연령단위를 5세로 하고 있어 19세의 경우 '15-19세' 범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표에는 19세를 제외하고 20세-64세까지만 포함하였다. Chi-square=415.094, df =15, p < 0.001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값은 아래 < 5-9>와 같다.

<표 5-9>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단위: %)

지역	19-29		30-39		40-49		50-64		합계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6	2.7	2.7	2.5	2.3	2.4	3.0	3.3	10.6	10.9	21.5
부산	0.9	0.9	0.8	0.8	0.9	0.8	1.2	1.4	3.8	3.9	7.7
대구	0.6	0.6	0.6	0.6	0.6	0.6	0.7	0.8	2.5	2.6	5.1
인천	0.6	0.6	0.6	0.7	0.7	0.6	0.7	0.7	2.6	2.6	5.2
광주	0.3	0.4	0.4	0.3	0.3	0.3	0.4	0.4	1.4	1.4	2.8
대전	0.4	0.3	0.3	0.4	0.3	0.4	0.4	0.4	1.4	1.5	2.9
울산	0.3	0.2	0.3	0.2	0.3	0.3	0.2	0.3	1.1	1.0	2.1
경기도	2.3	2.3	2.9	2.9	2.7	2.5	2.7	3.0	10.6	10.7	21.3
강원도	0.3	0.3	0.4	0.3	0.4	0.3	0.5	0.7	1.6	1.6	3.2
충북	0.3	0.3	0.3	0.4	0.4	0.3	0.5	0.5	1.5	1.5	3.0
충남	0.5	0.4	0.4	0.4	0.4	0.4	0.7	0.9	2.0	2.1	4.1
전북	0.4	0.4	0.4	0.4	0.4	0.4	0.7	0.8	1.9	2.0	3.9
전남	0.4	0.4	0.4	0.4	0.4	0.4	0.8	0.9	2.0	2.1	4.1
경북	0.6	0.5	0.6	0.6	0.6	0.6	0.9	1.2	2.7	2.9	5.6
경남	0.7	0.6	0.8	0.7	0.7	0.7	1.0	1.2	3.2	3.2	6.4
제주도	0.1	0.1	0.1	0.2	0.1	0.1	0.2	0.2	0.5	0.6	1.1
계	11.3	11.0	12.0	11.8	11.5	11.1	14.6	16.7	49.4	50.6	100.0

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표본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직업, 월평균 수입 및 월평균 지출의 ‘경제적 특성’, 주거지 유형과 주거 소유형태의 ‘주거 특성’, 그리고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의 ‘장애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응답자들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되었다.

먼저 <표 5-10>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5,721명으로 42.0%, 여성이 7,887명으로 58.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 면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아서 29.3%이고, 40대가 27.0%, 50~64세가 26.6%이며 19~29세가 가장 적어 17.1%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73.1%가 유배우자이고, 미혼이 18.9%이며, 사별과 이혼 및 별거는 각각 3.7%와 4.3%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졸업’이 가장 많아 38.8%이며, ‘대학교 중퇴·졸업이상’이 30.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전문대 중퇴·졸업’이 10.7%로 세 번째로 많은 집단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80%에 이르며, 반면 ‘중학교 중퇴·졸업자 이하’는 약19%에 불과하다. 무학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표 5-10〉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5,721	42.0
	여자	7,887	58.0
	소계	13,608	100.0
연령	19-29	2,326	17.1
	30-39	3,983	29.3
	40-49	3,679	27.0
	50-64	3,620	26.6
	소계	13,608	100.0
혼인상태	유배우자	9,943	73.1
	사별	504	3.7
	이혼·별거	592	4.3
	미혼	2,569	18.9
	소계	13,608	100.0
교육수준	무학	0	0.0
	초등학교 중퇴·졸업	1,213	8.9
	중학교 중퇴·졸업	1,347	9.9
	고등학교 중퇴·졸업	5,285	38.8
	전문대 중퇴·졸업	1,452	10.7
	대학교 중퇴·졸업이상	4,147	30.5
	무응답	14	0.1
	소계	13,608	100.0

이어서 <표 5-11>은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직업, 월평균수입, 월평균 지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직업면에서는 무직이 가장 많아 35.6%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에 주부가 상당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아 세 범주를 합하면 약30%에 이른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1/3은 무직이고, 1/3은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어서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수입분포를 보면 평균 수입은 285만원이고, 중앙값은 231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2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것이 가장 많아 22.8%이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8.3%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60%가 월평균 1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의 평균값은 231만원이며, 중앙값은 200만원이다. 100만원 단위 구간 별로 나누어 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7.7%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0%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구분		빈도	%
직업	고위임원직 및 관리자	205	1.5
	전문가	740	5.4
	기술공 및 준전문가	918	6.7
	사무종사자	1,405	10.3
	서비스종사자	1,283	9.4
	판매종사자	1,142	8.4
	농·축·어업 종사자	664	4.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15	6.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66	4.2
	단순노무자	914	6.7
	기타	11	0.1
	무직	4,841	35.6
	무응답	4	0.0
	소계	13,608	100.0
월평균수입	없음	125	0.9
	100만원 미만	1,083	8.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697	19.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00	22.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97	18.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571	11.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004	7.4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332	2.4
	700만원 이상	557	4.1
	무응답	642	4.7
소계	13,608	100.0	
월평균지출	100만원 미만	1,791	13.2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383	32.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774	27.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68	14.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31	5.4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44	2.5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86	0.6
	700만원 이상	84	0.6
	무응답	447	3.3
소계	13,608	100.0	

<표 5-12>는 조사대상자들의 주거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주거 특성은 주거지 유형과 주거 소유형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지 유형을 보면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아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9%이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30.8%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도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12.0%, 연립주택 거주자가 5.9%로 나타났다.

주거 소유형태 면에서는 자가 가장 많아 61.7%이고, 전세가 21.5%, 보증부월세가 10.2%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2>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구분		빈도	%
주거지 유형	아파트	6,382	46.9
	단독주택	4,196	30.8
	다세대주택	1,631	12.0
	연립주택	806	5.9
	복합용도주택(점포주택 등)	353	2.6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96	1.4
	오피스텔	34	0.2
	기타	10	0.1
	소계	13,608	100.0
주거소유형태	자가	8,393	61.7
	전세	2,927	21.5
	보증부월세	1,384	10.2
	사글세	302	2.2
	기타	577	4.2
	무응답	25	0.2
	소계	13,608	100.0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장애관련 특성을 정리하면 <표 5-13>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약3.4%인 469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에는 등록장애인과 비등록장애인이 모두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아 66.7%에 이르고 있고, 시각장애가 9.6%이며,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등 신체장애가 8.1%이다. 그 외에도 뇌경변,

청각장애, 정신장애, 정신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조사대상자에 포함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조사대상자의 장애특성

구분		빈도	%
장애유무	장애 있음	469	3.4
	장애 없음	13,139	96.6
	소계	13,608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313	66.7
	뇌경변	27	5.8
	시각장애	45	9.6
	청각장애	18	3.8
	언어장애	4	0.9
	정신지체	7	1.5
	발달장애(자폐증)	1	0.2
	정신장애	15	3.2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38	8.1
	무응답	1	0.2
	소계	469	100.0

제 3 절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실태

이 절에서는 2006년 한 해동안 우리 사회에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가 얼마나 많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 발생은 강간·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간간의 유형별로 피해실태와 가해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피해의 내용과 가해자 특성, 성폭력 행위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값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성폭력 피해실태

가. 전체 성폭력 피해율

먼저 일곱 가지 성폭력 유형별로 피해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5-14>에는 성폭력 피해실태가 요약되어있다. 표에서는 조사결과 나타난 표본의 성폭력 피해 사례수(사람)와 발생 건수(사건), 평균 피해건수를 제시하고, 이를 인구 1,000명당 피해율로 계산한 결과를 함께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피해를 경험한 사례, 즉 사람을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과 이들이 경험한 피해건수, 즉 사건을 단위로 집계하는 방식이 있다(최인섭 외 2002; 김지선 외 2006). 사례를 단위로 분석하는 방법은 전체 인구 중 피해자의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범죄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두 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 범죄발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범죄공식통계에서는 발생건수를 단위로 범죄발생율을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사례와 피해사건 모두를 제시하고 피해자 1인이 경험한 평균 건수를 제시하되, 전체 인구의 피해율은 피해건수를 단위로 하여 추정하였다.

먼저 ‘강간·강간미수’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6,880명 중에서 15명이 강간 혹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¹⁴⁾, 이들이 경험한 강간·강간미수 건수는 42건으로 평균 피해건수는 2.8건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인구 피해율을 추산하여보면 인구 1,000명당 피해사례는 2.2명, 피해건수는 6.1건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여성 1,000명 중에서 2.2명이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며, 6.1건의 강간·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다.

‘심한추행 피해’는 구강성교, 항문성교, 항문 혹은 성기에의 이물질삽입 등과 같은

14) 현행법상 강간죄의 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남성이며, 여성은 단독으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남성과 함께 공동정범의 형태로나 남성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본죄 성립 가능함. 공식통계상의 발생율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강간피해는 여성에만 국한하였고, 남성의 항문성교 등 피해의 경우에는 유사성교로 분류하였음.

유사성교행위와 강제적인 성적키스, 성기접촉, 성기외 접촉, 성적 포옹 등과 같은 심한 추행을 포함한 범주이다. 심한 추행 피해자에는 남녀 모두 포함된다. 응답자 13,588명 중에서 40명이 심한추행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이 경험한 피해사건수는 총 121건으로 심한 추행 피해자 일인당 3.0건을 경험한 셈이다. 이를 전체 인구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지난 1년 동안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000명 당 2.9명이 심한 추행을 경험하였으며 8.9건이 발생한다.

‘가벼운 추행’은 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응답자 13,590명 중에서 204명이 가벼운 추행 피해를 당했고, 피해건수는 471건으로 피해자 일인당 평균 2.3건을 경험하였다. 이는 노인을 제외한 19~64세 성인 인구 1,000명당 15.0명이 심한 추행 피해자이고, 34.7건의 심한 추행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표본 13,590명 중에서 94명이 이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건수로는 471건이며, 피해자 일인당 평균 2.3건의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여 보면 19~64세 성인 인구 1,000명당 피해사례는 6.9명, 피해건수는 21.3건이다.

고의적인 ‘성기노출’행위는 응답자 13,589명 중에서 145명이 경험하였고, 피해건수는 288건, 평균 2.0건이다. 노인을 제외한 19~64세 성인인구 1,000명당 10.7명, 2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음란전화’는 가장 많은 피해사건이 보고된 성폭력 유형이다. 표본 13,589명 중에서 무려 385명, 총 1,206건의 피해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1,000명당 무려 28.3명, 88.7건이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은 응답자 13,591명 중에서 74명이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건수는 총 347건이다. 전체 인구 1,000명당 5.4명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였고, 1,000명당 25.5건의 스토킹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부부강간’이다. 부부강간은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강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부부강간은 특성상 다

른 강간에 비해 피해자 일인당 피해횟수가 훨씬 많아 피해건수로 분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피해건수보다는 피해사례를 단위로 피해율을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분석 결과 여성 응답자 6,880명 중에서 67명이 부부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평균 피해건수는 피해자 일인당 4.4건이다. 19~64세 여성인구 1,000명당 9.7명이 부부강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조사는 가정폭력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부부강간에 대한 인지도가 평소보다 고양된 상태에서 성폭력 조사에 응하여 부부강간 피해율이 일반 강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14〉 전체인구의 성폭력 피해율

성폭력 유형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강간·강간미수	6,880	15	42	2.8	2.2	6.1
심한추행	13,588	40	121	3.0	2.9	8.9
가벼운 추행	13,590	204	471	2.3	15.0	34.7
성희롱	13,589	94	289	3.1	6.9	21.3
성기노출	13,589	145	288	2.0	10.7	21.2
음란전화	13,589	385	1206	3.1	28.3	88.7
스토킹	13,591	74	347	4.7	5.4	25.5
부부강간	6,880	67	294	4.4	9.7	42.7

주: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1,000명당 피해율 = 피해사례(건수)/N × 1,000
 범죄피해를 보고하였으나 피해횟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건으로 적용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강간·강간미수’는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피해사례 15명, 피해건수 42건, 19세에서 64세 여성 1,000명당 피해자 수는 2.2명이며, 피해건수는 6.1건이다.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여성 응답자 6,880명 중에서 32명이 피해를 보고하였고, 피해건수는 104건으로 피해자 일인당 평균 3.3건의 심한 추행을 경험하였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성인여성 1,000명당 4.7명, 15.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벼운 추행’은 여성응답자 169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사건 수는 361건이다. 여성 성인인구 1,000명당 24.6명이 가벼운 추행 피해를 당하고, 52.5건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성희롱’은 77명의 여성 응답자가 피해를 보고하였는데, 피해건수는 240건이며, 일인당 평균 3.1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성인인구 피해율은 추정하여 보면 1,000명당 11.2명이 피해를 당하고, 34.9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기노출’ 피해는 여성 응답자 중 132명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피해건수는 251건이며, 피해자 일인당 2.6건을 경험하였다. 전체 인구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여성 성인인구 1,000명당 19.2명, 36.5건이 발생한다.

‘음란전화’ 피해율은 7개 유형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여성 응답자 중 무려 220명이 574건의 음란전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 1000명당 32.0명이 83.4건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피해를 보면 67명의 여성응답자가 294건의 스톱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평균 피해사건수는 4.4건이다. 19~64세 성인여성 1000명당 8.4명이 44.9건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부부강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본의 피해사례는 67명이며,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여성 성인인구 1,000명당 9.7명이 부부강간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의미이다.

〈표 5-15〉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

성폭력 유형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강간·강간미수	6,880	15	42	2.8	2.2	6.1
심한추행	6,880	32	104	3.3	4.7	15.1
가벼운 추행	6,881	169	361	2.1	24.6	52.5
성희롱	6,880	77	240	3.1	11.2	34.9
성기노출	6,880	132	251	1.9	19.2	36.5
음란전화	6,880	220	574	2.6	32.0	83.4
스토킹	6,882	58	309	5.3	8.4	44.9
부부강간	6,880	67	294	4.4	9.7	42.7

주: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1,000명당 피해율 = 피해사례(건수)/N × 1,000

우리 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성폭력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폭력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여 전체 성폭력 피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집합적(aggregate) 개념의 피해율은 조사에 포함된 성폭력의 유형의 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조사에 포함된 성폭력 유형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폭력 피해율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포함된 모든 성폭력 유형들에 대한 집합적 피해율을 계산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면서 공식 범죄통계와 비교가능한 네 가지 유형의 성폭력, 즉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의 피해율만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5-16>에는 강간·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피해율을 전체 조사대상자와 여성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심한추행과 가벼운 추행)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43명이며, 이들이 경험한 총 피해건수는 634건이었다. 이를 전체 인구로 환산하여 보면 19~64세 성인 남녀 1,000명당 17.9명이 강간·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건수는 46.7건이다. 여성의 경우는 피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표본 중 피해 사례수는 200명, 피해건수는 507건이며, 성인 여성 1,000명당 추정 피해사례는 29.1명, 피해 건수는 73.7건에 이른다.

<표 5-16> 강간/강간미수/심한추행/가벼운추행 피해율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전체	13,588	243	634	2.6	17.9	46.7
여성	6,880	200	507	2.5	29.1	73.7

나. 공식통계와의 발생률 비교

이번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성폭력 피해율을 범죄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보았다.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표 5-17>에는

조사결과 나타난 표본의 피해건수를 근거로 모집단의 추정피해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로 계산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범죄 공식통계상의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와 발생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범죄공식통계상 성폭력범죄는 ‘강간죄’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간죄에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 유형 중에서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피해의 경우에는 처벌 법규가 없거나 공식범죄통계상 해당 범죄 발생률을 알 수 없어 공식통계와의 비교가 어렵다.¹⁵⁾ 따라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만을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보았다.

강간·강간미수의 19~64세 성인인구의 추정피해건수는 99,517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추정 피해율은 309.1건이다.¹⁶⁾ 심한 추행은 인구 10만 명당 890.5건, 가벼운 추행은 3456.8건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심한 추행과 가벼운 추행)을 모두 합하면 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추정 피해율은 4665.9이다. 반면 공식통계상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3,573건이며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이다.

15) 성희롱과 부부강간은 현행법상 처벌법규가 없으며, 스토킹과 음란전화는 단일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성기노출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식통계상 성기노출만의 발생통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16) 앞서 <표 5-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본의 강간·강간미수 피해건수는 42건으로 19-64세 여성인구만을 대상으로 추정할 때 추정피해건수는 96,576건, 동일 연령대 여성인구 10만 명당 610.5건임. 이는 여성인구 10만 명당 610.5건의 강간·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공식통계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범죄 발생률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피해건수 역시 남성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조정, 계산하였다.

〈표 5-17〉 공식통계 성폭력범죄 발생율과의 비교

성폭력 유형	N	표본		모집단		공식통계	
		피해건수	추정피해건수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	발생건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강간·강간미수	13,588	42	99,517	309.1	13,573	27.7	
강제 심한추행	13,588	121	286,705	890.5			
추행 가벼운 추행	13,590	471	1,115,851	3465.8			
계	13,588	634	1,502,237	4665.9			

주: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추정발생건수 = 인구수/표본수*피해건수
 10만명당 추정피해율 = 추정발생건수/전체인구수 × 100,000

따라서 본 조사결과 집계된 피해율은 성폭력범죄 공식통계보다 추정피해건수 면에서는 110.7배 많고,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 면에서는 168.4배 많은 수치이다. 본 피해조사 결과와 강간 및 강제추행에만 한정하여 비교하더라도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폭력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법적 처벌은 되고 있으나 비교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과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성폭력 유형인 성희롱, 부부강간을 포함한다면 실제 성폭력 발생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미국의 성폭력 피해조사와의 발생률 비교

미국에서는 성폭력, 일반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여성폭력피해조사(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실태와 미국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비교하여 보기 위하여 <표 5-18>에는 2006년도에 제출된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의 조사결과 보고서의 강간 피해실태와 본 조사결과 나타난 성폭력 피해율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상이한 법체제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두 국가의 성폭력 피해율을 엄밀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상이한 조사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와 조사방법상의 차이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전제로 인정한 상태에서 거친 수준에서나마 두 국가

의 성폭력 피해율 비교를 하고자 한다.

미국의 여성폭력 피해조사와 본 연구조사는 연구방법이나 강간개념, 조사대상자의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의 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하여 18세 이상 남녀 각 8,000명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반면, 본 조사는 19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 남녀 각 약6,5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또한 미국조사의 강간(rape)의 개념은 남성의 부녀자에 대한 성기삽입과 미수라는 협의의 강간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삽입(penetration)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 강간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 포함된 성폭력 유형 중에서 강간, 강간미수, 유사성교(항문성교, 구강성교, 이물질삽입), 부부강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유사성교의 개념정의는 두 국가간의 차이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나, 부부강간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을 것을 판단된다. 더구나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조사가 하나의 설문지로 함께 측정되었고 이 때문에 부부강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상태에서 성폭력 설문에 응하게 되어 부부강간 피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하여 표에는 1단계로 ‘강간·강간미수와 유사성교’만을 미국 피해율과 비교하고, 2단계로 ‘강간·강간미수, 유사성교, 부부강간’을 비교하여 보았다.

<표 5-18>을 보면 미국의 전국 여성폭력피해조사 결과 여성의 강간 피해율(강간+유사성교+부부강간)은 표본 8,000명 중 0.3%이며, 평균 피해건수는 2.9건이다. 이를 토대로 전체 인구의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18세 이상 여성 인구 1,000명당 8.7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강간과 유사성교만을 비교하였을 때 표본 6,880명 중 미국과 동일한 비율인 0.3%가 피해를 당했고, 평균 피해건수는 3.0건으로 미국보다 0.3건 많다. 이를 환산하면 19~64세 여성인구 1,000명당 9.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강간·강간미수와 유사성교, 그리고 부부강간까지를 합하여 피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본 조사표본의 피해율은 1.2%이고, 평균피해건수는 4.2건에 이른다. 19~64세 이상 여성인구 1,000명당 무려 51.7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의의 강간피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표본의 피해자 비율은 동일하나 발생건수 면에서 한국이 다소 높다. 그러나 보다 적극

적인 의미에서 두 국가간의 광의의 강간피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강간 피해율이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 면에서 약6배나 많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의 통계는 18세 이상 여성인구로 노인인구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본 조사표본은 19~64세로 상대적으로 피해율이 높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연령의 피해율을 비교할 경우 두 국가간 피해율 차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표 5-18〉 미국과 한국의 여성 성폭력 피해율 비교

		N	표본		모집단		1,000명당 피해율 (건수)
			피해사례 비율	평균 피해건수	추정 피해사례	추정 피해건수	
미국	강간+ 유사성교 + 부부강간	8,000	0.3	2.9	302,091	876,064	8.7
	강간+ 유사성교	6,880	0.3	3.0	48,288	142,565	9.0
한국	강간+ 유사성교 + 부부강간	6,880	1.2	4.2	193,159	818,599	51.7
	강간+ 유사성교						

부부강간에 대한 개념은 두 국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상이할 수 있다. 미국 통계는 18세 이상 여성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한국 통계는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피해율 자료를 노인인구를 포함한 전체 성인여성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율은 표에 제시된 수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라. 성폭력유형별 피해율

이번에는 성폭력 유형을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9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연령별 발생률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조사결과 나타난 강간·강간미수의 피해사례 및 피해건수와 이를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로 환산한 수치를 연령별로 제시하면 <표 5-19>와 같다. 강간 및 강간미수는 현행법상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표본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고, 추정치 역시 19~64세의 여성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19~29세의 강간·강간미수 피해사례는 3명, 피해건수는 3건이며,

30대는 각각 3명, 11건, 40대는 6명 19건, 50~64세는 3명, 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전체 여성인구 1,000명당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40대의 피해건수가 가장 많고(피해사례 4.0명, 피해건수 12.6건), 20대 이하(2.0명, 2.0건), 30대(1.9명, 6.9건), 50대 이상(1.3명, 3.5건)의 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여성 인구 1,000명당 4.0명이 12.6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며, 19~29세 여성인구 1,000명당 54.9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며, 피해건수는 223.7건으로 추정된다.

〈표 5-19〉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3	3	2.0	2.0
30대	3	11	1.9	6.9
40대	6	19	4.0	12.6
50대 이상	3	8	1.3	3.5

2) 심한 추행 피해율

〈표 5-20〉은 유사성교(항문성교, 구강성교, 이물질 삽입)와 신체접촉성 강제추행을 합한 성폭력 유형인 심한추행의 피해율을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심한 추행은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표에는 먼저 남녀 전체의 표본 및 전체 인구 1,000명당 피해율을 제시하고, 이어 여성만을 대상으로 표본 및 전체 여성인구 1,000명당 피해율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먼저 표본의 남녀 모두의 연령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피해사례는 18명, 피해건수 24건이었고, 30대는 6명 13건, 40대는 12명 66건, 50대 이상은 4명 18건이다. 이를 전체 인구 피해율로 추정하여 보면 피해사례 면에서는 20대 이하의 심한추행 피해자수가 가장 많아서 5.9명이고, 40대가 3.9명, 30대가 1.9명, 50대 이상이 0.9명이었다. 피해건수 면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아서 21.5건이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7.9건, 50대 이상과 30대는 각각 4.2건과 4.0건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 동

안 19~29세 남녀 인구 1,000명당 5.9명이 심한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피해건수는 7.9건이다. 반면 40대 남녀 인구 1,000명당 3.9명이 심한 추행 피해를 경험했는데 일인당 피해횟수가 많아 21.5건이 발생하였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심한추행 피해율을 살펴보아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여성 표본의 피해율은 피해사례 면에서 20대 이하가 15명으로 가장 많으나 피해건수 면에서는 40대가 가장 많아 57건이다. 다시 말해서 19-29세 여성은 1,000명당 10.0명이 심한 추행 피해를 경험하고, 13.4건의 심한 추행 사건이 발생한다. 40대는 1,000명당 6.6명이 심한추행 피해를 당하고 심한 추행 피해건수는 37.8건이다.

〈표 5-20〉 심한추행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18	24	5.9	7.9	15	20	10.0	13.4
30대	6	13	1.9	4.0	5	10	3.1	6.2
40대	12	66	3.9	21.5	10	57	6.6	37.8
50대 이상	4	18	0.9	4.2	3	17	1.3	7.5

3) 가벼운 추행 피해율

먼저 남녀 모두의 피해율을 보면, 가벼운 추행은 피해사례나 피해건수 모두 20대 이하의 피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경우 20대가 피해사례 105명, 피해건수 213건이며 이를 토대로 전체 인구 추정치를 구해보면 19~29세 남녀 인구 1,000명당 34.6명이 가벼운 추행을 경험하고, 피해건수는 70.3건인 셈이다. 30대는 표본의 경우 피해사례 40명, 피해건수 78건이고, 전체 인구 추정치는 피해사례 12.4명, 피해건수 24.1건으로 나타났다. 즉 30대 남녀인구 1,000명당 12.4명이 가벼운 추행을 경험하고 24.1건이 발생한 셈이다. 40대는 표본의 경우 피해사례 27명, 피해건수 101건이며, 전체 40대 인구 1000명당으로 추정하면 피해사례 8.8명, 피해건수 32.9건이다. 피해사례 면에서는 30대보다 적지만 피해건수는 30대보다 많다. 50대 이상은 표본의 피해사례는 32명, 피해건수는 80건이며 50~64세 인구 1,000명당 7.5명이 18.8

건의 가벼운 추행 피해를 경험한다.

〈표 5-21〉 가벼운 추행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105	213	34.6	70.3	85	160	56.9	107.1
30대	40	78	12.4	24.1	34	62	21.2	38.6
40대	27	101	8.8	32.9	26	72	17.2	47.7
50대 이상	32	80	7.5	18.8	25	67	11.0	29.5

이번에는 여성의 피해율을 살펴보면, 여성 역시 20대 이하의 피해율이 가장 높아서 표본의 피해사례는 85명, 피해건수 160건이며, 19~29세 여성인구 1,000명당 56.9명이 가벼운 추행피해를 당하고, 107.1건이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30대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표본의 경우 34명, 62건이었고, 이는 30대 여성인구 1,000명당 21.2명이 가벼운 추행피해를 당하고 38.6건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40대는 표본의 피해사례는 26명, 피해건수는 72건이었고 40대 여성 1,000명당 17.2명, 47.7건이 발생한다. 50대 이상은 표본의 경우 피해사례 25명, 피해건수 67건이며 50~6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11.0명이 29.5건의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다.

4) 성희롱 피해율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한 성희롱 역시 전체 인구나 여성 인구 모두 20대 이하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 인구의 경우 20대 이하의 피해율은 인구 1,000명당 15.5명, 피해건수 39.9건이며, 여성 인구의 경우 여성 1,000명당 26.1명, 73.0건의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40대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남녀 전체인구의 경우 7.5명이 23.1건의 성희롱을 경험하였고, 여성 인구의 경우 1,000명당 13.9명이 43.7건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하였다.

〈표 5-22〉 성희롱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47	121	15.5	39.9	39	109	26.1	73.0
30대	11	42	3.4	13.0	10	41	6.2	25.5
40대	23	71	7.5	23.1	21	66	13.9	43.7
50대 이상	13	55	3.1	12.9	6	25	2.6	11.0

반면 30대와 50대 이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0대의 경우 남녀 전체 피해율은 인구 1000명당 3.4명이 13.0건의 피해를 입었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보면 1000명당 6.2명이 25.5건의 피해를 당했다. 50대 이상은 남녀 전체의 경우 1000명당 3.1명이 12.9건의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고, 여성은 1000명당 2.6명이 11.0건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성기노출 피해율

성기노출 피해율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해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의 피해율은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1,000명당 26.4명이 성기노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건수는 45.9건이었다. 여성의 피해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서 19~29세 여성인구 1,000명당 54.4명이 96.1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는 남녀 모두를 고려할 때 전체 30대 인구 1,000명당 9.0명이 17.0건의 성기노출을 경험하였고, 30대 여성 1,000명당 16.5명이 30.4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남녀 인구 1,000명당 4.6명이 10.7건의 성기노출 피해를 당하고, 40대 여성인구 1,000명 중에는 8.0명이 18.7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인구의 경우 50~64세 남녀 인구 1,000명당 5.2명이 14.6건의 피해를 당하였고, 50-64세 여성인구 1,000명당 7.5명이 16.9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3〉 연령별 성기노출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80	139	26.4	45.9	77	136	54.4	96.1
30대	29	55	9.0	17.0	26	48	16.5	30.4
40대	14	33	4.6	10.7	12	28	8.0	18.7
50대 이상	22	62	5.2	14.6	17	38	7.5	16.9

6) 음란전화 피해율

음란전화 피해율은 이제까지 살펴본 다른 성폭력 유형과 달리 40대와 50대 이상 인구의 피해율이 20대 이하나 30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녀를 모두 합해서 보면 50대 이상의 음란전화 피해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40대와 50대 이상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남녀 전체 인구의 피해율을 보면 50대의 경우 1,000명당 41.4명이 129.2건의 음란전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40대 인구 1,000명당 30.6명, 908건이 발생하였다. 반면 30대는 인구 1,000명당 20.4명이 62.2건, 20대 이하는 1,000명당 15.8명, 55.8건의 음란전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인구 피해율을 보면 40대 여성 인구 1,000명당 39.1명이 90.1건의 음란전화 피해를 경험했고, 50대 이상은 1,000명당 37.4명이 96.4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30대 여성은 1,000명당 26.2명이 62.3건, 20대 이하 여성은 22.8명이 79.7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24〉 연령별 음란전화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48	169	15.8	55.8	34	119	22.8	79.7
30대	66	201	20.4	62.2	42	100	26.2	62.3
40대	94	279	30.6	90.8	59	136	39.1	90.1
50대 이상	176	550	41.4	129.2	85	219	37.4	96.4

7) 스토킹 피해율

스토킹 피해는 강간, 강제추행, 성기노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20대 인구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녀 전체 인구의 피해율을 보면 19~29세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건수는 63.0건이다. 40대는 인구 1,000명당 3.9명, 39.1건이며, 30대는 3.4명, 4.0건, 50대 이상은 2.6명,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20대 이하 여성의 피해율은 전체 인구 중 20대 이하 피해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19~29세 여성인구 1,000명당 21.4명이 113.1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40대는 1,000명당 6.0명이 72.8건, 30대는 5.6명이 6.9건, 50대 이상은 3.5명이 8.4건의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5〉 연령별 스토킹 피해율

	전체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41	191	13.5	63.0	32	169	21.4	113.1
30대	11	13	3.4	4.0	9	11	5.6	6.9
40대	12	120	3.9	39.1	9	110	6.0	72.8
50대 이상	11	23	2.6	5.4	8	19	3.5	8.4

8)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율

부부강간 및 강간미수는 강간 및 강간미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성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표 5-26〉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표본 피해율과 전체 여성인구의 추정피해율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40대 여성의 피해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본의 피해율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자는 없었고, 30대가 21명, 83건, 40대가 27명 106건, 50대 이상이 19명 10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토대로 여성인구 전체의 피해율을 추정하여 보면 30대 여성인구 1,000명

당 13.1명이 51.7건의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40대 여성은 1,000명당 17.9명이 70.2건, 50대 이상 여성은 1,000명당 8.4명이 45.4건의 부부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26〉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율

	여자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20대 이하	-	-	-	-
30대	21	83	13.1	51.7
40대	27	106	17.9	70.2
50대 이상	19	103	8.4	45.4

9) 장애인 성폭력 피해율

장애인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성폭력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5-27>은 남녀 장애인 전체의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제시한 것이다. 표본의 피해율을 제시하고, 이어 장애인 인구 중 추정 피해율을 계산하였다. 장애인 인구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강간미수는 장애인들의 피해율이 높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사례는 1명, 피해건수는 1건이며, 장애인 인구 1,000명당 5.8명이 5.8건의 강간·강간미수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표 5-15>에서 분석한 전체 인구 피해율이 2.2명, 6.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사례, 즉 강간·강간미수를 당한 사람 수 면에서는 장애인이 약 2.6배나 많고, 피해사건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심한 추행은 장애인의 경우 1,000명당 7.6명, 7.6건으로 전체인구 2.9명, 8.9건과 비

교할 때 장애인들이 피해사례 면에서는 약2.7배 많고 피해건수는 유사하다.

가벼운 추행은 1,000명당 7.6명, 9.5건으로 전체 인구 15.0명 34.7건과 비교할 때 장애인보다는 전체인구가 사례면에서 2배, 사건수면에서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1,000명당 5.7명, 7.6건으로 전체 인구 6.9명, 21.3건과 비교할 때 전체 인구가 더 피해율이 높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기노출 피해의 경우 장애인 피해 추정치는 1,000당 1.9명, 1.9건으로 전체 인구 10.7명, 21.2건과 비교할 때 전체 인구가 성기노출 피해자수 면에서는 5.6배, 피해사건수 면에서는 1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전화는 장애인의 경우 피해사례가 1000명당 49.6명, 194.7건으로 전체 인구 28.3명, 88.7건과 비교할 때 장애인들의 피해율이 전체인구보다 사례수 면에서 1.8배, 사건수 면에서 2.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토킹은 장애인의 경우 1000명당 7.6명, 28.6건으로 전체 인구 5.4명 25.5건과 비교할 때 장애인 피해율이 사례수 면에서 1.4배, 사건수 면에서 1.1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강간 및 강간미수의 경우 장애인들은 1000명당 17.3명이 75.1건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체 인구의 추정치 9.7명, 42.7건과 비교하면 장애인이 사례수 면에서나 피해 사건수 면에서 모두 무려 1.8배나 피해율이 높다.

〈표 5-27〉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성폭력 유형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강간·강간미수	173	1	1	1.0	5.8	5.8
심한추행	524	4	4	1.0	7.6	7.6
가벼운 추행	524	4	5	1.3	7.6	9.5
성희롱	524	3	4	1.3	5.7	7.6
성기노출	524	1	1	1.0	1.9	1.9
음란전화	524	102	102	3.9	49.6	194.7
스토킹	524	4	15	3.8	7.6	28.6
부부강간	173	3	13	4.3	17.3	75.1

주: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1,000명당 피해율 = 피해사례(건수)/N × 1,000

이어서 <표 5-28>에는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별 피해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강간·강간미수는 장애여성 1,000명당 5.8명, 5.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심한 추행은 11.6명, 11.6건, 가벼운 추행은 23.1명, 28.9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희롱은 11.6명 11.6건, 성기노출은 5.8명, 5.8건, 음란전화는 11.6명, 23.1건, 스토킹은 11.6명, 11.6건, 그리고 부부강간·강간미수는 17.3명, 75.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장애 여성들은 전체 여성에 비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 피해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는 전체 여성이 더 높았으며, 성희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15 참조).

<표 5-28>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실태

성폭력 유형	N	범죄피해 발생건수			1,000명당 피해율	
		피해사례	피해건수	평균피해건수	피해사례	피해건수
강간·강간미수	173	1	1	1.0	5.8	5.8
심한추행	173	2	2	1.0	11.6	11.6
가벼운 추행	173	4	5	1.3	23.1	28.9
성희롱	173	2	2	1.0	11.6	11.6
성기노출	173	1	1	1.0	5.8	5.8
음란전화	173	4	4	2.0	11.6	23.1
스토킹	173	2	2	1.0	11.6	11.6
부부강간	173	3	13	4.3	17.3	75.1

주: 표본수(N)는 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1,000명당 피해율 = 피해사례(건수)/N × 1,000

2. 성폭력 가해실태

가. 유형별 성폭력 가해경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본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 대상자 중 남성만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유형별 가해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를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조사는 공식 범죄통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연구방법으로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심

각한 범죄는 숨은 범죄로 남게 되고, 사소한 범죄는 과대하게 측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 조사만으로 범죄발생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와 같이 경찰 신고율은 낮으나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벼운 성폭력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폭행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와 연관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 행위 유형의 실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11개의 성폭력 및 폭력행위 가해경험, 그리고 성매수 경험을 조사하였다.

〈표 5-29〉를 보면 가장 많이 보고된 가해행위는 폭행으로 남성 응답자의 5.7%가 지난 1년간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는 1회, 1.0%는 2회, 0.9%는 3회 이상 폭행 경험이 있다. 두 번째로는 성인대상 성매수로 4.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는 1회, 1.0%는 2회, 1.6%는 3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 번째로는 부부강간으로 4.2%로 나타났는데 1.5%는 1회, 1.3%는 2회, 1.4%는 3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 성희롱 가해비율은 2.1%, 음란전화, 스토킹, 강제추행은 각각 0.3%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강간미수, 강간, 아동성폭력은 0.1%이다. 성기노출은 단 한 명도 가해경험을 보고하지 않았다.

〈표 5-29〉 남성의 성폭력 유형별 가해실태

(단위: %, 명)

성폭력 유형	없다	1회	2회	3회 이상	계
폭행	94.3	3.8	1.0	0.9	100.0(6,677)
성매수(성인대상)	95.6	1.8	1.0	1.6	100.0(6,677)
성매수(미성년자 대상)	99.9	0.1	-	0.1	100.0(6,677)
성희롱	97.9	1.2	0.4	0.5	100.0(6,677)
음란전화	99.7	0.2	0.0	0.1	100.0(6,677)
성기노출	100.0	-	-	-	100.0(6,677)
스토킹	99.7	0.2	-	-	100.0(6,677)
성추행	99.7	0.1	0.1	-	100.0(6,675)
강간미수	99.9	0.1	-	-	100.0(6,677)
강간	99.9	0.1	0.0	-	100.0(6,677)
부부강간	95.8	1.5	1.3	1.4	100.0(6,677)
아동성폭력	99.9	0.1	-	-	100.0(6,677)

연령에 따라 성폭력행위 가해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5-30>에는 남성 응답자를 19~29세, 30대, 40대, 50~64세의 네 집단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가해비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폭행, 성인대상 성매수, 부부강간의 세 유형만이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폭행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대 이하 남성은 8.4%가 지난 1년간 폭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이상 남성은 2.6%로 상대적으로 낮다. 성인대상 성매수는 30대가 6.5%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5.5%, 40대가 4.6%로 그 다음이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하다. 부부강간은 40대 남성의 가해경험 비율이 가장 높아 6.3%이고, 3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4.7%와 4.6%로 유사하다. 20대 남성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령층이 미혼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나. 성폭력 충동

위에서 지난 1년간 실제 성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사대상자들의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폭력 충동을 분석하여 보았다. <표 5-31>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충동을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1.0%는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0.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5-30〉 남성의 연령별 성폭력 가해실태

(단위: %, 명)

성폭력 유형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통계값
폭행	있다	91.6	94.0	93.5	97.4	$X^2=57.470$ p=.000
	없다	8.4	6.0	6.5	2.6	
	계	100.0(1,532)	100.0(1,616)	100.0(1,548)	100.0(1,980)	
성매수 (성인대상)	있다	94.5	93.5	95.4	98.3	$X^2=55.388$ p=.000
	없다	5.5	6.5	4.6	1.7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8)	100.0(1,979)	
성매수 (미성년자대상)	있다	99.9	99.9	99.7	100.0	$X^2=6.765$ p=.080
	없다	0.1	0.1	0.3	-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8)	100.0(1,981)	
성희롱	있다	98.1	97.8	97.5	98.2	$X^2=2.069$ p=.558
	없다	1.9	2.2	2.5	1.8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7)	100.0(1,980)	
음란전화	있다	99.5	99.6	99.4	100.0	$X^2=10.388$ p=.016
	없다	0.5	0.4	0.6	-	
	계	100.0(1,533)	100.0(1,617)	100.0(1,547)	100.0(1,981)	
성기노출	있다	100.0	100.0	99.9	100.0	$X^2=6.634$ p=.085
	없다	-	-	0.1	-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7)	100.0(1,981)	
스토킹	있다	99.5	99.8	99.7	99.9	$X^2=6.319$ p=.097
	없다	0.5	0.2	0.3	0.1	
	계	100.0(1,532)	100.0(1,616)	100.0(1,548)	100.0(1,981)	
성추행	있다	100.0	99.7	99.7	99.6	$X^2=5.845$ p=.119
	없다	-	0.3	0.3	0.4	
	계	100.0(1,532)	100.0(1,616)	100.0(1,547)	100.0(1,979)	
강간미수	있다	99.9	100.0	99.7	100.0	$X^2=8.423$ p=.038
	없다	0.1	-	0.3	-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7)	100.0(1,981)	
강간	있다	99.9	99.9	99.7	99.9	$X^2=3.384$ p=.336
	없다	0.1	0.1	0.3	0.1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8)	100.0(1,981)	
부부강간	있다	98.8	95.3	93.7	95.4	$X^2=52.798$ p=.000
	없다	1.2	4.7	6.3	4.6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7)	100.0(1,980)	
아동성폭력	있다	99.9	99.9	99.8	100.0	$X^2=4.072$ p=.254
	없다	0.1	0.1	0.2	-	
	계	100.0(1,532)	100.0(1,617)	100.0(1,547)	100.0(1,981)	

〈표 5-31〉 성폭력 충동

(단위: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	70.4	25.7	3.0	0.8	0.1	100.0 (13,535)	1.35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68.5	26.3	4.1	0.9	0.1	100.0 (13,536)	1.38

이어서 <표 5-32>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충동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 응답자들은 ‘거친 성관계’에 대해서는 1.3%, ‘성관계 강요’에 대해서는 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따라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성폭력 충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32〉 남성의 성폭력 충동

(단위: %,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	58.7	33.4	6.3	1.4	0.2	100.0 (6,675)	1.51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	60.4	33.5	4.8	1.2	0.1	100.0 (6,674)	1.47

이어서 <표 5-33>에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유무, 소득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 가해가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간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검토해보았다. 분석결과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서 성폭력 충동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점을 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남성의 성폭력 충동수준이 40대와 50대 이상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인 상태 면에서는 미혼 남성이 기혼

남성에 비해 성폭력 충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령이 낮은 집단이 미혼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분석결과는 상호 연관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표 5-33〉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충동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연령	20대 이하	1,523	3.02	F=2.960 p=.031
	30대	1,621	3.02	
	40대	1,553	2.98	
	50대 이상	1,972	2.9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034	2.92	F=2.456 p=.086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35	3.02	
	대학교 졸업 이상	3,198	2.96	
혼인상태	미혼	2,138	3.04	t=2.59
	기혼	4,536	2.95	p=.010
취업유무	취업	5,384	2.97	t=-1.072
	비취업	1,290	3.01	p=.284
소득수준	상	2,111	2.95	F=1.072 p=.342
	중	2,322	2.98	
	하	1,944	3.01	

3. 성폭력 행위 특성

이번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범행수단과 피해자의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대응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범행수단

범행수단은 강간 및 강간미수, 심한추행, 부부강간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만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범행수단의 유형을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계속 애원함’에서 ‘흉기사용’까지의 아홉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강간·강간미수는 흉기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고,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한 경우가 21.0%이고, 언어적 협박이 17.0%, 술이나 약을 먹여 강간한 경우가 19.1%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계속 애원한 경우가 약30%에 이르고 있는데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심한 추행의 경우 강간·강간미수보다 흉기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흉기로 위협하거나(4.0%), 흉기로 때리거나 상처를 낸 비율(25.1%)이 약30%에 이른다. 또한 힘으로 강제한 경우가 6.3%였고, 언어적 협박의 경우는 없었다. 그 외에도 술이나 약을 먹이거나(7.4%), 술에 취하거나 자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11.0%), 계획적인 책략을 사용한 경우(8.0%) 등이 있었으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애원으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무려 38.2%나 된다.

부부강간은 70%가 애원에 의한 경우이며 힘으로 강제하거나(16.0%), 손발 등으로 때리는 경우(2.4%), 흉기로 때리는 경우(2.2%) 등 물리적인 힘으로 행사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비율은 약21%이다.

〈표 5-34〉 범행수단

(단위: %, 명)

피해자 대응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부부 강간
계속 애원함	29.3	38.2	70.7
술에 취하거나 수면 중임을 이용	5.3	11.0	3.8
계획적인 책략, 속임수 사용	8.2	8.0	-
강제로, 혹은 속여서 술이나 약을 먹임	19.2	7.4	-
죽음이나 소문, 불이익 등 언어적 협박	17.0	-	4.8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21.0	6.3	16.0
손발 등으로 때림	-	-	2.4
흉기로 위협	-	4.0	-
흉기로 때리거나 상처 입힘	-	25.1	2.2
계	100.0(12)	100.0(18)	100.0(72)

나. 피해자 대응

이번에는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5-35>를 제시하였다. 표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경우부터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경우까지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서열 순으로 제시하였다.

강간·강간미수나 부부강간·강간미수의 경우에는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한 경우

가 가장 많았고, 심한 추행과 스토킹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는 무시해버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전형적인 대응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은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한 경우가 각각 65.0%와 76.9%에 이른다. 심한추행은 피해자의 37.1%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다고 말했고, 22.5%는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을 갔다고 응답했다. 스토킹은 46.2%의 피해자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다고 응답했고, 욕을 하거나 면박을 준 경우, 또 다시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경우도 각각 14.3%로 나타났다. 반면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는 무시하고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과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갔다는 비율을 합하면 각각 44.3%, 64.5%, 67.8%, 75.2%에 이른다.

〈표 5-35〉 피해자 대응

(단위: %, 명)

피해자 대응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스토킹	부부 강간
아무 말이나 행동도 못함	65.0	4.6	17.0	19.4	16.9	2.8	14.8	76.9
무시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음(그냥 끊어버림)	-	-	11.6	42.1	30.4	75.2	-	-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 부탁, 애원함	5.9 10.6	22.5 -	32.7 -	22.4 -	37.4 -	- -	- 4.9	5.6 -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	5.9	37.1	-	-	-	-	46.2	10.2
소리지름	6.0	18.8	8.2	1.0	5.5	2.3	-	2.8
욕을 하거나 면박을 줌	-	-	16.0	13.2	5.9	11.9	14.3	-
다시 또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	-	-	0.9	-	1.0	6.6	14.3	-
그 사람을 밀쳐내거나 때리는 등 대항	-	-	7.9	1.9	1.6	0.1	-	-
힘으로 저항하고 싸움	6.6	6.3	-	-	-	-	-	4.5
기타	-	10.8	1.8	-	-	1.0	5.6	-
계	100.0 (11)	100.0 (18)	100.0 (203)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67)	100.0 (70)

스토킹의 경우 일부 가해자를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비율이 약30% 정도 보고되었고, 강간이나 심한 추행의 경우에 약6.5%정도의 피해자들이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서 성폭력 심각성의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항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에는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수의 피해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약50%, 심한 추행 피해자의 100.0%, 부부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약33%가 그러하다.

그 외에도 강간 피해자의 26.4%, 부부강간 피해자의 10.3%가 ‘남들이 알까 창피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16.4%는 ‘저항하면 오히려 상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36> 대응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범행수단	강간·강간미수	심한추행	부부강간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48.2	100.0	32.9
소리내면 남이 알까 창피해서	26.4	-	10.3
저항하면 큰 상해를 입을까봐	16.4	-	1.6
그 사람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	-	14.2
말을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9.1	-	-
기타	-	-	41.0
계	100(7)	100.0(1)	100(55)

4.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이번에는 성폭력 유형별로 가해자 특성과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해자 특성으로는 가해자 수, 성별, 연령,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포함되었고, 피해자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관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여섯 가지 변인이 포함되었다. 각 특성 분석 시에는 성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다른 특성을 지니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가. 가해자 특성

여덟 개의 성폭력 유형별로 가해자 수, 성별, 연령,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정리하면 <표 5-37>과 같다.

먼저 가해자 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서 가해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다수인 비율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유형보다 높았다.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가해자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아 75.9%이고, 2명인 경우가 17.9%, 3명인 경우가 6.3%이다. 심한 추행도 각각 80.0%, 9.6%, 10.4%이며, 스토킹 역시 85.2%, 13.7%, 1.1%이다. 세 유형은 가해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반면 가벼운 추행은 4명 이상인 비율이 4.4%, 성희롱은 6.2%, 성기노출은 1.9%, 음란전화는 15.6%나 된다.

두 번째로 가해자 성별을 보면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의 가해자는 모두 남자이나 다른 성폭력 유형은 그렇지 않다. 성기노출, 가벼운 추행은 90% 이상이 남성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희롱, 음란전화와 스토킹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희롱 가해자의 14.4%, 음란전화 가해자의 43.5%, 스토킹 가해자의 24.3%는 여성이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가해자 연령이다. 강간·강간미수와 가벼운 추행의 가해자는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한 추행과 스토킹은 20대가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이다. 반면 성희롱, 성기노출,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음란전화는 가해자 연령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절반 가까이에 이르며, 추정가능한 경우 가해자연령은 20대 혹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보면 성폭력 유형에 따라 면식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한 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는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강간·강간미수, 스토킹, 부부강간은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다. 심한추

행은 가해자의 80.0%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성기노출은 95.8%, 음란전화는 98.0%에 이른다. 반면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비면식범과 면식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5.0%에 불과하고, 나머지 85.0%는 면식범에 의한 강간이었다. 가장 많은 관계유형은 전배우자 전 애인으로 40.6%에 이르고, 업무상 아는 사이가 19.9%, 동네사람이 9.6%, 그 외 아는 사람이 15.0%였다.

가벼운 추행은 가해자 중 모르는 사람 비율은 65.6%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6.8%로 가장 많고, 그 외 친구나 선후배가 5.8% 이었다.

성희롱은 비면식범 비율이 50.4%, 면식범 비율이 49.6%로 유사하다.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7.1%로 가장 많아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대표적인 면식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네사람이 11.7%, 친구나 선후배가 10.9%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비율은 13.8%에 불과하며, 친구나 선후배가 17.5%, 전배우자나 전 애인이 10.2%, 업무상 아는 사이가 9.8%이고 많은 수는 그 외 아는 사람이었다(38.4%).

〈표 5-37〉 가해자 특성

(단위: %, 명)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스토킹	부부 강간
가해자 수	1명	75.9	80.0	74.4	72.9	92.3	62.4	85.2	100.0
	2명	17.9	9.6	14.5	12.7	4.0	13.3	13.7	-
	3명	6.3	10.4	6.6	8.2	1.0	8.8	1.1	-
	4명	-	-	1.9	1.1	1.0	3.7	-	-
	5명	-	-	0.8	1.4	0.9	3.3	-	-
	그 이상	-	-	1.7	3.7	-	8.6	-	-
	계	100.0 (12)	19 (100.0)	100.0 (201)	100.0 (80)	100.0 (130)	100.0 (365)	100.0 (74)	100.0 (73)
가해자 성별	남자	93.7	83.0	91.3	85.6	99.1	52.7	75.7	100.0
	여자	-	17.0	8.5	14.4	0.9	43.5	24.3	-
	남자+ 여자	6.3	-	0.3	-	-	3.9	-	-
	계	100.0 (12)	100.0 (19)	100.0 (201)	100.0 (80)	100.0 (130)	100.0 (365)	100.0 (74)	100.0 (73)
가해자 연령	10대	5.3	6.0	3.4	1.9	1.9	1.9	3.8	-
	20대	6.3	26.1	10.6	13.9	13.0	24.2	45.6	-
	30대	45.8	20.5	23.8	12.8	22.2	15.3	18.9	20.9
	40대	30.0	20.7	26.9	43.4	34.7	11.1	21.5	36.5
	50대	12.6	14.8	20.1	18.9	19.8	1.8	3.8	30.0
	60대 이상	-	-	6.1	6.0	0.7	-	-	12.6
	잘 모름	-	12.0	9.0	3.3	7.8	45.7	6.4	-
	계	100.0 (12)	19 (100.0)	100.0 (203)	100.0 (81)	100.0 (130)	100 (370)	100.0 (67)	100.0 (73)
가해자 피해자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15.0	80.0	65.6	50.4	95.8	98.0	13.8	-
	배우자	-	9.6	-	-	-	-	-	100.0
	애인	-	-	2.8	3.1	-	-	1.5	-
	전배우자/전애인	40.6	10.4	0.4	-	-	-	10.2	-
	가족 및 친척	-	-	0.6	-	-	-	-	-
	친구/선후배	-	-	5.8	10.9	-	0.6	17.5	-
	동네사람	9.6	-	2.5	11.7	4.2	-	6.3	-
	업무상 아는 사이 (동료, 상사등)	19.9	-	16.8	17.1	-	0.5	9.8	-
	그 외 아는 사람	15.0	-	4.0	6.8	-	0.4	38.4	-
	기타	-	-	1.5	-	-	0.5	2.5	-
계	100.0 (12)	100.0 (19)	100.0 (203)	100.0 (81)	100.0 (130)	100.0 (370)	100.0 (72)	100.0 (73)	

나. 피해자 특성

피해자 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취업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피해자 성별을 보면 강간·강간미수,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비율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란전화(43.7%), 스토킹(21.8%), 성희롱(20.8%)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가 넘으며, 가벼운 추행도 17.3%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 면에서는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 음란전화의 피해자는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상대적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아서 20대의 비율이 높다.

피해자 혼인 여부를 보면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하면 미혼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70%를 넘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은 60%대이며, 성기노출 50%대이다. 반면 음란 전화는 피해자 중 미혼자 비율이 27.5%에 불과하다. 부부강간은 유형의 특성상 피해자의 100%가 기혼자이다.

피해자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77.3%), 강간·강간미수,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은 60%대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교육수준은 보면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전문대졸 이상자인 경우가 50%대로 가장 많다. 반면 강간·강간미수, 음란전화,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고졸자의 비율이 전문대졸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소득수준 분포를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간미수를 제외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소득분포는 전체 응답자의 소득분포를 3분위 수로 나누어 상중하로 구분한 것이다. 강간 피해자들은 상층 30%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아 약60%에 이르지만,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23.6%에 불과하다. 다른 유형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소득수준의 상중하 집단의 비율이 큰 차이 없

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피해자 대응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스토킹	부부 강간
성별	남자	-	16.4	17.3	20.8	8.2	43.7	21.8	-
	여자	100.0	83.6	82.7	79.2	91.8	56.3	78.2	100.0
	계	100.0 (12)	100.0 (20)	100.0 (204)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74)	100.0 (73)
연령	20대 이하	18.7	73.0	51.4	49.1	57.0	10.2	55.1	-
	30대	26.0	3.7	19.6	10.6	19.7	17.6	14.6	31.7
	40대	38.4	12.2	13.1	26.1	10.0	25.2	16.0	29.3
	50대 이상	16.9	11.1	15.9	14.2	13.3	47.0	14.3	40.3
	계	100.0 (12)	100.0 (20)	100.0 (204)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74)	100.0 (73)
혼인여부	미혼	78.8	77.3	66.2	60.9	57.7	27.5	71.0	-
	기혼	21.2	22.7	33.8	39.7	42.3	72.5	29.0	100.0
	계	100.0 (12)	100.0 (20)	100.0 (204)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74)	100.0 (73)
취업여부	취업	63.4	77.3	59.8	60.3	47.9	62.6	66.4	51.2
	비취업	36.6	22.7	40.2	39.7	52.1	37.4	33.6	48.8
	계	100.0 (12)	100.0 (20)	100.0 (204)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74)	100.0 (7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0	-	12.0	16.0	6.9	35.9	8.7	30.0
	고졸	42.8	41.6	32.4	30.0	33.5	39.3	36.7	49.5
	대졸이상	42.3	58.4	55.5	54.0	59.6	24.7	54.6	20.5
	계	100.0 (12)	100.0 (20)	100.0 (204)	100.0 (81)	100.0 (130)	100.0 (371)	100.0 (74)	100.0 (73)
소득수준	상	58.7	46.6	36.3	39.9	31.7	35.0	37.7	23.6
	중	15.0	4.2	33.9	31.3	36.4	33.7	41.6	41.6
	하	26.3	49.2	29.8	28.8	31.9	31.3	20.7	34.8
	계	100.0 (12)	100.0 (17)	100.0 (199)	100.0 (77)	100.0 (110)	100.0 (361)	100.0 (70)	100.0 (72)

제 4 절 성폭력피해 후유증과 사후조치

1. 성폭력피해 후유증

성폭력 후유증은 심각한 성폭력과 가벼운 성폭력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심각한 성폭력에는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이 포함되었고, 가벼운 성폭력에는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이 포함되었다.

가.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후유증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후유증은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사회생활상의 피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신체적 피해를 보면 <표 5-39>와 같다.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103명 중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한 비율은 10.5%이다. 이들 중 5.0%는 성기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2.6%는 성기외 상처를 입었으며, 0.6%는 성폭력의 결과 성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9> 신체적 피해 후유증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신체적 피해 유무		10.5	89.5	100.0(103)
신체적 피해내용	성기 상처	5.0	95.0	100.0(103)
	성기외 상처	2.6	97.4	100.0(103)
	성병	0.6	99.4	100.0(103)

이어서 <표 5-40>의 정신적 피해후유증을 보면 103명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40.7%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피해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비율로, 성폭력범죄가 신체적 측면에서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훨씬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노, 화남, 증오심’이 가장 많아서 28.4%가 후유증을 보고하였고, 두 번째로는 ‘무력감, 우울증, 좌절

감'이 15.5%로 많았으며, 세 번째로는 '수치감, 모욕감'으로 10.3%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이 6.9%,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5.7%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중 1.1%는 '자살기도 등의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5-40〉 정신적 피해 후유증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정신적 피해 유무		40.7	59.3	100.0(103)
정신적 피해내용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6.9	93.1	100.0(103)
	무력감, 우울증, 좌절감	15.5	84.5	100.0(103)
	분노, 화남, 증오심	28.4	71.6	100.0(103)
	수치감, 모욕감	10.3	89.7	100.0(103)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	5.7	94.3	100.0(103)
	자살기도 등 자해행위	1.1	98.9	100.0(103)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상의 피해후유증을 살펴보면 103명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20.5%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표 5-41 참조). 이같은 비율은 신체적 피해보다는 두 배 많고, 정신적 피해 후유증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의 수치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가 10.0%로 가장 많았고, 6.8%는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4.6%는 '혼자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행동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족, 애인 등 친밀한 인간관계가 악화'가 3.5%, '공부나 일의 지장 혹은 중단'이 3.2%로 집계되었다.

〈표 5-41〉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사회생활상의 피해후유증 유무		20.5	79.5	100.0(103)
사회생활상의 피해후유증 내용	타인에 대한 혐오, 불신	10.0	90.0	100.0(103)
	공부나 일의 지장, 중단	3.2	96.8	100.0(103)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6.8	93.2	100.0(103)
	가족, 애인 등 친밀한 인간관계 악화	3.5	96.5	100.0(103)
	혼자 외출을 못하는 등의 행동장애	4.6	95.4	100.0(103)

나.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후유증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5-42>와 같다. 가벼운 추행 피해자 203명 중에서 30.2%가 후유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피해자들은 581명 중 무려 50.8%가 후유증을 보고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73명 중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은 26.8%이다.

<표 5-42>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 유무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가벼운 추행 후유증	30.2	69.8	100.0(203)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후유증	50.8	49.2	100.0(581)
스토킹 후유증	26.8	73.2	100.0(73)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5-43>에서는 성폭력 유형을 ‘가벼운 추행’, ‘성희롱/성기노출/음란전화’, ‘스토킹’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피해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벼운 추행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보고한 후유증은 ‘지금도 그 일이 떠올라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47.3%). 두 번째로는 ‘기분이 나빠서 일이나 공부에 지장이 있었다’로 34.6%이다. 그 외에도 가벼운 추행 피해자의 15.1%는 ‘사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10.7%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9.4%는 ‘분노심, 증오’를 보고하였다.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보고한 후유증은 ‘지금도 그일이 떠올라 불쾌하다’는 것이었는데 피해자의 28.5%가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기분이 나빠서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로 21.3%이다. 그 외의 후유증은 10% 미만의 피해자들만이 후유증을 보고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감’이 6.6%, ‘사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6.4%, ‘분노심, 증오심’이 3.8%이다.

〈표 5-43〉 가벼운 성폭력 피해 후유증의 내용

(단위: %)

	가벼운 추행	성희롱/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기분이 나빠서 일이나 공부에 지장	34.6	21.3	29.8
지금도 그 일이 떠올라서 불쾌	47.3	28.5	40.2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감	10.7	6.6	23.1
사건재발에 대한 두려움	15.1	6.4	30.6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1.2	0.3	12.1
무력감, 우울증, 좌절감	1.2	0.9	4.2
분노심, 증오심	9.4	3.8	18.1
신체 상해	-	-	2.4
혼자다니지 못하는 등 행동장애	6.5	3.1	18.5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	0.8	0.9	0.8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 후유증을 보면 가벼운 성폭력이나 성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과 마찬가지로 ‘피해사건의 연상으로 인한 불쾌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40.2%), 두 번째는 ‘사건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30.6%의 스토킹 피해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분이 나빠서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피해자도 29.8%로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에도 ‘혼자 다니지 못하는 등 행동장애’(18.5%), ‘분노심, 증오심’(18.1%),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12.1%) 역시 10%가 넘어 스토킹의 경우 다른 가벼운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여러 가지 후유증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폭력피해 사후조치

성폭력피해 사후조치로는 경찰 신고실태,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이용 실태, 의료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 성폭력피해 신고실태

1) 성폭력피해 신고율

다양한 성폭력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 868명 중에

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20명으로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성폭력 행위 97.7%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채 숨은 범죄로 남아있게 된다. 성폭력 유형에 따라 신고율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성폭력 피해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신고율이 가장 높아서 7.1%이다. 두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6.8%)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은 각각 5.3%, 4.7%, 4.3%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각각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하다.

〈표 5-44〉 성폭력유형별 신고율

성별	피해사례	신고건수	신고비율
전체	868	20	2.3
강간·강간 미수	14	1	7.1
심한 추행	38	2	5.3
가벼운 추행	193	9	4.7
성희롱	89	1	1.1
성기노출	141	6	4.3
음란전화	375	6	1.6
스토킹	73	5	6.8
부부강간	64	1	1.6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아 68.1%이고,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가 12.2%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로 4.2%이다.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유형에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대체로 심각한 성폭력 유형일수록 다른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강간·강간미수의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41.0%로 다른 성폭력 피해유형보다 비율이 낮은 반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가 25.5%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란전화나 성기노출, 성희롱의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

왔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0%대로 집중되어있다.

〈표 5-45〉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이유	강간 강간 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 전화	스토킹	전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41.0	37.3	59.3	64.7	68.0	77.0	55.0	68.1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9.5	15.0	10.3	16.9	7.5	10.4	17.9	12.2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25.5	15.1	5.2	1.5	1.5	0.2	4.4	2.6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8.4	4.8	2.1	3.9	2.4	3.1	2.8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	-	8.5	4.0	7.3	4.3	6.1	4.2
경찰에서 귀찮게 할 것 같았기 때문에	-	-	0.5	2.4	2.2	1.5	1.4	1.6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3.1	9.8	3.3	2.8	1.7	.04	4.4	1.7
보복이 두려워서	-	-	0.9	-	1.2	0.2	3.8	0.7
기타	10.9	8.1	7.1	5.6	6.8	3.0	3.9	6.1
계	100.0 (13)	100.0 (38)	100.0 (186)	100.0 (78)	100.0 (121)	100.0 (359)	100.0 (60)	100.0 (824)

2)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표 5-46〉에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한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경찰이 취한 조치의 내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가장 많이 보고된 경찰 조치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로 약 절반 정도인 46.6%를 차지한다. 13.1%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었다고 응답하였고, 12.0%는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려 28.3%는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5.2%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58.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비율이 무려 3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6〉 경찰의 조치와 만족도

		구분	%(명)
경찰 조치의 내용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28.3
		전화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	12.0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46.6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주었다	13.1
		계	100.0(20)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아주 만족하였다	10.0
		만족한 편이었다	15.2
		그저 그렇다	16.5
		불만족한 편이었다	19.8
		아주 불만족하였다	38.6
	계	100.0(20)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42.3%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47 참조). 고소 취하의 이유는 가해자와의 합의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피해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친고죄가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7〉 고소취하 여부

		구분	%(명)
고소 취하 여부		고소 취하함	42.3
		고소 취하하지 않음	57.7
		계	100.0(19)

나.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실태

이번에는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실태를 살펴보자. 868명의 피해자 중에서 피해 이후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라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서 7.1%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로 5.6%가 이용했으며, 세 번째로는 성희롱 피해자로 4.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가벼운 추행 피해자의 3.6%, 성기노출 피해자의

2.1%가 상담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48〉 성폭력유형별 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률

성별	피해사례	이용건수	이용비율
전체	868	14	1.6
강간·강간 미수	14	1	7.1
심한 추행	38	-	-
가벼운 추행	194	7	3.6
성희롱	89	4	4.5
성기노출	142	3	2.1
음란전화	374	4	1.1
스토킹	72	4	5.6
부부강간	64	-	-

〈표 5-49〉에는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응답자 중 77.5%는 수사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22.5%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의료적 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표 5-49〉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에서 받은 지원내용

(단위: %, 명)

	있다	없다	계
심리적, 정서적 지원	22.5	77.5	100.0(12)
수사 및 법률적 지원	77.5	22.5	100.0(12)
의료적 지원	-	100.0	100.0(12)

이어서 이러한 도움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은 결과 22.7%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42.7%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65.4%가 성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시설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7%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표 5-50 참조).

〈표 5-50〉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
실제적 도움의 정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2.7
	다소 도움이 되었다	42.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9.8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4.7
계		100.0(10)

다. 의료기관 이용실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한 피해자는 성폭력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까지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표 5-51>에는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부부강간에 한정하여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경우에는 14.3%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한 추행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인 5.3%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1.6%에 불과하였다.

〈표 5-51〉 성폭력유형별 의료기관 이용률

성별	피해사례	이용건수	이용비율
강간·강간 미수	14	2	14.3
심한 추행	38	2	5.3
부부강간	64	1	1.6

이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와 진료거부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표 5-52>와 같다. 피해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83.7%),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가 4.4%, ‘시기를 놓쳐서’가 0.3%로 집계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성폭력 피해를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한 피해자는

2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 의료기관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
진료받지 않은 이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83.7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4.4
	시기를 놓쳐서	0.3
	계	100.0(201)
진료 거부 경험	있다	20.0
	없다	80.0
	계	100.0(5)

제 5 절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사회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수 중의 하나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general fear)과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concrete fear)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김지선 외, 2006:186)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두 유형으로 양분하여 평상시 생활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범죄 피해두려움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53>과 같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62.4%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7.0%가 두렵다고 응답한 반면, 강도, 절도 등 범죄에 대해서는 44.6%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7.6%가 두렵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범죄보다는 다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53〉 전체인구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 명)

범죄유형	전혀 두렵지 않다	거의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	매우 두렵다	계	평균
성폭력범죄	33.5	28.9	20.1	14.7	2.3	100.0(13,539)	2.23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그 외 범죄	19.6	27.0	25.8	24.3	3.3	100.0(13,581)	2.65

이번에는 여성 조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표 5-54 참조). 여성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46.6%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8.1%가 평상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절도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34.7%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40.6%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여성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성폭력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5-54〉 여성의 성폭력 및 그 외 범죄피해의 두려움

(단위: %, 명)

범죄유형	전혀 두렵지 않다	거의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	매우 두렵다	계	평균
성폭력범죄	17.8	28.8	25.2	24.6	3.5	100.0(6,867)	2.67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그 외 범죄	11.1	23.6	24.7	35.6	5.0	100.0(6,876)	3.00

이같이 성폭력 범죄에 비해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범주구분상의 효과, 즉 성폭력 이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절도, 폭력 등 다수의 유형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물은 반면 성폭력범죄라는 단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물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단수의 범죄보다는 복수의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두려움을 표시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

여성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거 특성,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라 여성들이 느끼는 성폭력피해 두려움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두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55>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여부, 소득수준별 차이점을 분석에 포함하였는데, 취업유무를 제외한 네 가지 특성 모두에서 집단별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여성들은 연령에 따라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대 이하 여성이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높고,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려움의 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여성들이 느끼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 졸업 이하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의 수준이 가장 낮고, 고졸 이하가 그 보다 높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번에는 주거 특성이 여성들의 성폭력피해 두려움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56>을 보면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택유형에 따라 두려움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그 외 지역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성폭력 피해 두려움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되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평상시 성폭력 피해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이 광역시 거주 여성이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두려움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음으로 주택유형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그 외 주택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성폭력피

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주택 거주자가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 다른 주택유형보다 범죄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한 주택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앞서 분석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주택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론된다.

〈표 5-55〉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연령	20대 이하	1,492	2.98	F=123.086 p=.000
	30대	1,602	2.85	
	40대	1,506	2.68	
	50대 이상	2,268	2.67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855	2.34	F=119.613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19	2.73	
	대학교 졸업 이상	2,487	2.86	
혼인상태	미혼	2,024	2.78	t=5.039 p=.000
	기혼	4,843	2.63	
취업유무	취업	3,451	2.67	t=.061 p=.951
	비취업	3,416	2.67	
소득수준	상	2,058	2.74	F=17.445 p=.000
	중	2,273	2.72	
	하	2,185	2.55	

〈표 5-56〉 여성의 지역 및 주거 특성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476	2.75	F=6.702 p=.002
	6개 광역시	1,766	2.70	
	그 외 지역	3,625	2.63	
주택유형	아파트	3,371	2.73	F=8.610 p=.000
	단독주택	2,273	2.60	
	다세대/연립주택	1,223	2.66	

다음으로 <표 5-57>에는 성폭력 피해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성폭력 피해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의 세 가지 성폭력 피해 경험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표 5-57〉 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폭력피해 두려움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강간·강간미수 피해경험	있다	15	3.49	t=-2.840
	없다	6,850	2.67	p=.005
심한 추행 피해경험	있다	33	3.12	t=-2.287
	없다	6,833	2.67	p=.022
가벼운 추행 피해경험	있다	168	2.99	t=3.695
	없다	6,697	2.66	p=.000

3.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 중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현행법상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둘째 강간을 남성 성기의 여성의 성기에의 삽입행위에만 국한한다는 점, 셋째, 남성에 대한 강간을 배제한다는 점, 넷째, 친고죄 폐지 여부, 다섯째, 강간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는 점, 여섯째, 피해자의 성력(性歷) 등에 대한 증거가 실제로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성언 1998: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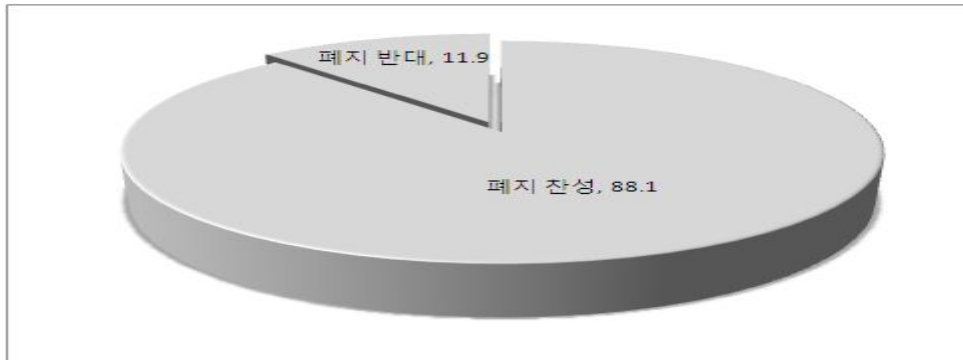
성폭력에 대한 현재의 법규정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향후 입법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고죄 폐지, 성희롱에 대한 처벌, 부부강간의 처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가.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태도

성폭력특별법은 강간등상해, 특수강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친족강간 등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강간범죄는 아무리 눈앞에서 범인이 강간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 88.1%가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1.9%에 불과하다.

[그림 5-1] 성폭력 친고죄 폐지에 대한 태도



개인적 특성에 따라 친고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58>과 같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점이 관찰되었으나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성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연령 면에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두 집단,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고,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친고죄 폐지에 찬성하는 태도가 강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8〉 응답자 특성별 친고죄폐지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찬성	반대	계	통계값
성별	남성	87.1	12.9	100.0(6,686)	X ² =11.746 df=1 p=.000
	여성	89.0	11.0	100.0(6,855)	
연령	20대 이하	86.8	13.2	100.0(3,012)	X ² =12.833 df=3 p=.005
	30대	88.7	11.3	100.0(2,744)	
	40대	89.5	10.5	100.0(3,065)	
	50대 이상	87.6	12.4	100.0(4,233)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87.5	12.5	100.0(2,889)	X ² =1.189 df=2 p=.552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3	11.7	100.0(4,961)	
	대학교 졸업 이상	88.3	11.7	100.0(5,678)	
혼인상태	미혼	87.5	12.5	100.0(4,153)	X ² =2.456 df=1 p=.062
	기혼	88.4	11.6	100.0(9,388)	
취업유무	취업	88.0	12.0	100.0(8,847)	X ² =.157 df=1 p=.692
	비취업	88.3	11.7	100.0(4,694)	
소득수준	상	89.2	10.8	100.0(4,170)	X ² =7.501 df=2 p=.024
	중	87.7	12.3	100.0(4,598)	
	하	87.3	12.7	100.0(4,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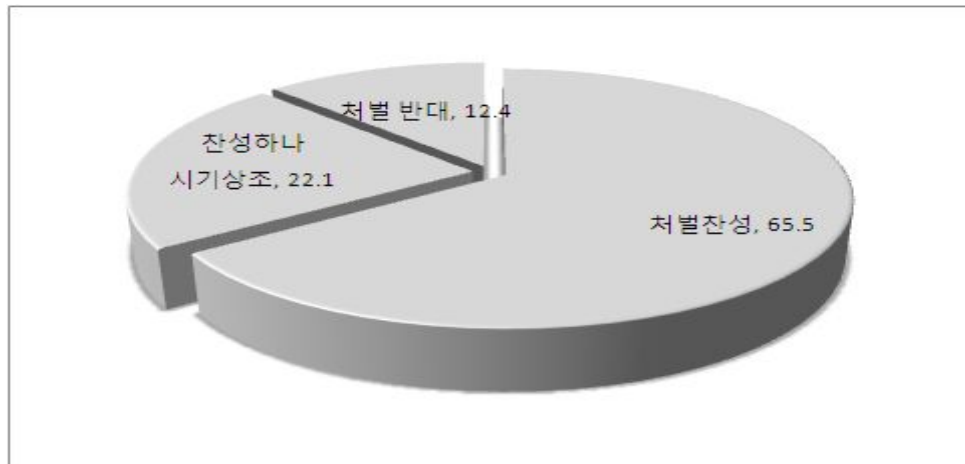
나.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언어나 몸짓에 의한 성적모욕행위나 괴롭힘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의 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성적인 농담이나 성적인 욕설 등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후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65.5%는 성희롱을 처벌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22.1%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응답하였으며,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은 12.4%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친고죄 폐지보다는 성희롱처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

[그림 5-2]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응답자 특성별 성적 괴롭힘 처벌에 대한 태도차이를 분석하면 <표 5-59>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61.5%) 여성이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69.4%),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찬성비율이 높고,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학교 졸업이하가 가장 낮다. 또한 취업을 한 사람보다는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인상태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태도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부부간 처벌에 대한 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부부사이에 남편이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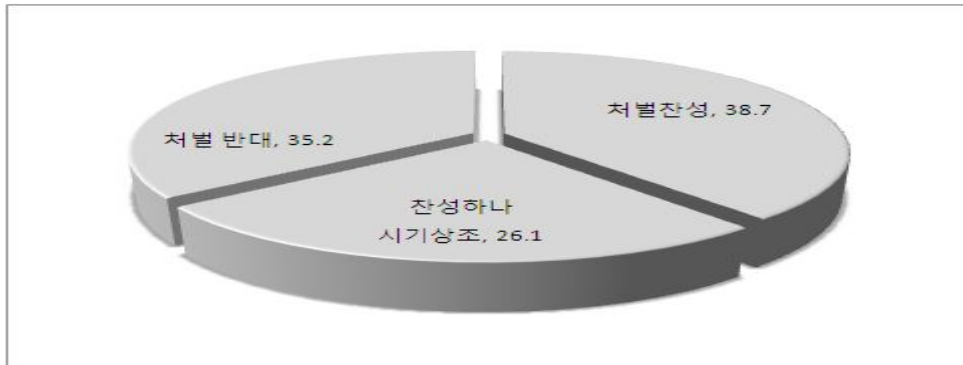
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조사한 결과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38.7%가 찬성하고, 35.2%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나머지 26.1%는 찬성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세 입장이 서로 비슷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59〉 응답자 특성별 성희롱 처벌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찬성	찬성하나 시기상조	반대	계	통계값
성별	남성	61.5	25.5	13.0	100.0(6,679)	$\chi^2=11.746$ df=1 p=.001
	여성	69.4	18.8	11.8	100.0(6,843)	
연령	20대 이하	65.2	22.7	12.1	100.0(3,010)	$\chi^2=44.569$ df=6 p=.000
	30대	67.1	23.0	10.0	100.0(3,225)	
	40대	66.2	21.9	11.8	100.0(3,057)	
	50대 이상	64.0	21.1	14.9	100.0(4,231)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4.0	20.3	15.7	100.0(2,883)	$\chi^2=43.114$ df=4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8	22.1	11.1	100.0(4,953)	
	대학교 졸업 이상	65.2	23.0	11.9	100.0(5,673)	
혼인상태	미혼	65.8	21.7	12.5	100.0(4,146)	$\chi^2=.569$ df=2 p=.752
	기혼	65.4	22.3	12.4	100.0(9,357)	
취업유무	취업	63.9	23.8	12.4	100.0(8,828)	$\chi^2=42.033$ df=2 p=.000
	비취업	68.5	19.0	12.5	100.0(4,694)	
소득수준	상	66.3	21.7	12.0	100.0(4,162)	$\chi^2=7.409$ df=4 p=.116
	중	64.4	23.3	12.3	100.0(4,595)	
	하	65.8	21.3	12.9	100.0(4,117)	

[그림 5-3]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태도 역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60>을 보면, 성별 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부부강간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취업상태의 사람보다는 미취업자가 부부강간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성별 면에서는 여성의 40.6%, 남성의 36.7%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연령 면에서는 20대 이하는 47.4%가 처벌에 찬성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32.8%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졸이하는 34.9%가 찬성하는 반면, 대졸이상자는 42.1%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혼자는 34.6%가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 찬성하는 반면, 미혼자는 47.9%가 찬성하였고, 취업자의 37.6%가, 미취업자의 40.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부부강간 처벌에 따른 견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60〉 응답자 특성별 부부강간처벌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찬성	찬성하나 시기상조	반대	계	통계값
성별	남성	36.7	27.1	36.2	100.0(6,659)	$\chi^2=21.898$ df=2 p=.000
	여성	40.6	25.1	34.3	100.0(6,804)	
연령	20대 이하	47.4	26.5	26.1	100.0(2,994)	$\chi^2=245.160$ df=6 p=.000
	30대	41.4	26.1	32.4	100.0(3,209)	
	40대	35.4	26.3	38.2	100.0(3,054)	
	50대 이상	32.8	25.6	41.6	100.0(4,20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34.9	24.5	40.6	100.0(2,877)	$\chi^2=82.077$ df=4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37.0	26.8	36.2	100.0(4,939)	
	대학교 졸업 이상	42.1	26.3	31.6	100.0(5,637)	
혼인상태	미혼	47.9	24.7	27.4	100.0(4,130)	$\chi^2=237.289$ df=2 p=.000
	기혼	34.6	26.7	38.7	100.0(9,334)	
취업유무	취업	37.6	26.3	36.1	100.0(8,800)	$\chi^2=13.426$ df=2 p=.001
	비취업	40.7	25.7	33.6	100.0(4,664)	
소득수준	상	38.4	27.1	34.4	100.0(4,137)	$\chi^2=5.979$ df=4 p=.201
	중	38.1	26.0	36.0	100.0(4,578)	
	하	39.7	25.3	35.0	100.0(4,102)	

제 6 절 한국인의 성의식과 성폭력

이 절에서는 한국인의 성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의식상의 특성이 성폭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의식 특성에는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 이중적 성의식, 성역할 고정관념의 네 가지 의식 특성이 포함되었다. 각 의식유형별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비율을 제시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의식이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였다.

1.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인지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해자관계의 친밀도’, ‘피해자의 저항정도’, ‘피해여성의 원인제공요인(性歷, 품행)’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다섯 가지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5-61>은 가해자-피해자관계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다섯 가지 상황별로 먼저 전체 응답자의 단순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상황 I은 데이트강간의 상황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친밀도가 가장 높으며 애무를 주고받은 후 강제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72.5%의 응답자가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0%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가 20% 가까이 된다.

상황 II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관계이면서 가해자 피해자간의 권력관계가 내포되어있고, 피해자는 싫었지만 저항 없이 성적요구에 응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대해 91.6%의 응답자는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고, 3.0%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것을 나타냈다.

상황 III은 피해자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사건 이전에 가해자를 고객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데이트를 하다가 강간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성력(性歷) 면에서 원인제공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항을 하였고, 가해자는 성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82.4%만이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6.4%이다. 또한 불확실하다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이 11%나 된다.

상황 IV와 상황 V는 가해자-피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로 친밀도가 가장 낮다. 상황 IV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던 경우이고 상황 V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원인제공요인을 가지고 있다. 상황 IV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강간이라고 인지하였고 1.3%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상황 V에 대해서는 92.4%의 응답자가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반면 2.2%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표 5-61〉 성폭력 인지도

(단위: 명, %)

범죄유형	응답 범주					계	평균
	전혀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 이 아닐 것이다	불확실 하다	성폭력 일 것이다	확실히 성폭력 이다		
I 한적한 곳에서 애인과 데이트하는 여성이 애무를 주고받은 후 싫다고 말했다지만 강제로 성행위를 함	1.1	6.9	19.4	33.1	39.4	100.0 (13,581)	4.03
II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며, 거부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시. 부하직원은 싫었지만 시키는 대로 상사의 성적 요구에 응함	0.8	2.2	5.6	25.0	66.6	100.0 (13,577)	4.54
III 한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을 우연히 여행지에서 만나 산책을 하다가 여성이 원치않음에도 억지로 성행위를 함. 이에 여성이 저항하자 돈을 쥐어주고 떠남	1.4	5.0	11.3	27.0	55.4	100.0 (13,579)	4.30
IV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낯선 남자로부터 말을 안들으면 죽이겠다고 위협받자 두려워서 저항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짐	0.4	0.9	2.5	16.9	79.3	100.0 (13,579)	4.74
V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 성행위가 이루어짐	0.6	1.6	5.4	21.0	71.4	100.0 (13,581)	4.61

평균값을 통해 각 상황별로 성폭력인지도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유형은 가해자 피해자 관계의 친밀도가 가장 낮은 상황 IV(평균값 4.74)와 상황 V(평균값 4.61)이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던 경우 보다 피해자의 원인 제공 요인이 있을 때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성폭력인지도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높아지며 특히 저항유무 보다는 피해자의 음주나 밤늦은 귀가와 같은 원인제공요인이 인지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크다.

다음으로 성폭력인지도가 높은 상황은 상황 II인 직장상사에 의한 강간이고, 상황 III인 유흥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강간은 이보다 인지도가 낮다. 가해자 피해자 친밀도 수준은 상황II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저항의 면에서도 상황 II의 피해자가 저

항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는 피해여성의 성력(性歷)이 성폭력인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인지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상황 I 로 가해자-피해자 친밀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피해이전에 애무를 주고받는 등의 상황이 인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강간의 발생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겠다.

〈표 5-6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인지도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성별	남자	6,694	22.01	t=-8.721 p=.000
	여자	6,864	22.42	
연령	20대 이하	3,021	22.57	F=77.623 p=.000
	30대	3,232	22.59	
	40대	3,064	22.13	
	50대 이상	4,242	21.75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88	21.72	F=112.412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63	22.06	
	대학교 졸업 이상	5,695	22.22	
혼인상태	미혼	4,167	22.24	t=.688 p=.492
	기혼	9,392	22.21	
취업유무	취업	8,849	22.15	t=-3.961 p=.000
	비취업	4,709	22.35	
소득수준	상	4,179	22.47	F=41.568 p=.000
	중	4,606	22.25	
	하	4,124	21.92	

이번에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 인지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62>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어진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폭력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이하와 30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의 성폭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고, 취업을 한 사람이 미취업자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성폭력인

지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눈짓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와 포르노 그래피, 접촉성 가벼운 추행, 스토킹,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부부강간의 6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허용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으로 평균값은 2.14이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와 집요한 구애행위로 각각 1.91과 1.90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강간 역시 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순위를 점유하고 있고 평균값은 1.75이다. 다섯 번째는 언어적 성희롱(야한대화의 요구)로 평균값은 1.51이다.

성폭력 허용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스토킹의 한 유형인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행위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로 평균값은 1.30이었다. 두 번째로 허용도가 낮은 유형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로 1.23, 세 번째로는 음란전화로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성폭력 허용도의 차이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유무, 소득수준의 여섯 가지 변인 모두에서 집단차이가 발견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폭력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 면에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3,40대보다 허용도가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낮은 경우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면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이,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성폭력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허용도가 높다.

〈표 5-63〉 성폭력 허용도

(단위: 명, %)

범죄유형	응답 범주					계	평균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대체로 허용될 수 없다	모르 겠다	경우에 따라 허용된 다	전적으로 허용될수 있다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35.0	32.1	18.1	14.0	0.8	100.0 (13,573)	2.14
원치않는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그(녀)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69.4	23.8	3.6	2.1	1.2	100.0 (13,570)	1.42
원치않는 사람에게 일부러 포르노나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64.5	27.0	5.2	2.4	0.9	100.0 (13,570)	1.48
원치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으로 야한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62.3	28.4	5.8	2.6	0.9	100.0 (13,570)	1.51
열 번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으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뒤쫓아다니며 구애하는 행위	46.9	28.2	13.3	10.7	0.8	100.0 (13,570)	1.90
헤어지기 원하는 상대에게 헤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해코지) 협박하는 행위	69.5	22.5	4.9	2.1	1.0	100.0 (13,568)	1.43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 괴롭힘을 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78.9	16.0	2.9	1.1	1.1	100.0 (13,564)	1.30
돈을 주고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	53.2	19.9	11.0	14.2	1.7	100.0 (13,569)	1.91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	85.1	10.3	2.3	1.0	1.3	100.0 (13,570)	1.23
원치않는 상대에게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73.9	21.3	2.6	1.0	1.2	100.0 (13,567)	1.34
원치않는 아내(혹은 남편)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성행위	52.1	29.4	10.1	7.4	0.9	100.0 (13,564)	1.75

〈표 5-6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폭력 허용도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성별	남자	6,666	18.86	t=24.795
	여자	6,843	16.00	p=.000
연령	20대 이하	3,015	18.74	F=49.517 p=.000
	30대	3,218	16.99	
	40대	3,055	16.98	
	50대 이상	4,221	17.09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81	17.01	F=6.199 p=.002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37	17.47	
	대학교 졸업 이상	5,680	17.55	
혼인상태	미혼	4,153	18.55	t=12.141
	기혼	9,356	16.90	p=.000
취업유무	취업	8,824	17.72	t=7.448
	비취업	4,685	16.81	p=.000
소득수준	상	4,163	17.03	F=9.256 p=.000
	중	4,585	17.54	
	하	4,115	17.63	

3. 이중적 성의식

이중적 성의식은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54.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8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와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각각 69.8%와 31.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평균값으로 비교하여 볼 때 기혼여성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이중적 성의식이 가장 높았고, 여성의 혼전 순결, 여성의 성행위시 태도, 남성의 혼전순결의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집계되었다.

〈표 5-65〉 이중적 성의식

(단위: 명, %)

범죄유형	응답 범주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2.3	20.2	23.2	38.8	15.5	100.0 (1,3591)	3.45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1.2	3.9	8.4	42.0	44.4	100.0 (1,3576)	4.25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3	36.5	49.6	9.5	1.0	100.0 (1,3532)	2.68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3.4	27.8	28.8	32.0	8.1	100.0 (1,3574)	3.1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중적 성의식에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표 5-66>과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우선 남성의 평균값은 13.8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13.95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중적 성의식 점수가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이중적 성의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평균 점수는 13.51인데 반해 50대 이상의 경우 14.33에 이른다.

셋째,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중적 성의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 졸업 이상자의 평균 점수는 13.69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에는 13.92이고, 중학교 졸업자 이하의 경우에는 14.30이다.

넷째,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이중적 성의식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평균 점수는 14.01인 반면 미혼자의 평균 점수는 13.68이다.

반면 취업유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66>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중적 성의식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성별	남자	6,705	13.85	t=-3.705 p=.000
	여자	6,868	13.95	
연령	20대 이하	3,029	13.51	F=193.985 p=.000
	30대	3,231	13.70	
	40대	3,064	13.92	
	50대 이상	4,248	14.33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89	14.30	F=146.678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72	13.92	
	대학교 졸업 이상	5,700	13.69	
혼인상태	미혼	4,168	13.67	t=-11.525 p=.000
	기혼	9,405	14.01	
취업유무	취업	8,862	13.90	t=-.764 p=.445
	비취업	4,711	13.92	
소득수준	상	4,188	13.88	F=1.450 p=.235
	중	4,612	13.90	
	하	4,124	13.94	

4.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고정관념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가장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높은 문항은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로 6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평균값은 3.63이다. 두 번째로는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가 점수가 높아 60.2%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평균값은 3.58이다

가장 고정관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문항은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로 28.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평균값도 2.87에 머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항으로 5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평균값은 3.46이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가 나타나지지를 분석하여 보면 <표 5-68>과 같다. 여섯 개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 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령면에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고정관념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보다는 기혼이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높았다.

〈표 5-67〉 성역할 고정관념

(단위: 명, %)

범죄유형	응답 범주					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1.4	19.9	21.1	46.7	10.8	100.0 (13,573)	3.46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1.7	16.8	21.3	48.3	11.9	100.0 (13,577)	3.52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2.5	14.7	20.0	48.3	14.4	100.0 (13,561)	3.58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1.3	12.1	21.3	52.8	12.4	100.0 (13,569)	3.63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4.0	37.2	30.5	24.6	3.7	100.0 (13,576)	2.87

〈표 5-6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역할 고정관념

		사례수	평균	평균차이검증
성별	남자	6,672	17.46	t=14.390 p=.000
	여자	6,836	16.63	
연령	20대 이하	3,025	15.28	F=549.085 p=.000
	30대	3,218	16.69	
	40대	3,047	17.50	
	50대 이상	4,220	18.24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2,869	18.14	F=357.637 p=.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4,948	17.34	
	대학교 졸업 이상	5,679	16.23	
혼인상태	미혼	4,160	15.83	t=-27.344 p=.000
	기혼	9,349	17.58	
취업유무	취업	8,825	17.17	t=6.298 p=.000
	비취업	4,684	16.79	
소득수준	상	4,172	16.91	F=11.907 p=.000
	중	4,589	17.01	
	하	4,101	17.26	

제 6 장 성폭력 피해자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성폭력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된 후 우리사회는 현재까지 꾸준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개입과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지원을 중심으로 피해자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건지원이나 위기 개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이라는 사건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건발생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반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현장의 상담소나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 전달체계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현재 전국에는 202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7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으며 이중 65개소의 상담소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하여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상담실적은 57,865건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중 입소된 성폭력 피해자는 353명이다. 이외에도 상담 관련 기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선도 보호 시설,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쉼터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위기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도움을 받은 후에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단지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은 2002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성폭력 업무 매뉴얼 개발연구와 2003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가 처음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05,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는 피해 유형별, 관계별, 연령별 특성이 다양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의 정도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본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이다.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가. 조사내용

본 조사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장애유무, 가족관계, 직업, 결혼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성폭력 피해유형, 가해방식, 피해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및 피해연령 등의 피해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피해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

넷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영향은 어떠한가?

다섯째, 정부의 피해자 지원제도 실태는 어떠한가?

여섯째, 상담소의 피해자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일곱째, 보호시설의 피해자지원 실태는 어떠한가?

여덟째,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 실태는 어떠한가?

나. 조사방법

1) 조사절차

본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지원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피해실태, 피해대응, 피해영향, 정부의 지원제도,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성폭력보호시설에 입소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상황과 향후계획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대상

①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3개 곳을 전수 조사하여 이들 중에서 입소자 87명이 본 연구에 참여했고, 상담기관은 전국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85개 상담소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상담기관의 2배수로 표본 선정하여 상담기관의 내담자 192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에 동의한 피해자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정부 지원 상담소에 내방한 피해자들이라는 제한 점이 있다.

② 조사대상자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구성은 아래 <표 6-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도 수준으로 안배하여 수집하였다. 본 조사의 표본구성을 보면, 전체 표본 192명 중 서울이 35명(19.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4명(12.5%)으로 두 번째이다. 광역시로는 부산이 18명(9.4%)이 가장 많고, 인천(7.3%), 대구와 광주(각 각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4명, 2.1%)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별로 볼 때 많게는 12.5%(경기도)에서 적게는 1.5%(충북)의 표본을 전국적으로 추출하였다.

〈표 6-1〉 조사대상자의 구성

(단위: %, 명)

지 역	상담 기관		컴 퓨 터		합
	사례수(n)	백분율(%)	사례수(n)	백분율(%)	
서 울	18	17.1	17	19.5	35(18.2 %)
인 천	7	6.7	7	8.0	14(7.3 %)
대 구	6	5.7	7	8.0	13(6.8 %)
광 주	4	3.8	9	10.3	13(6.8 %)
부 산	2	1.9	16	18.4	18(9.4 %)
울 산	1	1.0	3	3.4	4(2.1 %)
강원도	4	3.8	3	3.4	7(3.6 %)
경기도	19	18.1	5	5.7	24(12.5 %)
경 남	14	13.3	3	3.4	17(8.8 %)
경 북	2	1.9	3	3.4	5(2.6 %)
전 남	9	8.6	4	4.6	13(6.8 %)
전 북	5	4.8	5	5.7	10(5.2 %)
제 주	1	1.0	4	4.6	5(2.6 %)
충 남	9	8.6	0	.0	9(4.7 %)
충 북	2	2.0	1	1.1	3(1.5 %)
무응답	2	1.9	0	.0	2(1.0 %)
합 계	105	100	87	100	192(100.0 %)

3) 조사방법

① 설문조사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통한 양적자료 수집,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각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에 의뢰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각 상담소들은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설문작성을 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29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 성폭력 상담소에 192부를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고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 96부를 배포하여 87부를 회수하여 총 192부가 회수되었다.

② 심층인터뷰

심층면접용 질문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를 일대일 대면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자가 질문하고 응답자가 기입 또는 답변한 것을 조사자가 정리하여 기입하는 형식을 따랐다. 성폭력 피해자 심층 인터뷰는 리서치 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02명의 피해자들과 인터뷰하였다. 심층면접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방식을 사용하였다.

4) 피해자 심리 평가척도

상담소나 시설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① 자존감척도

Rosenberg(1965)의 척도를 김문주(1988)가 번안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② 우울척도

Beck이 개발한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우울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한 것이며, 16~23점을 우울증, 24~63점은 중우울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불안 : Beck의 불안 척도 사용

Beck이 개발한 불안척도를 사용하여 현재의 불안감 정도를 확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불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분노수준 척도

분노측정치는 Spielberger, Jacobs, Russell 및 Crane이 만든 Trait Anger Scale(TAS)을 임태숙(1992)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개인의 분노경향성을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상에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임영란(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93$ 으로 높게 나타났다.

⑤ 피해후유증 척도

권희경, 장재홍(2003)이 개발한 성폭력장기후유증 척도로써, 성폭력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자기비난, 성적자존감, 남성불신, 정서적 불안의 4가지 하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통계적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t검정(t-test) 통계 처리기법을 사용하였다.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6-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97.4%(186명)가 여성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43.4%(82명)가 컴퓨터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나이는 출생순위별 자녀들을 모두 합하여(75명) 나이를 파악한 것으로, 기혼자 42명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명으로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192명)의 16.1%에 달한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대부분(응답자의 77.7%에 해당하는 16명), 기혼은 응답자의 22.3%인 42명이다.

〈표 6-2〉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항목		사례수(n)	백분율(%)	항목		사례수(n)	백분율(%)
시설 종류	상담기관	105	54.7	장애유무	있다	65	36.3
	쉼터	87	45.3		없다	114	63.7
	합계	192	100.0		합계	179	100.0
성별	여자	186	97.4	장애등급유무	등록	56	86.2
	남자	5	2.6		미등록	9	13.8
	합계	191	100.0		합계	65	100.0
연령대	15세 미만	30	15.9	장애 등급	1 급	5	8.9
	15-19세	52	27.5		2 급	30	53.6
	20대	61	32.3		3 급	13	23.2
	30대	23	12.2		4 급	3	5.4
	40대	15	7.9		5 급	3	5.4
	50대 이상	8	4.2		6 급	2	3.6
	합계	189	100.0		합계	56	100.0
교육 수준	무학	6	3.2	장애 유형	지체 장애	9	13.8
	초등학력(중퇴, 재학포함)	15	7.9		뇌경변 장애	4	6.2
	중등학력(중퇴, 재학포함)	55	29.1		시각 장애	2	3.1
	고등학력(중퇴, 재학포함)	65	34.4		청각 장애	2	3.1
	전문대(중퇴, 재학포함)	10	5.3		언어 장애	1	1.5
	대학학력(중퇴, 재학포함)	29	15.3		정신 지체	46	70.8
	대학원 이상	9	4.8		간질	1	1.5
합계	189	100.0	합계	65	100.0		
종교	없음	62	33.0	자녀 수	1 명	10	26.3
	불교	16	8.5		2 명	15	39.5
	기독교	89	47.3		3 명	4	10.5
	천주교	20	10.6		4 명 이상	2	5.3
	기타	1	.5		없음	7	18.4
	합계	188	100.0		합계	38	100.0
자녀의 나이	10살 미만	14	18.7	취업 유무	취업 중	49	28.3
	10세-19세	35	46.7		비취업(주부, 학생포함)	124	71.1
	20세 이상	26	34.6		합계	173	100.0
	합계	75	100.0				
가구 유형	독신가구	23	12.2	직업의 종류	전문가	8	16.0
	부부가구	6	3.2		사무종사자	5	10.0
	부부 + 자녀	64	34.6		서비스종사자	13	26.0
	한부모 + 자녀	43	22.9		판매종사자	1	2.0
	3세대 가구	4	2.1		농, 임, 어업숙련종사자	1	2.0
	형제 자매 가구	4	2.1		기능원, 관련기능직	2	4.0
	조부모+ 손자녀	5	2.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2	4.0
	생활시설(그룹홈 등)	33	17.6		단순노무종사자	4	8.0
	기타	6	3.2		기타	14	28.0
	합계	188	100.0		합계	50	100.0

〈표 6-2〉 사회인구학적 특성(계속)

(단위: %, 명)

항목		사례수(n)	백분율(%)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결혼 상태	혼인중(법률혼)	19	10.1	50만원 미만	45	30.2	
	동거(또는 사실혼)	4	2.1	50만-100만원미만	39	26.2	
	이 혼	6	4.3	월평균 100만-200만원미만	30	20.1	
	별 거	3	1.6	소득액 200만-300만원미만	20	13.4	
	사 별	8	4.3	300만-500만원미만	13	8.7	
	미 혼	146	77.7	500만원 이상	2	1.3	
	합 계	188	100.0	합 계	149	100.0	

상담소와 쉼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 검정(X^2)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장애유무, 장애등록여부, 가구유형, 자녀의 수, 소득수준,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연령에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쉼터이용집단이 상담소이용집단보다 연령층이 어렸으며($X^2=64.759$, $P=.05$), 주로 10대가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상담소이용집단의 학력이 높았으며($X^2=55.053$, $P=.001$), 결혼한 경우가 많았으며($X^2=22.468$, $P=.001$), 쉼터이용집단의 경우 주로 미혼이 많았다. 상담소이용집단이 쉼터이용집단보다 자녀수가 많았으며($X^2=19.668$, $P=.001$),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부부+자녀 형태가 많았다($X^2=45.494$, $P=.001$).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상담소의 경우 서울, 경기도가 많았고, 쉼터는 서울, 부산 위주였다($X^2=50.321$, $P=.001$). 쉼터이용집단이 상담소이용집단보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X^2=27.614$, $P=.001$), 등록된 경우도 많았다($X^2=11.271$, $P=.05$). 또한 쉼터이용집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으며($X^2=16.816$, $P=.001$), 월평균소득액도 낮았다($X^2=36.150$, $P=.001$).

반면 성별, 종교, 결혼생활기간,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제 3 절 현재의 성폭력 피해문제

본 연구에서 현재 성폭력 피해 문제의 조작적 정의는 본 연구의 참여자가 상담소나 시설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보고한 성폭력 사건으로 정의하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이 성폭력에 관한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1. 피해유형별 피해를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70.8%), 강제추행(51.6%), 성희롱(26.6%), 성기노출(16.1%), 음란전화(3.6%), 스토킹(3.1%)의 순이다. 강간 또는 유사성교와 같은 가장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률(70.8%)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이나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표 6-3〉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강간, 유사성교	136	70.8
강제추행	99	51.6
성희롱	51	26.6
성기노출	31	16.1
음란전화	7	3.6
스토킹	6	3.1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192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아래 <표 6-4>는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상담기관 및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 피해내용으로 다른 형태의 피해 없이 강간 및 유사성교만 경험한 경우는 77건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0.1%에 해당한다. 강제추행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6.7%에 이른다.

<표 6-4>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내용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백분율)	항 목	사례수(백분율)
강간·유사성교만 당한 경우	77(40.1)	강제추행 + 성희롱	30(15.6)
강제추행만 당한 경우	32(16.7)	강제추행 + 성기노출	25(13.0)
성희롱만 당한 경우	10(5.2)	강제추행 + 음란전화	5(2.6)
성기노출만 당한 경우	0(0)	강제추행 + 스토킹	5(2.6)
음란전화만 당한 경우	2(1.0)	성희롱 + 성기노출	20(10.4)
스토킹만 당한 경우	3(1.6)	성희롱 + 음란전화	4(2.1)
강간·유사성교 + 강제추행	49(2.5)	성희롱 + 스토킹	4(2.1)
강간·유사성교 + 성희롱	20(10.4)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	20(10.4)
강간·유사성교 + 성기노출	21(10.9)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14(7.3)
강간·유사성교 + 음란전화	1(0.5)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1(0.5)
강간·유사성교 + 스토킹	4(2.1)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1(0.5)

주: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인 192명을 기준으로 하였음

성희롱만을 당한 경우는 5.2%, 음란전화만을 당한 경우는 1.0%, 스토킹 피해만을 이유로 상담소 및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한다. 반면에 성기노출 피해만을 가지고 상담소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 6-3>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상담기관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를 주요 성폭력 피해인 강간 및 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강간 및 유사성교와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2.5%이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함께 성희롱의 경험도 있는 경우는 10.4%, 강간 및 유사성교와 성기노출 경험을 한 경우는 10.9%, 그리고 강간 및 유사성교와 음란전화, 스토킹을 당한 경우는 각각 .5%와 2.1%이다.

강간 및 유사성교와 강제추행 그리고 성희롱 피해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0.4%이며, 강간 및 유사성교, 강제추행, 성희롱, 그리고 성기노출까지 경험한 경우는 7.3%이다. 더 나아가 음란전화까지 추가된 경우는 .5%(전체 조사대상자 중 1건)이고, 본 조사에서 제시한 모든 유형의 성폭력을 전부 경험한 경우는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희롱은 15.6%, 성기노출 13.0%, 음란전화 2.6%, 스토킹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중복적으로 받은 피해경험을 보면 성기노출 10.4%, 음란전화 2.1%, 스토킹 2.1%이다.

3. 성폭력 피해유형별 실태

다음은 성폭력 유형별로 피해내용, 가해자, 피해자 관련사항, 발생 상황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가.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표 6-5>에 의하면, 강간 및 유사성교의 유형으로는 성기삽입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기는 1개월 이내가 11.1%, 3개월 이전이 19.2%, 6개월 이전이 30.2%로 1년 이전이 46.4%로 나타나, 피해자의 53.6%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상담기관 등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홍보가 필요함을 반영하며, 피해자들이 상담기관들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각 상담소들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해방식으로는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했다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했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와 강제

로 술이나 약물을 먹였다, 장애를 이용했다 등의 피해자의 심신을 무력화 시키는 방식이 27.2%로 나타나 물리적인 심리적인 피해자를 제압시키는 방식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 강간·유사성교 피해관련 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강간 및 유사성교 피해 내용	성기삽입	112	82.4
	강간미수	8	5.9
	구강성교	5	3.7
	항문성교	1	.7
	성기에 이물질 삽입	3	2.2
	기타	7	5.1
	합 계	136	100.0
사건 발생시기	1-3일 전	5	3.7
	3일 -1주일 전	2	1.5
	1주- 2주일 전	2	1.5
	2주- 1개월 전	6	4.4
	1개월- 3개월 전	11	8.1
	3개월- 6개월 전	15	11.0
	6개월- 1년 전	22	16.2
	1년- 3년 전	37	27.2
	3년- 5년 전	14	10.3
	5년- 10년 전	12	8.8
	10년 이상	10	7.4
합 계	136	100.0	
가해 방식	계속해서 애원했다	12	8.8
	술에 취해 있거나 잠자는 틈을 이용함	26	19.1
	강제로 술이나 약물을 먹였다	6	4.4
	계획적인 책략이나 속임수를 썼다	14	10.3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함	6	4.4
	죽이겠다, 소문내겠다 등 말로 협박함	16	11.8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함	37	27.2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함	10	7.4
	나의 장애를 이용함	4	2.9
	기 타	5	3.7
	합 계	136	100.0

〈표 6-5〉 강간·유사성교 피해관련 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 유형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47	34.6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25	18.4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38	27.9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당함(윤간)	7	5.1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16	11.8
	기 타	3	2.2
	합 계	136	100.0
동료 피해자	있 다	18	13.2
	없 다	118	86.8
	합 계	136	100.0
사건 발생장소	귀하의 집	51	37.5
	가해자의 집	27	19.9
	직장, 사무실	3	2.2
	학교, 학원	2	1.5
	여관 등 숙박업소	26	19.1
	술집 등 유흥업소	2	1.5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	5	3.7
	기타	20	14.7
	합 계	136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상태	맨 정신이었다	72
술에 취해 있었다		44	32.6
잘 모르겠다		19	14.1
합 계		135	100.0

주: 사건발생 시기는 조사시점인 200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피해 유형을 보면,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6%로 가장 많고,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응답이 27.9%,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18.4%로 나타나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또한 2인 이상에게 당한 경우가 16.9%로 대부분이 한사람에게 1회 또는 2회 이상,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강간 및 유사성교 피해를 겪은 응답자의 86.8%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성폭력이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로서 가장 많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피해자의 집으로 36.8%이고, 다음이 가해자의 집으로 14.1%이다. 성폭력 피해의 절반 정도가(50.9%)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관 또는 숙박업소는 13.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로 제기된 장소로는 엘리베이터나 골목길 등 어두운 곳이 2.6%, 직장이나 사무실 1.6%, 학교나 학원이 1.0%, 술집 등 유흥업소 1.0%이다. 기타로 응답한 10.4%에 대한 상세한 질문결과 가해자의 승용차, 건물화장실, 아파트 옥상, 야산 등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를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맨 정신이었다’가 53.3%인 절반이상인 경우여서 음주가 성폭력의 주된 계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6-6〉을 보면 남성이 95.6%(130명)이고 여자인 경우는 4.4%(6명)이다. 남성 가해자만을 볼 때 1명의 남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73.8%를 차지하고 있다. 3명의 남자가 8.5%이고, 2명이 7.7%, 4명의 경우도 6.2%에 이른다. 한편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4.4%에 해당하며 모두 1명이 가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22.1%)과 아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알고 지내는 사람이 77.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21.3%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나이는 사건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대가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가 34.3%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을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6.6%, 10대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18.2%로 것으로 나타나 10대가 가해자인 경우가 20대 다음으로 30, 40대의 가해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이 응답자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인구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해자의 학력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많아 응답자의 21.2%이고, 대학학력 이상이 14.7%이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7.4%가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

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해자의 직업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볼 때 다양한 직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자와 학생이 비교적 많은 비중(9.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6〉 강간·유사성교 피해 관련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남자(130명)	130	95.6
가해자 성별		
1명	96	73.8
2명	10	7.7
3명	11	8.5
4명	8	6.2
5명	2	1.5
10명이상	3	2.3
여자(2명)	6	4.4
가해자 수 1명	6	100.0
합 계	100.0	100.0
가해자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30	22.1
피해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사람	4	2.9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7	5.1
온라인으로 알다 만나게 된 사람	12	8.8
전 배우자(예인, 전애인)	6	4.4
친족	29	21.3
친구 선후배	8	5.9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8	5.9
동네사람	16	11.8
직장동료나 상사	8	5.9
교 사	1	.7
기 타	7	5.1
합 계	136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9	6.8
14세 - 19세	15	11.4
20대	36	27.3
30대	24	18.2
40대	23	17.4
50대	16	12.1
60대 이상	4	3.0
잘 모르겠음	5	3.8
합 계	132	100.0

〈표 6-6〉 강간·유사성교 피해 관련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가해자 학력	무학	2	1.5
	초등학력	11	8.1
	중등학력	10	7.4
	고등학력	29	21.3
	대학학력 이상	20	14.7
	잘 모르겠음	64	47.1
	합 계	136	100.0
	가해자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2
기술공, 준전문가		4	2.9
사무직		4	2.9
서비스종사자		5	3.7
판매종사자		4	2.9
농업, 임업, 어업		11	8.1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8	5.9
단순 노무자		13	9.6
기타		20	14.7
학생		13	9.6
잘 모르겠다		52	38.2
합 계		136	100.0

나. 강제추행 피해실태

강제 추행의 가장 많은 형태는 강제 키스와 강제 애무로 각 각 38.4%와 36.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기밀착이 19.2%, 기타가 6.1%인데 기타로 제시된 애용은 성기나 유방 애무, 손가락으로 성기 삽입을 보고하였다.

강제추행의 발생시점은 조사 당시(2007년 11월1일 기준)로 할 때 최소한 2주 이상 인 것으로 보인다. 1년에서 3년 전에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고, 5년-10년 전과 3개월에서 6개월 전이 13.5%에 이르고, 1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경우도 10.4%에 이른다. 이는 강제추행도 강간이나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42.4%만이 1년 이내에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강간이나 유사성교 피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필요함을 반영하며, 피해자들이 상담기관들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각 상담소들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해방식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가 27.1%로 가장 높으며, 술에 취해 있거나 잠자는 틈을 이용했다가 19.8%로 나타났다. 이는 강간 및 유사성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 계속해서 애원했다가 11.5%, 죽이겠다, 소문내겠다 등 협박했다 9.4% 등이 순이다.

피해유형은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6.8%로 가장 많고, 한 사람에게 한번 당함 31.6%,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20.0%,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7.4%,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3.2%의 순이다. 강제추행이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가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56.8%로 나타나 강간이나 유사성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20.2%이고, 없다는 7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로는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40.6%에 이르며, 가해자의 집이 11.5%로 강제추행 피해 역시 52.1%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여관 등 숙박업소가 각각 11.5%, 10.4%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다른 항목들은 소수이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강제추행의 피해 장소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맨 정신이었다'가 59.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대개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7〉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강제추행 피해 내용	강제 키스	38	38.4
	강제 애무	36	36.4
	성기밀착	19	19.2
	기타	6	6.1
	합 계	99	100.0
사건 발생시기	2주일 이내	0	.0
	2주- 1개월 전	3	3.1
	1개월- 3개월 전	8	8.3
	3개월- 6개월 전	13	13.5
	6개월- 1년 전	17	17.7
	1년- 3년 전	25	26.0
	3년- 5년 전	7	7.3
	5년- 10년 전	13	13.5
	10년 이상	10	10.4
	합 계	96	100.0
가해 방식	계속해서 애원했다	11	11.5
	술에 취해 있거나 잠자는 틈을 이용함	19	19.8
	강제로 술이나 약물을 먹였다	2	2.1
	계획적인 책략이나 속임수를 썼다	6	6.3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암시함	7	7.3
	죽이겠다, 소문내겠다 등 말로 협박함	9	9.4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함	26	27.1
	매리거나 흉기로 위협함	4	4.2
	나의 장애를 이용함	1	1.0
	기 타	11	11.5
	합 계	96	96
피해 유형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39	31.6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19	20.0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35	36.8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3	3.2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7	7.4
	기 타	1	1.1
	합 계	95	100.0

〈표 6-7〉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동료 피해자	있 다	19	20.2
	없 다	75	79.8
	합 계	94	100.0
사건 발생장소	귀하의 집	39	40.6
	가해자의 집	11	11.5
	공동주거지	3	3.1
	계 3자의 집	3	3.1
	직장, 사무실	3	3.1
	학교, 학원	6	6.3
	여관 등 숙박업소	10	10.4
	술집 등 유흥업소	4	4.2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	2	2.1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	3	3.1
	기타	12	12.5
	합 계	96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상태	맨 정신이었다	28	59.6
	술에 취해 있었다	13	27.7
	잘 모르겠다	6	12.8
	합 계	47	100.0

〈표 6-8〉을 보면, 강제추행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가 96.8%이고 여자가 3.2%이다. 남자 가해자만을 볼 때 가해자 1명인 경우가 8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응답자의 3.3%에 불과하며 여성 가해자 모두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17.7%를 제외한 82.3%가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지냈던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이 27.1%로 가장 많고, 직장동료나 상사가 9.4%, 동네사람과 온라인으로 알다가 만난 사람이 8.3%의 순이다.

가해자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24.0%이고, 20대 18.8%, 40대 16.7%의 순으로 강간 및 유사성교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편이다. 10대의 경우 10세 미만과 이상을 합하여 18.8%이고, 50대 이상도 합하여 14.6%에 이른다. 가해자의 학력은 대학이상 학력이 21.9%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학력이 2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의 직업은 다양한 직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직업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단일 직종으로는 농·임·어업 종사자와 학생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각 13.5%와 12.5%이다.

〈표 6-8〉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 례 수(n)	백분율(%)
가해자 성별	남자(90명)	90	96.8
	1명	76	84.4
	2명	5	5.6
	3명	3	3.3
	4명	4	4.4
	5명	1	1.1
	10명이상	1	1.1
	여자(3명)	3	3.2
	가해자 수 1명	3	100.0
	합 계	93	100.0
가해자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17	17.7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6	6.3
	온라인으로 알다 만나게 된 사람	8	8.3
	전 배우자(애인)	3	3.1
	친족	26	27.1
	친구 선후배	6	6.3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7	7.3
	동네사람	9	9.4
	직장동료나 상사	8	8.3
	교 사, 시설장, 학원장 등	4	4.2
	기 타	2	2.1
	합 계	96	100.0
	가해자 학력	무학	1
초등학력		10	10.4
중등학력		8	8.3
고등학력		20	20.8
대학학력 이상		21	21.9
잘 모르겠음		36	37.5
합 계		96	100.0

〈표 6-8〉 강제추행 피해 관련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6.3	
	14세 - 19세	12.5	
	20대	18.8	
	30대	24.0	
	40대	16.7	
	50대	9.4	
	60대 이상	5.2	
	잘 모르겠음	7.3	
	합 계	96	100.0
	가해자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7.3
기술공, 준전문가		1.0	
사무직		3.1	
서비스종사자		3.1	
판매종사자		1.0	
농업, 임업, 어업		13.5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4.1	
단순 노동자		3.1	
기타		18.8	
학생		12.5	
잘 모르겠다		31.3	
합 계		96	100.0

다. 성희롱 피해실태

성희롱 피해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1.4%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경우가 27.5%,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대상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15.7%이었는데, 성폭력은 대체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기에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이 27.7%로 가장 많았으나, 술집 등 유흥업소가 10.6%,이며, 직장, 사무실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이 8.5%, 가해자의 집이나 학교, 학원이 6.4%로 나타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

는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반면, 성희롱은 주로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46.8%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 18.8%, 직장동료나 상사 14.6%,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10.4% 순이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알다 만나게 된 사람 6.3%, 친구나 선후배 6.3%,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6.3%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동네사람 2.1%, 교사, 시설장, 학원장 등 2.1%, 그리고 기타는 8.3%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25.0%)을 제외하고 볼 때, 성희롱의 75.0%는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은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21.3%, 19.1%, 60대가 6.8%로 나타나 30세 이상의 성인에 의한 성희롱이 72.7%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은 거의 대부분이 30대 이상의 성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학력에서는 가해자의 학력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 대학학력 이상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응답자의 29.4%가 이에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은 차례대로 고등학력이 16.7%, 중등학력이 10.4%, 초등학력이 6.3%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37.5%가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해자의 직업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직업별로 나열해보면, 단순노무자가 14.6%, 관리자 및 전문가가 10.5%,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0.4%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8.3%로 뒤이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 사무직과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6.3%로 동등한 수준에 있고, 기술공 및 준 전문가도 2.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3%에 해당된다.

〈표 6-9〉 성희롱 피해 관련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 유형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16	31.4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12	23.5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14	27.5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1	2.0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8	15.7
	합 계	51	100.0
사건 발생장소	귀하의 집	13	27.7
	가해자의 집	3	6.4
	제 3자의 집	2	4.3
	직장, 사무실	4	8.5
	학교, 학원	3	6.4
	여관 등 숙박업소	4	8.5
	술집 등 유흥업소	5	10.6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안	2	4.3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	4	8.5
	기타	7	14.9
	합 계	47	100.0
가해자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12	25.0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5	10.4
	온라인으로 알다 만나게 된 사람	3	6.3
	친족	9	18.8
	친구 선후배	3	6.3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3	6.3
	동네사람	1	2.1
	직장동료나 상사	7	14.6
	교 사, 시설장, 학원장 등	1	2.1
	기 타	4	8.3
	합 계	48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 19세	5	10.6
	20대	5	10.6
	30대	12	25.5
	40대	10	21.3
	50대	9	19.1
	60대 이상	2	4.3
	잘 모르겠음	4	8.5
	합 계	47	100.0

〈표 6-9〉 성희롱 피해 관련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가해자 학력	초등학력	3	6.3	
	중등학력	5	10.4	
	고등학력	8	16.7	
	대학학력 이상	14	29.4	
	잘 모르겠음	18	37.5	
	합 계	48	100.0	
	가해자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5	10.5
기술공, 준전문가		1	2.1	
사무직		3	6.3	
서비스종사자		3	6.3	
농업, 임업, 어업		5	10.4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2	4.2	
단순 노무자		2	4.2	
기타		7	14.6	
학생		4	8.3	
잘 모르겠다		16	3.3	
합 계		48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상태		맨 정신이었다	28	59.6
		술에 취해 있었다	13	27.7
	잘 모르겠다	6	12.8	
	합 계	47	100.0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맨 정신인 경우가 59.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술에 취해있었던 경우는 27.7%,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12.8%로 나타나 대다수의 가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희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성기노출 피해실태

성기노출 피해 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5.5%로 가장 높고, 같은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23.5%로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55.8%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대상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12.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체로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40.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도 20.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는 기타가 10.0%, 여관 등의 숙박업소와 직장 및 사무실이 각각 6.7%로 동등 수준을, 공동주거지와 학교 및 학원 또한 각각 3.3%로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친족이 25.8%, 직장동료나 상사,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이 모두 9.7%, 친구나 선후배는 6.5%, 동네사람이 3.2%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성기노출 가해자의 64.6%가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지만, 다른 성폭력 피해유형과는 달리, 모르는 사람에 의해 어두운 골목이나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일어나는 비율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와 50대도 각각 22.6%, 16.1%로 뒤를 이어 나타나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이하도 12.9%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의 학력에서는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겠다고 응답한 48.4%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학력을 알고 있는 경우만을 볼 때, 고등학력 이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자의 22.6%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은 대학학력 이상으로 16.1%로 나타났다, 중등학력은 9.7%, 초등학력은 3.2%로 각각 보고되었다.

가해자의 직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48.4%를 제외하고, 직업을 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볼 때, 가장 빈도를 보이는 직업 순으로 나열하면, 학생 16.2%,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12.9%, 사무직 6.5%,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6.4%, 기술공 및 준 전문가와 단순 노무자가 3.2%로 비슷한 수준에 해당된다.

〈표 6-10〉 성기노출 피해 관련 사항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 유형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11	35.5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	6	19.4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10	32.3
	여러 상대에게 같은 날 당함	4	12.9
	합 계	31	100.0
사건 발생장소	귀하의 집	12	40.0
	가해자의 집	3	10.0
	공동주거지	1	3.3
	직장, 사무실	2	6.7
	학교, 학원	1	3.3
	여관 등 숙박업소	2	6.7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	6	20.0
	기타	3	10.0
	합 계	30	100.0
가해자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11	35.5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3	9.7
	친족	8	25.8
	친구 선후배	2	6.5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3	9.7
	동네사람	1	3.2
	직장동료나 상사	3	9.7
	합 계	31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1	3.2
	14세 - 19세	4	12.9
	20대	1	3.2
	30대	9	29.0
	40대	7	22.6
	50대	5	16.1
	60대 이상	0	.0
	잘 모르겠음	4	12.9
	합 계	31	100.0
가해자 학력	초등학교	1	3.2
	중등학교	3	9.7
	고등학교	7	22.6
	대학학력 이상	5	16.1
	잘 모르겠음	15	48.4
	합 계	31	100.0

〈표 6-10〉 성기노출 피해 관련사항(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가해자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0	
	기술공, 준전문가	1	
	사무직	2	
	서비스종사자	1	
	농업, 임업, 어업	4	
	기능원 및 기능 관련 종사자	2	
	단순 노무자	1	
	기타	3	
	학생	2	
	잘 모르겠다	15	
	합 계	31	
	사건 당시 가해자 상태	맨 정신이었다	20
		술에 취해 있었다	4
잘 모르겠다		7	
합 계		31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맨 정신인 경우가 6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술에 취해있었던 경우는 2.9%로 성기노출 역시 술이 성폭력의 발생원인이 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성폭력 피해 영향분석

성폭력 피해에 관해서 귀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들을 16개의 문항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화 된 내용에 관해서 통계 치를 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1〉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

(단위: %, 명)

	내용	응답자수	백분율(%)
1	불안, 공포	7명	14
2	가해자에 대한 분노	7명	14
3	대인기피	5명	10
4	남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	5명	10
5	수치심(남들이 알게될까봐)	4명	8
6	회상시 고통감(문뜩 떠오름)	4명	8
7	죄책감(사건발생, 낙태)	3명	6
8	법률 과정상 어려움(분쟁)	2명	4
9	자살사고	2명	4
10	우울	2명	4
11	사건 재 발생에 대한 두려움	2명	4
12	사회 부적응(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감)	2명	4
13	약몽	2명	4
14	자존감 상실	1명	2
15	판단력 흐려짐	1명	2
16	가족 관계의 어려움	1명	2
	계	50	100

성폭력 피해로 가장 힘든 점에 관해서 개방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한 결과 불안(14%), 가해자에 대한 분노(14%)가 가장 높았고, 대인기피(10%),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1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밖에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죄책감 등에 증상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증상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내용들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심리치료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4 절 현재 성폭력에 대한 피해대응과 영향

1. 성폭력 피해 대응에 관한 사항

가. 저항여부 및 효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한 내용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피해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해 상황의 저항 여부를 물어본 결과 49.7%의 피해자들이 저항했고, 약 50%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저항한 경우, 85.3%가 적극적 저항을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저항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41.1%, 소리를 지른 경우 23.2%,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경우 12.6%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적 저항으로 가해자를 설득하려고 시도하기 8.4%, 무조건 빌고 애원하기 8.4%, 기지를 발휘해서 생리를 핑계 대기 2.1%, 가해자를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항의 결과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면하지 못한 경우가 52.1%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 폭력은 심하게 입었다가 10.6%로 62.7%가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다행히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 상해도 입지 않은 경우가 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성폭력 발생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은 자칫 생명의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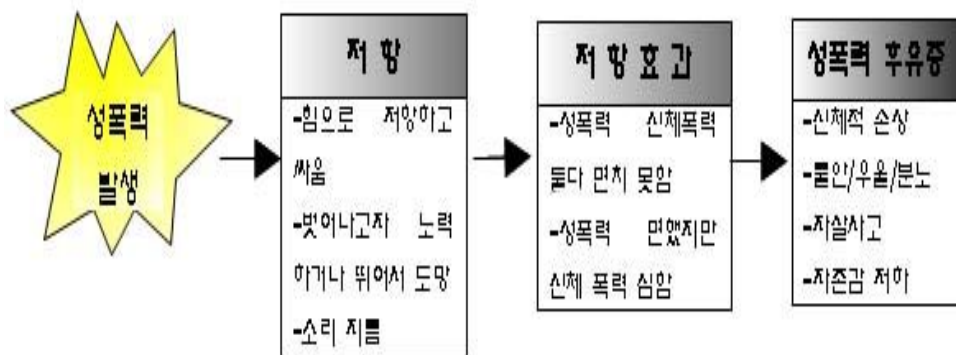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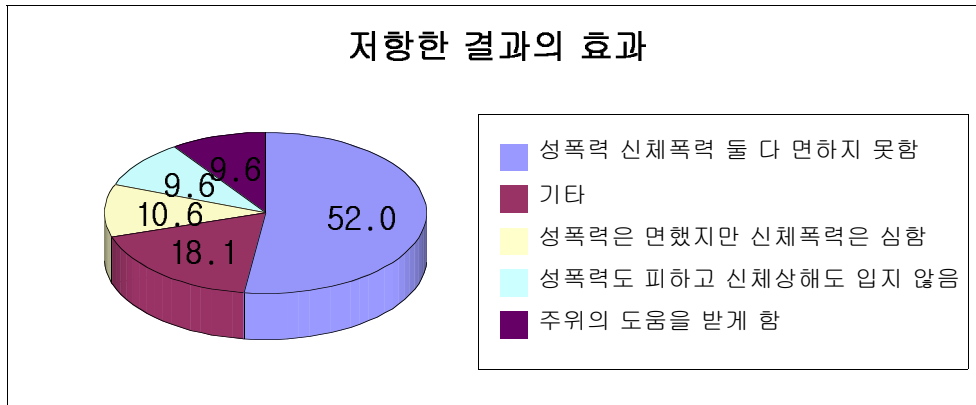
저항하지 못한 이유로,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 까봐 등 28.8%. 놀라움과 공포로 몸이 굳어서 21.2%, 남이 알면 창피할 까봐 11.5%,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1.5%,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가 11.5%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저항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표 6-12〉 저항여부 및 효과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상황에서 저항 여부	저항했다	89	49.7
	저항하지 못했다	90	50.3
	합 계	179	100.0
저항한 내용 (중복응답)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뛰어서 도망갔다	39	41.1
	소리를 질렀다	22	23.2
	가해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다	8	8.4
	가해자를 협박했다	1	1.1
	가해자를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탐색했다	3	3.2
	가해자에게 생리중 이다 등의 핑계 댄	2	2.1
	무조건 빌고 애원함	8	8.4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12	12.6
	합 계	95	100.0
저항한 결과의 도움 유무 (중복응답)	성폭력도 피하고 신체상해도 입지 않음	9	9.6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폭력은 심함	10	10.6
	성폭력 신체폭력 둘 다 면하지 못함	49	52.1
	주위의 도움을 받게 함	9	9.6
	기타	17	18.1
합 계	94	100.0	
저항하지 못한 이유 (중복응답)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2	11.5
	소리내면 남이 알까 창피해서	12	11.5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12	11.5
	놀라움과 공포로 몸이 굳어서	22	21.2
	몸이 묶여있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황	1	1.0
	저항하면 큰 상해를 입을까봐	10	9.6
	그 남자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9	8.7
	말을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20	19.2
	장애 때문에 저항할 수 없어서	3	2.9
	기 타	3	2.9
합 계	104	100.0	

[그림 6-1] 저항한 결과의 효과



나. 저항하였을 때 가해자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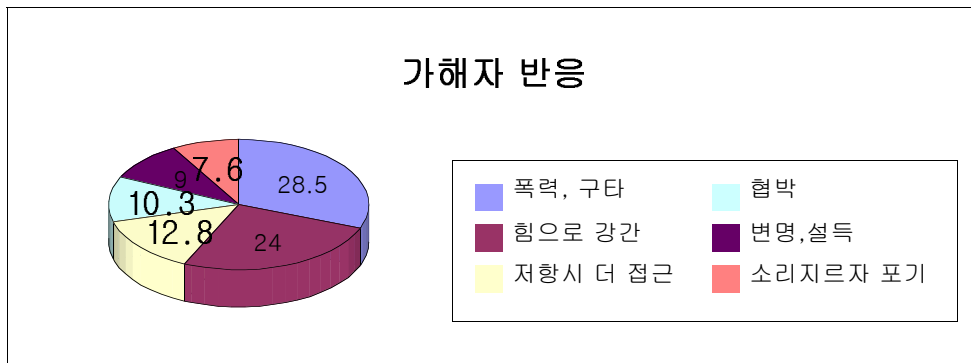
성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저항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개방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3〉 가해자 반응 (복수응답)

(단위: %, 명)

	내 용	응 답 자 수	백분율(%)
1	폭력, 구타	22명	28.5
2	힘으로 강간(폭력없음)	18명	24.0
3	저항 시 더 접근	10명	12.9
4	협박(소문내겠다. 죽이겠다)	8명	10.3
5	변명, 설득	7명	9.0
6	소리 지르자 도망, 포기	6명	7.7
7	입을 막음	2명	2.5
8	흉기 사용	2명	2.5
9	끝까지 쫓아옴	1명	1.3
10	성기삽입, 저항하자 구강성교	1명	1.3
	계	77명	

[그림 6-2] 가해자 반응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했을 때 가해자의 반응은 폭력이나 구타, 강제적으로 강간, 협박, 흉기 사용, 성기삽입 시도와 구강성교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자신의 욕구를 집요하게 충족하려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 지르자 도망치는 경우는 겨우 7.7%였다. 개방 질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위의 설문지를 통해서 얻은 자료와 유사하다. 즉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하면 가해자는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강력

한 저항을 요구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해 후 대응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응답자들의 84.3%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고 15.7% 만이 침묵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상담소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피해 후 대응 내용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사실 말한 적이 있나	있다	156	84.3
	없다	29	15.7
	합 계	185	100.0
피해사실 말한 대상 (%는 각 문항별로 응답자 185명 기준)	가족	84	45.4
	친구나 애인	40	21.6
	직장동료 등 지인	16	8.6
	상담소	78	42.2
	시설 종사자	26	14.1
	기 타	10	5.4
	경찰에 신고했다	46	24.9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반응 (%는 각 문항별 응답자 185명 기준)	상담소에 연락했다	46	24.9
	위로해 주었다	51	27.6
	귀하를 비난했다	10	5.4
	믿어주지 않았다	7	3.8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39	21.1
	무관심하였다	4	2.2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	10.8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자는 가족이 45.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가 42.2%, 친구나 애인 21.6%, 시설 종사자 14.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피해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가족이나 상담소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도와준 경우 24.9%, 상담소에 연

락해 준 경우 24.9%를 제외하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고(27.6%),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지를 해주었다(21.1%). 그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믿어주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한 경우 등(22.2%)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향상 되고 있지만,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라. 피해 후 관련기관 지원 사항

성폭력 피해 후 응답자들이 성폭력 상담기관이나 경찰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기 위한 내용과 분석은 아래와 같다.

피해 후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으로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58.8%, 수사나 법적인 지원 35.7%, 의료적 지원 34.6%로 나타났다.

상담소 서비스의 질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77.6%, ‘다소 도움이 되었다’ 19.2%로 피해자들은 상담소를 통해서 96.8%가 ‘대체로 만족한다’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에 신고 된 경우가 53.3%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46.7%)보다 높았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 된 대부분의 경우(87.7%)는 경찰은 수사나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3.1%). 경찰 조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에서 만족한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55.3%), 경찰의 서비스가 보통이거나(28.7%), 불만족스런 경우가 17%나 되었다. 이는 상담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96.8%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이므로 향후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가해자 처리 결과는 징역형이 가장 많았는데(31.8%),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50%). 이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진달과 피해자에 대한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 85.7%는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주 높다 하겠다.

〈표 6-15〉 피해 후 관련 기관 지원 사항 (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내용(%는 각 문항별 응답자 185명 기준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109	58.9
	수사나 법적 지원	66	35.7
	의료적 지원	64	34.6
	도움 받은 내용 없음	1	.54
상담소 지원 도움 정도	많은 도움이 됨	97	77.6
	다소 도움이 됨	24	19.2
	보통임	4	3.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0	.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0	.0
	합 계	125	100.0
경찰에 신고 여부	신고됨	98	53.3
	신고되지 않음	86	46.7
	합 계	184	100.0
경찰의 조치 (%는 각 문항별 경찰에 신고한 경우 98명 기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줌	61	62.2
	직접 방문하여 피해내용 확인	25	25.5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	6	6.1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3	3.1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함	16	17.0
	대체로 만족함	36	38.3
	보통임	27	28.7
	대체로 불만족함	6	6.4
	매우 불만족함	9	9.6
	합 계	94	100.0
가해자 처리결과	징역형	28	31.8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6	6.8
	벌금형	6	6.8
	불기소 처분	4	4.5
	무죄판결	0	.0
	잘 모르겠다	44	50.0
	합 계	88	100.0
가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	합의 해줌	12	14.3
	합의하지 않음	72	85.7
	합 계	84	100.0

〈표 6-15〉 피해 후 관련 기관 지원 사항(계속) (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	22	25.6
	나를 사랑하니까	3	3.5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움	20	23.3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8	9.3
	과거에 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으므로	1	1.2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4	4.7
	증거가 없었기 때문	6	7.0
	가족들에게 비난당할까봐 두려워서	3	3.5
	보복이 두려워	4	4.7
	시설에서 쫓겨 날까봐	1	1.2
	기타	14	16.3
	합 계	86	100.0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 25.6%, 신고를 통해서 남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23.3%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가해자에 대한 합의여부

1) 합의 해준 이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 합의를 해 준 경우에 그 이유에 관해서 개방 질문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가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온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서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었다.¹⁷⁾

17) 합의의 구체적인 이유: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내려고, 가해자 부모가 애원하고, 불쌍해서, 상대방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보상을 못 받는 대신 물질적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서.

2) 합의 해 주지 않는 이유

성폭력을 당한 후에 합의를 해 주지 않는 이유에 관한 개방질문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합의를 해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잘못에 대한 처벌과 사건을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가 제일 컸고, 상대방을 처벌해서 심리적인 보상과 보복하기 위한 동기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로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서 가해자를 용서하기 보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당연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관점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16〉 합의해 주지 않는 이유

(단위: 명)

	내용	응답자수
1	나쁜 짓 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	30명
2	사건 재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9명
3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3명
4	억울, 보복하기 위해	2명
5	범인 못잡음	2명
6	가해자 부모의 협박	2명
7	반성은커녕 부인하는 가해자의 태도	2명
8	가족이 원치 않음	-
9	귀찮아서	-

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기타 이유

피해를 당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개방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방법을 몰랐다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과 행위가 일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성폭력에 대한 신고 및 도움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¹⁸⁾.

18)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폭력인지 몰라서, 가해자를 몰라서, 학교에

2. 성폭력 피해 영향에 관한 사항

가. 신체적·정신적·사회생활에서의 피해

성폭력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58.3%,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87.0%,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78.1%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피해는 구체적으로 성기 부위의 상처가 54.5%로 가장 많았고, 성기 외 신체 부위에 상처가 25.0%, 임신 22.3%, 낙태 22.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폭력 피해가 피해여성의 단순한 신체적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나 낙태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전반적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피해 후 병원 치료는 56.6%만이 받았을 뿐 43.3%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되어, 상당 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38.3%만이 무료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피해여성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국적인 병원확대와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43.3%로, 신체적인 피해가 없거나(42.0%),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10.1%)도 있었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력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30.4%였다. 이것은 아직도 피해자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폭력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성문제나 순결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응답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63.5%,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증 40.1%로서 성폭력 피해의 전형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서 원치 않아서, 경향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비난당할까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족이라서.

호소했다. 또한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35.3%, 순결상실감 28.1%로 성폭력의 문제를 순결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3.4%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자살 기도, 자해도 19.2%로 나타나 성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가 45.3%, 대인 기피증이 생긴 경우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0%,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한들이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17〉 신체적, 정신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 (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신체적 피해여부	있었다	112	58.3
	없었다	70	36.5
	무응답	10	5.2
	합 계	192	100.0
신체적 피해 내용 (%는 각 문항별 신체적 피해 가 있다고 응답한 112명 기준)	성기부위에 상처입음	61	54.5
	성기이외 신체부위에 상처입음	28	25.0
	하혈함	12	10.7
	성병에 걸림	3	2.7
	임신을 함	25	22.3
	낙태를 함	25	22.3
	장애가 생겼거나 심해짐	4	3.6
병원 치료 상황	유료로 받았다	33	18.3
	무료로 받았다	69	38.3
	없다	78	43.3
	합 계	180	100.0
병원 진단 결과	1-2회정도 가벼운 처치	33	31.4
	1주 정도 치료 요하는 상태	11	10.5
	2-3주 정도 치료 요하는 상태	12	11.4
	4주 이상의 치료 요하는 상태	10	9.5
	정신과 치료 및 투약	25	23.8
	기타	14	13.3
	합 계	105	100.0
병원치료 받지 않은 이유	신체적 피해가 없어서	29	42.0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7	10.1
	돈이 없어서	2	2.9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렵고 창피해서	21	30.4
	당황하여 시기를 놓쳐서	3	4.3
	기 타	7	10.1
	합 계	69	100.0
정신적 피해여부	있었다	167	87.0
	없었다	11	5.7
	무응답	14	7.3
	합 계	192	100.0

〈표 6-17〉 신체적, 정신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계속)(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정신적 피해 내용 (%는 각 문항별 심리적 피해 가 있다고 응답한 167명 기준)	불면증에 걸림	76	45.5
	우울증에 걸림	78	46.7
	순결상실감에 고통 받음	47	28.1
	불안감으로 노이로제	67	40.1
	수시로 분노감 적개심	106	63.5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	59	35.3
	자살 기도, 자해	32	19.2
사회생활·인간관계 피해여부	있었다	150	78.1
	없었다	31	16.1
	무응답	11	5.7
	합 계	192	100.0
사회생활·인간관계 피해내용 (%는 각 문항별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피해가 있 다고 응답한 150명 기준)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됨	68	45.3
	학업을 중단함	14	9.3
	직장을 그만 둠	23	15.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47	31.3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	33	22.0
	대인 기피증이 생김	65	43.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됨	8	5.3

나. 기타 사항¹⁹⁾

1) 신체적 피해내용

성폭력에 관한 신체적 피해에 관한 질문에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 응답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자들이 기타로 응답한 신체적 피해는 성폭력 당한 부위에 관해서 통증과 외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섭식장애, 자해 행위, 불면증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증상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고하는 전형적인 증상임을 알 수 있다.

19) 기타사항은 응답자들이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기타’란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임.

〈표 6-18〉 신체적 피해내용

(단위: 명)

	내용	응답자수
1	통증 및 외상	5명
2	섭식장애	2명
3	성기 부위 질병(염증, 처녀막 파손)	2명
4	구토 어지럼증	1명
5	정서장애(불안, 초조, 분노 조절 안됨)	1명
6	불면증	1명
7	정신적 피해(스트레스, 신뢰감 상실, 고립, 화병, 분노)	1명
8	자해 행위	1명
9	낙태	1명
10	유방 치료	1명

2) 심리적 피해내용

성폭력에 관한 심리적 피해에 관한 응답 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9〉 심리적 피해내용

(단위: 명)

	내용	응답자 수
1	신체적 접촉이 싫어짐	5명
2	다른 지역으로 이사	2명
3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의존, 집착(되는데로 배우자 고름)	1명
4	밖을 돌아다님	1명
5	야뇨증	1명
6	폭력성 증가	1명
7	가출을 많이 함	1명
8	몽유병	1명
9	혼자 가지 못함	1명
10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감	1명
11	성관계시 어려움	1명
12	가해자가 붙잡혀 가니 불쌍했다	1명
13	해고를 간접적으로 종용받음	1명
14	직장 그만두고 정신질환자로 낙인됨	1명

성폭력에 대한 기타 후유증은 남성이나 부부 사이에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 시 어려움이었다. 즉 남성과의 신체접촉에 어려움을 보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가출과 직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피해당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간접적으로 종용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 심리적 피해상태

다음은 응답자들의 심리적 피해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각 문항마다 자신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각 심리척도마다 평균점을 내어 비교하였다.

1) 심리상태 수준

응답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 불안, 분노, 성폭력 피해후유증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20〉 심리상태 수준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상답소 101	19.79	5.05
평균(6-30점)	보호시설 83	20.26	4.57
	통 합 184	20.00	4.88
우울감	상답소 100	63.78	20.62
평균(21-105점)	보호시설 78	59.29	22.43
	통 합 178	61.75	21.49
불안감	상답소 102	18.31	6.02
평균(6-30점)	보호시설 85	16.32	6.47
	통 합 187	17.41	6.29
분노감	상답소 102	29.00	10.75
평균(10-50점)	보호시설 85	25.90	11.91
	통 합 187	27.59	11.37
성폭력	상답소 93	59.87	16.97
피해후유증	보호시설 78	56.25	21.28
평균(20-100점)	통 합 171	58.22	19.08

응답자들의 심리상태 수준을 보면,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주관적인 가치관을 스스로 평가하는 척도인데,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응답자가 쉼터에 있는 응답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무의미 했다.

우울수준은 상담소평균(63.78), 보호시설(59.29)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었지만,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척도를 통해서 응답자들의 분노수준을 평가 해 본 결과, 상담소 응답자들의 평균(29.00)이 보호시설 응답자들의 평균(25.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즉 상담소에 다니는 내담자들의 분노수준이 보호시설의 내담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후유증의 척도를 통해서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는데, 상담소 응답자의 평균(59.87)이 보호시설의 평균(56.25) 보다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조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후유증 척도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다니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가 더 심해서 이 수치의 차이가 난다고 하기 보다는 보호시설 라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호시설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2)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감 수준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Beck의 우울증 척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심한 수준의 우울 집단이 43.8%, 중등도 우울집단이 19.3% 이었다. 즉 63.1% 정도의 응답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21〉 우울감 수준비교

(단위: %, 명)

우울집단	우울정도(BDI)	사례수 (n=176)	백분율 (100%)
집단 1	정상 수준(9점 미만)	41	23.3
집단 2	경미한 수준(10~15점)	24	13.6
집단 3	중등도 수준(16~24점)	34	19.3
집단 4	심한 수준(25점 이상)	77	43.8

3)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저항한 집단과 저항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존감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저항한 집단이 저항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상황 시 가해자에게 저항한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후유증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들 집단이 저항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우울감, 분노감, 성폭력 후유증 척도의 모든 면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항을 시도했어도 자신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낀 좌절감과, 성폭력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서 더 심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 사법제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당시 저항을 했는가 가 중시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신체적인 피해와 후유증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2〉 성폭력 저항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단위: %, 명)

척도	피해 시 저항 여부	N	M(SD)	t
자존감	저항했다	87	19.13 (3.17)	-.603
	저항하지 못했다	86	19.41(2.94)	
우울	저항했다	83	66.04(20.13)	2.514*
	저항하지 못했다	84	57.94(21.52)	
분노감	저항했다	89	30.04(10.72)	3.017**
	저항하지 못했다	87	25.01(11.38)	
후유증	저항했다	80	62.35(17.63)	2.464*
	저항하지 못했다	81	55.12(19.55)	

주: p <.05, **p <.01, t 값은 저항유무에 따라 집단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이며, 자존감을 빼고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함.

4)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피해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강간 및 유사성교를 당한 집단 1과 강제추행 등을 당한 집단 2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6-23〉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비교

(단위: %, 명)

척도	피해정도	N	M(SD)	t
자존감	집단 1 (강간 및 유사성교)	73	18.79(2.89)	-1.982*
	집단 2 (강제추행/성희롱/성기노출/음란전화/스토킹)	108	19.71(3.29)	
우울	집단 1	72	62.39(21.47)	.395
	집단 2	103	61.09(21.45)	
분노감	집단 1	75	27.35(12.53)	-.167
	집단 2	109	27.64(10.59)	
후유증	집단 1	70	59.90(18.20)	1.070
	집단 2	99	56.75(19.75)	

주: p <.05, **p <.01

따라서 실제적인 강간을 당한 집단이 강제추행 등 정도가 덜 한 집단보다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과거의 성폭력 피해문제

과거 성폭력 피해 문제는 응답자들이 현재 다루는 문제를 제외한 성폭력 사건과 어린 시절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정의했다.

1.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

조사대상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 43.7%, 강제추행 36.5%, 성희롱 17.2 성기노출 1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4〉 과거 피해의 유형별 피해경험률(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강간, 유사성교	84	43.7
강제추행	70	36.5
성희롱	33	17.2
성기노출	37	19.3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192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

2. 과거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실태

가. 강간·유사성교 피해실태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84명이 과거 성피해 경험을 당했다고 보고해 피해율은 43.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9.7%, 11회 이상이 26.5%였으며, 6~10회가 13.1%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거 성피해를 보고한 응답자들의 69.1%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수록 그 피해후유증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이 23.2%,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함이 17.7%였다. 그 외에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12.2%, 여러 상대에게 차례로 당함이 11.0%로 보고되어, 54.3%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해자 나이는 19세미만이 26.1%, 20대가 22.6%, 30~40대가 25%였고 50대 이상은 14.3%로 나타나, 미성년자 가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1.4%, 10~15세 미만이 36.9%, 15~20세 미만이 22.6% 나타나 80.9%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미만의 피해가 58.3%로 나타나 그 피해후유증의 심각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적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나. 강제추행 피해실태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피해 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36.5%이며, 2~5회가 28.6%, 11회 이상이 22.8%, 6~10회가 10.0%였다. 강제추행 역시 강간 및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61.4%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0%,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4.3%로, 동일한 사람에게 당한 피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건당시 가해자 나이는 20대 미만이 20%로 청소년기의 가해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대가 17.1%, 30~40대가 37.2%, 50대 이상은 15.7%로 나타났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0.6%, 10~15세 미만이 36.8%, 15~20세 미만이 26.8%로 나타나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가 84.2%로 어린 시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6-25〉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내용

(단위: %, 명)

유형별 과거 피해경험률 (조사대상자 192명 기준)	피해내용	사례수(n)	백분율(%)	
	횃 수	1회	25	29.7
		2회- 5회	26	30.9
		6회 - 10회	11	13.1
		11회 이상	22	26.2
		합 계	84	100.0
	피해 내용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19	23.2
		한사람에게 2회이상 당함	14	17.1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30	36.6
		여러 상대에게 차례로 당함	9	11.0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10	12.2
합 계		82	100.0	
강간, 유사성교 84건(43.7%)	과거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6	7.1
		14세 - 19세	16	19.0
		20대	19	22.6
		30대	11	13.1
		40대	15	17.8
		50대	10	11.9
		60대 이상	2	2.4
		잘 모르겠음	5	5.9
		합 계	84	100.0
		과거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	10세미만	18
10-15세 미만	31		36.9	
15-20세 미만	19		22.6	
20대	11		13.1	
30대 이상	5		5.9	
합 계	84		100.0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각 항목에 응답한 사례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에서 제외하였음.

〈표 6-26〉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내용

(단위: %, 명)

유형별 과거 피해경험률 (조사대상자 192명 기준)	피해내용	사례수(n)	백분율(%)	
강제추행 70건(36.5%)	횃 수	1회	27	38.6
		2회 - 5회	20	28.6
		6회 - 10회	7	10.0
		11회 이상	16	22.8
		합 계	70	100.0
	피해 내용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24	34.3
		한사람에게 2회이상 당함	9	12.9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26	37.1
		여러 상대에게 차례로 당함	5	7.1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6	8.6
		합 계	70	100.0
	과거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4	5.7
		14세 - 19세	10	14.3
		20대	12	17.1
		30대	13	18.6
40대		13	18.6	
50대		8	11.4	
60대 이상		3	4.3	
잘 모르겠음		7	10.0	
합 계	70	100.0		
과거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	10세미만	14	20.6	
	10-15세 미만	25	36.8	
	15-20세 미만	14	20.6	
	20대	13	19.1	
	30대 이상	2	2.9	
	합 계	68	100.0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19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응답에서 제외하였음.

다. 성희롱 피해실태

과거의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피해횃수를 보면, 피해율은 17.27%이며, 피해횃수는 2~5회가 39.4%, 6~10회가 27.3%, 11회 이상이 15.2%로 2회 이상의 피해가 81.9%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33.3%로 가장 높았고, 같은 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3.3%,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0.0%로 나타나 결국, 76.6%가 2회 이상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희롱 역시 대부분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40대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미만 18.2%, 50대 이상이 15.2%로 나타나 성희롱은 중장년 이상의 가해자가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은 20세 미만이 80.6%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세 미만 아동 피해도 22.6%로 나타났다.

〈표 6-27〉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내용

(단위: %, 명)

유형별 과거 피해경험률 (조사대상자 192명 기준)	피해내용	사례수(n)	백분율(%)	
성희롱 33건(17.2%)	횡수	1회	6	18.2
		2회 - 5회	13	39.4
		6회 - 10회	9	27.3
		11회 이상	5	15.2
		합 계	33	100.0
	피해 내용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5	16.7
		한사람에게 2회이상 당함	7	23.3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10	33.3
		여러 상대에게 차례로 당함	2	6.7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6	20.0
	합 계	30	100.0	
	과거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2	6.1
		14세 - 19세	4	12.1
		20대	3	9.1
		30대	6	18.2
40대		8	24.2	
50대		3	9.1	
60대 이상		2	6.1	
잘 모르겠음		5	15.1	
합 계	33	100.0		
과거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	10세미만	7	22.6	
	10-15세 미만	9	29.0	
	15-20세 미만	9	29.0	
	20대	4	12.9	
	30대 이상	2	6.5	
	합 계	31	100.0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19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답에서 제외하였음.

라. 성기노출 피해

과거의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9.3%이며, 피해횟수는 1회가 41.7%로 가장 많았고, 2~5회가 36.1%, 11회 이상이 33.3%, 6~10회가 5.5%였다. 성기노출의 경우, 다른 피해보다 1회 피해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피해내용은 한사람에게 한번 당한 경우가 32.3%로 가장 높았고,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26.5%, 한사람에게 2회 이상 당한 경우가 8.8%로 나타났다.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5.3%로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32.3%로 다른 피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30대와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5~20세 미만이 50.0%, 10~15세 미만이 23.5%, 10세 미만이 14.7%로 나타났다. 성기노출의 피해연령은 주로 15세 이상의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있다.

〈표 6-28〉 성기노출 피해경험률과 내용

(단위: %, 명)

유형별 과거 피해경험률 (조사대상자 192명기준)	피해내용	사례수(n)	백분율(%)	
성기노출 37 건(19.3%)	횟수	1회	15	41.7
		2회 - 5회	13	36.1
		6회 - 10회	2	5.5
		11회 이상	6	33.3
		합 계	36	100.0
피해 내용	한사람에게 한번 당함	11	32.3	
	한사람에게 2회이상 당함	3	8.8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9	26.5	
	여러 상대에게 차례로 당함	5	14.7	
	여러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당함	6	17.6	
합 계	34	100.0		
과거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	14세 미만	2	5.9	
	14세 - 19세	6	17.6	
	20대	2	5.9	
	30대	10	29.4	
	40대	7	20.6	
	50대	1	2.9	
	60대 이상	1	2.9	
	잘 모르겠음	5	17.6	
합 계	34	100.0		
과거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	10세미만	5	14.7	
	10-15세 미만	8	23.5	
	15-20세 미만	17	50.0	
	20대	2	5.9	
	30대 이상	2	5.9	
	합 계	34	100.0	

주: 각 항목의 백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192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답에서 제외하였음.

3. 과거 성폭력의 유형별 피해경험

가.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내용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내용을 보면, 성기 삽입이 40.2%로 가장 많았고 강제애무가 30.5%, 강제키스가 27.3%, 성기밀착이 22.7% 이었다. 나머지 피해 내용으로는 구강성교 11.7%, 강간미수 9.7%, 성기에 이물질 삽입 8.4%, 항문성교 7.1%로 보고되었다.

〈표 6-29〉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성기삽입	62	40.2
강간미수	15	9.7
강간 및 유사성교 피해 내용 <%는 과거의 피해경험 응답자 154명(84명+70명) 기준으로 함>	18	11.7
구강성교	11	7.1
항문성교	11	7.1
성기에 이물질 삽입	13	8.4
강제키스	42	27.3
강제애무	47	30.5
성기밀착	35	22.7
가해자의 유인 방식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했다	2	1.0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함	28	27.7
과자, 장남감 등을 주겠다고 함	4	4.0
거짓말로 속였다	8	7.9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	17	16.8
때리는 등 힘으로 제압함	18	17.8
죽이겠다 소문내겠다 등으로 협박함	7	7.0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함	4	4.0
장애를 이용함	3	3.0
기 타	10	9.9
합 계	101	100.0
동료 피해자		
있 다	15	7.8
없 다	85	44.3
무응답	92	47.9
합 계	192	100.0

〈표 6-29〉 과거의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피해의 세부 내용(계속)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사건 발생장소	귀하의 집	39	20.3
	가해자의 집	30	15.6
	공동주거지	5	2.6
	직장, 사무실	2	1.0
	여관 등의 숙박업소	5	2.6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	8	4.2
	기타	12	6.3
	무응답	91	47.4
	합 계	192	100.0
가해자와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	21	10.9
	친부, 양부	17	8.9
	친족	17	8.9
	친구 선후배	5	2.6
	배우자(전배우자)	1	0.5
	애인(이성친구)	2	1.0
	피해 몇 시간 전 만난 사람	5	2.6
	몇 번 정도 만난적이 있는 사람	11	5.7
	가족, 친척, 친구 아니지만 알고 지내던 사람	14	7.3
	직장 동료나 상사	1	.5
	기 타	9	4.7
	무응답	89	46.4
	합 계	192	100.0
사건 당시 가해자 상태	맨 정신이었다	73	38.0
	술에 취해 있었다	13	6.8
	잘 모르겠다	15	7.8
	무응답	91	47.4
	합 계	192	100.0

가해자의 유인 방식은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27.7%로 가장 높았고, 때리는 등의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17.8%,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16.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피해자를 물리적이든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력화 시켜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20) 응답자들이 '기타'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악용해서 '엄마가 알면 큰일이다', '엄마랑 헤어지겠다, 아버지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성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서 성폭력을 시도 하기도 함. 또한 피해자가 아파서 힘이 없을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 성폭력 한 가해자도 있었음.

동료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44.3%, 동료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7.8%로 보고되어 성폭력은 주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보고 된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집으로 20.3%이고, 가해자의 집이 15.6%였다. 나머지 사건 발생장소²¹⁾로는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공동주거지나 숙박업소, 직장, 사무실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9%, 32.3%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친족이나 친부, 양부,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몇 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피해 몇 시간 전 만난 사람이나 친구, 선후배, 애인, 배우자나 직장동료 등이었다. 그러나 무응답은 47.4%로 보고되었다.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맨 정신인 경우가 38.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 7.8%, 술에 취해 있었다 6.8%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47.4%였다.

4.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응답결과는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5.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18.8%, 무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으로는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5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47.1%, 친구, 친척, 선배가 39.7%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에게 말한 경우는 13.2%에 불과했다.

21) 응답자들이 '기타'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승용차 안, 산속, 집 근처 옥상, 아파트 놀이터, 장소를 가리지 않음, 동네어귀 등으로 나타남.

〈표 6-30〉 과거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내용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피해사실 말한 적이 있나	있다	68	35.4
	없다	36	18.8
	무응답	88	45.8
	합 계	192	100.0
피해사실 말한 대상 (%는 각 문항별로 응답자 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68명 기준)	어머니	32	47.1
	아버지	9	13.2
	형제, 자매	11	16.2
	친구, 친척, 선배	27	39.7
	조부모	2	2.9
	선생님	9	13.2
	상담사, 사회복지사	36	52.9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반응 (%는 각 문항별로 응답자 68명 기준)	상담소에 연락했다	42	61.7
	병원에 치료받게 했다	21	30.9
	경찰에 신고했다	27	49.7
	가해자 측과 전화 또는 만나서 항의함	3	4.4
	가해자를 직접 만나 항의했다	5	7.4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	17.6
	비밀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15	22.1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이 취한 행동에 대한 소감	만족했다	18	26.5
	싫었지만 그대로 따랐다	14	20.6
	위로가 되었다	19	27.9
	분노감, 섭섭함이 느껴졌다	13	19.1
	기 타	4	5.9
	합 계	68	100.0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태도 (%는 각 문항별로 응답자 68명 기준)	귀하를 비난함	12	17.6
	덜어두자고 함	9	13.2
	믿어주려고 하지 않음	7	10.3
	못들은 척함	5	7.4
	귀하를 위로해 줌	43	63.2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줌	31	45.6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	혼이 날 것 같아서	12	22.2
	귀하가 잘못된 것 같아서	7	13.0
	수치스러워서	15	27.8
	가해자가 무서워서	8	14.8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9	16.7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1	1.8
	기 타	2	3.7
	합 계	54	100.0

또한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상담소에 연락한 경우가 6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신고가 49.7%⁴, 병원에 치료받게 한 경우가 30.9%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 등의 주위 친지들의 대응은 예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에게 비밀유지를 당부(22.1%)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17.6%)도 39.7%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이 취한 행동에 대한 소감은 위로가 되었거나 만족했다가 54.4%로 나타났지만, ‘싫었지만 그대로 따랐다’, ‘분노감, 섭섭함이 느껴졌다’가 39.1%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들은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응답은 ‘위로해주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주었다’가 63.2%로 나타나 피해사실에 대한 수용과 도움 제공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도 48.5%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수치스러워서가 22.2%로 가장 높았고, 혼이 날 것 같아서가 22.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16.7%, 가해자가 무서워서 14.8%, 귀하가 잘못된 것 같아서 13.0%,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1.8%였고, 기타는 3.7%로 응답하였다.

5. 과거의 성폭력 피해영향

다음 표는 ‘과거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귀하의 인생(또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9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과거 성폭력 경험이 피해자에 영향을 준 것에 관해서 개방질문 식으로 응답 하게 한 결과, 심리적 고통, 즉 불안, 우울, 분노감정이 가장 많았다.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 면도 많았고, 아주 심각한 것은 성폭력으로 인해서 자살 사고도 있었고, 가족 불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자존감 실추, 수치심, 죄책감, 임신 낙태, 직장의 어려움 등 피해자의 삶의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반영한다.

〈표 6-31〉 과거 성폭력 피해 영향 내용

(단위: %, 명)

내용	응답	퍼센트(%)
심리적 고통(분노, 우울, 불안, 공포)	38명	34.9
남성에 대한 공포(혐오감)	15명	14.2
대인관계 기피, 사회적 어려움	9명	8.3
희망상실(미래에 대한 절망감, 결혼 및 성관계에 관한 염려)	8명	7.3
자살사고	7명	6.4
가족불화	7명	6.4
수치심/죄책감	4명	3.7
자존감 실추(열등감)	4명	3.7
주의 집중의 어려움	3명	2.8
불면, 가위눌림	3명	2.8
불신감	3명	2.8
남편과의 성관계 문제	2명	1.8
임신 낙태	2명	1.8
직장 생활의 어려움(상실)	2명	1.8
가출	2명	1.8
기타	- 성중독(성에 대한 집착, 성매매로 이어짐), 경기, 화병, 가슴이 답답, 조심성의 증가, 성격의 변화, 시설 입소로 안정된 생활 가능 - 사건 재회상, 신체접촉거부, 흡연, 도덕과 규범 집착, 환상, 자포자기(복수하기 위해 성관계), 성폭력, 여성 문제에 관심	

제 6 절 지원제도 관련 사항

1. 정부의 지원제도 이용 및 필요성

성폭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최근 1년간 정부로부터 서비스 이용여부와 그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²²⁾

22) 응답자들이 '기타'에 제안한 정부지원 기관을 보면, 전남여경기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청각장애가 있으므로 문자서비스 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 성폭력 피해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 성매매 피해자 쉼터 등임.

〈표 6-32〉 정부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욕구

(단위: %, 명)

	이용여부		필요성					향후 이용의사	
	예	아니오	매우 필요	비교적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예	아니오
법률관련 서비스 (법률상담, 변호사알선 등)	58 (36.2)	103 (63.8)	92 (65.2)	26 (18.4)	15 (10.6)	3 (2.1)	5 (3.5)	117 (84.8)	21 (15.2)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98 (60.1)	65 (39.9)	109 (70.8)	31 (20.1)	11 (7.1)	0 (.0)	3 (1.9)	126 (90.0)	14 (10.0)
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등	25 (16.7)	125 (83.3)	72 (53.3)	35 (25.9)	21 (15.6)	2 (1.5)	5 (3.7)	93 (72.1)	36 (27.9)
성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130 (75.1)	43 (24.9)	121 (72.0)	41 (24.4)	3 (1.8)	0 (9.0)	3 (1.8)	142 (94.0)	9 (6.0)
여성긴급전화 1366서비스	2 (20.6)	123 (79.4)	80 (57.1)	33 (23.6)	20 (14.3)	3 (2.1)	4 (2.9)	100 (76.3)	31 (23.7)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96 (62.3)	58 (37.7)	108 (72.0)	27 (18.0)	11 (7.3)	0 (.0)	4 (2.7)	105 (80.2)	26 (19.8)
해바라기 센터	9 (6.2)	136 (93.8)	60 (46.5)	28 (21.7)	36 (27.9)	1 (.8)	4 (3.1)	7 (65.3)	42 (34.7)
원스톱 지원센터	34 (22.2)	119 (77.8)	73 (52.9)	30 (21.7)	28 (20.3)	3 (2.2)	4 (2.9)	94 (74.6)	32 (25.4)

주 : 각 문항별로 응답자 수가 다름, ()는 %

최근 1년간 정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향후 이용의사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약 94%의 응답자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4.8%가 실제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또한 약 98%의 응답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원했고, 90% 실제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93%의 응답자가 직업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요구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응답자 자신의 신체 건강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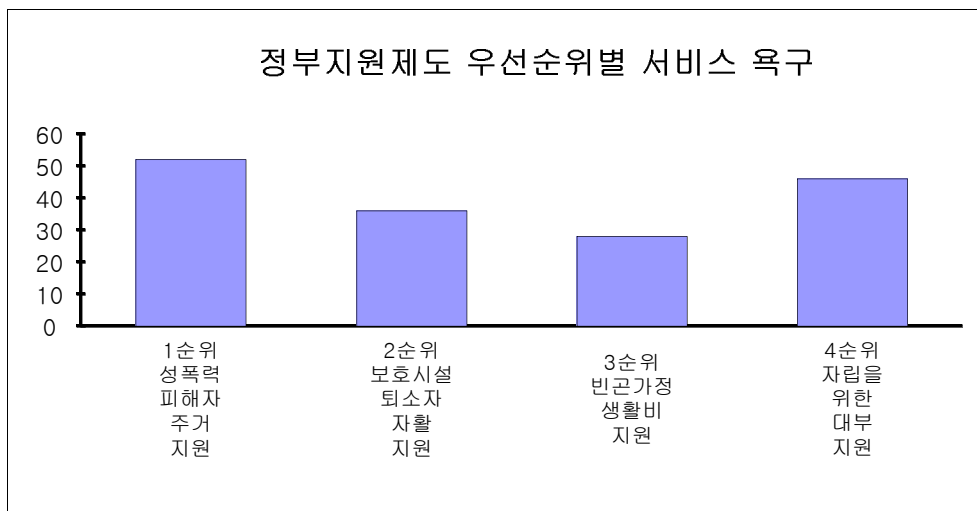
성폭력 관련 상담소 필요성은 98%의 응답자 필요성을 주장하고, 94%의 응답자 역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상담소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긴급 전화에 대한 필요성(97%) 과 이용의사(76.3%)도 비교적 높았다. 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필요성(97%)도 높았고 이용할 의사도(80%) 높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이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의 확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해바라기, 원스톱 지원 센터에 관한 필요성 역시 높았지만(97.0%), 실제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해바라기 센터(65.3%), 원스톱 지원센터(74.6%)의 이용의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2. 향후 정부의 지원제도의 우선순위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지원제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1순위는 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이었고,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이 2순위, 빈곤 가장 생활지원이 3순위,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가 4순위 이었다. 즉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주택 문제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자활 지원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6-3]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표 6-33〉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1 순위	빈곤가정 생활비 지원	45	25.7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91	52.0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	8	4.6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	31	17.7
	합 계	175	100.0
2 순위	빈곤가정 생활비 지원	35	20.1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40	23.0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	36	20.7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	63	36.2
	합 계	174	100.0
3 순위	빈곤가정 생활비 지원	50	28.7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30	17.2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	49	28.2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	45	25.9
	합 계	174	100.0
4 순위	빈곤가정 생활비 지원	45	25.9
	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14	8.0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	80	46.0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	35	20.1
	합 계	174	100.0

3. 저가 임대 주택 입주 의사

정부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저가에 임대주택(그룹 홈 등)을 지원할 경우 입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원에 관한 욕구가 두 집단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 이용자들이 상담기관 이용자들에 비하여 정부에 의한 저가 임대주택이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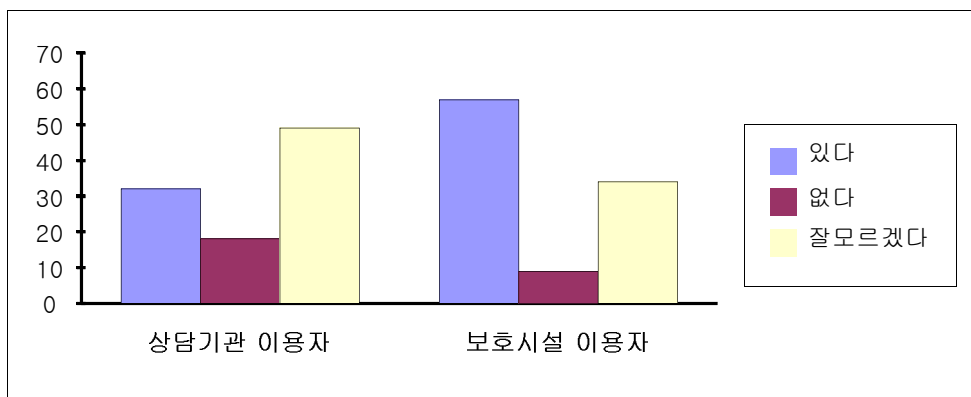
(단위: %, 명)

임대주택 이용의사		사례수(n)	백분율(%)
상담기관 이용자	있다	31	32.0
	없다	18	18.6
	잘 모르겠다	48	49.5
	합 계	97	100.0
보호시설 이용자	있다	48	57.1
	없다	8	9.5
	잘 모르겠다	28	33.3
	합 계	84	100.0
합 계	있다	79	43.6
	없다	26	14.4
	잘 모르겠다	76	42.0
	합 계	181	100.0

주: $X^2 = 11.895, p < .01$

[그림 6-4] 저가 임대주택 입주 의사

(단위: 명)



4.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화 욕구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대한 욕구 조사에 의하면,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강화에는 응답자의 100%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충하는 면에서도 9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반, 국민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인식 개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부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시설의 확대와 동시에 전문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표 6-35〉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욕구

(단위: %, 명)

	매우 필요하다	비교적 필요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 성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의 순찰기능을 강화해야한다	122(66.7)	42(22.8)	15(8.2)	4(2.2)	0(0)
2) 일반국민들의 성인식을 개선해야한다	134(73.2)	32(17.5)	15(8.2)	2(1.1)	0(0)
3)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식이 개선되어야한다	132(71.1)	31(16.8)	19(10.3)	2(1.1)	0(0)
4)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가 강화되어야한다	138(75.0)	33(17.9)	13(7.1)	0(0)	0(0)
5)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148(80.4)	27(14.7)	9(4.9)	0(0)	0(0)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을 확충해야한다	123(66.5)	36(19.5)	25(13.5)	1(5)	0(0)
7)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	140(75.7)	32(17.3)	12(6.5)	1(5)	0(0)

주: ()는 %

가.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타 의견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밝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제안 사항은 가해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10대 남성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했는데, 이 연령대는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한다. 즉 중고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대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좀 더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인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도 자신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함을 강조 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수사 과정에 피해자를 배려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표 6-36〉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기타 사항

	내용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를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 교육 - 정신적인 피해사례를 성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10대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2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과 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지정 -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필요 - 군대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활발해져야 한다.
3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확충 - 피해자의 부주의 또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성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필요. - 다른 나라처럼 성범죄자들에게 전자수갑을 채워야 한다. - 수사과정에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가 되어야 한다.

나.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의 순위 별 내용을 보면, 1순위로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2 순위로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라고 응답했다.

즉 성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기능강화와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성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성의식 교육의 장을 초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성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6-37〉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단위: %,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1순위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38	20.7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	38	20.7
	법 집행자들의 인식 개선	29	15.8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18	9.8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23	12.5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 확충	25	13.6
	피해자 위한 전문적 치료프로그램 강화	11	6.0
	기타	2	1.1
	합 계	184	100.0
2순위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12	6.6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	27	14.8
	법 집행자들의 인식 개선	30	16.4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33	18.0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1	16.9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 확충	22	12.0
	피해자 위한 전문적 치료프로그램 강화	27	14.8
	기타	1	.0
	합 계	183	100.0
3순위	경찰의 순찰기능 강화	23	12.6
	일반국민들의 성인식 개선	13	7.1
	법 집행자들의 인식 개선	24	13.1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강화	41	22.4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20	10.9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기관 확충	37	20.2
	피해자 위한 전문적 치료프로그램 강화	23	12.6
	기타	2	1.0
	합 계	183	100.0

5.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에 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가 94%,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가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95%로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강화 94%, 장애 유형별 전문 상담자 지원체계 강화가 93%로 나

타났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해야 하고 장애인 강간 조항에서 항거 불능이라는 용어 삭제도 강하게 촉구했다. 즉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적 의식차원에서 교육과 이들을 위한 시설, 상담자들의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표 6-38〉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욕구

(단위: %, 명)

	매우 필요하다	비교적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가중처벌 해야한다	147(79.9)	28(15.2)	9(4.9)	0(0)	0(0)
2) 장애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142(77.2)	35(19.0)	7(3.8)	0(0)	0(0)
3)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 등)	142(77.2)	31(16.8)	11(6.0)	0(0)	0(0)
4)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편의시설, 수화통역사, 장애유형별 전문상담가)	135(73.4)	36(19.6)	12(6.5)	1(5)	0(0)
5)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	135(75.0)	27(15.0)	17(9.4)	1(6)	0(0)
6) 장애인 강간조항에서 “항거불능” 용어를 삭제해야 한다	129(71.7)	27(15.0)	23(12.8)	1(6)	0(0)

가.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조사에 의하면, 1순위가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을 요구했는데, 이는 장애인의 조건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2위는 장애인들의 서비스기관 확대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복지 시설택대도 시급한 실정이다. 3위는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이었다.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예방과 지원 정책을 중·장기 과제로 실현해야 할 것 같다.

〈표 6-39〉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화 우선순위별 욕구
(단위:%, 명)

	항 목	사례수(n)	백분율(%)
1순위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97	53.9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위한 교육확대	31	17.2
	장애인 피해자 위한 서비스 기관 확대	16	8.9
	장애인 피해자 위한 지원체계 강화	10	5.6
	장애인 성폭력 비친고죄 적용	12	6.7
	장애인 강간조항에 항거불능 조항 삭제	11	6.1
	기 타	3	1.7
	합 계	180	100.0
2순위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18	10.0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위한 교육확대	37	20.6
	장애인 피해자 위한 서비스 기관 확대	58	32.2
	장애인 피해자 위한 지원체계 강화	32	17.8
	장애인 성폭력 비친고죄 적용	20	11.1
	장애인 강간조항에 항거불능 조항 삭제	15	8.3
	합 계	180	100.0
3순위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13	7.3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위한 교육확대	31	17.3
	장애인 피해자 위한 서비스 기관 확대	35	19.6
	장애인 피해자 위한 지원체계 강화	37	20.7
	장애인 성폭력 비친고죄 적용	33	18.4
	장애인 강간조항에 항거불능 조항 삭제	29	16.2
	기 타	1	.6
	합 계	179	100.0

제7절 서비스 이용 시설의 만족도

1. 성폭력 상담소 관련 사항

가.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이용 만족도

성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한 횟수와 만족도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여성 장애인 상담소, 이주상담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91~100% 정도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표 6-40〉 성폭력 관련 상담소 이용횟수 및 만족도

(단위: %, 명)

성폭력 관련 시설	이용 횟수 (N=105)	이용자 수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이용한 경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1) 성폭력 상담소	85	79	42(53.2)	37(46.8)	0(0.0)	0(0.0)	0(0.0)	0(0.0)
2) 여성 긴급전화 1366	44	12	2(16.7)	5(41.7)	2(16.7)	2(16.7)	1(8.3)	0(0.0)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0	13	3(23.1)	5(38.5)	3(23.1)	2(15.4)	0(0.0)	0(0.0)
4) 청소년 상담소	37	7	2(28.6)	3(42.9)	1(14.3)	0(0.0)	0(0.0)	1(14.3)
5) 해바라기 센터	37	3	0(0.0)	2(66.7)	1(33.3)	0(0.0)	0(0.0)	0(0.0)
6) 윈스톱 지원센터	41	11	3(27.3)	5(45.5)	2(18.2)	1(9.1)	0(0.0)	0(0.0)
7) 여성장애인관련 상담소	44	11	7(63.6)	3(27.3)	1(9.1)	0(0.0)	0(0.0)	0(0.0)
8) 이주 여성 상담소	36	2	1(50.0)	0(0.0)	1(50.0)	0(0.0)	0(0.0)	0(0.0)
9) 기타 성폭력 관련시설(대 구 여성회, 범물상담소, 청소년 쉼터 등)	21	4	1(25.0)	0(0.0)	1(25.0)	0(0.0)	1(25.0)	1(25.0)

그러나 여성 긴급전화 1366(58.4%), 윈스톱 지원센터(73%), 해바라기센터(67%)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물론 응답자 수가 적어서 이 자료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성 긴급전화, 윈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나.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상담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는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32.0%), 공공 기관(20.0%), 매스컴(22.1%)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소 이용에는 주변의 친구들의 권유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상담소를 찾은 이유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32.8%),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26.0%), 및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기 위함(12.7%) 순이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다.

〈표 6-41〉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단위: %, 명)

상담소 이용		사례수(n)	백분율(%)
상담소를 알게 된 경로(중복응답)	매스컴을 통해	21	22.1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	31	32.0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9	9.5
	공공기관	19	20.0
	1366의 안내를 받고	3	3.2
	해바라기센터, 윈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2	2.1
	기타	10	10.5
	합계	95	100.0
상담소를 찾은 이유(중복 응답)	법률상담과 법적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26	12.7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기 위하여	34	16.7
	치료 및 심리상담이 필요해서	67	32.8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얻기 위해	53	26.0
	의료적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21	10.3
	기타	3	1.5
	합계	204	100.0

다.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관해서 응답자의 95%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으며, 상담소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78.5%)과 의료적 법률적 지원(12.9%)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의 역할 중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 치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소수의 응답자가 의견을 피력했는데,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과 비체계적인 상담절차,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을 예를 들었다. 상담소의 환경 개선과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표 6-42〉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단위: %, 명)

상담소 이용		사례수(n)	백분율(%)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움을 준 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68	72.3
	다소 도움이 되었다	24	25.5
	보통이다	2	2.1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합계	94	100.0
상담소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	심리적, 정서적 안정	73	78.5
	의료적, 법률적 지원	12	12.9
	가해자와 주변반응에 대한 대응요령	6	6.5
	기타	2	2.2
	합계	93	100.0
서비스가 도움 되지 않은 이유	상담원의 전문성 미흡	1	14.3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	0	0.0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	2	28.6
	상담기관의 비체계적인 상담절차	2	28.6
	상담기관의 외부연계 체계의 부재	1	14.3
	기타	1	14.3
	합계	7	100.0

라.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만족도

다음은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응답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이다.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97%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경우에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데 걸리는 시간(79%), 상담소 방문을 위한 교통편(67%)에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고 했다. 인터넷 상담 응답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응답이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

마.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상담소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들은 심리치료, 집단상담 및 교육,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성폭력 대처 교육 분야, 취업 지원 등에 전반적

으로 92~99%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의료 기관소개 등은 89.5%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바.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응답자들에게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필요성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요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지원(89%),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98%), 집단 상담 교육(8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90%)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88%),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81%) 분야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했다.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의 욕구(75.7%)를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직업 지원 기대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의 강화, 법적 의료적인 지원의 강화, 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6-43〉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응답자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상담소의 전체적인 서비스	93	50(53.7)	40(40.0)	3(3.2)	0(0.0)	0(0.0)
2) 전화 상담이 연결되는 과정 (전화 상담을 이용한 경우만 응답)	53	25(47.1)	23(43.3)	5(9.4)	0(0.0)	0(0.0)
3)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인터넷 상담을 이용한 경우만 응답)	19	5(26.3)	9(47.3)	4(21.0)	1(5.2)	0(0.0)
4) 면접상담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	88	60(68.1)	22(25.0)	6(6.8)	0(0.0)	0(0.0)
5) 상담소 방문을 위한 교통편	89	23(25.8)	36(40.4)	23(25.8)	5(5.6)	2(2.2)
6) 상담원이 귀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제시	93	56(60.2)	35(37.6)	2(2.1)	0(0.0)	0(0.0)
7) 상담원이 귀하의 입장 이해, 존중하거나 친절히 대함	93	66(70.9)	27(29.0)	0(0.0)	0(0.0)	0(0.0)
8) 경찰관서, 법률기관, 피해자 지원 시설 등 연계	89	52(58.4)	24(26.9)	13(14.6)	0(0.0)	0(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표 6-44〉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이용 자수	만족도(이용한 경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40	20(50.0)	19(47.5)	1(2.5)	0(0.0)	0(0.0)
2) 개별상담 및 치료	86	46(53.4)	38(44.1)	1(1.1)	0(0.0)	1(1.1)
3)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25	12(48.0)	11(44.0)	1(4.0)	0(0.0)	1(4.0)
4)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미술, 음악, 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19	10(52.6)	9(47.3)	0(0.0)	0(0.0)	0(0.0)
5) 성폭력 대처 교육 (자기주장훈련/스트레스관리/의사소통훈련)	35	17(48.5)	16(45.7)	1(2.8)	1(2.8)	0(0.0)
6)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소개	48	30(62.5)	13(27.0)	5(10.4)	0(0.0)	0(0.0)
7) 사회복지 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24	10(41.6)	12(50.0)	2(8.3)	0(0.0)	0(0.0)
8) 취업 지원(구직·창업관련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7	6(85.7)	1(14.2)	0(0.0)	0(0.0)	0(0.0)
9) 기타	1	0(0.0)	0(0.0)	1(100.0)	0(0.0)	0(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표 6-45〉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여부 (N=105)	이용 자수	만족도(이용한 경우)					무응답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40 (51.9)	44	20 (45.5)	19 (43.2)	3 (6.8)	1 (2.3)	1 (2.3)	0 (0.0)
2) 개별상담 및 치료	86 (95.6)	86	46 (53.5)	38 (44.2)	1 (1.2)	0 (0.0)	1 (1.2)	0 (0.0)
3)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25 (38.5)	28	12 (42.9)	11 (39.3)	4 (14.3)	0 (0.0)	1 (3.6)	0 (0.0)
4)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미술, 음악, 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19 (31.1)	21	10 (47.6)	9 (42.9)	2 (9.5)	0 (0.0)	0 (0.0)	0 (0.0)
5) 성폭력 대처 교육(자기주장훈련/스트레 스관리/의사소통훈련)	35 (49.3)	38	17 (44.7)	16 (42.1)	5 (13.2)	0 (0.0)	0 (0.0)	0 (0.0)
6)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소개	48 (62.3)	49	30 (61.2)	13 (26.5)	5 (10.2)	0 (0.0)	1 (2.0)	0 (0.0)
7)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소개	24 (34.8)	27	10 (37.0)	12 (44.4)	5 (18.5)	0 (0.0)	0 (0.0)	0 (0.0)
8) 취업 지원(구직·창업관련정보제공, 취업 알선 등)	7 (11.3)	12	6 (50.0)	3 (25.0)	3 (25.0)	0 (0.0)	0 (0.0)	0 (0.0)
9) 기타	1 (20.0)	3	0 (0.0)	0 (0.0)	3 (100)	0 (0.0)	0 (0.0)	0 (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사.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응답자는 1순위는 개별 상담 및 치료, 2순위는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 3순위는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순위를 보고했다. 즉 응답자들은 상담소 기능에 심리치료 분야 강화를 원하고 있었다.

개방질문을 통해서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사항을 표현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상담소 이용자들에게 개방질문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에 관한 건의 사항을 말하게 한 결과 이용자들은 대체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상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상담원들의 대우가 낮아서 이들이 자주 이동하게 되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못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다. 성폭력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상담에 질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면접 상담의 강화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내담자의 정서적인 지지를 겸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포함한 추후 상담도 원하고 있었다.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과 내담자들에 대한 질적인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표 6-46〉 상담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

(단위: %, 명)

	사례수(n)	백분율(%)
1순위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16	16.8
개별상담 및 치료	50	52.6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3	3.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2	2.1
성폭력 대처교육	15	15.8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7	7.4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1	1.1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1	1.1
합계	95	100.0

〈표 6-46〉 상담소 서비스에 대한 우선 순위(계속)

(단위: %, 명)

	사례수(n)	백분율(%)	
2순위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22	23.2
	개별상담 및 치료	17	17.9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15	15.8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3	3.2
	성폭력 대처교육	16	16.8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20	21.1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1	1.1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1	1.1
	합계	95	100.0
3순위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16	16.8
	개별상담 및 치료	17	17.9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12	12.6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3	3.2
	성폭력 대처교육	18	18.9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23	24.2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2	2.1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3	3.2
	기타	1	1.1
합계	95	100.0	
4순위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22	24.2
	개별상담 및 치료	5	5.5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12	13.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2	2.2
	성폭력 대처교육	15	16.5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14	15.4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14	15.4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7	7.7
	합계	91	100.0
5순위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7	8.3
	개별상담 및 치료	3	3.6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9	10.7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13	15.5
	성폭력 대처교육	14	16.7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11	13.1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10	11.9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17	20.2
	합계	84	100.0

〈표 6-47〉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와 관련된 건의 사항

(단위: %, 명)

분야	내용	응답자 수	백분율
상담소 환경과 상담자 처우 개선	상담소 근무 환경 개선으로 피해자에게 안정된 서비스 제공요, 상담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동이 없었으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 상담은 좋았지만 상담소 시설이 너무 열악함.	5	25
상담의 전문화 및 상담자 자질 향상	상담치료자가 전문화되었으면, 종교적인 차원도 다루어 주었으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정보 요구. 피해자를 좀 더 잘 이해해 주었으면 사이버 상담보다 면접 상담을 해 주었으면 상담 시간을 충분히 갖기를 원함.	7	35
사후관리	상담 종결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1	5
상담기록 비밀유지	성폭력 받았다는 기록이 비밀로 관리 되었으면 한다.	1	5
법적인 지원 강화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뒤집는 것이 없어지길 바란다.	1	5
서비스에 만족	매우 만족한다, 피해자 프로그램이 유익, 서비스에 대 만족함.	3	15
상담소 확충	경남에도 원스톱센터가 생기길, 장애인 상담소 설치.	2	10
계		20	100.0

2. 보호시설 관련 사항

가. 성폭력 보호시설의 이용 만족도

성폭력 관련 보호기관에 입주하면서 성폭력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 만족도는 성폭력 상담소는 89%, 여성 긴급전화 81%, 성폭력보호 시설 92%, 청소년 성상담소 88%, 해바라기센터 75%, 원스톱 지원센터 93%, 여성 장애인 관련 상담소 100%로 다양한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는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6-48〉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이용자수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이용한 경우)					무응답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성폭력 상담소	49	28(57.1)	16(32.7)	4(8.2)	1(2.0)	0(0.0)	0(0.0)
2) 여성 긴급전화 1366	16	6(37.5)	7(43.8)	3(18.8)	0(0.0)	0(0.0)	0(0.0)
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4	43(67.2)	16(25.0)	4(6.3)	1(1.6)	1(1.1)	0(0.0)
4) 청소년 상담소	8	3(37.5)	4(50.0)	0(0.0)	0(0.0)	0(0.0)	1(12.5)
5) 해바라기 센터	4	1(25.0)	2(50.0)	1(25.0)	0(0.0)	0(0.0)	0(0.0)
6) 윈스톱 지원센터	16	11(68.8)	4(25.0)	1(6.3)	0(0.0)	0(0.0)	0(0.0)
7) 여성장애인관련 상담소	10	9(90.0)	1(10.0)	0(0.0)	0(0.0)	0(0.0)	0(0.0)
8) 이주 여성 상담소	1	0(0.0)	0(0.0)	0(0.0)	0(0.0)	0(0.0)	1(100)
9) 기타 성폭력 관련시설 (노숙인쉼터/일반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9	6(66.7)	2(22.2)	0(0.0)	0(0.0)	0(0.0)	1(11.1)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나.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위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39.1%)과 정부기관(2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 윈스톱 지원센터(12.6%)이었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9.2%)는 적었다. 성폭력 보호 시설에 대한 정부나 사회복지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나 권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 시설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및 상담의 필요성이며(40.2%)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26.4%) 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가해자를 피해서 안전한 분위기에 서 심리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보호 시설에 대한 입주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17.2%)과 2-5년 이내가 가장 많았고, 1주일 이내(12.6%)와 2주 이내(9.2%) 이었다. 즉 보호 시설에 입주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약 36%만이 입주 할 수 있었고 많은 입주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보호 시설의 입주 동기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라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이 보호 시설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호 시설 입주자들은 62.1%가 보호 시설 입주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고, 보호 시설 연장 희망 기간을 16~30일(35.3%)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1~45일(26.5%)이었다. 즉 보호 시설의 이용자들은 보호 시설에서 평균 1개월 정도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쉼터 이용자들의 보호 시설 연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단위: %, 명)

보호시설 이용	사례수(n)	백분율(%)
보호시설을 알게 된 경로	매스컴을 통해	1.1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	9.2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39.1
	공공기관	23.0
	1366의 안내를 받고	8.0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12.6
	기타	4.6
	무응답	2.3
	합계	87
보호시설을 찾은 이유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해서	40.2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26.4
	가해자 처벌을 지원받기 위해	4.6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받기 위해	13.8
	성폭력 때문에 기출한 후 갈 곳이 없어서	5.7
	기타	5.7
	무응답	3.4
	합계	87
성폭력 피해 후 보호시설 입주까지 걸린 시일	1주일 이내	12.6
	1-2주 이내	9.2
	2주-1개월 이내	8.0
	1개월-2개월 이내	5.7
	2개월-3개월 이내	5.7
	3개월-6개월 이내	17.2
	6개월-1년 이내	10.3
	1년-2년 이내	3.4
	2년-5년 이내	17.2
	5년-10년 이내	3.4
	10년 이상 넘음	3.4
	무응답	3.4
	합계	87

〈표 6-49〉 보호시설 이용 경위

(단위: %, 명)

보호시설 이용	사례수(n)	백분율(%)
보호시설 거주 기간	더 연장해야 한다	62.1
	지금 이 적당하다	33.3
	무응답	4.6
	합계	100
보호시설 거주 희망 기간 (연장 희망 응답자에 한함)	15일 이내	7.6
	16일-30일	35.3
	31일-45일	26.5
	46일-60일	7.6
	61일-75일	2.0
	76일-90일	7.6
	91일-120일	9.4
	170일	2.0
	240일	2.0
합 계	53	100.0

다. 보호시설 이용 평가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78%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호 시설에서 피해 후유증 치유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면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64.4%)고 보고 했고 가해자와의 격리(8.0%) 면에서는 비교적 낮게 보고 했다. 보호 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와 정서적인 안정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보호 시설의 심리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다.

〈표 6-50〉 보호시설 이용 평가

(단위: %, 명)

보호시설 이용	사례수(n)	백분율(%)	
보호시설 서비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다	47	54.0
	다소 도움이 되었다	21	24.1
	보통이다	13	14.9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3.4
	무응답	3	3.4
	합계	87	100.0
보호시설에서 도움이 된 서비스	피해후유증 치유로 인한 정서적 안정	56	64.4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지원	5	5.7
	가해자에 대한 대응요령	5	5.7
	의료비지원	4	4.6
	가해자와의 안전한 격리	7	8.0
	기타	2	2.3
	무응답	8	9.2
	합계	87	100.0
서비스가 도움되지 않은 이유	보호시설 상담원의 전문성 미흡	1	1.1
	보호시설 상담원의 불친절한 태도	3	3.4
	보호시설의 비체계적인 운영절차	4	4.6
	보호시설의 외부연계 체계성 부족	1	1.1
	무응답	78	89.7
합 계	87	100.0	

라.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83%의 만족함을 보고 하였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7%, 위생상태의 만족도는 79.4%, 건물의 안정성의 평가에도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표 6-51〉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응답자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호시설의 전체적인 서비스	83	44(53.0)	25(30.1)	13(15.6)	1(1.2)	0(0.0)
보호시설의 공해, 건물구조 등 시설환경	83	38(45.7)	26(31.3)	14(16.8)	5(6.0)	0(0.0)
보호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83	36(43.3)	30(36.1)	16(19.2)	1(1.2)	0(0.0)
보호시설의 건물의 안정성	83	39(46.9)	28(33.7)	15(18.0)	1(1.2)	0(0.0)
거주자(또는 퇴소자)의 의견반영 정도	83	38(43.7)	23(26.4)	19(21.8)	1(1.2)	1(1.2)
직원들이 귀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결책 제시해 줌	83	45(54.2)	21(25.3)	15(18.0)	1(1.2)	0(0.0)
직원들이 귀하의 입장을 이해, 존중하거나 친절히 대해 줌	83	46(55.4)	22(26.5)	13(15.6)	2(2.4)	0(0.0)
귀하에게 필요한 경찰관서, 법률기관,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연계해 줌	83	41(49.3)	23(27.7)	15(18.0)	2(2.4)	0(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보호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70%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호시설이 거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면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직원들이 거주자에게 관심을 가지고(80%), 거주자를 존중하며(82%), 필요한 지원들을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면의 만족도(77%)들이 대체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보호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는 78%, 개별 상담 및 치료는 88%, 집단상담 및 치료는 93%,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87%, 성폭력 대처 훈련은 89%, 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소개는 86%,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정보제공은 87%가 만족스럽다고 보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지원과 의료적인 지원 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표현했다. 그러나 성폭력 후유

증을 치료하는 개인과 집단상담과 치료 서비스 분야에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를 향상해야 함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치료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아니기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극복과 자신감 향상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심리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6-52〉 현재 이용 중인 보호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이용횟수	만족도(이용한 경우)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27	10 (37.0)	11 (40.7)	6 (22.2)	0 (0.0)	0 (0.0)
2) 개별상담 및 치료	75	51 (68.0)	16 (21.3)	8 (10.6)	0 (0.0)	0 (0.0)
3)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67	39 (58.2)	23 (34.3)	5 (7.4)	0 (0.0)	0 (0.0)
4)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미술, 음악, 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61	40 (65.5)	13 (21.3)	8 (13.1)	0 (0.0)	0 (0.0)
5) 성폭력 대처 교육 (자기주장훈련/스트레스관리/의사소통훈련)	53	35 (66.0)	12 (22.6)	6 (11.3)	0 (0.0)	0 (0.0)
6)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소개	57	36 (63.1)	13 (22.8)	7 (12.2)	1 (1.7)	0 (0.0)
7) 사회복지 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39	22 (56.4)	12 (30.7)	5 (12.8)	0 (0.0)	0 (0.0)
8) 취업 지원 (구직·창업관련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15	7 (46.6)	7 (46.6)	1 (6.6)	0 (0.0)	0 (0.0)
9) 퇴소 후 정착지원 (정착금지원, 사례관리 등)	6	1 (16.6)	5 (83.3)	4 (0.6)	1 (0.16)	0 (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바.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보호시설의 서비스 필요성

성폭력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에게 보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법률지원에 관해서는 91%, 개별 상담 및 치료 분야 90%,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 92%, 예술 문화 프로그램 91%, 성폭력 대처교육 분야 87%,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93%,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및 소개 88%, 퇴소 후 정착 지원 90%의 응답자들이 서비스 확장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6-53〉 성폭력 보호시설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응답자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73	45(61.6)	21(28.7)	5(6.8)	2(2.7)	0(0.0)
2) 개별상담 및 치료	77	50(64.9)	19(24.6)	8(10.3)	0(0.0)	0(0.0)
3)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74	53(71.6)	15(20.2)	6(8.1)	0(0.0)	0(0.0)
4)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미술, 음악, 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74	53(71.6)	14(18.9)	6(8.1)	1(1.3)	0(0.0)
5) 성폭력 대처 교육 (자기주장훈련/스트레스관리/의사소통훈련)	72	51(70.8)	12(16.6)	9(12.5)	0(0.0)	0(0.0)
6)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소개	74	55(74.3)	14(18.9)	5(6.7)	0(0.0)	0(0.0)
7) 사회복지 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73	49(67.1)	15(20.5)	7(9.5)	2(2.7)	0(0.0)
8) 취업 지원 (구직·창업관련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70	47(67.1)	15(21.4)	5(7.1)	3(4.2)	0(0.0)
9) 퇴소 후 정착지원(정착금지원, 사례관리 등)	69	43(62.3)	19(27.5)	5(7.2)	2(2.8)	0(0.0)
10) 기타서비스	3	2(66.6)	1(33.3)	0(0.0)	0(0.0)	0(0.0)

주: 상기한 표는 무응답을 제외시킨 수치임.

사.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을 개선할 경우에 순위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한 결과 입소자들은 다시 한 번 개별 상담과 심리치료를 1 순위로 강조했고, 법률 상담과 지원 연계, 퇴소 후 정착 지원, 집단 상담 교육, 예술 및 문화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위의 조사 내용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도 있는 심리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성폭력에 관한 응급조치에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에 와있음을 시사한다.

〈표 6-54〉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

(단위: %, 명)

	사례수(n)	백분율(%)	
1순위	개별상담 및 치료	17	19.5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16	18.4
	퇴소후 정착지원	15	17.2
	기타	11	12.6
	성폭력 대처교육	9	10.3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4	4.6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4	4.6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4	4.6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4	4.6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1	1.1
	무응답	2	2.3
	합계	87	100
	2순위	개별상담 및 치료	24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21	24.1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16	18.4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6	6.9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6	6.9
성폭력 대처교육		5	5.7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5	5.7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1	1.1
퇴소후 정착지원		1	1.1
무응답		2	2.3
합계		87	100

〈표 6-54〉 보호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우선순위(계속)

(단위: %, 명)

		사례수(n)	백분율(%)
3순위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22	25.3
	성폭력 대처교육	11	12.6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11	12.6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10	11.5
	개별상담 및 치료	9	10.3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8	9.2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7	8.0
	퇴소후 정착지원	4	4.6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3	3.4
	무응답	2	2.3
	합계	87	100
	4순위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24
성폭력 대처교육		19	21.8
개별상담 및 치료		9	10.3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8	9.2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7	8.0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6	6.9
퇴소후 정착지원		5	5.7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4	4.6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3	3.4
무응답		2	2.3
합계	87	100	
5순위	퇴소후 정착지원	22	25.3
	법률관련 상담, 지원, 연계	11	12.6
	성폭력 대처교육	10	11.5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9	10.3
	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소개	9	10.3
	개별상담 및 치료	7	8.0
	취업지원(구직, 창업, 취업 등)	7	8.0
	사회복지관련기관 정보제공 및 소개	5	5.7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	3	3.4
	무응답	4	4.6
합계	87	100	

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개선 요구 사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입소자들을 상대로 개방 질문을 통해서

시설 개선에 관한 요구 사항을 표현하도록 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 거부하면서 바라는 것은 시설 개선과 확장이었다. 즉 잠자는 조건 개선, 목욕탕 등 시설 개조와 시설의 위치가 유흥가에 인접한 곳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도 표현했다. 또한 시설의 프로그램 개선, 규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시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했다. 또한 거주자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용돈이 없고 또래가 즐기는 MP3 등의 전자제품 등이 없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주자도 있었다.

〈표 6-5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분야	내용	응답자	백분율
경제적인 지원과 정착	경제적인 지원, 취업알선, 정착금	3	9.1
장기체류	가족의 보호능력이 향상 될 때 까지 체류, 독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체류	3	9.1
시설 개선 및 확장	목욕탕 설치, 공간 확장, 유흥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 개미가 많다, 컴퓨터 사용, 각 시마다 보호 시설 설치	7	21.2
규율 개선	귀가 시간 조정, 규율을 엄격하게, 외박	6	18.1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함	1	3.0
대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습 기회, 여가 선용, 체육활동, 심신회복, 영화 감상, 종이 접기, 시계보기법 학습,	7	21.2
생활비 지원	용돈, 휴대폰, MP3, 메니큐어,	4	12.1
직원의 친절한 태도	피해자를 이해하는 입장과 정서적 지지,	1	3.0
자원 봉사자 확보와 증원	자원 봉사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	1	3.0

제 8 절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심층면접 분석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후 증상, 향후 계획,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심층 인터뷰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은 감안해서 이들의 감정 및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서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훈련을 받은 조사관들이 직접 실시했다. 다음은 응답자 102명에 관한 인터뷰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석 결과이다.

1. 피해 후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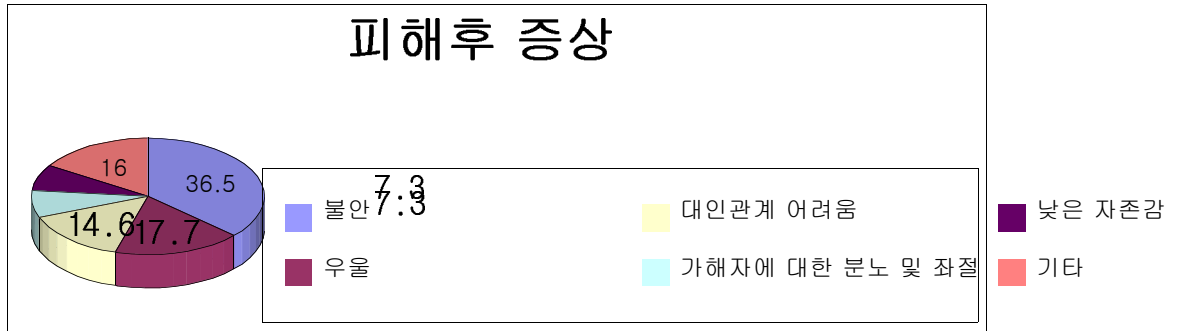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관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은 불안에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범주화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표 6-56〉 피해 후 어려움

(단위: %, 명)

순위	내용	응답자수	퍼센트
1	불안	35	36.46
2	우울증	17	17.7
3	대인관계의 어려움	14	14.6
4	가해자에 대한 분노 및 좌절감	7	7.3
5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결여	7	7.3
6	억압	6	6.2
7	생활의 변화	5	5.2
8	순결 상실감	5	5.2

[그림 6-5] 피해 후 증상



2. 피해 후 증상 호소 내용

피해 후 증상 호소내용으로는 아래 <표 6-59>와 같이 주로 외출 시 가슴이 떨리는 등의 불안, 긴장, 초조 등으로 나타났다. 불안 다음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증에 관련된 증상이었다. 이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수면장애, 주의집중 곤란,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도의 피해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표 6-57> 피해 후 증상 호소 내용

(단위: %, 명)

순위	내용	응답자수	퍼센트
1	외출이 두렵고, 외출 시 가슴이 "떨리고", 불안, 긴장, 초조 해짐	22명	40%
2	임신에 대한 두려움	3명	5.5%
3	반복적인 성폭력	3명	5.5%
4	남이 알까 두려움	2명	3.6%
5	재 피해에 대한 걱정	2명	3.6%
6	가위눌림	2명	3.6%
7	혼자 있기 두려움	1명	1.8%

위와 같이 응답자들의 피해 후 증상을 호소하는 내용을 요약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외출이 부자연스럽고
- 집밖을 나가면 가슴이 떨리고 초조해진다(불안하다).
- 남자랑 만나지 않는다.
- 말수가 적어졌다.
-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
- 하루하루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결혼 못하고 남자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다. 내가 여자 망신 다 시키고 더러운 몸이라는 생각. 나중에 성폭력 피해 사실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내 걸을 떠날까봐 두렵다. 언제 또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 아버지에게 당했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살고 싶다.

- 우울증이 심하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두려움. 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꺼라는 좌절의 생각이 든다.
- 집에서 가족들이 잘 때, 이복오빠가 성폭행. 불안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무섭고, 집에 있기 싫었다.
-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 가족들에게 말을 안하다가 교회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한다.
-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또 같은 상황이 닥치면 배운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다.
- 기억하고 싶지 않다.
- 지금의 생활은 만족하고 있고 기억하고 싶지않다.
- 9때 동네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아빠가 사실을 알고 신고 한다.
- 보호시설에 입소해 정신과치료 받는다
- 부모님이 이혼한 6살 때부터 아빠의 성폭력이 시작됐지만 5학년부터는 일어나 지 않았다..
- 중1때 새엄마에게 이야기 하자 거짓말한다고 했고 그이유로 이혼을 한다.
- 엄마가 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 보호시설에 들어오게 된다.
- 10년 전 27세 때 가해자에 의해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고 후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다고 협박, 상습적인 폭행과 장기간 감금하였다.
- 감금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가 컸으며 정신적인 장애 정도가 커졌다.
- 최근에 입소하여 여러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 끔찍하다. 다시는 그런 일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정신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해서 기억하기도 싫었다.

이러한 증상으로 볼 때 아직도 이들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불안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는데 쉽터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

지 또는 사촌 오빠인 경우에 친족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불신, 대인 기피, 회피와 주위의 친한 친구들과도 관계를 단절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더러워졌고, 순결을 상실했다는 사고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결 상실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일부의 피해자들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울증에 빠진 피해자들이 내면적으로는 순결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나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피해 결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및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출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데 청소년들일 경우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입소 후의 생활 변화

가.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

피해자들은 대체로 입소 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입소자는 적응 문제로 인해서 퇴소하고 싶은 욕구를 밝히기도 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상담 후에 자신감이 생겼다.
- 상담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가족같은 분위기라 좋다.
- 아빠를 피해서 쉼터에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 복지관 이용하고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다닐 것이다.
- 스토킹 문제가 없어졌다.

나. 보호시설의 상담 프로그램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치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체로 예술치료나 운동을 겸한 요가, 비즈공예,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 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해 후 다양한 측면에서 심리적 충격과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치유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상담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아울러 성폭력 상담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계획

향후 계획에 대한 면접에서 102명의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가. 심리적인 회복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

대체로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심리적인 심리치료,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욕구를 밝혔다. 즉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성폭력도 예방해서 자립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만한 상담을 제공하고 못하고 있었다. 심층 면접의 내용 요약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대학교에 가고 싶다.
- 쓰러지지 않고 강한 의지력으로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두 자녀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키우고 싶다.
- 용기를 내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환하게 웃겠다. 두려움을 이겨내겠다.
- 성폭력 사실을 경찰, 부모님께 빨리 알려겠다.
- 닫혀진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
-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지어 함께 다니겠다.

-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취업하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컴퓨터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생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대화를 잘 하고 싶다.
- 경험을 많이 한다(아무데나 돌아다닌다).
- 선교사, 작가가 되고 싶다.
- 부자가 되고 싶다.
- 유명인이 되고 싶다.
- 바다에 자주 가고 싶다.
- 건전한 만남을 갖고 싶다.
- 깨달음을 얻고 싶다.

나.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58〉 센터의 장기적인 이용 소망

(단위: %, 명)

순위	내용	응답자수	퍼센트
1	직업 훈련, 취직	18	36
2	심리적인 회복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	14	28
3	학업과 직업 훈련	10	20
4	가정회복	5	10
5	센터의 장기적 이용 소망	5	10

학업을 할 수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취직할 계획이나 직업 교육 또는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 36%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소자들 중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20% 이었다. 이들은 학업을 계속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들에 대한 학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시책이 중요하다. 응답자

중 5 명이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쉼터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 가정에 다시 돌아가 살기를 희망했다. 입소 중에 가족 상담을 통해서 입소 생활과 가정생활로 전이 과정을 잘 도와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가해자인 남편이나 친척 등에 관해서 강한 분노감 등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다. 선호하는 직업

장래에 계획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직업에 관해서 102 명의 응답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장래 희망직업에 사회봉사나, 복지사, 또는 선교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의 성피해 상황을 자원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건전한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술교육, 베이커리, 인테리어 디자인, 공무원 등의 직종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들 중에는 예술 계통의 직업에도 선호를 보였다. 어떤 응답자는 작가, 예술가/시인, 또는 연예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라.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입소자들은 생활 정착에 관한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의식주, 경제 지원 (13명), 퇴소 후 정착지원 (7명), 어머니와 같이 살도록 주택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5명). 이와 연관된 문제로 쉼터에 장기 투숙해서 자신들이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을 때 까지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6명)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14%가 심리 의료 지원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시설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아주 요구된다.

〈표 6-59〉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순위	내용	응답자수	퍼센트
1	생활 정착에 관한 지원	31	39.24
2	학업 지원	16	20.3
3	취업 및 직업 교육	12	15.2
4	심리치료/ 및 의료 지원	9	11.4
5	쉽터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6	7.6
6	기타(법률지원, 가족과 재회, 숙소의 개선 등)	5	6.3

4. 장애인 대상의 심층 면접 결과 분석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에 관한 후유증에 관해서 진술하도록 요구했지만 대부분 ‘장애인 시설에 와서 있으니 좋다’, ‘자폐증을 보였다’ 등의 내용은 피-면접자 보다는 시설의 상담원이 보고한 내용이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봉사활동, 학교 적응, 직업 교육, 자립 등 다양했고,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이나 기대가 좀 결여되는 듯한 소망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쉽터의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바랐고, 일부는 학습과 직업 교육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이 쉽터에 입소 후 변화에 대한 면접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요가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좋다.
-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생활은 괜찮다. 비즈공예가 재미있다. 음악수업도 좋다.
-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다.
- 이 시설의 집에 언니, 동생들이 많아서 이곳이 좋다.
- 학교(특수학교)는 수준도 안 맞고 노는 것도 재미없고 공부가 재미없다.
- 집(부모님이 계시는)에는 방학 때 가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다.
- 피해자는 현재 만 22살이며 최초 피해 시기는 6개월~1년 전 쯤이다.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전혀 모르는 가해자 2명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는 말에 처음 모텔에서 피해를 당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쉼터에 왔으며 처음에는 적응하는게 힘들었으나 쉼터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 어머니는 12년 전 가출하여 별도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계시지 않고, 아버지, 동생 2명과 작은 할아버지 집으로부터 질책과 내침을 당하여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 아버지가 쉼터로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자폐증상(웅크리고 있었고,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음)을 보였으며, 쉼터에 떨어져 나와 있어서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외로움을 표현한다.
- 쉼터 식구들과 사귀는 것이 오래 걸리나, 식구들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고, 새 식구 올 때마다 다시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나 아버지가 자리를 잡고,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때까지 쉼터에 있기를 원한다.
- 00여성장애인연대, 00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개설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서예교실, 비누공예, 수예공예, 수학교실, 컴퓨터교실)과 쉼터 교육프로그램(무용, 동작치료, 미술치료, 심사회복캠프, 문화체험, 야외놀이프로그램, 생일 함께하기 프로그램 등)은 나를 기쁘게 하고 생활체험(설겅이, 퍼즐 맞추기, 빨래하기 등)은 쉼터를 나가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기쁘고 즐겁게 쉼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심층 면접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아빠가 나를 쉼터에서 데리고 집으로 가서 함께 살고, 28~30세가 되면 착하고 잘 생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교육(장애인이 할 수 있는)을 받았으면 좋겠다.
- 심신안정과 가해자의 접근금지조치가 끝날 때까지 사회복지 후 혼자 살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는 보호시설에 있고 싶다.

- 파티쉐가 되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많다.
- 예술가, 가수, 시인이 되고 싶다.

또한 장애인피해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쉼터의 확대, 전문상담, 의식주 문제, 지원금, 지속적인 지원체계, 편견 없는 정부 지원 정책, 학습지원 등 이었다.

제 7 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기간

전국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가 포함된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활동과 성폭력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로 인해 쉼터가 필요한 여성, 성폭력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성을 위한 거주시설로 일반적으로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수사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센터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성폭력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센터로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대상은 <표 7-1>에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성폭력상담소 158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개소,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16개소로 총 194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²³⁾ 우편으로 회수된 조사대상은 성폭력상담소 10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7개소,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 14개소 등 총 135개 시설이었다.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23) 참고로 여성긴급전화 1366과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과 공통이며, 이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음.

〈표 7-1〉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단위: 개소)

항목	조사대상	조사완료
성폭력상담소	158	10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	17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	16	14
계	194	135

주: 통합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부분에서 제시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조사내용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각각은 특성이 다르며, 고유 특성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므로 통일된 설문지를 통해 지원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설을 크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시설유형별로 각각 시설에 대한 일반 사항, 운영 및 관리, 지원 제도, 이용자 사항(보호시설은 거주자 사항), 종사자 사항,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적인 항목은 동일하지만, 항목 내에서의 개별적인 질문들은 시설 유형별로 특성을 고려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표 7-2〉, 〈표7-3〉, 〈표7-4〉와 같다.

〈표 7-2〉 성폭력상담소 조사표

부문	내용
일반사항	시설소재지, 설립년도 및 설립유형, 자가 및 임대여부, 채무여부, 시설면적 등 정부지원금, 후원금 관련사항, 기금모금사업, 프로젝트 사업 시설유형 및 지원하는 피해자 특성, 지원을 위한 공간특성
운영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연계(중요한 연계기관, 연계형성 어려운 기관, 의료기관, 경찰과의 연계, 연계주체에 대한 의견 전문상담원 교육, 법적 소송정도, 지역협의체관련 사항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운영일수 및 시간, 지원유형별 수행정도, 프로그램내용 및 평가 장애/아동피해자에 대한 지원, 외부강사 관련사항,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이용자 사항	피상담자 특성별 인원(2006년) 내담자 관련사항: 상담소 이용계기, 문제유형, 평균 방문횟수 및 상담시간
종사자 사항	정규직원 인원, 학력, 근무년수, 보수, 근무시간, 휴가, 직원 교육 및 훈련 관련 사항,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자원활동가와 자문단 인원
응답자 특성	성,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표 7-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조사표

부문	내용
일반사항	시설유형, 위치, 설립년도, 설립유형(법인운영시설, 법인과 시설대표 동일여부, 회계장부 분리여부, 법인과 시설의 사무실공간 확보여부), 건물형태, 소유형태 및 입주비용부담, 시설면적, 공간확보여부, 재원
운영 및 관리	법인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및 역할, 피해자치료비 지원여부(지원방식, 집행상의 문제점), 채무여부, 재정지원의 충분정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회수 및 내용, 인력의 충분정도 및 충원규모, 전문인력확보 시 어려움, 거주자의 의견개선 경로 및 반영정도, 퇴소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도, 홍보방법 등 협의체 구성여부 및 참여여부, 참여대상, 주관기관 등, 향후 협의체 주관기관, 연계기관, 연계가 어려운 기관 및 이유, 연계강화가 필요한 기관 및 서비스, 시설운영시 어려움, 보호시설의 개선점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지원하는 피해자유형, 서비스대상자, 장애서비스제공여부 및 미제공 이유, 제공되는 서비스유형, 1년간 제공한 서비스건수 및 상담건수, 프로그램실시여부, 전문가활용여부 및 활용하지 않는 이유 등 1년간 단위프로그램의 평가 실시(평가틀 유무, 평가방식), 사례관리 실시여부(사례관리 미실시 이유, 사례건수), 피해자의 사후관리 실시 여부 및 미실시 이유 등)
거주자 사항	시설정원 및 연 거주자수, 1년간 입소율, 시설입소 희망자 대비 수용능력, 1년간 보호사례건수, 재입소비율, 입소기간의 정도 및 적정기간
종사자 사항	종사자, 전문자원봉사자 및 자문단수, 자격증소지여부,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및 시설근무경력, 평균급여, 급여수준, 1일 평균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보수교육 참여종사자수(지원액, 보수교육부족이유), 교육·훈련과정유무, 휴가관련 규정유무 및 활용정도, 해결할 문제점
응답자 특성	성,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표 7-4〉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조사

부문	내용
일반사항	시설소재지, 설립년도 및 설립유형, 운영위원회 관련사항, 자가 및 임대여부, 채무 여부, 시설면적 등, 시설유형 및 지원하는 피해자 특성, 지원을 위한 공간특성, 장비, 매뉴얼이나 상담원지침
운영 및 관리	운영의 어려움, 타 기관과의 연계(중요한 연계기관, 연계형성 어려운 기관, 의료기관, 경찰과의 연계, 연계주체에 대한 의견)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운영일수 및 시간, 지원유형별 수행정도, 프로그램 내용 및 평가, 사후관리
이용자 사항	피상담자 특성별 인원(2006년) 지원한 피해자 관련사항: 센터 이용계기, 지원유형별 건수(2006년)
종사자 사항	정규직원 인원, 학력, 근무년수, 보수, 근무시간, 휴가 직원 교육 및 훈련관련 사항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자원활동가와 자문단 인원
응답자 특성	성, 연령, 학력, 직위, 근무기간

제 2 절 성폭력상담소

1. 일반사항

가. 시설위치 및 운영주체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를 보면, 중소도시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도시가 33.3%, 농어촌이 13.7%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비율이 가장 낮는데, 농어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담소의 수가 적어서 피해자의 상담소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표 7-5〉 시설위치

(단위: 개소)

시설위치	비율(사례수)
대도시	33.3
중소도시	52.9
농어촌	13.7
계	100.0(102)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를 보면, 법인이 52.9%, 개인이 41.3%, 기타가 4.9% 등이었다.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40%를 상회하여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6〉 운영주체

(단위: 개소)

설립유형	비율(사례수)
국공립	-
법인	52.9
개인	41.3
기타	4.9
계	100.0(103)

성폭력상담소가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법인유형 및 법인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 유형을 보면, 사단법인이 78.8%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타가 9.6%, 사회복지법인이 7.7%, 종교법인이 3.8%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주로 사단법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법인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상담소의 중요 운영에 대해 결정한다는 비율이 70.0%였으며, 상담소의 모든 운영을 결정한다는 비율은 22.0%였다. 즉, 법인이사회는 주로 성폭력상담소의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7〉 법인의 유형과 이사회 역할

(단위: 개소)

항 목	비율(사례수)	
법인 유형	사회복지법인	7.7
	사단법인	78.8
	종교법인	3.8
	기타	9.6
	계	100.0(52)
법인이사회의 역할	모든 운영 결정	22.0
	중요 운영 결정	70.0
	기타	8.0
	계	100.0(50)

성폭력상담소의 시설위치별 운영주체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율이 각각 55.9%,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각각 30%대였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78.6%였으며, 법인인 경우는 21.4%에 그쳤다. 농어촌 지역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많은 편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법인에 의한 상담소에 비해 재정적인 면이나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가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7-8〉 시설위치별 운영주체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법인	55.9	58.5	21.4	52.5
개인	38.2	35.8	78.6	42.6
기타	5.9	5.7	-	5.0
계	100.0(34)	100.0(53)	100.0(14)	100.0(101)

나. 건물소유형태 및 건물면적

성폭력상담소의 건물소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세 22.1%, 자가 18.3%, 기타 14.4%의 순이었다. 상담소 건물이 월세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어서 가장 많았으며, 자가 건물인 경우는 10%대였다. 성폭력상담소가 그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건물의 면적을 보면, 200m²초과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50m²초과 100m²이하가 29.8%, 100m²초과 150m²이하가 17.3%, 50m²이하가 11.5%, 150m²초과 200m²이하가 6.7%였다. 성폭력상담소의 건물면적이 200m²를 초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100m²이하를 합한 비율도 41.3%로 나타났다. 특히 50m²이하인 경우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리된 공간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표 7-9〉 건물 소유형태와 면적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건물소유형태	자가	18.3
	전세	22.1
	월세	45.2
	기타	14.4
	계	100.0(104)
시설면적	50m ² 이하	11.5
	50m ² 초과 100m ² 이하	29.8
	100m ² 초과 150m ² 이하	17.3
	150m ² 초과 200m ² 이하	6.7
	200m ² 초과	34.6
	계	100.0(104)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별로 상담소 건물소유형태를 보면, 대도시에 있는 상담소의 경우에는 자가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월세 29.4%, 전세 20.6%의 순이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에는 월세가 각각 53.7%, 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각각 22.2%, 28.6%, 자가가 각각 11.1%, 7.1%였다. 대도시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이 30%대가 되는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10%를 겨우 넘거나 10%가 되지 않았다. 반면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월세의 비율이 절반이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상담소들은 재정적인 면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표 7-10〉 시설 위치별 건물소유형태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가	32.4	11.1	7.1	17.6
전세	20.6	22.2	28.6	22.5
월세	29.4	53.7	50.0	45.1
기타	17.6	13.0	14.3	14.7
계	100.0(34)	100.0(54)	100.0(14)	100.0(102)

건물소유형태를 운영주체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월세가 38.2%, 전세와 자가 각각 27.3%, 21.8%였다.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월세가 절반 이상(53.5%)이었으며, 전세와 자가는 각각 10%대였다.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비해 개인인 경우에는 성폭력상당소 건물이 월세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당소의 경우 법인에 비해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이다.

〈표 7-11〉 운영주체별 건물소유형태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자가	21.8	14.0	-	17.5
전세	27.3	18.6	-	22.3
월세	38.2	53.5	60.0	45.6
기타	12.7	14.0	40.0	14.6
계	100.0(55)	100.0(43)	100.0(5)	100.0(102)

다. 정부지원현황 및 채무유무

성폭력상당소들이 작년(2006.1~2006.12)에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비슷하지만 후자가 조금 더 많았다. 이를 시설위치별로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비율이 55.6%로 절반이상이었으

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47.1%, 28.6%였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금이 상담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중소도시의 경우 71.7%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는 66.2%, 농어촌은 57.5%였다. 농어촌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은 시설도 적었지만,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12〉 시설 위치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정부지원금	받음	47.1	55.6	28.6	49.0
	받지 않음	52.9	44.4	71.4	51.0
	계	100(34)	100(54)	100(14)	100(102)
정부지원금 비율	평균	66.2	71.7	57.5	68.8

운영주체별로 정부지원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면, 법인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60%대인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0%정도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들 중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곳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법인의 경우 73%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은 59.2%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상담소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다른 상담소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13〉 운영주체별 정부지원금 수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정부지원금	받음	63.6	30.2	40.0	48.5
	받지 않음	36.4	69.8	60.0	51.5
	계	100(55)	100(43)	100(5)	100(103)
정부지원금 비율	평균값	73.0	59.2	50.0	68.7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별로 채무유무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채무가 없다는 비율이 각각 76.5%, 71.2%였으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64.3%였다. 즉 채무가 없는 비율은 대도시에 위치한 상담소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상담소, 농어촌 상담소의 순이었다. 반면 성폭력상담소의 건물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는 농어촌 성폭력상담소에서 35.7%로 다른 지역의 상담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어촌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는 채무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농어촌 지역의 성폭력상담소가 재정적인 면에서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7-14〉 시설 위치별 채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채무 있음	23.5	28.8	35.7	28.0
채무 없음	76.5	71.2	64.3	72.0
계	100.0(34)	100.0(52)	100.0(14)	100.0(100)

성폭력상담소의 채무현황을 운영주체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가 없는 비율이 81.1%로 개인의 5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채무가 있는 비율이 40%를 넘어서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의 10%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즉,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는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비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5〉 운영주체별 채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채무 있음	18.9	41.9	-	27.7
채무 없음	81.1	58.1	100.0	72.3
계	100.0(53)	100.0(43)	100.0(5)	100.0(101)

라. 피해자 지원관련 사항

먼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별로 지원하는 피해자 유형을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비율이 47.3%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30.9%,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18.2%였다.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경우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각각 34.9%로 같았으며, 다음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27.9%였다.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법인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보다 전문화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7-16〉 운영주체별 지원피해자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성폭력 피해자	47.3	34.9	40.0	41.7
성폭력+가정폭력	30.9	34.9	60.0	34.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여성	18.2	27.9	-	21.4
기타	3.6	2.3	-	2.9
계	100.0(55)	100.0(43)	100.0(5)	100.0(103)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가능하지 않다는 비율이 66.0%로 가능하다는 비율의 34.0%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대로 성폭력상담소의 건물면적에서 100m²이하를 합한 비율이 낮지 않았던 점과 관련될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환경과도 관련될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담소들이 많으므로,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과의 연계가 특히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폭력피해자 중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보호

시설로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담소에서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거의 없어서 농어촌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제3절 참조).

〈표 7-17〉 피해자 일시보호 가능여부

(단위: 개소)

피해자 일시보호 가능여부	비율(사례수)
가능함	34.0
가능하지 않음	66.0
계	100.0(103)

마지막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시설운동을 위한 개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별도 공간으로서 사무실과 개별 상담실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99.0%였다. 즉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가 사무실과 개별 상담실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 프로그램 운영공간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이 있다는 비율이 88.1%로 사무실이나 개별상담실의 경우에 비해 낮았다. 집단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별도로 없다는 비율이 11.9%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집단프로그램보다는 개별 상담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집단프로그램 운영은 상대적으로 큰 공간이 필요하므로 상담소 건물면적을 고려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표 7-18〉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유무

(단위: 개소)

항목	별도 공간 있음	별도 공간 없음	합계
사무실	99.0	1.0	100.0(102)
개별상담실	99.0	1.0	100.0(103)
집단 프로그램 운영공간	88.1	11.9	100.0(101)

2. 운영 및 관리

가. 상담소 운영상의 어려움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에 대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재정부족의 경우를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있는 편이다’와 ‘매우 많다’를 합한 비율)이 96.0%로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규직원 부족은 그렇다는 비율이 62.5%였다. 전문인력부족은 그렇다는 응답이 56.7%였다.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은 동의하는 비율이 59.7%였다. 종사 관련사항으로 직원들 간의 갈등과 과중한 업무는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6.8%, 73.5%였다. 휴일근무교대와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은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24.0%, 17.3%였다. 후원금 모금의 부족에 대해서는 93.2%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상담소가 후원금 모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담시간의 부족과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은 각각 55.8%, 63.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설공간의 부족은 43.3%,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은 35.6%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 중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정부족과 후원금 모금의 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90%대). 재정적인 측면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70%대). 즉 적은 수의 직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담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정규직원 부족(60%대),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전문인력 부족, 상담시간의 부족(50%대)이었다. 성폭력 상담소의 정규 직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인력부족의 문제나 시설홍보, 상담시간의 부족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상담소가 절반 이상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3가지의 조사항목 중 직원들 간의 갈등은 어려움이 있다는 상담소가 10% 미만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았다. 야간근무교대나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이 있다는 상담소도 10~20%대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은 30%대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원들 간의 갈등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별로 없는 편이며, 근무교대의 어려움도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1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단위: 개소)

항목	전혀없다	별로없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합계
재정부족	0.0	3.9	33.3	62.7	100.0(104)
정규직원 부족	12.5	25.0	47.1	15.4	100.0(104)
전문인력부족	10.6	32.7	50.0	6.7	100.0(104)
시설에 대한 홍보부족	9.6	30.8	51.0	8.7	100.0(104)
직원들간의 갈등	36.5	56.7	5.8	1.0	100.0(104)
과중한 업무	3.9	22.5	55.9	17.6	100.0(102)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	28.0	48.0	17.0	7.0	100.0(100)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	41.8	40.8	12.2	5.1	100.0(98)
후원금 모금의 어려움	3.9	2.9	49.5	43.7	100.0(103)
상담시간의 부족	3.8	40.4	50.0	5.8	100.0(104)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5.8	30.8	59.6	3.8	100.0(104)
시설공간의 부족	20.2	36.5	33.7	9.6	100.0(104)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	14.4	50.0	32.7	2.9	100.0(104)

나. 기관 간 연계관련 사항

여기서는 연계가 중요한 기관 및 연계가 어려운 기관, 의료기관, 경찰과의 연계 및 네트워킹 주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먼저 연계가 중요한 기관을 알아 본 결과, 1순위 중에서는 경찰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병원이 27.9%, 피해자 보호시설이 14.4%였다. 연계가 중요한 기관으로 2순위를 보면, 역시 경찰, 병원이 많았으며, 다음은 검찰이었다. 3순위로는 전문심리치료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병원, 경찰, 피해자보호시설의 순이었다. 4순위로는 피해자보호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법률구조공단, 병원, 전문심리치료기관의 순이었다. 5순위로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문심리치료기관과 피해자보호시설이 같았고, 학교의 순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과 병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시설도 상대적으로 연계가 중요한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대로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일시보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7-20〉 연계가 중요한 기관

(단위: 개소)

기관종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찰	39.4	26.9	14.4	7.8	4.0
검찰	1.0	10.6	6.7	6.8	6.0
법원	-	4.8	6.7	1.9	6.0
병원	27.9	25.0	17.3	12.6	6.0
전문심리치료기관	6.7	8.7	20.2	11.7	13.0
법률구조공단	1.9	9.6	10.6	13.6	9.0
학교	2.9	1.9	4.8	6.8	12.0
사회복지기관	-	-	2.9	6.8	4.0
피해자 보호시설	14.4	8.7	12.5	25.2	13.0
1366	4.8	2.9	1.0	1.9	15.0
사회복지관	-	-	-	1.9	3.0
119구조대	-	-	-	1.0	2.0
응급구조단	1.0	1.0	-	1.9	1.0
보호관찰소	-	-	2.9	-	6.0
계	100.0(104)	100.0(104)	100.0(104)	100.0(103)	100.0(100)

다음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가 어려운 기관을 어려운 순서대로 5가지 알아 보았다.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이었으며(20.4%), 다음은 법원(18.4%), 전문심리치료기관(16.5%), 피해자보호시설(12.6%) 등이었다. 즉 검찰과의 연계가 가장 어렵다는 성폭력상담소들이 많았다. 2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관 역시 검찰(20.2%)이었으며, 다음은 법원(14.6%), 법률구조공단(12.4%) 등이었다. 3순위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전문심리치료기관 병원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에서는 보호관찰소, 경찰과 법률구조공단, 검찰과 전문심리치료기관이 10%를 상회하였다. 5순위에서는 응급구조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법원과 사회복지관이 각각 9.6%였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순위, 2순위에서 모두 검찰과 법원의 비율이 높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계가 중요한 기관으로는 경찰과 병원이 가장 많았지만,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는 검찰과 법원이 가장 많았다. 이는 연계가 중요한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상담소가 성폭력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찰, 법원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7-21〉 연계가 어려운 기관

(단위: 개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찰	7.8	7.9	9.3	11.4	8.2
검찰	20.4	20.2	8.1	10.1	6.8
법원	18.4	14.6	5.8	6.3	9.6
병원	2.9	9.0	10.5	7.6	6.8
전문심리치료기관	16.5	3.4	14.0	10.1	5.5
법률구조공단	8.7	12.4	15.1	11.4	2.7
학교	3.9	6.7	7.0	7.6	5.5
사회복지기관	-	2.2	2.3	1.3	5.5
피해자 보호시설	12.6	5.6	4.7	7.6	8.2
1366	1.0	-	-	-	6.8
사회복지관	-	-	5.8	5.1	9.6
119구조대	1.0	1.1	3.5	1.3	6.8
응급구조단	1.0	9.0	7.0	5.1	12.3
보호관찰소	5.8	7.9	7.0	15.2	5.5
계	100.0(103)	100.0(89)	100.0(86)	100.0(79)	100.0(73)

다음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장 연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인 병원과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의료기관과의 연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면, 연계가 잘 된다는 비율이 70.2%로 상당수의 상담소가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유를 보면, ‘의사가 법정에서 본인진술을 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 ‘의료기관 담당자의 성폭력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는 응답이 28.6% 등이었다. 즉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그 이유가 의료기관 담당자의 법정진술제도가나 의료기관 담당자의 선입견 때문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의료기관 담당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에 대한 대체방안이나 의료기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 중

사자들은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산부인
과나 신경정신과 의사 등)를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2.6%), 다음은 ‘성폭력 지정병원의 숫적 증가’와 ‘성폭력에 대해 본인진술 대신 의
견서를 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각각 27.7%, 26.7% 등이었다.

〈표 7-22〉 의료기관 연계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의료기관 연계정도	잘 됨	70.2
	잘 안됨	29.8
	계	100.0(104)
연계 미흡한 이유	선입견	28.6
	의사 법정진술제도	46.4
	기타	25.0
	계	100.0(28)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의식교육	42.6
	진술제도 개선	26.7
	지정병원 증설	27.7
	기타	3.0
	계	100.0(101)

〈표 7-23〉 시설 위치별 의료기관과 연계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계 잘 안됨	35.3	20.4	50.0	29.4
연계 잘 됨	64.7	79.6	50.0	70.6
계	100.0(34)	100.0(54)	100.0(14)	100.0(102)

시설위치별로 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을 보면, 연계가 잘 된다는 비율은 중소도시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도시, 농어촌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된다는 비율이 50%였는데, 여기에는 농어촌의 경우 의료기관이 숫적으로
적은 점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농어촌 지역 성폭력 상담소들이 의료기관과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등의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기관에 이어서, 경찰과의 연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찰과의 연계정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66.0%,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4.0%였다. 경찰과의 연계 역시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비해서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비율이 낮았다. 경찰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들에 한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본 결과, ‘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선입견 때문’과 ‘성폭력을 전담하는 경찰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45.2%, 35.5%였다. 경찰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본 결과, ‘성폭력 전담경찰의 지속적인 담당’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이 39.8% 등이었다. 앞서 살펴 본 의료기관에서와는 달리 의식교육보다는 성폭력 전담경찰관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상담소와 경찰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폭력 전담 경찰관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24〉 경찰 연계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	
경찰 연계정도	잘 됨	66.0
	잘 안됨	34.0
	계	100.0(100)
연계 미흡한 이유	선입견	45.2
	잘못 교체	35.5
	기타	19.4
	계	100.0(31)
경찰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의식교육	39.8
	전담자 지속성	59.2
	기타	1.0
	계	100.0(103)

경찰과의 연계정도를 시설위치별로 살펴보면, 연계가 잘 된다는 비율은 농어촌의 경우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었다. 병원과의 연계에서와는

달리 경찰과의 연계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상담소들이 연계가 잘 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도시에 비해 비공식적 관계가 강한 농어촌 지역에서 경찰과 지원시설 간의 협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7-25〉 시설 위치별 경찰과 연계현황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계 잘 안됨	37.5	34.6	28.6	34.7
연계 잘 됨	62.5	65.4	71.4	65.3
계	100.0(32)	100.0(52)	100.0(14)	100.0(98)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주체기관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본 결과, 성폭력 관련 상담소의 비율이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관련시설이 19.8%, 경찰이 9.9%, 정부가 8.9%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네트워킹 주체가 성폭력상담소여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표 7-26〉 네트워킹 주체기관

(단위: 개소)

기관명	비율(사례수)
정부	8.9
경찰	9.9
성폭력 관련시설	19.8
지방자치단체	4.0
의료기관	1.0
성폭력 관련 상담소	52.5
1366	1.0
법률구조공단	1.0
기타	2.0
계	100.0(101)

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1.0%로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소의 절반가량은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며, 나머지 절반 가까이 되는 상담소는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시간을 보면, 64시간 이내가 58.5%, 65시간을 넘는 경우가 41.5%였다.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하는 경우 매뉴얼이 있다는 응답이 87.5%로 대부분은 매뉴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보다 전문화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매뉴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27〉 전문상담원 교육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전문상담원 교육 여부	실시	51.0
	미실시	49.0
	계	100.0(104)
교육 시간	64시간이내	58.5
	65시간 이상	41.5
	계	100.0(53)
교육 매뉴얼 유무	있다	87.5
	없다	12.5
	계	100.0(56)

라. 법적 소송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용자 요구나 직원판단)의 몇 %가 실제 소송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10%이내가 69.5%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2,30%이내가 14.7%, 8,90%이내가 8.4%, 4,50%이내가 6.3% 등의 순이었다.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10%이내만이 실제 소송절차를 밟는다는 성폭력 상담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피해자의 사나 다른 자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 소송절차를 밟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7-28〉 소송사건 비율 분포

(단위: 개소)

실제 소송사건 비율	비율(사례수)
10% 이내	69.5
2,30% 이내	14.7
4,50% 이내	6.3
6,70% 이내	-
8,90% 이내	8.4
100% 이내	1.1
계	100.0(95)

마. 협의체 구성 및 참여여부

성폭력상담소가 속한 지역에 성폭력 관련기관(실무자)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협의체가 있다는 응답이 76.0%. 협의체가 없다는 응답이 24.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의 3/4 가량은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96.2%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지역에 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시설위치, 운영주체별로 살펴 보았다. 먼저 시설위치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각각 76.5%, 77.8%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에는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64.3%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았다. 농어촌에서도 협의체가 더 구성되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29〉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협의체 구성여부	있다	76.0
	없다	24.0
	계	100.0(104)
협의체 참여여부	참여	96.2
	불참	3.8
	계	100.0(79)

〈표 7-30〉 시설 위치별 협의체 구성여부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협의체 있음	76.5	77.8	64.3	75.5
협의체 없음	23.5	22.2	35.7	24.5
계	100.0(34)	100.0(54)	100.0(14)	100.0(102)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별로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85.5%였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65.1%였다. 즉 법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보다 많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한 연계가 보다 필요할 수 있지만, 지역에 협의체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들의 경우 지역 협의체 구성을 통한 연계 및 상호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7-31〉 설립유형별 협의체 구성여부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협의체 있음	85.5	65.1	60.0	75.7
협의체 없음	14.5	34.9	40.0	24.3
계	100.0(55)	100.0(43)	100.0(5)	100.0(103)

협약체 구성여부에 이어서 협약체 참여여부도 시설의 위치별, 운영주체별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시설의 위치별로 협약체 참여여부를 보면, 대도시와 농어촌의 경우에는 100%가 협약체에 참여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92.9%가 협약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에 협약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가 협약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32〉 시설 위치별 협약체 참여여부

(단위: 개소)

구분	위치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협약체 참여	100.0	92.9	100.0	96.1
협약체 미참여	0.0	7.1	-	3.9
계	100.0(26)	100.0(42)	100.0(9)	100.0(77)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별로 협약체 참여여부를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97.9%, 개인인 경우에는 92.9%가 협약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지역에 협약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은 협약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협약체 참여 비율이 법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비해 조금 낮았다.

〈표 7-33〉 운영주체별 협약체 참여여부

(단위: 개소)

구분	운영주체			전체
	법인	개인	기타	
협약체 참여	97.9	92.9	100.0	96.2
협약체 미참여	2.1	7.1	-	3.8
계	100.0(47)	100.0(28)	100.0(3)	100.0(78)

협약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협약체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담소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도 여성복지담당자가 32.4%였다. 그 외의 기관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협약체가 구성

되어 있는 경우 상담소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34〉 협의체 운영 주관기관

(단위: 개소)

기관명	비율(사례수)
1366	5.4
전담의료기관(병·의원/보건소)	1.4
상담소	50.0
경찰	2.7
법률구조공단	-
보호관찰소	1.4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문요원	-
사회복지관	1.4
시도 여성복지담당자	32.4
119 구조대	-
응급구조단	-
기타	5.4
계	100.0(74)

3. 지원제도

가.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의 운영관련 현황은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등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일수를 보면, 주5일이 78.8%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주6일이 20.2%, 주3일이 1.0%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는 주5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인이나 주중에 시간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주중에 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대안책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시간을 보면,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운영된다는 비율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정해진 시간동안 운영된다는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1일 운영시간을 보면, 9시간이 80.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8

시간 운영이 12.3%, 10시간 운영이 4.0%, 7시간과 12시간 운영이 각각 2.0%, 1.0%였다. 10시간이상 운영하는 상담소가 5.0%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상담소의 경우 피해자의 접근은 보다 용이한 반면, 직원의 업무부담이 문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35〉 상담소 운영일수 및 운영 시간 현황

(단위: 개소)

항 목	비율(사례수)	
상담소 운영일 수	주 3일	1.0
	주 5일	78.8
	주 6일	20.2
	계	100.0(104)
상시 운영여부	24시간	5.8
	정해진 시간	94.2
	계	100.0(104)
운영시간	7시간	2.0
	8시간	12.3
	9시간	80.6
	10시간	4.0
	12시간	1.0
	계	100.0(198)

나. 필요한 지원의 수행정도

조사대상 성폭력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용자 요구나 직원판단 등)의 몇 %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사법적지원(수사의뢰/수사동행/법률상담/소송지원)의 경우 필요한 지원의 61~100%를 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72.9%). 다음으로는 실제 필요한 지원의 30%이내를 지원한다는 비율이 18.8%, 60%이내를 지원한다는 비율이 8.3%였다. 심리정서적 지원(개인상담/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 등)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지원의 61~100%이내를 지원한다는 비율이 86.9%로 다른 지원유형에 비해 높았다. 의료지원(치료동행/치료비지원/의료기관연계 등)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지원의 61~100%를 지원한다는 비율이 72.3%로 수사법적지원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성폭력상담소들의 대

다수는 실제 필요한 지원의 61~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사법적 지원이나 의료지원의 경우 실제 필요한 지원의 30%이내만 지원한다는 비율이 19%안팎으로 나타나서 수사법적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7-36〉 필요한 지원의 실행 비율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수사·법적지원	30%이내	18.8
	60%이내	8.3
	100%이내	72.9
	계	100.0(96)
심리·정서적 지원	30%이내	6.1
	60%이내	7.1
	100%이내	86.9
	계	100.0(99)
의료지원	30%이내	19.1
	60%이내	8.5
	100%이내	72.3
	계	100.0(94)

다. 각 프로그램 실시정도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들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개별상담의 경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90.2%로 가장 많았다. 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도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79.2%, 70.6%로 많은 편이었다. 인성교육과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각각 4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 교육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이 28.4%였다. 사례관리는 항상 실시한다와 가끔 실시한다가 각각 53.1%, 39.8%였다. 예술치료와 정신과 치료는 가끔 실시한다는 비율이 40%대였으며, 항상 실시한다는 비율은 10~20%대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실시하는 비율이 낮았다. 여기서 제시된 9가지의 프로그램 중 개별상담과 가정폭력, 성폭력대처방안 교육, 성

교육의 경우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항상 실시하거나 가끔 실시하였다. 사례관리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0%미만으로 적은 편이었다. 가족상담과 인성교육은 10%대, 가해자교육상담은 20%대, 예술치료와 정신과 치료는 각각 30%대, 40%대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의 경우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으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치료기관에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37〉 실시 프로그램 내용

(단위: 개소)

항목	전혀 실시하지 않음	가끔 실시함	항상 실시함	합계
개별상담	1.0	8.8	90.2	100.0(102)
가정폭력, 성폭력 대처방안 교육	2.9	26.5	70.6	100.0(102)
성교육	3.0	17.8	79.2	100.0(101)
인성교육	11.5	46.4	41.2	100.0(97)
가족상담	10.2	48.0	41.8	100.0(98)
가해자 교육상담	22.5	49.0	28.4	100.0(102)
사례관리	7.1	39.8	53.1	100.0(98)
예술치료 프로그램	33.3	45.8	20.8	100.0(96)
정신과 치료	43.8	40.6	15.6	100.0(96)

라. 장애인 및 아동 피해자 지원

성폭력상담소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면, 장애인 전문상담소에 연계한다는 비율이 78.8%로 상당히 많았다. 반면, 장애인상담을 위한 편의시설과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비율은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들은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소에 연계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가 장애인 전문상담소와 원활히 연계되는 것이 장애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표 7-38〉 장애인 피해자 대상 서비스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장애인 상담 위한 편의시설과 전문인력 배치	11.1
장애인 전문 상담소에 연계	78.8
기타	10.1
계	100.0(99)

장애인에 이어 아동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아동 전문기관에 연계한다는 응답이 68.6%였으며, 아동상담을 위한 편의시설과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6%였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연계한다는 비율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에 비해서는 많았다. 즉 장애인에 비해 아동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39〉 아동 피해자 대상 서비스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아동 상담 위한 편의시설과 전문인력 배치	20.6
아동 전문기관에 연계	68.6
기타	10.8
계	100.0(102)

마. 외부강사 참여현황

성폭력상담소의 외부강사 참여관련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79.8%로 많은 편이었다.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상담소들의 경우 섭외방법을 보면, 상담소와 연계된 인력풀에서 선택한다는 응답이 64.3%, 이는 강사에게 부탁한다는 응답이 28.6% 등이었다. 외부강사에 대한 사례는 시설 경비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62.4%, 외부강사가 무급으로 봉사한다는 응답이 14.1%였다. 외부강사에 대해 상담소의 경비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담소의 재정적 면을 고

려할 때 다양한, 전문 외부강사의 프로그램 참여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들에 한해서,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예산 부족이 75.0%, 내부인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이 25.0%였다.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부족이 주된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0〉 외부강사 참여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외부강사 참여 (79.8%)	섭외 방법	아는 강사에게 부탁	28.6
		연계 인력풀에서 선택	64.3
		기타	7.1
		계	100.0(84)
	사례 지급 방법	시설 경비로 지급	62.4
무급 봉사		14.1	
기타		23.5	
계		100.0(85)	
외부강사 참여 안함 (20.2%)	외부강사 미활용 이유	내부인력으로 충분	25.0
		예산 부족	75.0
		상당소 위치상	-
		외부와의 연계 미비	-
		기타	-
		계	100.0(12)

바. 프로그램 평가관련 현황

프로그램 평가관련 현황을 몇 가지 조사항목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성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 평가여부를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9.5%, 47.6%였다. 즉 대부분의 상담소는 전체 혹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방법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48.5%, 종사자간의 회의방식으로가 39.6%, 대상자 면접조사가 8.9% 등이었다. 설문조사와 종사자간의 회의를 통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를 유무를 보면, 일부 프로그

램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경우들이 68.7%였으며, 평가들이 없는 경우는 18.2%,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경우는 13.1%였다. 프로그램 평가들이 있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대상자별, 시기별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들이 보다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41〉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프로그램 평가 여부	프로그램 평가 안함	2.9
	프로그램별로 다름	49.5
	모든 프로그램 평가함	47.6
	계	100.0(103)
평가 방법	대상자 설문조사	48.5
	대상자 면접조사	8.9
	진행자의 인상으로	2.0
	종사자간 회의방식	39.6
	기타	1.0
	계	100.0(101)
평가들 유무	없음	18.2
	일부 있음	68.7
	있음	13.1
	계	100.0(99)

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현황

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비율은 77.0%였으며,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연간 사례관리건수는 20이하가 43.6%로 가장 많았다.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상담소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 담당인력부족이 55.0%, 기관 간 연계미흡이 30.0%였다. 사례관리를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소의 인력충원과 기관 간 원활한 연계가 특히 중요한 것이다.

피해자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한다는 상담소들이 대부분이었다. 상담소들의 인력, 기타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보면, 전화연락이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소운영에서 어려운 점으로 과중한 업무의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화연락 이외에 직접방문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전화연락이 일정기간 이루어져서 사후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7-42〉 사례관리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사례관리 실시함 (77.0%)	연간 사례관리 건수	20이하	43.6
		21-50	16.7
		51-100	5.1
		101-200	3.8
		201이상	30.8
		계	100.0(78)
실시하지 않음 (23.0%)	미실시 이유	담당 인력 부족	55.0
		사례관리 위한 기관간 연계 미흡	30.0
		기타	15.0
		계	100.0(20)

〈표 7-43〉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피해자 사후관리 실시여부	전혀 안함	3.8
	필요시 실시	89.4
	실시함	6.7
	계	100.0(104)
피해자 사후관리 방법	미실시	3.8
	전화연락	76.0
	직접 방문	8.7
	피해자가 방문	4.8
	기타	6.7
	계	100.0(104)

4. 종사자 관련 사항

가. 임금 및 근무시간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임금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3명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평균 종사자수를 고려하면 100만원 이하인 직원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종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상담소는 11개소뿐이었으며, 그 수도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상담소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44〉 종사자의 보수 현황

(단위: 개소)

항목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명	23.2	26.0	68.8
2명	21.4	36.0	31.3
3명	50.0	36.0	-
4명 이상	5.4	2.0	-
계	100(56)	100.0(50)	100(16)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39.1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주당 6.96시간이었다. 평균 근무시간은 적절하지만, 초과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7시간 정도 되어서 추가근무가 많이 행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45〉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주당)
(분석대상 시설수)	39.10 102	6.96 79

나.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관련 사항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는

8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성폭력상담소는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시간이 있는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훈련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과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을 병행한다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체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훈련이 27.0%, 외부강사나 외부기관에의 위탁교육이 23.6%였다.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 자체 내 자원 활용과 외부자원 활용을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있다는 경우가 75.0%였다. 즉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는 상담소가 많은 3/4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1/4의 상담소의 경우에도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제공하여 피해자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46〉 업무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업무교육 및 훈련시간유무	있음	87.4
	없음	12.6
	계	100.0(103)
교육방식	자체 내 자원활용	27.0
	외부강사·기관 위탁	23.6
	위의 두 방법 병행	49.4
	계	100.0(89)
정기적인 재교육 유무	없음	25.0
	있음	75.0
	계	100.0(76)

다. 종사자 휴가관련 사항

성폭력상담소 중에서 직원을 위한 휴가관련 규정이 있다는 비율은 83.2%였다. 대부분의 상담소는 휴가관련 규정이 있지만 10%대의 상담소는 휴가규정이 없었다. 휴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

든 상담소에서 휴가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규정된 휴가일수를 다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가규정이 있는 상담소들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규정 휴가일수를 사용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47〉 직원 휴가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직원 휴가관련 규정	있음	83.2
	없음	16.8
	계	100.0(101)
규정된 휴가일수 전부 사용하는지의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7.3
	별로 그렇지 않다	24.4
	그런 편이다	54.9
	매우 그렇다	13.4
	계	100.0(82)

라. 종사자들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낮은 급여수준이 73.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13.0%, 열악한 근무환경 6.0% 등이었다. 상담소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급여문제로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은 인원으로 상담소 업무를 하게 되므로 과중한 업무의 문제도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종사자들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급여수준 개선이 81.6%, 인력충원이 6.1%, 근무환경이 5.1% 등이었다. 종사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급여문제이므로 시급한 개선사항 역시 급여수준 개선이라는 응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급여문제와 인력충원 모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상담소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표 7-48〉 직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직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낮은 급여수준	73.0
	과중한 업무	13.0
	직원들 간 갈등	
	열악한 근무환경	6.0
	직원 보수교육	1.0
	기타	7.0
	계	100.0(100)
개선되어야 할 사항	급여수준 개선	81.6
	직원 총원	6.1
	직원 보수교육	3.1
	근무환경	5.1
	기타	4.1
	계	100.0(98)

5. 응답자특성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 직원의 특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84.3%, 남자가 15.7%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학원석사가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졸, 전문대졸, 대학원 박사의 순이었다. 직위는 상담소장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상담원, 사무국장 등의 순이었다. 근무기간을 보면, 2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년 초과, 3년 이하, 4년 이하, 1년 이하 등의 순이었다.

〈표 7-49〉 응답자 특성

(단위: 명)

	항목	비율(인원)
성별	여자	84.3
	남자	15.7
	계	100.0(102)
연령	20대	11.5
	30대	23.1
	40대	43.3
	50대이상	22.1
	계	100.0(104)
학력	전문대학	9.8
	4년제 대학	41.2
	대학원 석사	44.1
	대학원 박사	4.9
	계	100.0(102)
직위	상담소장	52.4
	사무국장	7.8
	상담원	29.1
	기타	10.7
	계	100.0(103)
근무기간	1년이하	13.5
	2년이하	24.0
	3년이하	18.3
	4년이하	14.4
	5년이하	7.7
	5년초과	22.1
	계	100.0(104)

제 3 절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1. 일반사항

가. 시설의 위치 및 운영주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도시가 52.9%, 중소도시가 47.1%였으며, 농어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도 농어촌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상담소 숫자가 적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표 7-5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분포

(단위: %,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대도시	52.9
중·소도시	47.1
농·어촌	-
계	100.0(1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를 보면, 법인이 88.2%, 국공립이 11.8%로 법인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종류를 보면, 사단법인이 50.0%, 사회복지법인이 28.6% 등이었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인대표와 시설대표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보면, 93.3%는 서로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즉 법인이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법인대표와 시설대표가 달랐다. 법인과 시설 간의 회계장부가 분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모든 시설에서 회계장부가 분리되어 있었다. 법인사무실과 피해자보호시설의 사무실 공간의 분리여부에 대해서 보면, 100%가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 실제 운영에서는 법인과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시설형태 및 건물소유형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건물형태를 보면,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35.3%였으며, 상가건물이 11.8% 등이었다.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주거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건물소유형태를 보면, 전세가 41.2%, 무상과 자가가 각각

23.5%, 전월세가 11.8%였다. 무상, 전세, 전월세인 경우 입주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은 법인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가 18.2%, 단체가 9.1% 등이었다.

〈표 7-5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주체 관련 사항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운영주체	국·공립	11.8
	법인	88.2
	계	100.0(17)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28.6
	사단법인	50.0
	종교법인	7.1
	기타	14.3
	계	100.0(14)
법인대표와 보호시설대표	동일 인물	6.7
	서로 다름	93.3
	계	100.0(15)
법인과 보호시설간 회계장부	법인과 시설 따로 있음	100.0
	법인과 시설 함께 사용	-
	계	100.0(15)
법인과 보호시설의 사무실 공간 분리 여부	완전히 분리	100.0
	같은 공간이나 별도의 출입문	-
	같은 공간이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나 분리됨	-
	공동 사용	-
	계	100.0(14)

〈표 7-52〉 시설의 건물·소유형태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건물형태	일반주택	35.3
	아파트	35.3
	상가건물	11.8
	기타	17.6
	계	100.0(17)
건물소유형태	무상	23.5
	자가	23.5
	전세	41.2
	전월세	11.8
	계	100.0(17)
입주비용 부담처	정부	18.2
	법인	45.5
	단체	9.1
	기타	27.3
	계	100.0(11)

다. 시설 내 공간특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각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거실과 피해자주거공간은 별도 공간이 있다는 비율이 100%였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94.1%의 시설에서 별도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개별상담실은 88.2%, 집단프로그램 공간은 64.7%의 시설에서 별도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개별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개별상담실이 모든 시설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53〉 별도 공간 마련 여부

(단위: 개소)

항목	별도 공간		계
	있다	없다	
사무실	94.1	5.9	100.0(17)
개별상담실	88.2	11.8	100.0(17)
집단프로그램 공간	64.7	35.3	100.0(17)
거실	100.0	-	100.0(17)
피해자 주거공간	100.0	-	100.0(17)

2. 운영 및 관리

가. 피해자 치료비 지원여부 및 지급방법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치료비를 시군구에 서 지원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치료비를 지원 받는 경우가 76.5%,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23.5%였다.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시설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보면, 시설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집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치료비용 지원액 부족이 25.0%, 구상권으로 피해자치료보호가 제한된다는 응답이 12.5%였다.

〈표 7-54〉 피해자 치료비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지원여부	지원 받음	76.5
	지원 받지 않음	23.5
	계	100.0(17)
지급 방식	피해자에게 직접	-
	시설에서 치료비를 직접 지불	81.8
	기타	18.2
	계	100.0(11)
지급 방식 문제점	치료비용 지원액 부족	25.0
	구상권으로 치료보호가 제한됨	12.5
	기타	62.5
	계	100.0(8)

나. 재정지원 여부 및 채무유무

조사대상이 된 피해자보호시설의 재정지원 관련사항을 보면, 부족하다는 경우가 58.8%, 매우 부족하다는 경우가 41.2%로 100%의 시설에서 재정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지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가장 많았으며(76.5%), 관리비와 시설설비 및 증개축비가 각각 5.9%였다.

〈표 7-55〉 시설의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재정 지원 충분성	매우 부족	41.2
	부족	58.8
	보통	-
	충분	-
	매우 충분	-
	계	100.0(17)
재정 지원이 부족한 부분	종사자 인건비	76.5
	사업 운영비	-
	관리비	5.9
	피해자 치료비	-
	시설설비 및 증개축비	5.9
	기타	11.8
	계	100.0(17)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채무유무를 보면, 채무가 없는 비율이 대부분이었다(88.2%). 즉 모든 시설에서 재정지원이 부족하였지만,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채무가 있는 시설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7-56〉 건물 또는 운영 관련 채무 유무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채무 없음	88.2
	채무 있음	11.8
	계	100.0(17)

다. 인력의 충분성 여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 보호사업을 감당하기에 인력이 충분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부족하다(70.6%)와 매우 부족하다(17.6%)를 합한 비율이 90% 가까이 되어서 대부분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충원이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충원 인력이 1명 필요하다는 응답이 53.3%였으며, 2명은 33.3%, 5명은 13.3%였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우 주로 1~2명의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강사, 상담원, 전문자원봉사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낮은 급여가 52.9%, 열악한 근무환경이 35.3% 등으로 전문인력확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급여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인력의 확보는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표 7-57〉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인력의 충분성	매우 부족	17.6
	부족	70.6
	보통	11.8
	충분	-
	매우 충분	-
	계	100(17)
충원인력	1명	53.3
	2명	33.3
	5명	13.3
	계	100(15)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35.3
관중한 업무		-
장래성 없음		-
그릇된 사회인식		-
기타		11.8
계		100.0(17)

라. 거주자 및 퇴소자의 의견수렴여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거주자 및 퇴소자의 의견수렴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먼저 거주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간모임이

47.1%, 월간모임이 17.6%, 의견함이 11.8% 등이었다. 주간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다. 거주자들의 의견이 시설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반영한다와 일부 반영한다를 합한 비율이 90%대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58〉 시설 운영에 대한 거주자·퇴소자들의 의견수렴여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거주자 의견 개진경로	없음	-
	주간 모임	47.1
	월간 모임	17.6
	의견함	11.8
	기타	23.5
	계	100.0(17)
거주자 의견 반영정도	전혀 반영하지 않음	-
	대부분 반영	5.9
	그저 그렇다	-
	일부 반영	23.5
	대부분 반영	70.6
	계	100.0(17)
퇴소자들의 의견수렴	의견 수렴 하지 않음	25.0
	의견을 활용하지 않음	6.3
	활용함	68.8
	계	100.0(16)
퇴소자의 의견 반영정도	전혀 반영하지 않음	-
	대부분 반영하지 않음	-
	그저 그렇다	-
	일부 반영	30.0
	대부분 반영	70.0
	계	100.0(10)

한편 퇴소자들의 의견수렴여부에 대해서 보면, 의견수렴을 하며, 운영개선을 위하여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였으며,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5%, 의견수렴을 하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였다. 퇴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1/4에 조금 못 미치며, 나머지 시설에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의

견수령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설운영에서 퇴소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반영한다가 70.0%, 일부 반영한다가 30.0%였다. 즉 모든 시설에서 퇴소자의 의견을 일부 또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 성폭력 관련 기관(실무자)간 협의체 구성여부 및 참여유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 성폭력 관련기관(실무자)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88.2%로 많은 시설에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참여여부를 보면, 100%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을 보면, 시도 여성복지담당자가 40.0%, 피해자 보호시설이 13.3%, 여성긴급전화 1366이 6.7% 등이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시도 여성복지담당자가 지역 협의체를 주관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응답하였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느 기관이 협의체를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표 7-60참조), 성폭력관련시설이라는 응답이 47.1%로 절반 가까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5.3%, 경찰이 5.9% 등이었다. 성폭력 관련기관(실무자)간의 협의체는 성폭력관련 시설이 주관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59〉 성폭력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협의체 여부	있음	88.2
	없음	11.8
	계	100.0(17)
협의체 참여 여부	참여함	100.0
	참여하지 않음	-
	계	100.0(15)
협의체 운영 주관 기관	1366	6.7
	전담의료기관	-
	피해자보호시설	13.3
	경찰	-
	법률구조공단	-
	보호관찰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관	-
	시도여성복지담당자	40.0
	119구조대	-
	응급구조단	-
	기타	40.0
	계	100.0(15)

〈표 7-60〉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주관 기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정부	-
지방자치단체	35.3
경찰	5.9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47.1
1366	-
법률구조공단	-
의료기관	-
기타	11.8
계	100.0(17)

바. 기관간 연계관련 사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에서 주로 연계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담의료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도 여성복지담당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대나 응급구조단 등의 비율은 낮았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오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주 연계기관이 되는 경향을 보면, 피해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의료적 지원이 주요한 사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1〉 지역 내 주 연계 기관

(단위: 개소)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1366	17.6	82.4	100.0(17)
전담의료기관	82.4	17.6	100.0(17)
보호시설	47.1	52.9	100.0(17)
경찰	47.1	52.9	100.0(17)
법률구조공단	58.9	41.1	100.0(17)
보호관찰소	5.9	94.1	100.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8.9	41.1	100.0(17)
사회복지관	23.5	76.5	100.0(17)
시도여성복지담당자	58.9	41.1	100.0(17)
119구조대	5.9	94.1	100.0(17)
응급구조단	5.9	94.1	100.0(17)

연계가 중요한 기관에 이어서 연계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보면, 대체로 연계가 어렵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경찰, 법률구조공단, 응급구조단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조금 더 연계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시도 여성복지담당자와의 연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앞서 시도 여성복지담당자의 경우 연계가 중요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계가 어렵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62〉 연계가 어려운 기관

(단위: 개소)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1366	-	100.0	100.0(17)
전담의료기관	5.9	94.1	100.0(17)
보호시설	5.9	94.1	100.0(17)
경찰	11.8	88.2	100.0(17)
법률구조공단	11.8	88.2	100.0(17)
보호관찰소	5.9	94.1	100.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9	94.1	100.0(17)
사회복지관	5.9	94.1	100.0(17)
시도 여성복지담당자	-	100.0	100.0(17)
119구조대	5.9	94.1	100.0(17)
응급구조단	11.8	88.2	100.0(17)

앞으로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비교적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 고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전담의료기관, 경찰,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담의료기관은 연계가 중요한 기관으로도 제시되었으며,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으로도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 등이 보호시설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7-63〉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단위: 개소)

항목	그렇다	아니다	계
1366	-	100.0	100.0(17)
전담의료기관	29.4	70.6	100.0(17)
보호시설	-	100.0	100.0(17)
경찰	23.5	52.9	100.0(17)
법률구조공단	23.5	52.9	100.0(17)
보호관찰소	5.9	94.1	100.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6	82.4	100.0(17)
사회복지관	17.6	82.4	100.0(17)
여성복지담당자	17.6	82.4	100.0(17)
119구조대	-	100.0	100.0(17)
응급구조단	-	100.0	100.0(17)

사. 시설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재정부족이 64.7%로 가장 많았고,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미흡이 23.5%, 열악한 시설 공간 및 환경이 11.8%였다.

〈표 7-64〉 시설 운영의 어려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재정부족	64.7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 미흡	23.5
열악한 시설공간 및 환경	11.8
계	100.0(1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인력 확충이 41.2%,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이 17.6%,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11.8%,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사후관리 강화, 시설의 적극적 홍보가 각각 5.9% 등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는 재정지원 확대가 50.0%, 종사자 인건비 확대가 31.3%였으며,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치료기능의 강화가 각각 6.3%였다. 2순위로는 종사자 인건비 확대가 25.0%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기간의 적정화가 23.5%, 재정지원 확대,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치료기능의 강화, 교육기능의 강화, 행정지도 및 규제의 완화가 6.3% 등이었다.

〈표 7-65〉 보호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전문인력 확충	41.2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
타 기관과의 연계 강화	-
거주자의 욕구반영	-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제공	5.9
서비스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11.8
지역사회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
시설의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17.6
사후관리 강화	5.9
시설의 적극적 홍보	5.9
기타	11.8
계	100.0(17)

〈표 7-66〉 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개소)

항목	1순위	2순위
재정지원 확대	50.0	6.3
종사자 인건비 확대	31.3	25.0
서비스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6.3	12.5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
관련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6.3
사회적 인식개선	6.3	-
정원기준의 적정화	-	-
입소기간의 적정화	-	23.5
보호기능의 강화	-	-
치료기능의 강화	6.3	6.3
교육기능의 강화	-	6.3
피해자보호시설의 양적 확대	-	-
행정지도 및 규제의 완화	-	6.3
기타	-	6.3
계	100.0(16)	100.0(17)

3. 지원제도

가. 피해자 유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하는 피해자 유형을 보면, 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47.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35.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17.6%였다. 성폭력피해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제공하는 경우가 76.5%로 많은 편이었다. 한편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전문인력이 없어서’가 각각 40.0%,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불편해서’가 20.0%였다.

〈표 7-67〉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피해자 지원 유형	성폭력	47.1
	가정폭력+ 성폭력	35.3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17.6
	계	100.0(17)
장애인 대상 서비스	서비스 제공	76.5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23.5
	계	100.0(17)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불편	20.0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지 않음	40.0
	장애전문인력이 없음	40.0
	기타	-
	계	100.0(4)

나. 지난 1년간(2006.1 ~ 2006.12) 지원정도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지원정도를 세부적으로 파악

해 보면, 심리 및 정서상담이 평균 503.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담의료기관 주선이 평균 91.53건, 홍보 및 교육, 법률상담이 각각 16.88건, 9.29건이었다. 사회복지지원 중 생계보호와 취업알선은 각각 1.41건, 4.18건, 자녀취학알선은 4.24건이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원서비스 중 심리 및 정서상담이 가장 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68〉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지원정도

(단위: 개소)

구분	법률상담	심리 및 정서상담	전담의료기관 주선	수사기관 신고	법률구조	홍보 및 교육	사회복지 지원			기타	계
							생계 보호	취업알선	자녀 취학알선		
평균	9.29	503.24	91.53	4.12	1.94	16.88	1.41	4.18	4.24	4.41	641.24
분석대상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상담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개별상담이 평균 185.63건, 집단상담이 64.18건이었으며, 가족상담은 평균 10.18건이었다. 전체 상담건수는 평균 248.38건이었다. 개별상담이 주가 되지만, 집단상담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거주자 중 청소년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상담 및 지원을 통해 가족이 피해자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69〉 보호시설의 지난 1년간 평균 상담건수

(단위: 개소)

구분	개별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계
평균	185.63	10.18	64.18	248.38
분석대상	16	17	17	16

다. 각 프로그램 실시여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 항상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88.2%), 사례관리와 진학교육(각각 70.6%), 진로지도 및 상담(64.7%), 직업훈련, 폭력대처교육, 성교육(각각 58.8%), 양성평등교육(52.9%),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29.4%)의 순이었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70.6%), 직업훈련이 23.5%, 사례관리와 진학교육, 폭력대처교육이 각각 5.9%였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성격상 피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었다. 진학교육, 진로지도 등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시설의 수용자 중 청소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7-70〉 프로그램 실시여부

(단위: %, 개소)

항목	전혀 하지 않음	가끔 실시	항상 실시	계
진로지도·진로상담	-	35.3	64.7	100.0(17)
직업훈련	23.5	17.6	58.8	100.0(17)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70.6	-	29.4	100.0(17)
피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	11.8	88.2	100.0(17)
사례관리	5.9	23.5	70.6	100.0(17)
진학교육	5.9	23.5	70.6	100.0(17)
폭력대처교육	5.9	35.3	58.8	100.0(17)
성교육	-	41.2	58.8	100.0(17)
양성평등교육	-	47.1	52.9	100.0(17)
기타	-	100.0	-	100.0(2)

라. 외부전문가 관련 사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경우는 88.2%였으며, 10%를 조금 상회하는 시설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를 질문하였지만, 2시설 모두

에서 응답하지 않아서 이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

〈표 7-71〉 외부 전문가 활용여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활용함	88.2
활용하지 않음	11.8
계	100.0(17)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례비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별도의 강사료 지급이 33.3%, 시설경비로 지급하는 경우와 무급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26.7% 등이었다.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례비를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역시 재정적인 면에서의 문제와 관련될 것이다.

〈표 7-72〉 외부 전문가 사례비지급방법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시설경비로 지급	26.7
별도의 강사료 지급	33.3
무급으로 봉사	26.7
기타	13.3
계	100.0(15)

마. 프로그램 평가 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경우가 64.7%였으며,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35.3%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고, 평가를 통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이 체

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평가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평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2.7%).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보면, 거주자대상 설문조사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평가들과 거주자대상 면접조사가 각각 18.2%였다.

〈표 7-73〉 지난 1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실시 여부	평가하지 않음	35.3
	프로그램 따라 평가 실시	64.7
	모든 프로그램 평가	-
	계	100.0(17)
평가 틀 여부	평가 틀이 없음	27.3
	평가들을 가지고 있음	72.7
	계	100.0(11)
프로그램 평가 방식	평가들에 의해	18.2
	거주자 대상 설문조사	63.6
	거주자 대상 면접방식	18.2
	종사자간의 회의방식	-
	기타	-
	계	100.0

바. 사례관리 실시에 관한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난 1년 동안(2006.1~2006.12)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보면, 실시한 경우가 75.0%였으며, 25.0%의 시설에서는 사례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이 66.7%, ‘보호서비스에 치중하여 사례관리를 못함’이 33.3%였다. 사례관리는 피해자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인력의 충원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 등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74〉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실시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실시 여부	실시하지 않음	25.0
	사례관리 하고 있음	75.0
	계	100.0(12)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66.7
	필요한 기관연계의 미흡	-
	보호서비스에 치중	33.3
	기타	-
	계	100.0(3)

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보면, 일부 거주자에게만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2.4%). 모든 거주자에게 사후관리를 하는 시설은 17.6%였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표 7-75〉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관리 여부	전혀 하지 않음	-
	일부 거주자에게만 사후관리	82.4
	모든 거주자에게 사후관리	17.6
	계	100.0(17)
사후관리 방식	전화로 동향 살핌	26.3
	직접 방문	5.3
	필요시 시설에서 상담서비스제공	15.8
	필요한 정보 제공	21.1
	타 기관과 연계	24.6
	기타	7.0
	계	100.0(57)

따라서 일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관리방식을 보면, 전화연락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도 전화연락이 주가 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타기관과 연계, 필요한 정보 제공 순이었다.

4. 거주자 사항

가. 입소율 및 수용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난 1년(2006.1~12) 입소율 및 수용률에 대해 알아 보았다. 입소율을 보면 평균 76%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시설입소 희망자 대비 수용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사대상이 된 시설들의 평균 수용률은 약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피해자 중 입소를 희망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시설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입소를 희망하였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중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에 대해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7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율 및 수용률

	입소율	수용률
평균	76.09	82.92
분석대상	15	13

나. 입소기간 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간(2006.1~2006.12) 거주자들의 평균 입소기간을 알아 보았다. 평균 입소기간이 3개월 이하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개월 이하가 28.5%, 9개월 이하가 21.4%, 12개월 이하가 7.1%였다. 입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를 합한 비율이 70%를 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입소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는 없었다.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서는 개별 피해자에 따라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7-77〉 지난 1년간 평균 입소기간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3개월이하	42.8
6개월이하	28.5
9개월이하	21.4
12개월이하	7.1
계	100.0(14)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주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현재의 시설 입소기간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를 합한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0.6%). 즉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입소기간이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표 7-78〉 거주자 입소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현재 시설 입소기간	매우 부족	23.5
	부족함	47.1
	그저 그림	11.8
	충분함	11.8
	매우 충분함	-
	계	100.0(16)
적당한 입소기간	8개월	9.1
	10개월	-
	12개월 이상	45.5
	기타	45.5
	계	100.0(11)

현재의 입소기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당한 입소기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적당한 입소기간으로 12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치료와 회복, 미래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렇듯 거주자들을 1년 이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의 제반 여건이 향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종사자 사항

가. 임금 및 근무시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보수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하가 3명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66.7%였다.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의 종사자는 1명이 50.0%, 2명이 33.3%, 3명이 16.7%였다.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종사자는 1명, 2명이라고 응답한 시설이 각각 40.0%(각각 4개소)이었다. 200만원을 넘는 종사자가 있다는 시설은 1곳이었으며, 대상자도 1명뿐이었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79〉 종사자의 보수 분포

(단위: 개소)

항목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1명	-	50.0	50.0	100.0
2명	33.3	33.3	50.0	-
3명	66.7	16.7	-	-
계	100(11)	100.0(12)	100(8)	100(1)

종사자들의 이러한 낮은 임금수준은 현재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급여수준이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합한 비율이 94.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설 종사자들 역시도 현재의 급여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80〉 종사자 급여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매우 부족	41.2
부족함	52.9
그저 그렇	-
충분함	-
매우 충분함	5.9
계	100.0(17)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66.7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초과근무시간도 주당 18.80시간이어서 초과근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들의 이런 과도한 업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81〉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주당)
	66.79	18.80
분석대상	14	15

나. 직원보수교육 관련 사항

직원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2006.1~2006.12) 외부 보수교육에 참여한 종사자수를 보면, 3명이 38.5%, 1명이 30.8%, 2명이 23.1% 등이었다. 직원의 외부 보수교육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보면, 대체인력부족이 66.7%로 가장 많았다. 즉 외부보수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표 7-82〉 보수교육관련 사항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지난 1년간 외부보수교육받은 종사자수	1명	30.8
	2명	23.1
	3명	38.5
	4명	7.7
	계	100.0(13)
외부보수교육이 부족한 이유	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부족	6.7
	보수교육과정이 별로 도움안됨	6.7
	시간부족	6.7
	대체인력부족	66.7
	기타	13.3
	계	100.0(15)

다. 교육 및 훈련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에서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58.8%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2%는 없다고 하였다. 직원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이 있는 시설이 없는 시설보다 많았지만,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없는 시설의 비율도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시설의 경우 그 방식을 보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44.4%, 시설 내 자원활용, 시설 내 교육+외부위탁이 각각 22.2%였다.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내 종사자의 수나 업무량을 고려할 때에도 외부자원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이 있는 시설들의 경우 직원을 위한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보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0%였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종사자를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이 보다 확대 실시되어야만 피해자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7-8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교육 및 훈련시간유무	있음	58.8
	없음	41.2
	계	100.0(17)
교육방식	시설내 자원이용	22.2
	외부에 위탁	44.4
	시설내 교육+ 외부위탁	22.2
	기타	11.1
	계	100.0(9)
정기적인 재교육 유무	없음	50.0
	있음	50.0
	계	100.0(10)

6. 응답자특성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직원의 특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94.1%, 남자가 5.9%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 30대의 비율이 같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4년제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석사, 전문대졸의 순이었다. 직위는 시설장이 절반 이상이었다. 근무기간을 보면, 1년 이하, 2년 이하, 4년 이하의 비율이 같았으며, 근무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이 되었다.

〈표 7-84〉 응답자 특성

(단위: 명)

	항목	비율(인원)
성별	여자	94.1
	남자	5.9
	계	100.0(17)
연령	20대	23.5
	30대	23.5
	40대	41.2
	50대이상	11.8
	계	100.0(17)
학력	전문대학	17.6
	4년제 대학	47.1
	대학원 석사	35.3
	계	100.0(17)
직위	시설장	52.9
	상담원	41.2
	기타	5.9
	계	100.0(17)
근무기간	1년이하	25.0
	2년이하	25.0
	3년이하	6.3
	4년이하	25.0
	5년이하	6.3
	5년초과	12.5
	계	100.0(16)

제 4 절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1. 일반사항

가. 센터위치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위치를 보면, 대도시가 64.3%, 중소도시가 35.7%였으며, 농어촌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센터가 14개 밖에 되지 않으며, 도시 중심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지역의 성폭력피해 여성의 경우 원스톱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농어촌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표 7-85〉 센터의 위치

(단위: 개소)

센터위치	비율(사례수)
대도시	64.3
중소도시	35.7
농어촌	-
계	100.0(14)

나. 지원하는 피해자유형

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유형은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여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83.3%). 반면,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피해자나 성매매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전문화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이므로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86〉 시설 및 지원 피해자 유형

(단위: 개소)

항목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자	-	100.0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8.3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여성	83.3	
기타	8.3	
계	100.0(12)	100.0(2)

다. 시설내 별도 공간분리여부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을 위한 각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사무실은 모든 센터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의료지원을 위한 공간은 92.9%, 개별상담실과 수사지원을 위한 공간은 각각 85.7%, 피해자 대기실/안정실은 78.6%, 심리평가/심리치료실은 41.7%의 센터에서 별도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수사지원을 위한 공간도 대부분의 센터에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는 센터가 수사지원, 의료지원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상담실의 경우도 대부분의 센터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여성의 경우 개별적인 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모든 센터에서 개별상담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7-87〉 시설 내 개별 공간분리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별도 공간 있음	별도 공간 없음	합계
사무실	100.0	-	100.0(14)
개별상담실	85.7	14.3	100.0(14)
심리평가/심리치료실	41.7	58.3	100.0(12)
의료지원 위한 공간	92.9	7.1	100.0(14)
수사지원 위한 공간	85.7	14.3	100.0(14)
피해자 대기실/안정실	78.6	21.4	100.0(14)

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이나 지침

조사대상이 된 센터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상담원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러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절반씩이었다.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동시에 여러 가지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특히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표 7-88〉 피해자 지원 표준매뉴얼 유무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있다	50.0
없다	50.0
계	100.0(14)

2. 운영 및 관리

가.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조사대상이 된 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12가지의 항목 중에서 ‘정규직원 부족’의 경우 100%의 센터에서 어려움이 있다(‘있는 편이다’와 ‘매우 많다’를 합한 비율)고 응답하였다. 즉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정규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78.6%),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78.5%), ‘시설공간의 부족’(78.6%), ‘이용자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71.4%)도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70%대를 보였다. ‘전문인력부족’(69.3%),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61.5%)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60%대였으며, ‘과중한 업무’는 57.1%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재정부족은 46.2%, ‘직원들 간의 갈등’, ‘전문장비의 부족’,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21.4%였다. 상담소의 경우와 달리 휴일근무교대와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부족과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도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많은 편이었는데, 센터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전문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센터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센터를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부족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은 성폭력상담소 등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89〉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단위: 개소)

항목	전혀없다	별로없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다	합계
재정부족	7.7	46.2	30.8	15.4	100.0(13)
정규직원 부족	-	-	38.5	61.5	100.0(13)
전문인력부족	7.7	23.1	38.5	30.8	100.0(13)
센터에 대한 홍보부족	7.7	30.8	53.8	7.7	100.0(13)
직원들간의 갈등	21.4	57.1	21.4	-	100.0(14)
과중한 업무	7.1	35.7	50.0	7.1	100.0(14)
휴일근무교대의 어려움	14.3	7.1	42.9	35.7	100.0(14)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	14.3	7.1	57.1	21.4	100.0(14)
전문장비의 부족	21.4	57.1	21.4	-	100.0(14)
이용자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	-	28.6	64.3	7.1	100.0(14)
시설공간의 부족	-	21.4	50.0	28.6	100.0(14)
유관기관과의 연계미흡	7.1	71.4	21.4	-	100.0(14)

나. 기관간 연계관련 사항

먼저 조사대상이 된 센터와 연계가 중요한 기관을 순서대로 5가지 적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순위로는 병원과 경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순위에서도 경찰과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피해자보호시설과 상담소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순위에서는 법률구조공단과 여성긴급전화 1366, 5순위에서는 119구조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경찰, 병원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연계형성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1순위에서는 검찰과 피해자보호시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순위에서는 검찰, 법원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학교, 법원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4순위, 5순위에서는 각 기관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원스톱 지원센터/해바

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검찰, 법원과의 연계가 가장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 본 성폭력상담소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검찰, 법원 등과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1순위에서 피해자 보호시설도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속한 연계가 필요한 센터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7-90〉 연계가 중요한 기관

(단위:%, 개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찰	42.9	35.7	7.1	-	-
검찰	-	7.1	7.1	-	-
법원	-	-	-	7.1	-
병원	50.0	35.7	7.1	-	-
상담소	-	14.3	21.4	14.3	14.3
법률구조공단	-	-	-	28.6	14.3
학교	-	-	-	-	-
사회복지기관	-	-	-	-	-
피해자 보호시설	-	-	50.0	21.4	21.4
1366	7.1	-	7.1	28.6	7.1
아동보호전문기관	-	7.1	-	-	42.9
119구조대	-	-	-	-	-
응급구조단	-	-	-	-	-
사회복지관	-	-	-	-	-
계	100.0(14)	100.0(14)	100.0(14)	100.0(14)	100.0(14)

의료기관과 센터들과의 연계현황에 대해서 보면, 연계가 잘 된다는 곳이 많은 편이었다(78.6%).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경우에 한해서 그 이유를 보면, ‘의료기관 담당자의 성폭력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의사가 법정에서 본인진술을 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기타’가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4.3%).

〈표 7-91〉 연계가 어려운 기관

(단위:%, 개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경찰	-	-	-	11.1	11.1
검찰	21.4	28.6	-	11.1	11.1
법원	14.3	21.4	20.0	11.1	-
병원	7.1	7.1	10.0	-	11.1
상담소	-	-	-	11.1	-
법률구조공단	7.1	7.1	10.0	-	11.1
학교	7.1	14.3	40.0	11.1	-
사회복지기관	-	-	-	-	11.1
피해자 보호시설	21.4	-	-	-	-
1366	-	7.1	-	11.1	-
아동보호전문기관	-	-	10.0	-	-
119구조대	7.1	7.1	-	11.1	11.1
응급구조단	7.1	-	-	-	22.2
사회복지관	-	-	-	11.1	-
없음	7.1	7.1	10.0	11.1	11.1
계	100.0(14)	100.0(14)	100.0(10)	100.0(9)	100.0(9)

〈표 7-92〉 의료기관 연계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의료기관 연계정도	잘 됨	78.6
	잘 안됨	21.4
	계	100.0(14)
연계 미흡한 이유	선입견	33.3
	의사 법정진술제도	33.3
	기타	33.3
	계	100.0(3)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의식교육	64.3
	진술제도 개선	14.3
	지정병원 증설	14.3
	기타	7.1
	계	100.0(14)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서 보면, 모든 센터에서 경찰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연계가 잘 되

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경찰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성폭력 전담경찰의 지속적인 담당이라는 응답이 92.3%를 차지하였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전담 경찰의 지속성이 피해자지원시설과 경찰의 연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 주체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본 결과, 경찰이 4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정부와 성폭력 관련시설이 각각 15.4%, 지방자치단체와 성폭력관련 상담소가 각각 7.7% 등이었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주체로 경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이는 앞서 본 대로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7-93〉 경찰 연계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경찰과의 연계정도	잘 됨	100.0
	잘 안됨	-
	계	100.0(13)
경찰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것	의식교육	7.7
	전담자 지속성	92.3
	기타	-
	계	100.0(13)

〈표 7-94〉 네트워킹 주체기관

(단위: 개소)

기관명	비율(사례수)
정부	15.4
경찰	46.2
성폭력 관련시설	15.4
지방자치단체	7.7
의료기관	-
성폭력 관련 상담소	7.7
1366	-
법률구조공단	-
기타	7.7
계	100.0(13)

3. 지원제도

가. 필요한 지원 수행정도

윈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지원(피해자요구나 직원판단 등)의 몇 %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균을 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86.2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지원은 84.42%, 수사법적 지원은 79.17%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의 지원 모두 필요한 지원을 대체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95〉 필요한 지원 수행정도

구분	수사법적지원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분석대상수
평균	79.17	86.25	84.42	12

나. 실시 중인 프로그램

윈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은 모든 센터에서 항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상담은 항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가끔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상담은 가끔 실시한다는 응답이 71.4%였으며, 나머지는 항상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사례관리는 가끔 실시하거나 항상 실시하는 비율이 84.6%였으며, 성폭력관련 조사연구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상담의 경우 모든 센터에서 항상 실시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개별상담실이 별도로 없는 센터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센터에서 개별상담실을 분리해서 개별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관련 조사연구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피해자 지원이 우선적인 업무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경험이 피해자 지원 업무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7-96〉 실시 프로그램 내용

(단위: 개소)

항목	전혀 실시하지 않음	가끔 실시함	항상 실시함	합계
면접상담	-	-	100.0	100.0(14)
전화상담	-	-	100.0	100.0(14)
가족상담	-	71.4	28.6	100.0(14)
정신과 치료	-	28.6	71.4	100.0(14)
사례관리	15.4	53.8	30.8	100.0(13)
성폭력관련 조사연구	53.8	46.2	-	100.0(13)

다. 프로그램 평가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센터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2.9%는 프로그램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35.7%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였다. 프로그램 평가는 피해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센터의 40% 이상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평가가 정착되어 효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프로그램 평가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상자 설문조사 와 면접조사가 각각 절반씩이었다. 프로그램의 평가틀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면, 평가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절반씩이었다.

라. 사후관리 관련 사항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78.6%로 대부분이었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한다는 응답은 14.3%,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7.1%였다. 센터들의 인력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사후관리 방식으로는 전화연락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78.6%).

〈표 7-97〉 프로그램 평가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프로그램 평가 여부	프로그램 평가 안함	42.9
	프로그램별로 다름	35.7
	모든 프로그램 평가함	21.4
	계	100.0(14)
평가 방법	대상자 설문조사	50.0
	대상자 면접조사	50.0
	진행자의 인상으로	-
	종사자간 회의방식	-
	기타	-
	계	100.0(8)
평가들 유무	없음	50.0
	일부 있음	37.5
	있음	12.5
	계	100.0(6)

〈표 7-98〉 피해자 사후관리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피해자 사후관리 실시여부	전혀 안함	7.1
	필요시 실시	78.6
	모든 피해자에 대해 실시	14.3
	계	100.0(14)
피해자 사후관리 방법	미실시	7.1
	전화연락	78.6
	직접 방문	-
	피해자가 방문	7.1
	기타	-
	계	100.0(14)

4. 이용자 사항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 이동센터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의 방문경로를 보면, 관련기관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자발적으로’가 21.4%,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7.1% 등이었다. 이들 센터에 오게 되는 사람들 중 관련 기관의 소

개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앞으로는 센터의 홍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99〉 피해자 방문 경로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자발적으로	21.4
주위 사람들의 권유	7.1
관련 기관의 소개	42.9
기타	28.6
계	100.0(14)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지난 1년간(2006.1~2006.12) 평균 지원건수를 보면, 서비스 건수는 평균 1245건이었다. 지원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상담건수가 평균 545.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지원건수가 307.93건, 심리치료건수가 287.67건, 법률지원건수가 181.31건의 순이었다. 이들 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지원건수도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100〉 지난 1년간(2006.1~2006.12) 지원건수

구분	서비스건수	상담건수	의료지원건수	법률지원건수	심리치료건수
평균	1245.00	545.07	307.93	181.31	287.67
분석대상	12	14	14	13	9

5. 종사자 사항

가. 종사자의 임금 및 근무시간

종사자의 보수분포를 보면,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종사자가 있는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100만원초과~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4명이상이라는 비율이 28.6%, 1명이 21.4%였다. 월급이 150만원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3명이라는 센터가 35.7%, 4명이상이라는 센

터가 21.4% 등이었다. 센터 종사자들의 월급을 보면,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센터 간에 월급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다른 피해자 지원시설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사자들의 임금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51.00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시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13시간으로 나타나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력충원의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7-101〉 종사자의 보수 분포

(단위: 개소)

항목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없음	100.0	35.7	28.6
1명	-	21.4	14.3
2명	-	7.1	-
3명	-	7.1	35.7
4명 이상	-	28.6	21.4
계	100.0(14)	100.0(14)	100.0(14)

〈표 7-102〉 종사자들의 평균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주당)
	51.00	13.00
분석대상	14	13

나. 종사자 교육 및 훈련관련 사항

조사대상이 된 센터들의 경우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가 78.6%였으며,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는 21.4%였다. 직원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시간이 있는 경우에 교육방식을 보면, 자체내 자원활용+ 외부위탁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내 자원활용과 외부위탁 각각의 방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각각 27.3%였다. 다른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부위탁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있는 경우(55.6%)가 없는 경우(44.4%)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3〉 교육 및 훈련 시간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업무교육 및 훈련시간유무	있음	78.6
	없음	21.4
	계	100.0(14)
교육방식	자체 내 자원활용	27.3
	외부강사·기관 위탁	27.3
	위의 두 방법 병행	45.5
	계	100.0(11)
정기적인 재교육 유무	없음	44.4
	있음	55.6
	계	100.0(9)

다. 종사자 휴가관련 사항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직원을 위한 휴가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가 71.4%였으며, 28.6%는 휴가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규정된 휴가일수를 다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는 비율이 70%였다. 즉 대다수는 규정된 휴가일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04〉 직원 휴가 관련 현황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직원 휴가관련 규정	있음	71.4
	없음	28.6
	계	100.0(14)
규정된 휴가일수 전부 사용하는지의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20.0
	별로 그렇지 않다	10.0
	그런 편이다	50.0
	매우 그렇다	20.0
	계	100.0(10)

라.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조사대상이 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낮은 급여수준’이었다(35.7%). 이 외에 열악한 근무환경, 직원 보수교육이 각각 21.4%를 차지하였다. 다른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급여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인력충원이 57.1%, 급여수준 개선이 28.6%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지원시설과 달리 인력충원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의료, 법적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6.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이 된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직원의 특성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전부 여자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 30대의 비율이 같았다. 교육수준을 보면, 4년제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졸, 대학원 석사의 순이었다. 직위는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상담원, 간호사 등의 순이었다. 근무기간을 보면, 2년 이하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1년 이하가 38.5%, 4년이하가 7.7%였다.

〈표 7-105〉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항목	비율(사례수)
직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	낮은 급여수준	35.7
	과중한 업무	-
	직원들 간 갈등	-
	열악한 근무환경	21.4
	직원 보수교육	21.4
	기타	21.4
	계	100.0(14)
개선되어야 할 사항	급여수준 개선	28.6
	직원 충원	57.1
	직원 보수교육	-
	근무환경	-
	기타	14.3
	계	100.0(14)

〈표 7-106〉 응답자 특성

(단위: 명)

	항목	비율(인원)
성별	여자	100.0
	남자	-
	계	100.0(14)
연령	20대	28.6
	30대	28.6
	40대	42.9
	계	100.0(14)
학력	전문대학	30.8
	4년제 대학	53.8
	대학원 석사	15.4
	대학원 박사	-
	계	100.0(13)
직위	센터장	7.1
	임상심리사	7.1
	간호사	21.4
	상담원	28.6
	기타	35.7
	계	100.0(14)
근무기간	1년이하	38.5
	2년이하	53.8
	4년이하	7.7
	계	100.0(13)

제 8 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 1 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성폭력발생실태 표본조사

전국 가구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행위의 유형을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3,608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 실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성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에 앞서 수집된 표본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에 대한 대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성폭력 피해실태

지난 1년간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인여성 1,000명당 2.2명이 6.1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9.7명이 42.7건의 부부강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남녀 1,000명당 심한 추행 피해는 2.9명, 8.9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15.0명, 34.7건, 성희롱 피해는 6.9명, 21.3건, 성기노출 피해는 10.7명, 21.2건, 음란전화 피해는 28.3명, 88.7건, 스톱킹 피해는 5.4명, 25.5건으로 나타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19~64세 성인여성 1,000명

당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2.2명, 6.1건, 심한추행 피해는 4.7명, 15.1건, 가벼운 추행 피해는 24.6명, 52.5건, 성희롱 피해는 11.2명, 34.9건, 성기노출 피해는 19.2명, 36.5건, 음란전화 피해는 32.0명, 83.7건, 스토킹 피해는 8.4명, 44.9건, 부부강간 피해는 9.7명, 4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폭력관련법으로 규율되는 ‘강간·강간미수’와 ‘강제추행(심한 추행과 가벼운 추행)’의 3가지 성폭력 유형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성인 남녀 1,000명당 17.9명이며, 피해건수는 46.7건이다. 여성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은 성인여성 1,000명당 29.1명, 피해건수는 73.7건이다.

범죄공식통계상 2006년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3,573건이며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7.7건이다. 반면 본 조사결과 추정피해건수는 1,502,237건이며 인구 10만명당 추정피해율은 4665.9건이다. 따라서 본 피해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공식통계보다 강간·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의 발생률은 피해건수면에서는 110.7배, 10만 명당 피해율 면에서는 168.4배나 많다. 법적 처벌은 되고 있으나 비교에 포함되지 않은 성기노출, 스토킹, 음란전화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성희롱, 부부강간을 포함한다면 공식통계보다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성폭력피해율을 보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강간미수는 장애인들의 피해율이 높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피해율이 높다. 장애인 인구 1,000명당 5.8명이 5.8건의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하는데 이는 피해사건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례수 면에서는 약 2.6배 많은 수치이다. 심한추행 피해율은 전체인구보다 사례수 면에서는 2.7배 많고 피해건수는 유사하며, 음란전화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8배, 사건수 면에서 2.2배, 스토킹 피해율은 사례수 면에서 1.4배, 사건수 면에서 1.1배, 부부강간 피해율은 사례수 면, 사건수 면에서 모두 1.8배 많다.

나. 남성의 성폭력 가해실태 및 성폭력 총동

가장 많이 보고된 가해행위는 ‘폭행’으로 남성 응답자의 5.7%가 지난 1년간 누군가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 4.4%,

‘부부강간’ 4.2%, ‘성희롱’ 2.1%이다. ‘음란전화’, ‘스토킹’, ‘강제추행’은 각각 0.3%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강간미수, 강간, 아동성폭력은 0.1%이다. 성기노출은 단 한 명도 가해경험을 보고하지 않았다.

남성응답자의 1.3%는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만족을 위해 상대를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만약 처벌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1.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보다는 미혼 남성이 성폭력 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취업유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첫째, 대부분의 성폭력 유형에서 가해자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다수인 비율이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유형보다 높았다.

둘째,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의 가해자는 모두 남자이고,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은 90% 이상이 남성이 가해자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희롱(14.4%), 음란전화(43.5%)와 스토킹(24.3%)은 가해자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 존재한다.

셋째, 강간·강간미수와 가벼운 추행의 가해자는 30대와 40대, 심한 추행과 스토킹은 20대가 가장 많은 반면 성희롱, 성기노출,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40대와 50대가 많다. 다만 음란전화는 가해자 연령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절반가까이 이르며, 추정되는 경우 가해자 연령은 20대 혹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넷째, 성폭력 유형에 따라 면식범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한 추행(80.0%), 성기노출(95.8%), 음란전화(98.0%)는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강간·강간미수, 스토킹, 부부강간은 비면식범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가벼운 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는 비면식범과 면식범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5.0%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관계유형은 전배우자 전애인으로 40.6%에 이르고, 업무상 아는 사이가

19.9%, 동네사람이 9.6%, 그 외 아는 사람이 15.0%였다. 가벼운 추행은 비면식범 비율은 65.6%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6.8%로 가장 많고, 그 외 친구나 선후배가 5.8% 이었다. 성희롱은 비면식범 비율이 50.4%이고, 면식범 중에서는 업무상 아는 사이가 17.1%로 가장 많아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대표적인 면식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 비율은 13.8%에 불과하며, 친구나 선후배가 17.5%, 전배우자나 전애인이 10.2%, 업무상 아는 사이가 9.8%이고 많은 수는 그 외 아는 사람이었다(38.4%).

다섯째, 강간·강간미수,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비율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란전화(43.7%), 스토킹(21.8%), 성희롱(20.8%)은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0%가 넘으며, 가벼운 추행도 17.3%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강간·강간미수와 부부강간, 음란전화의 피해자는 30대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상대적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아서 20대의 비율이 높다.

일곱째,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하면 미혼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간·강간미수, 심한 추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70%를 넘고, 가벼운 추행, 성희롱은 60%대이며, 성기노출 50%대 이다.

여덟째,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취업비율이 가장 높고(77.3%), 강간·강간미수, 성희롱, 음란전화, 스토킹은 60%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홉째, 피해자의 교육수준은 보면 심한추행, 가벼운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스토킹은 전문대졸 이상자인 경우가 50%대로 가장 많다. 반면 강간·강간미수, 음란전화, 부부강간의 경우에는 고졸자의 비율이 전문대졸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성폭력 피해후유증과 사후조치

강간, 강간미수, 심한추행 피해자 중 10.5%는 신체적 피해, 40.7%는 정신적 피해, 20.5%는 사회적 피해후유증을 보고하였다.

경찰 신고율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3%로 나머지 97.7%는 숨은 범죄로 남는다. 이 중 강간·강간미수 7.1%, 스토킹 신고율 6.8%, 심한 추행 5.3%이며, 가벼운 추행 4.7%, 성기노출 4.3%, 그리고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하다.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지원시설 이용률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1.6%에 불과하다. 다만 성폭력 유형별로 이용률이 다소 상이한데, 강간·강간미수 피해자의 7.1%, 스토킹 피해자의 5.6%, 성희롱 피해자의 4.5%가 이용하였다. 이용자 중 65.4%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34.5%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은 강간·강간미수 피해자는 14.3%, 심한 추행 피해자는 5.3%, 부부강간 피해자는 1.6%이다.

마. 성폭력 피해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성인 남녀의 17.0%이며, 성인 여성들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1%이다. 여성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며,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여성보다는 있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친고죄 폐지, 성희롱 처벌,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87.7%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65.1%가 찬성하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30대와 40대가 처벌을 지지하고 있다. 부부강간 처벌에 대해서는 38.7%가 찬성하였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혼보다는 미혼이,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강간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바.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인지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가해자관계의 친밀도’, ‘피해자의 저항정도’, ‘피해여성의 원인제공요인(性歷, 품행)’의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다섯 가지 성폭력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인지도는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높아지며 특히 저항 유무 보다는 피해자의 음주나 밤늦은 귀가, 성력(性歷)과 같은 원인제공요인이 인지도를 낮추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인 관계 등 가해자-피해자 친밀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낮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높다.

성폭력 허용도는 눈짓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 음란전화와 포르노그래피, (접촉성) 가벼운 추행, 스토킹, 성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부부강간의 6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허용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이며 그 다음으로는 성인대상 성매수와 집요한 구애행위, 부부강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폭력 허용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스토킹의 한 유형인 애정거부에 대한 보복행위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음란전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지원시설 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일반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이 도시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중 농어촌에 위치한 시설은 하나도 없었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많으며,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가 있는 비율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상담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어촌지역의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지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에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들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일반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었다.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센터들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중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60%대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간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시설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들은 재정과 인력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의 경우를 보면,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즉 재정부족과 후원금 모금의 부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각각 90%대). 다음으로는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이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어려움 중 재정부족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도 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다.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정규직원의 부족, 휴일근무교대, 야간근무교대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인력부족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보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들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책확보와 인력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간 연계와 관련해서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연계가 중요한 기관은 경찰과 병원이었으며,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는 검찰과 법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전담의료기관이 가장 중요한 연계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법률구조공단, 응급구조단의 경우가 다른 기관에 비해 연계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경찰, 병원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계가 어려운 기관으로는 검찰, 법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연계가 중요한 기관과 연계가 어려운 기관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들의 경우 검찰, 법원과의 연계가 어려운 편임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시설과 이들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연계와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 볼 것은 농어촌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의 기관 연계에 대한 것이다. 농어촌 상담소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안 되는 편이며, 경찰과의 연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잘 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수적으로 적다는 점 등이 작용해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상담소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어촌 상담소들이 경찰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 것은 비공식적 관계가 도시에 비해 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조사대상이 된 성폭력상담소들의 2/3는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협의체가 있는 경우 대부분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협의체가 없는 비율이 30%대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20%대에 비해 높았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협의체가 있다는 비율이 88.2%였으며, 협의체가 있는 경우 다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대부분은 지역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보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장애인과 관련해서 성폭력상담소의 80% 가까이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전문상담소에 연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성폭력상담소와 장애인 전문상담소와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응답이 76.5%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편의시설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강사 활용여부를 보면, 상담소와 보호시설 모두 80%대는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부족

이었다. 프로그램들의 평가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일부 프로그램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원스톱/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0%대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비해 많았다. 프로그램 평가는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평가를 개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의 경우에는 상담소, 보호시설 각각 70%대가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지 않는 시설들의 경우 주로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비율이 상담소와 보호시설 각각 80%대,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70%대였다. 사후관리의 방법은 시설에 관계없이 주로 전화연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인력을 고려할 때 전화연락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력충원이 되어야만 개별적 만남 및 이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 관련 사항을 보면,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입소기간 6개월 이하가 70%를 넘었는데, 이러한 현재의 입소기간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지원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도 입소기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지원시설들은 이용자에 대해 상담을 가장 많이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의료적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사자 관련 사항을 보면,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들 전반적으로 보수가 낮아서 임금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직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도 낮은 급여수준이었다. 직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시간은 상담소의 87.4%, 보호시설의 58.8%, 원스톱 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7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지원시설들에서 직원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3. 성폭력 피해자조사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성폭력 피해 문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성폭력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유형은 강간 또는 유사성교(70.8%)였으며 강제추행(51.6%), 성희롱(26.6%), 성기노출(16.1%), 음란전화(3.6%), 스토킹(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또는 유사성교와 같은 가장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응답률(70.8%)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기관이나 쉼터를 이용하게 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4~2006년도의 일반 성폭력 피해자들 중 강간 피해자들이 41.1%에서 46.3%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 참가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장 심한 정도의 성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피해내용으로 다른 형태의 피해 없이 강간 및 유사성교만 경험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0.1%에 해당하고 다른 유형의 성폭력 피해 즉 강제추행, 성희롱, 음란 전화, 스토킹 등의 다양한 성폭력 피해를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상담소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간 및 유사성교의 유형으로는 성기삽입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53.6%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상담기관 등을 찾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홍보가 필요함을 반영하며, 피해자들이 상담기관들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각 상담소들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가해방식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강간하거나, 때리거나 흥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3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음주 등 취약점을 이용한 경우가 27.2%로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6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빈도에서 한 사람에게 당한 경우가 34.6%로 가장 많고,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발생 장소로 가장 많이 성폭력 피해가 일어나는 곳으로는 피해자의 집(36.8%) 이었고, 다음이 가해자의 집(14.1%)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 피해의 절반정도가(50.9%)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해자 유형 분석에서 친족관계, 애인, 이웃, 직장동료 및 상사, 모르는 사람 등 어느 특정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성을 보이고, 심리적 친밀도가 높고 물리적 근접성이 높은 친족관계나 애인 및 선후배 간의 높은 성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장 전문가들이 상담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다는 결과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반복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 해 준다.

성폭력 당시 가해자의 음주 여부에 관한 질문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32.6%인 것으로 나타났고 '맨 정신이었다'가 53.3%인 절반 이상인 경우여서 음주가 성폭력의 주된 계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폭력을 음주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것은 가해자들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우발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은 남성이 95.6%(130명)이고 여자인 경우는 4.4%(6명)이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알고 지내는 사람이 77.9%로 나타나 성폭력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 또한 이들 응답자 중 54.3%는 과거에도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과거에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했고 현재로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후유증에 대해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 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21.3%로 나타났는

데, 사건 발생을 기준한 가해자의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가 34.3%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을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6.6%, 10대 미성년자 가해자의 경우 18.2%로 것으로 나타나 10대가 가해자인 경우가 20대 다음으로 30, 40대의 가해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이 21.2%로 가장 많고, 대학학력 이상이 14.7%이다. 그러나 47.4%가 가해자의 학력을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더 발생하고 직업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어느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보편성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보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시사 해 준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해자 유형별 현황에서 친족관계에서 애인, 이웃, 직장동료 및 상사, 모르는 사람 등 어느 특정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성을 보인다는 자료와 일치한다.

강제 추행의 가장 많은 형태는 강제 키스와 강제 애무로 각 각 38.4%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성기밀착이 19.2%, 기타가 6.1%인데 기타로 제시된 애용은 성기나 유방 애무, 손가락으로 성기 삽입을 보고하였다. 강제 추행 역시 42.4%만이 1년 이내에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을 찾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홍보가 필요함을 반영해 준다. 또한 강제추행 역시 강간 및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61.4%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강제 추행의 경우 가해방식은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가 27.1%로 가장 높으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인 술, 잠자는 틈을 이용했다가 19.8%로 나타나 강간 및 유사성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 역시 동일한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6.8%로 나타나 강간이나 유사성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 추행 장소 역시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40.6%에 이르며 강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응답은 27.7%이었고, ‘맨 정신이었다’가 59.6%로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력(性歷) 행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가해자가 정

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강간 및 유사 성교의 가해 상태 특징과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강간 및 유사 성교와 강제 추행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성희롱 피해유형은 한 가해자에게 일회성으로 당한 경우가 31.4%로 제일 많아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역시 지속적으로 당한 경우가 51%로 나타나 강간 또는 강제 추행과 같은 양상을 보여 성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이 된다는 것은 성폭력의 심각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시사 된다. 성희롱 역시 피해자의 집이 27.7%로 가장 많았으나, 술집 등 유흥업소가 10.6%이며, 직장, 사무실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엘리베이터, 골목길, 어두운 곳 등이 8.5%, 가해자의 집이나 학교, 학원이 6.4%로 나타나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높은 반면, 성희롱은 주로 집이 아닌 장소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46.8%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족 18.8%, 직장동료나 상사 14.6%, 아는 사람 10.4%,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사람 6.3%, 친구나 선후배 6.3%, 가족이나 친척 외에 잘 알고 지낸 사람 6.3%로 나타났다. 동네 사람 2.1%, 교사, 시설장, 학원장 등 2.1%, 그리고 기타는 8.3%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 25.0%를 제외하고 볼 때, 성희롱의 75.0%는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역시 아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면에서는 강간, 또는 강제 추행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성폭력은 유형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아는 사람 사이에서,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나.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응

본 연구에 참가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49.7%의 피해자들이 저항했고, 약 50%는 저항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들이 저항한 방법은 85.3%가 적극적 저항을 시도하면서 탈출을 시도한 경우가 41.1%, 소리를 지른 경우

23.2%, 힘으로 저항하고 싸운 경우 12.6%로 나타났다. 소극적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설득하기 8.4%, 무조건 빌고 애원하기 8.4%, 기지를 발휘해서 생리를 핑계 대기 2.1%, 가해자를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항의 결과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면하지 못한 경우가 52.1%로 제일 많았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신체 폭력은 심하게 입었다가 10.6%로 62.7%가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성폭력을 저항했을 때 가해자의 반응에 대한 개방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가해자의 반응은 폭력이나 구타, 강제적으로 강간, 협박, 흥기 사용, 성기삽입 시도와 구강성교 등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자신의 욕구를 집요하게 충족하려고 끝까지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의 저항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소리 지르자 도망하는 경우’는 겨우 7.7% 이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무리 저항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2중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규정의 성폭력 기준이 저항이 아니라 ‘동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후 피해자들 84.3%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고 15.7%만이 침묵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상담소 등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말한 대상자는 가족이 45.4%로 가장 많았고, 상담소가 42.2%, 친구나 애인 21.6%, 시설 종사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상담소나 성폭력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6.5%정도 밖에 되지 않아 향후 성폭력 관련기관의 대국민적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피해 사실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도와준 경우 24.9%, 상담소에 연락해 준 경우 24.9%를 제외하고,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로해 주고(27.6%),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지를 해주었다(21.1%). 그러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믿어

주지 않거나, 또는 무관심한 경우 등(22.2%)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향상 되고 있지만, 아직도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폭력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58.8%, 수사나 법적인 지원 35.7%, 의료적 지원 34.6%로 나타났고 상담소의 서비스에 대해서 96.8%가 '대체로 만족한다' 수준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조치에 대해서는 55.3%가 만족했지만, 경찰의 서비스가 보통이거나(28.7%), 불만족스런 경우가 17%나 되었다. 이는 상담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96.8%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이므로 향후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가해자 처리 결과는 징역형이 가장 많았는데(31.8%),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50%).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피해자에 대한 친화적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범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 25.6%, 신고를 통해서 남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23.3%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이유에 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신고 방법을 몰랐다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는 상식적인 판단과 행위가 일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성폭력에 대한 신고 및 도움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피해영향과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생활에서의 피해 실태에 관해서 알아본 결과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58.3% 이었고, 신체적 피해가 없는 경우가 36.5% 이었다. 즉 성폭력 피해자는 10중 6명 정도는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성기 부위의 상처가 54.5%로 가장 많았고, 성기 외 신체 부위에 상처도 25.0%였다. 그 외에 하혈(10.7%), 성병에 걸리기도 했다(2.7%). 그러나 신체적인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원하지 않는 임신(22.3%)과 낙태(22.3%)였다. 이 결과는 성폭력피해가 피해여성의 단순한 신체적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이나 낙태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피해자의 전반적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피해 후 병원 치료는 56.6%만이 받았다. 그러나 43.3%가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되어, 상당 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38.3%만이 무료치료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피해여성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국적인 병원확대와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43.3%로, 신체적인 피해가 없거나(42.0%),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10.1%)도 있었지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력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30.4%였다. 이것은 아직도 피해자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폭력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성문제나 순결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87.0%가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63.5%, 우울증 46.7%, 불면증 45.5%, 불안

중 40.1%로서 성폭력 피해의 전형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했다. 또한 성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35.3%, 순결상실감 28.1%로 나타나 성폭력의 문제를 순결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63.4%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자살 기도, 자해 도 19.2%로 나타나 성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를 혐오하거나 믿지 않게 된 경우가 45.3%, 대인기피증이 생긴 경우가 43.3%,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단 혹은 손상 31.3% 등 인간관계에 제약을 가져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 행동장애가 22.0%,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15.3%, 결혼할 기회가 차단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5.3%로써 피해자의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한들이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영향에 대한 심리척도를 이용해서 평가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의 척도에서는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응답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무의미 했다. 불안수준을 보면,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평균이(18.31) 시설의 응답자들의 평균(16.32)에 비해서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시설에 있는 내담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호적인 분위기에 거주하기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원치료를 하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담소의 내담자들 보다는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고 평가 된다. 성폭력이라는 위기를 경험할 때 피해자들에게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분노척도를 통한 피해자들의 분노수준을 평가 해 본 결과, 상담소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평균(29.00) 이 시설의 응답자들의 평균(25.0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았다. 즉 상담소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분노수준이 시설의 내담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피해후유증 척도를 통해서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영역 역시 상담소 이용 응답자의 평균이(59.87) 시설의 평균(56.25) 보다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조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후유증 척도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다니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가 더 심해서 이 수치의 차이가 난다고 하기 보다는 쉼터라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호시설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환경과 피해자들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심리적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Beck의 우울증척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심한 수준의 우울 집단이 43.8%, 중등도 우울집단이 19.3% 이었다. 즉 63.1% 정도의 응답자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의 의하면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라. 저항한 집단과 저항하지 않는 집단 간의 후유증 심각도 비교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저항한 집단과 저항하지 않은 집단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존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저항한 집단이 저항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상황 시 가해자에게 저항한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강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후유증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들 집단이 저항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우울감, 분노감, 성폭력 후유증 척도의 모든 면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보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항을 시도했어도 자신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경험하면서 느낀 좌절감과, 성폭력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서 더 심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서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중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

현 사법제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폭력 당시 저항을 했는가가 중시되고 있는 데,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신체적인 피해와 후유증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피해유형에 따른 심리적 피해정도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성폭력 피해유형(강간 및 유사성교/강제추행/성희롱/성기노출/음란전화/스토킹)에 따른 피해영향의 심각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정도에 있어서 실제로 강간 및 유사성교를 당한 집단1과 정도가 강제추행 등을 당한 집단2 간에 자존감,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자존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우울감, 분노감, 후유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제적인 강간을 당한 집단이 강제추행 등 정도가 덜 한 집단보다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란 사람들의 정신건강, 행복감, 자신감 등의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심한 성폭력을 경험할수록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후유증이 심각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결과라 보겠다.

바. 과거 성폭력의 유형별 실태 및 대응 방법

과거의 강간·유사성교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43.7%이며, 피해횟수는 2~5회가 30.9%로 가장 많았고, 1회가 29.7%, 11회 이상이 26.5%였으며, 6~10회가 13.1%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69.1%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54.3%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69.1%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수록 그 피해후유증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10세 미만이 21.4%, 10~15세 미만이 36.9%, 15~20

세 미만이 22.6% 나타나 대부분 (80.9%) 아동 및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세 미만의 피해가 58.3%로 나타나 그 피해후유증의 심각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전문적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경험률과 피해 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36.5%이며, 강제추행 역시 강간 및 유사성교와 마찬가지로 61.4%가 2회 이상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 역시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수록 그 피해후유증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강제 추행 경험 역시 사건당시 피해자 연령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피해가 84.2%로 어린 시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고 강제추행은 강간과 비슷하게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반복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성폭력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과거의 성희롱 피해경험률과 피해횟수를 보면, 피해율은 17.27%이며, 2회 이상의 피해가 81.9%에 달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한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함이 33.3%로 가장 높았고, 76.6%가 2회 이상 같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성희롱 역시 대부분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 나이는 20대 미만 18.2%, 30대 이상의 중장년 이상의 가해자가 5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연령은 20세 미만이 80.6%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세 미만 아동 피해도 22.6%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시도하는 방법은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악용해서 엄마에게 알면 큰일이다, 또는 아버지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성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가해자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피해 사실을 말한 경우 35.4%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18.8%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성폭력 피해자의 84.3%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고 15.7%만이 침묵한 것에 비교하면 최근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주위에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 성폭력 지원제도 관련 사항

전국적으로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4월 현재 202개소가 있고 보호시설이 17개가 있는데 이러한 상담소 등의 지원제도에 관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해서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최근 1년간 정부 서비스 이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및 향후 이용의사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약 94%의 응답자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84.8%가 실제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또한 약 98%의 응답자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원했고, 90% 실제로 이용할 의사를 밝혔다. 93%의 응답자가 직업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요구를 표현한 것을 보면 응답자 자신의 신체 건강을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성폭력 관련 상담소 필요성은 98%의 응답자 필요성을 주장하고, 94%의 응답자 역시 이러한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즉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상담소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긴급 전화에 대한 필요성(97%) 과 이용의사(76.3%)도 비교적 높았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필요성(97%)도 높았고 이용할 의사도(80%) 높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이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의 확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해바라기, 원스톱 지원 센터에 관한 필요성 역시 높았지만(97.0%), 실제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해바라기 센터(65.3%), 원스톱 지원센터(74.6%)의 이용의사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담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할 의사는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정부 지원제도 우선순위별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1순위는

성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이었고,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이 2순위, 빈곤 가장 생활지원이 3순위, 자립을 위한 대부 서비스가 4순위 이었다. 즉 성폭력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주택 문제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자활 지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입소한 경우에는 출소 후 거주지 등에 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과 시설을 통한 도움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시설의 수용능력이 적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에 대한 욕구 조사에 의하면, 형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강화에는 응답자의 100%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를 확충하는 면에서도 99.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반, 국민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성인식 개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부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시설의 확대와 동시에 전문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을 원하는 면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성교육, 가해자 치료, 10대들의 성교육, 학교 교과 과목으로 성교육을 필히 추가할 것, 군에서의 성교육, 가해자들이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개선 등에 관해서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포함한 예방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성폭력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면, 응답자들은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가 94%,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95%로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강화 94%, 장애 유형별 전문 상담자 지원체계 강화가 93%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해야 하고 장애인 공간 조항에서 항거 불능이라는 용어 삭제도 강하게 촉구했다. 즉 장애인들의 인권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적 의식차원에서 교육과 이들을 위한 시설, 상담자들의 확보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상담소 이용관련 사항

성폭력 관련기관을 이용한 횟수와 만족도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여성 장애인 상담소, 이주상담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91~100% 정도의 만족도를 보고했다. 그러나 여성 긴급전화 1366(58.4%), 원스톱 지원센터(73%), 해바라기센터(67%)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물론 응답자 수가 적어서 이 자료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여성 긴급전화,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센터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상담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상담소를 알게 된 경위는 친구, 친지 등 아는 사람들의 권유(32.0%), 공공 기관(20.0%), 매스컴(22.1%)순으로 나타나, 42.1%만이 매스컴이나 공공기관의 경로를 통하여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상담소를 찾은 이유에서는 심리상담 및 치료(32.8%),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26.0%), 및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을 알기 위함(12.7%) 순이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욕구도 많았다. 성폭력 상담소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에 관해서 응답자의 95%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해서 상담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이 상담소에 기대하는 서비스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78.5%)과 의료적 법률적 지원(12.9%)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의 역할 중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 치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인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소수의 응답자(7명)가 의견을 피력했는데,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과 비체계적인 상담 절차,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을 예를 들었다. 상담소의 환경 개선과 상담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이용 중인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는 97%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경우에 상담의 내용에 대해서 응답받는 데 걸리는 시간(79%), 상담소 방문을 위한 교통편(67%)에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고 했다. 인터넷 상담 응답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응답이 필요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에게 성폭력 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에 관한 필요성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요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지원(89%),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및 치료 교육(98%), 집단 상담 교육(82%), 예술, 문화, 체육 프로그램(90%)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치료비 지원(88%),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81%) 분야에서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했다.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필요성의 욕구(75.7%)를 보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 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직업 지원 기대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의 강화, 법적 의료적인 지원의 강화, 이들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 사회 복지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담소 서비스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응답자는 1순위는 개별 상담 및 치료, 2순위는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 3순위는 치료비 지원 및 의료 기관 소개 순위를 보고했다. 즉 응답자들은 상담소 기능에 심리치료 분야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담소 이용자들에게 개방질문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에 관한 건의 사항을 말하게 한 결과 이용자들은 대체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상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상담원들의 대우가 낮아서 이들이 자주 이동하게 되어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못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다.

또한 상담에 질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면접상담의 강화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내담자의 정서적 지지를 겸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구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포함한 추후 상담도 원하고 있었다. 상담원들의 자질 향상과 내담자들에 대한 질적인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차. 보호시설 관련 사항

성폭력 관련 보호기관에 입주하면서 성폭력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한 만족도는 성폭력 상담소는 89%, 여성 긴급전화 81%, 성폭력보호 시설 92%, 청소년 성상담소 88%, 해바라기센터 75%, 원스톱 지원센터 93%, 여성 장애인 관련 상담소 100%로 다양한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는데,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친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된 경로를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39.1%)과 정부기관(2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 원스톱 지원센터(12.6%)이었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9.2%) 적었다. 성폭력 보호 시설에 대한 정부나 사회복지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나 권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 시설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및 상담이 40.2%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26.4%로 가해자를 피해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심리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동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호 시설에 입주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약 36%만이 입주할 수 있었고 많은 입주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보호시설의 입주 동기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폭력 후유증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라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들이 보호 시설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보호 시설 입주자들은 62.1%가 보호 시설 입주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고, 보호시설 연장 희망 기간을 16~30일(35.3%)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1~45일(26.5%)이었다. 즉 보호 시설의 이용자들은 보호 시설에서 평균 1개월 정도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로써 시설 이용자들의 보호 시설 연장을 적절하게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78%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보호시설

에서 피해 후유증 치유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 면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64.4%)고 보고 했고 가해자와의 격리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낮게(8.0%) 보고했다.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와 정서적인 안정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전제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64.5%만이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는 보호시설의 심리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호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83%의 만족함을 보고하였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7%, 위생상태의 만족도는 79.4%, 건물의 안정성의 평가에도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호시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에서는 70%의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호시설이 거주자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면서 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직원들이 거주자에게 관심을 가지고(80%), 거주자를 존중하며(82%), 필요한 지원들을 적절하게 연계해 주는 면의 만족도(77%)들이 대체로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법률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는 78%, 개별 상담 및 치료는 88%, 집단상담 및 치료는 93%,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87%, 성폭력 대처 훈련은 89%, 치료비 지원 및 의료기관 소개는 86%,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정보제공은 87%가 만족스럽다고 보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지원과 의료적인 지원분야에서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표현했다. 그러나 성폭력 후유증을 치료하는 개인 상담 및 치료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개인 심리치료를 향상해야 함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예술문화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치료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아니기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 극복과 자신감 향상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심리적인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바라는 것은 시설개선과 확장이었다. 즉 잠자

는 조건 개선, 목욕탕 등 시설 개조와 시설의 위치가 유흥가에 인접한 곳에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것도 표현했다. 또한 시설의 프로그램 개선, 규율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시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면 했다. 또한 거주자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용돈이 없고 또래가 즐기는 MP3 등의 전자제품 등이 없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주자도 있었다.

카. 피해자의 심층 사례분석 결과

심층 사례분석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후 증상, 향후 계획,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누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응답자 55명에 관한 인터뷰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석 결과이다.

피해 후 증상에 관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은 불안이었고,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후유증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다. 즉 이들은 성폭력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불안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불안에 대한 대처와 적극적인 심리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불안 다음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증에 관련된 증상이었다. 이들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수면장애, 주의집중 곤란,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도의 피해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는데 보호시설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아버지 또는 사촌 오빠인 경우에 친족 가해자에게 강한 분노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좌절감도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불신, 대인 기피, 회피와 주위의 친한 친구들과도 관계를 단절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더러워졌고 순결을 상실했다는 사고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자신의 순결 상실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일부의 피해자들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우울증에 빠진 피해자들이 내면적으로는 순결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나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조사자들은 성폭력 피해 결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자신감 결여 및 죄책감과 수치

심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출했다고 보고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지지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출한 것으로 추측되는 데 청소년들일 경우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업을 할 수 없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는 취직할 계획이나 직업 교육 또는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약 36%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소자들 중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20%였다. 이들은 학업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미래 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이들에 대한 학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시책이 중요하다.

제 2 절 정책 제언

1.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범죄자 처벌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정책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둘러싼 여성인권의 현실은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의 일상은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상당수의 성폭력범죄자들이 그 위해도에 상응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인권보호장치 역시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활용이나 접근 면에서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찾았으며, 대부분이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2003년 이후 성매매 방지정책이 크게 변화된 데 비해 상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정책은 계속 비슷한 수준에서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정책개발 및 기존의 정책을 견고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폭력 관련정책이 15년 이상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중장기계획은 시도는 있었으나,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성폭력관련 정책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다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4가지 기본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입법정책(입법부) - 성폭력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의 실효성 제고
- 예방환경정책(교육부·행자부·문화부) -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의식전환
- 피해자보호정책(여가부·법무부·행자부) - 피해자 권리보호 및 실질적 지원대책
- 가해자재범억제(법무부·행자부·청소년위원회) -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비

2. 성폭력 관련법제의 정비

지난 8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담은 법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가. 성폭력의 패러다임 및 개념규정의 전환

성폭력을 다루는 형법 제32장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 되었으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규정 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법률적 성폭력 기준은 피해자에게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당할 시 저항을 시도한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성폭력 상황에서 저항의 유무보다는 ‘동의’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법적 의식전환의 개선이 시급하다.

나. 형법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 포함과 처벌법과 보호법의 분리 입법

현재 성폭력에 관한 법적 조치는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되어있어 특별법이 갖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서 성폭력을 다룰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중에서 가해자처벌에 관한 조항은 형법으로 가져가고, 특별법은 피해자보호법으로서 자리매김하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표 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

	구성요건	특이점	법정형	형법전	
				구성요건	법정형
제5조 특수강간도 강간 등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의 2개 이상의 죄를 묶어서 하나의 범죄로 삼고 가중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 등 + 제297조 (강간) 등	3-18년
제6조 특수강간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수단이나 도구상 가중된 불법성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강간), 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벌금
제7조 친족관계 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강제추행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따른 가중처벌	5년 이상의 징역(강간), 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벌금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있는 여자를 간음, 사람을 강제추행	대상이 장애인이어서 가중처벌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죄와 동일	제299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강제추행죄 와 동일
제8조의 2 13세미만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교행위	대상이 미성년자이어서 가중처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교행위)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동일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5조1항, 6조, 12조의 죄를 범한 자가 상해결과	특별법의 중한 행위로 인한 상해결과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고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실)	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죄	5년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치사	제5조, 8조, 12조 또는 형법 강간죄 및 미수범이 살인의 결과	특가중과 더불어 형법전의 규정 개정	사형 또는 무기(고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01조의 2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다.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의 확대

현행법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보고,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은 강제 추행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아내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도입

아내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현행법의 개정과 비동의간음의 범죄화가 필요하다.

마. 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친고죄는 피의자(피고인)측으로 하여금 합의만 끌어내면 형사소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온갖 형태로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바. 공소시효 정지 및 연장

성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간과한 채 일반범죄와 똑같은 규정에 따르고 있다. 강간의 경우 7년이 공소시효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하며, 아동성폭력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확대 등

성폭력특별법에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와 영상물 촬영의 확대, 장애인의 ‘항거불능’ 비공개신청권의 확대, 신뢰관계자 동석의 확대, 역고소 피해자 보호 등의 피해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판증

심주의로 갈 때,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철저히 요청된다. 또한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집행유예 등 현행법이 정하는 형량보다 훨씬 낮게 선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형기준법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아. 취약계층 성폭력 피해자를 고려한 입법정책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성폭력특별법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성전환자, 남성, 성매매여성, 외국인여성, 동성애자등 기존의 정조, 순결중심의 성폭력논의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구금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3. 성폭력 예방 및 대국민 인식개선

현재 정부는 성폭력추방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으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2월22일) 기념행사 추진(‘용산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아동 장례일을 민·관 합동으로 기념함)한 바 있고,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급 학교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성폭력 특별교육 이수 방안 추진, 대상에 따른 수준별 성폭력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방안 마련,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장애인 관련과목 포함 및 여성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 보급,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건전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설치·운영(전국 16개 시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전성문화 체험교육관 설치·운영)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캠페인성 행사나 의례화된 일회성 강의보다는 여러 경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다차원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공동협력 사업의 개발

무엇보다도, 학교기반에서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행자부 및 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교육자료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련교육을 통합,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 교육체계 도입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
- 폭력예방교육 전담교사 육성 및 교육시간확보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간 폭력예방교육 연계체계 마련

다. 연령별·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진(전문강사은행) 인력풀 구성

학교기반을 통하여 교사대상 직무교육 및 부모대상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각 대상별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운영계획에 교육시간이 확보되도록 명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성교육 전문 연수과정(60시간 이상)개설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추진상황 점검 시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상황 점검 실시 및 학교관리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 성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사법담당자·의료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마. 보육 및 교육시설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보육시설 내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문제
- 학교 내 발생하는 성폭력 관련 문제
- 관련 종사자의 성과 폭력에 대한 무지 또는 중요성 배제 태도의 문제

4.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적·의료적·경제적 지원체계 강화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었고, 성폭력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인 상처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쉼터 등에서 퇴소 후 경제적인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다니거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학업에 대한 지원과 취직 준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

1) 국공립병원에서의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성폭력 피해 의료 지원 협력’이 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공립 병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협조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의료인들의 인식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내담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병원 측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협조했을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 하기 때문이다.

3) 의료비지원 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현재 일선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구청의 서식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수항목으로 되어있다. 앞으로 의료지원금을 받는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형식으로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이를 암호화하는 등 비밀보장이 가능

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의료비 지급 업무담당자의 효율화

현재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는 일선 상담소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상담소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의료비 지원 및 홍보, 지급, 지급 이후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를 위한 업무를 상담소의 여타 업무와 함께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원스톱지원센터처럼 진료현장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 제언과 감시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5)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에 대한 제도 현실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은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진료 전담 의료기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차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에 이유로 수술 및 진단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거나,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한다. 이는 인공유산 수술 시기가 늦어질수록 산모와 태아에게 건강상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인공유산 결정의 권리가 산모에게 있음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인공유산 여부에 대한 결정의 주체는 당연히 임신 및 출산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산모에게 있다.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에 이유로 법적인 판단이나 고소 여부에 인공유산 결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임신 및 출산의 과정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고소한 사건에 한해서 시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율이 10%미만인 우리사회 현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체계의 개선

1) 법률지원 업무 담당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제도 보완

그동안 민변에서 진행해오던 법률지원 업무가, 2007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인 편견이 반영된 법현실을 기준으로 승소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례들이 일선 상담소에서 접수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형사 고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형사 고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상담원과 변호사들이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없는 관계로 내담자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행정망을 통해 저렴한 예산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예산을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2) 성폭력 수사전담제도의 효율적 운영

성폭력 피해자 수사 전담제도가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경을 전담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수사 현장에서는 몇 명 되지 않는 여경의 업무만 늘어날 뿐, 전담 수사관이 몇 달 안에 수차례 바뀌고, 여경에게 진술한 이후 사건 담당 경찰에게 반복하여 다시 진술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등, 전담 수사관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검찰에도 성폭력 전담검사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잦은 인력변동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전담검사를 확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 수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단지 경·검찰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반한 수사 방식의 전문성이다. 따라서 성폭력 수사 전담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의지 있는 인력 배치와 교육이 시급하다.

3) 사법보좌인 제도의 도입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뢰 관계있는 자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동석할 것이 권리로 보장되어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사법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자립지원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의 쉼터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검찰,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의료계 등 지역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형성해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활성화와 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취업, 직업훈련, 주거지원) 마련, 피해 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지역 내 연계망의 업무를 위한 지침 수립, 피해자 공동 지원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유 서비스 강화

1) 성폭력 피해후유증의 최소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향상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후유증에 관한 본 연구 결과 63%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응답할 당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약물을 포함한 적극적인 심리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

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예술 치료, 문화 또는 체육 행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치료 기법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치료 기법이고 전문적인 치료기법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에 과학적이고 검증된 치료 기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성폭력 상담 개인 및 집단 치료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

- ① 여성주의적 관점 : 양성 평등의 여성 주의적인 관점이 모든 치료 프로그램에 중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성의식을 수정하고 양성의 성적인 자율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점이 치료 전 과정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
- ② 인지행동 치료적인 관점 : 성폭력의 핵심은 성폭력을 경험한 후 피해자들이 가지는 인지적인 왜곡이 피해 후유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법은 인지 행동 기법이다.
- ③ 사회기술 훈련 :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후유증에 관한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한 후에는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에는 이러한 기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와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반복적이라는 것을 감안 하면, 데이트 성폭력, 아는 사람과의 성적인 경계성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나. 성폭력 상담소의 전문성 강화

1) 성폭력 상담소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립

현재 성폭력 상담소는 2007년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02개소가 있다. 성폭력 상담소가 많이 설치되어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기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지원 상담소는

서비스 구역을 설정하거나 할당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의 확충보다는 상담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폭력 후유증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불안, 우울, 분노, 자존감, 대인관계, 신체적인 부정적 영향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소를 찾는 내담자는 심리적인 치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성폭력 후유증 치료가 실제로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① 성폭력 상담사들의 전문화

미국의 경우에 성폭력 상담소에 종사하는 요원들은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 전문가, 상담사 등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폭력 상담분야에 64시간의 훈련을 받고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상담 분야에 비-전문가가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이 성폭력 상담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상담훈련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로 제한해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성폭력 상담사들의 대우 향상

성폭력 피해자들도 본 연구 조사에서 성폭력 상담소의 열악한 환경을 알아차리고 시설과 종사자들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성폭력 상담소 직원의 현실적인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③ 성폭력 상담원 심화 교육 강화

실제로 상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과 실습들을 강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상담원들의 보수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④ 성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의 마련과 자격관리제도의 도입

성폭력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상담원의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제도화 강화가 필요하다.

다. 원스톱 지원센터 및 보호시설의 확충

보호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은 성폭력 발생 후 즉각적으로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호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겨진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의 불편, 대기자가 많아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점 등 때문에 불만을 들어냈다. 따라서 한 곳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장이 필요하겠다.

라. 장애인 피해자들에 특화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거 문제, 생계 문제, 후속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성폭력특별법 8조 개정의 시급

장애인 간음조항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가 요구된다. 범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무지,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른 판결,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 장애인권의 걸림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2) 사법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교육과 전문성 있는 수사교육 및 매뉴얼

장애유형별 이해와 장애 인권의식,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교육을 통한 수사의 전문성확보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장애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사방식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피해자 비디오진술녹화제도 역시 증거채택의 어려움과 더불어 각 장애유형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촬영 등(보통 피해

자당 2회 이상 진술) 이중삼중의 고통이 야기되고 있다.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전문성 및 대변권 보장이 요구되지만, 변호인 등 사법관계자들의 낮은 장애인식과 이해부족으로 피해자인권침해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이해에 관한 교육용 지침서 등을 통해 인식개선을 이루어가야 한다.

3) 장애인생활시설, 교육시설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의무화

사회복지기관, 특수학교 및 교육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성폭력문제 심각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관련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인권교육)하고, 피해위험에 노출가능성이 높은 장애인학생들에게는 보다 특화된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포괄)설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흡으로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문제 및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실태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며, 기존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지원체계와 시스템만으로 폭력유형별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여 종합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부모·형제 등 가족지원, 장기적인 자립생활 및 사회복귀 준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5)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확충

쉼터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조건 때문에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필수적인데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갈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전국에 3곳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6)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사회통합과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대책

쉼터입소 피해자들 역시 가족기능의 약화와 지역사회 인식부족, 폭력의 재발위험 때문에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 안전한 쉼터에서 장기간에 걸친 폭력후유증을 치유하고 사회통합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강구해야 한다.

7) 상담소, 보호시설에 상담원등 추가인력의 충원 및 처우개선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지원의 경우 방문상담, 법률지원의 비율이 높고, 보호시설에서도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인 지원과 24시간 보호(세탁, 가사, 운전, 활동보호)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8)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역량강화 지원

우리나라에는 15개 장애유형이 있으며 각 장애유형의 특수성이 고려한 제도와 정책 필요,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동·노동·건강 등 기본권을 보장,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회적 약자로 각종 범죄의 노출 및 폭력의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

마.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지원센터의 확장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만13세 이상 아동(미성년)피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는 성인과 구분: 만13세 이상이라 하여도 18세까지는 미성년으로 자신이 동의한 행동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성인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행동하지 못한다. 형법의 의제강간의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문가에 의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동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국가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포괄적·체계적인 아동성폭력 정책 개발 및 마련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 ① 가정폭력에 가려진 성학대 :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모(母)는 이미 학대 증후군을 형성하여 아동의 성학대를 인지하여도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해진 상태이므로 아동을 성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게 되어 성학대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도 가정폭력을 다루는 가정법원 또한 성학대 부분을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한 가족 해체 위험 : 성학대가 가족내 친부에 의한 경우 가족 유지 또는 처벌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을 해체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③ 아동의 정상 성 발달과 이상행동의 차이, 재피해 경험의 원인, 후유증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등 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사 연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아동의 보호환경 개입 기능강화와 확대 증설

아동 또는 미성년은 부모 즉 보호자의 보호와 영향 아래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런 보호환경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건강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이 피해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보호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기능 또한 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 ① 부모의 정신건강 이상으로 아동에게 피해 진술 강요하거나 피해가 있어도 회복을 위한 돌봄이 어렵다.
- ② 양육태도 및 인식의 문제: 아동 양육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성 인식 및 의식의 경직으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서적 방임이 이루어져 아동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정서적 안정이 제공되지 않는다.
- ③ 부부문제 또는 가족 문제: 내제해 있던 부부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동의 피해로 수면위로 드러나 아동의 피해 회복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다.
- ④ 아동보다 더 심한 심리적 후유증: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심한 경우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의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아동에게 불안과 위기감 전달되어 후유증 회복에 방해가 된다.

⑤ 부모의 어린 시절 미해결된 성폭력 피해 후유증: 무의식 속에 숨겨놓았던 피해의 후유증이 발현 또는 폭발하게 되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회복에 필요한 활동보다 복수 또는 미해결된 자신의 감정에 집착 또는 몰입한다.

3) 아동성폭력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산 및 확보

아동성폭력 지원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각 학문 간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없다면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내용은 퇴보하게 마련이다. 전문인력의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의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으로 아동성폭력 피해 및 예방 개입 어려움이 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계속해서 발달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발달 단계별로 인지수준, 행동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과 아동의 발달 특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요구 되는데 현 성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으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성폭력 가해자 재범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가. 「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사방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06. 8. 정부발의안)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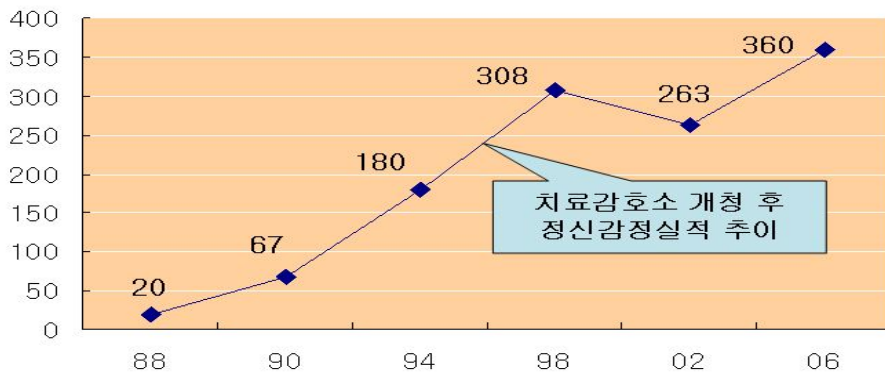
·법의 적용범위
- 재범가능성 높은 강력범죄 12개 유형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수형자·피의자 또는 범죄현장 등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
- 검찰총장 : 특정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업무
- 경찰청장 : 특정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 대한 유전자 감식정보업무
·유전자감식자료 채취방법 및 정보검색,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 설치 등

나.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제도의 개선

날로 흉포화·누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강간범 중 전과4범 이상인 경우가 27.9%에 이르는 등 성폭력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교정·치료를 위한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며, 현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일부 성폭력 수형자에 한하여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치료감호를 위하여 정신감정 의뢰를 받은 성범죄자는 175명이며, 이중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는 38명(35.2%)에 불과하였다. 현행법상,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 대상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치료감호를 받는 성폭력 수형자의 비율이 낮고, 교정·치료를 전담하는 인프라(예: 성폭력전담 치료감호소)는 부재하다. 아동대상 또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전문적 정신감정 인력 및 수용·치료시설은 전국에 치료감호소(공주)는 1개소뿐이며, 성폭력전담 치료감호소는 없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 또는 정신병원이 운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43개의 사회치료시설에서 이들 범죄자에 대한 수용, 치료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성폭력범죄자 전담 수용·치료시설은 전무하다. 현재 치료감호소를 이용하더라도 최대 치료가능 인원은 60명 선에 불과하며, 교정시설 수감 중인 소아기호증 의심 수용자 670여명에 대한 수용·치료는 불가능할 상태에 있다. 따

라서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자에게 확대·적용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처벌 및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 선고율을 높이고, 교정 시설 내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8-1] 치료감호소 개청 후, 정신감정 실적 추이



자료: 법무부

최근 정부는 외국의 입법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법학자, 정신의학자 등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법적 문제점, 입법방향, 대상범위, 집행방법 등을 확정하여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07.6.)하였고, 청주소년원을 활용하여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안을 골자로 [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안)]을 추진('07. 12.) 중이며, 수도권 지역에 100명 수용규모의 전담 감정센터 설치하기 위한 [전문 정신감정센터] 설치를 추진('08. 1.)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법원 등의 정신감정의뢰가 급증하나,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정신감정 수행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시, 전문 감정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인력, 예산을 확충하여 정신감정센터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적 감정과 평가사정을 위한 국립감정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성폭력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6. 12. 22.)하였고, 법률시행 후 2년 내인 2008년까지는 양형기준이 제정될 예정이다.

라. 성폭력 범죄자의 교정교육체계 마련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법 집행기관에 따라 산출결과가 다르기는 하나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경찰청 통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 사범 기결수의 경우 초범이 73.7%, 2범 이상이 34.3%로 나타나(2006. 8. 31) 동종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보호관찰의 대상에게는 교정교육 등과 같은 처우가 집행되고 있는 반면, 실형선고를 받은 수감자에게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성폭력범죄자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필요 예산 배정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마.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집중보호관찰·사후관리 강화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도 소년이나 성인 구분 없이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거나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폭력사범 보호관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실효성 있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개발, 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한편, 고위험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집중보호관찰

지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 현재 법무부는 성폭력사범의 14% 이상을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확대('07. 9.), 재범 고위험 성폭력대상자 감독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 팔찌)의 시범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 사후관리 등이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 실효성 있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에 의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인권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성희롱 가해자나 학교 성폭력상담실을 통해서 가해자 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성폭력 가해자 등, 현재 성폭력 가해자 행동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다양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대부분은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민간단체들은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 활동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 교육의 필요성이나 교육의 목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피해생존자 지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가해자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연령, 가해행위의 특성 등 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일체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 업무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전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사. 미성년가해자에 특화된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시스템 마련

① 연령의 저연령화 현상 :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에서의 성폭력 가해행위 발생. 형제, 친인척 간에 발생한 성폭력 행위의 경우 처벌이나 교정, 치료보다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성년가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위기개입 및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② 체계적인 성인식 및 의식 형성 과정의 부재 :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 발달단계마다 이해수준과 성장 수준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진행 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일회성 또는 발달 단계와 발달 수준에 따른 또래 문화를 배제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한 성인식과 의식이 형성되기 어렵다. 각종 음란물에 쉽게 노출이 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성인식과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성행위에 대한 왜곡 속에서 성폭력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특화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③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문제해결 시스템과 예방대책의 부재 : 교육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처리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강은영, 『주요국의 아동성학대 개입 및 보호체계』, 2006 아동기획포럼: 효과적인 아동 성학대 개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굿네이버스 세미나 자료집, 2006
- 강은영, 『주요국의 아동성폭력 신고 및 보호명령제도』, 『범죄방지포럼』 제21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7.
- 강진철, 『성폭력, 페미니즘, 그리고 법이론』, 2005.
- 고선영·양종희·이수정,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특집호, 2004.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소년의 성폭력가해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권창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통제수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법조』, 제53권 제4호, 법조협회, 2004.
- 김광준, 『청소년 성폭력: 성폭력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경험』,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48권, 제7호, 2005.
- 김석균, 『성폭력범죄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김승권·이경혜·김유경·조애저,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김은경,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김재중, 「대체형벌로서의 전자감시제도」, 『법학연구』 제17권 2호, 2004.
- 김한균·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05.
- 김혜정, 「인격(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05.
- 남현미,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노주희, 「성폭력범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민병근·김현수, 성비행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 제31권 제3호, 1992.
-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 2006.
- 법무부·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 변혜정, 조중신, 현혜순, 『성폭력피해자치유프로그램』, 여성가족부, 2005.
- 신의진(2007), 한국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정신의학적 특징과 치료적 개입,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움, 2007.
- 심영희 외,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2005
- 여성가족부, 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 5대폭력 및 부조리 근절대책 관계장관

- 회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정책보고서, 2006. 7; 2007. 1; 2007. 7.
- 여운철,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연구」, 『교정연구논집』, 제3호, 법무연수원, 2007.
- 여의도연구소,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여의도연구소, 2005.
- 원혜옥, 소년법 개정안 개요, 소년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소년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2007.
- 윤덕경·김인숙,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명희,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수정, 고려진,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치료처우 강화방안」, 『한국범죄학』 제1권 제1호, 대한범죄학회, 2007.
- 이영분, 「아동 성폭력 현황 및 그 치료와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8권, 제1호, 1999.
- 이영숙,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4권, 제5호, 2005.
-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 이원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부설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02.
- 이윤희,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과 피해영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민윤리학 과부교수 논문, 2001.
-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7.
- 이재상·안경옥, 「사회내처우의 평가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전영실,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 및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

- 연구원, 2007.
- 전영실·이천현·박형민·윤옥경, 『성폭력·성매매 가해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채규만, 『성피해 심리치료』, 학지사, 2004
- 최상섭·유미경·김정현,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평가」,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임상논문, <http://www.forencure.go.kr>, 2006.
-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최인섭·전영실,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년 상담통계』, 2005
- 한국성폭력상담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가해 예방대책』, 2006.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 자료집, 2006. 3. 15.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요구하는 2007 대통령선거 7대 영역 60대 정책과제, 2007.
-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적 형사법과 형사정책, 又凡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 현혜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1997.
- Abbey, A., Buck, P. O., Zawacki, T., Saenz, C.(2003), "Alcohol's Effects on Perceptions of a Potential Date Rap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4(5): 669-677.
- Abbey, A., McAuslan, P., Ross, L. T.(1998), "Sexual Assault Perpetration by College Men: the Role of Alcohol, Misperception of Sexual Intent, and Sexual Beliefs and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2): 167-195.
- Abramson, P and Hayashi (1984), 'Pornography in Japan', in N. Malamuth and E.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Y.:Academic Press; 178-183.

- Akers, R. L.(2005),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한국어판: 민수홍외역, 「범죄학이론」, 나남출판사)
-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1986), *Final report of the 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omen's Safety Australia* (1996)
- Barbareem, H. Seto, M. Serin, R. Amos, N. & Preston, D.(1994), "Comparison between Sexual and Non-sexual Rapist Sub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1), 95-114.
- Baron, L. (1987), 'Immoral, inviolate or inconclusive?', *Society* 25(5):6-12.
- Baron, L. and M. Straus (1987), 'Four theories of rape: a macrosociological Analysis', *Social Problem* 34(5):467-489.
- Baron, L. and M. Straus (1987), 'Legitimate violence, violent attitudes and rape: a test of the cultural spillover theor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in Press.
- Barry, K. (1979), *Female Sexual Slave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Basile, K. C.(2002), "Prevalence of Wife Rape and Other Intimate Partner Sexual Coerc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Violence and Victims*, 17(5): 511-524.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155-162.
- Bergen, R. K., Bukovec, P.(2006), "Men and Intimate Partner Rape: Characteristics of Men Who Sexually Abuse Their Partn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10): 1375-1384.
- Bohner, G., Siebler, F., Schmelcher, J.(2006), "Social Norms and the Likelihood of Raping: Perceived Rape Myth Acceptance of Others Affects Men's Rape

- Procl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86-297.
- Boyd, N. J., Hagan, M. and M. E. Cho.(2000),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 Review of the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2): 137-146.
- Brandl, B., Heisler, C. J., Stiegel, L. A. (2005), "The Parallels Between Undue Influence, Domestic Violence, Stalking, and Sexual Assault."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7(3): 37-52.
- Brecklin, L. R., Ullman, S. E.(2002), "The Roles of Victim and Offender Alcohol Use in Sexual Assaults: Result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1): 57-63.
- Brown, S. L., Forth, A. E.(1997), "Psychopathy and Sexual Assault: Static Risk Factors, Emotional Precursors, and Rapist Subtyp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5): 848-857.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 Men, Women and Rape*, N.Y. : Simon and Schuster.
- Bryden, D. P., Lengnick, S.(1997), "Rap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87(4): 1194-1384.
- Burgess & Holmstorm, *Rape Crisis and Recovery*, Robert J. Barady, Co, 1979
- Burt, M. R.(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ameron, C. A., Stritzke, W. G. K.(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Bla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983-1008.
- Campbell, R., Wasco, S. M. Ahrens, C. E. Sefl, T. Barnes, H. E.(2001), "Preventing the "Second Rape":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Community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2): 1239-1259.

- Carmody, M. (2003), "Sexual Ethics and Violence Prevention." *Social and Legal Studies*, 12(2): 199-216.
- Casey, E. A., Nurius, P. S. (2006), "Trends in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A Cohort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21(5): 629-644.
- Chandy, J. M., Blum, R. W., Resnick, M. D.(1996), "Gender-Specific Outcomes for Sexu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0(12): 1219-1231.
- Check, J and N. Malamuth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344-56.
- Chermack, S. T., Taylor, S. P. (1995), "Alcohol and Human Physical Aggression: Pharmacological versus Expectancy Effec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4): 449-456.
- Cleveland, H. H., Koss, M. P., Lyons, J.(1999), "Rape Tactics From the Survivors' Perspective: Contextual Dependence and Within-Event Independ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5).
- Cobley, Cathy. (2005), *Sex Offenders: Law, Policy and Practice*, Jordan Publishing Limited.
-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1970),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New York:Bantam Books.
- Conveney et al. (1984), *Sexuality Papers: Male Sexuality and the Social Control of Women*, London: Hutchinson.
- Coombes, R., (2003), "Adolescents who Sexually Abuse", in Matravers, A(ed.), *Sex Offenders in the Community: Managing and reducing the risks*, William Publishing.
- Cyr, M., McDuff, P., Wright, J.(2006),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Female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8): 1000-1017.

Dahrendorf, N., Shifman, P. (2004), "Sexual Violence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A Need for More Focused Action." *Refugee Survey Quarterly*, 23(2): 7019.

Davies, M., Pollard, P., Archer, J.(2006), "Effects of Perpetrator Gender and Victim Sexuality on Blame Toward Male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3): 275-292.

Doren, D. M.(1998), "Recidivism Base Rates, Predictions of Sex Offender Recidivism, and the "Sexual Predator" Commitment Law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6(1): 97-114.

Dworkin, A. (1981),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N.Y.: G. P. Putnam's Sons.

Elliana Gil, *Treatment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1990

Erooga, Marcus. Masson, Helen.(2006),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Sexually Abuse Others: Current developments and practice responses*, Routledge.

Felson, R. B., Messner, S. F. & Hoskin, A.(1999), "The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nd call the police in assaults.", *Criminology*, 37: 931-947.

Felson, R. B., Pare, P. P.(2005), "The Reporting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by Nonstrangers to the Poli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7(3): 597-610.

Finkelson, Laura Oswald, Robert.(1995), "College date rape: Incidence and reporting." *Psychological Reports*, 77(2): 526.

Fisher, B. S., Daigle, L. E., Cullen, F. T., Turner, M. G.(), "Reporting Sexual Victimization to the Police and Others: Results From a National-Leve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1): 6-38.

Ford, M. E., and J. A. Linney(1995),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Violent Nonsexual Offenders, and Status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 56-70.

- Gartner, R., Macmillan, R.(1995), "The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on reporting crimes of violence against women."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7(3): 393.
- Giddens, A.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배은경·황정미(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 Gilmore, D. (1990), *Manhood in the Making-Cultural Concepts of Masculinity*,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 Goodrow, K. K. and Mee-Gaik Lim(1998), Attachment Theory Applied to Juvenile Sex Offending,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27(1): 149-165.
- Graves, R., Openshaw, D. K., and G. R. Adams(1992),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Social Skills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6(2): 139-153.
- Greenberg, D., Bradford, J., Firestone, P., Curry, S.(2000), "Recidivism of child molesters: a study of victim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Child Abuse & Neglect*, 24(11):1485-1494.
- Haffajee, R. L.(2006), "Prosecuting Crimes of Rape and Sexual Violence at the ICTR: The Application of Joint Criminal Enterprise Theory ." *Harvard Women's Law Journal*, 29(2): 201-222.
- Halley, J. Kotiswaran, P. Shamir, H. Thomas, C.(2006), "From the International to the Local in Feminist Legal Responses to Rape, Prostitution/Sex Work, and Sex Trafficking: Four Studies in Contemporary Governance Feminism." *Harvard Women's Law Journal*, 29(2): 335-424.
- Hanson, R. K., Bussiere, M. T.(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 Harrington, C.(2006), "Governing Peace-keeping: The Role of Authority and Expertise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and Trauma." *Economy and Society*, 35(3): 346-380.
- Hetzel, M. D., McCanne, T. R.(2005), "The Roles of Peritraumatic Dissociation, Child

- Physical Abus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dult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29(8): 915-930.
- Home Office(1997), *Observation on Sex Offender Register in the US*.
- Horavath, M. A. H and J. Brown(2006), " The Role of Drugs and Alcohol on Rape",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46(3): 219-228.
- Humm, M. (1990), *The Dictionary of Feminist Theory*, Ohio State Univ.
- Jackson, S. and Sue Scott (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Female Sexuality", in *Feminism and Sexuality: A Reader*, Columbia Press.
- Jefferson, T. (1996), 'Introductio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3):337-347.
- Jensen, G. F., Altani Karpos, M.(1993), "Managing Rap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Behavior of Rape Statistics.", *Criminology*, 31(3): 365-385.
- Jewkes, R., Dunkle, K. Koss, M. P., Levin, J. B., Nduna, M., Jama, N., Sikweyiya, Y.(2006), "Rape perpetration by young, rural South African men: Prevalence, patterns and risk factors." *Social Science & Medicine*, 63(11): 2949-2961.
- Johnson, H.(2001), "Contrasting Views of the Role of Alcohol in Cases of Wife 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 54-72.
- Johnson, I. M., Sigler, R. T.(2000), "Forced Sexual Intercourse Among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95-108.
- Johnson, Scott A. (2007), *Physical Abusers and Sexual Offenders: Forensic and Clinical Strategies*, CRC Press.
- Kersten, J. (1996), 'Culture, Masculinities and Violenc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3): 381-395.
- Koss, M. P.(1993), "Detecting the Scope of Rape: A Review of Prevalence Research Metho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2)" 198-222.
- Kosson, D. S., Kelly, J. C., White, J. W.(1997), "Psychopathy-Related Traits Predict

- Self-Reported Sexual Aggression Among Colleg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241-254.
- Krauss, B. J., O Day, J., Godfrey, C., Rente, K., Freidin, E., Bratt, E., Minian, N., Knibb, K., Welch, C., Kaplan, R.(2006), "Who Wins in the Status Games?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an Emerging Single Standard among Adolescent Wome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87(-): 56-73.
- Lab, S. P.(2004), *Crime Prevention-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Anderson Publishing.La Fond, John Q. (2004), *Preventing Sexual Violence: How Society Should Cope With Sex Offend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Lalumiere, M. L., Quinsey, V. L.(1996), "Sexual Deviance, Antisociality, Mating effort, and the Use of Sexually Coercive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2): 33-48.
- Lambert W. L., M. Triandis and M. Wolf (1959), 'Some correlate of beliefs in the malevolence and benevolence of supernatural beings : a cross-societal stud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162-69.
- Lisak, D., Ivan, C.(1995), "Deficits in Intimacy and Empathy in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3): 296-308.
- Loh, C., Gidycz, C. A.(2006),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nd Sexual Assault in Adult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32-749.
- Lonsway, K. A., Fitzgerald, L. F.(1994), "Rape Myth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Look.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 Lyn, T. S., Burton, D. L.(2004), "Adult Attachment and Sexual Offender Statu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2): 150-159.

- MacKinnon, C. (1984), 'Not a moral issue', *Yale Law and Policy Review* 2: 321-45.
- MacMartin, C., Wood, L. A. (2005), "Sexual Motives and Sentencing: Judicial Discourse in Case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4(2): 139-159.
- Malamuth, N. and B. Spinner (1980), 'A longitudinal content analysis of sexual violence in the besting-selling erotic magazines', *Journal of Sex Research* 16:226-237.
- Marshall, William, L. et al. (2006), *Sexual Offender Treatment: Controversial Issues*, John Wiley & Sons, LTd.
- Master, Willian H., V. E. Johnson & R. C. Kolodny (1985), *Masters and Johnson on Sex and Human loving*, Boston : Little, Brown.
- Mayhew, P. *Counting the Costs of Crime in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No. 237, 2003
- McGuigan, W. M., Middlemiss, W.(2005), "Sexual Abuse in Childhood and Interpersonal Violence in Adulthood: A Cumulative Impact on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0): 1271-1287.
- Messerschmidt, J. (1993), *Masculinities and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essman-Moore, T. L., Brown, A. L.(2004), "Child maltreatment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 as risk factors for adult rape: is child sexual abuse the most salient experience?" *Child Abuse & Neglect*, 28(10): 1019-1034.
- Miller, Cohen, et al(1997). *Russia and the U.S.: Growing Cooperation? Great Decisions: 1997*, New York: Foreign Policy Association
- Miller, Robert D. (2003), "Chemical castration of sex offenders: treatment or punishment", in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Law, Justice, and Therapy*, edited by Bruce J. Winick and John Q. La Fon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Miller, Ted, Mark A. Cohen, and Brian Wiersema. 1996. *Victim Costs and Consequences: A New Poter, Blick & Sgroi, A Conceptual Framework for Child Sexual Abuse*, 1979
-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1994), *Summary of the White Paper on Crime*.
- Myers, W. C., Eggleston, C. F., Smoak, P.(2003), "A Media Violence-Inspired Juvenile Sexual Homicide Offender 13 Years Lat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8(6): 1385-1390.
- Norris, J., Davis, K. C., George, W. H., Martell, J., Heiman, J. R.(2002), "Alcohol'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Men's Self-Reported Sexual Aggression Likelihood."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6): 688-695.
- Oliver, L., Nagayama Hall, G. C., and S. M. Neuhaus.(1993), "A Comparison of the Personality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nd Other Adolescent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0(4): 359-370.
- Panichas, G. E.(2006), "Simple Rape and the Risks of Sex " *Law and Philosophy*, 125(6): 613-661.
- Phillips, D. (1983), 'The impact of mass media violence on U. S. homici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560-568.
- Porter, S., Fairweather, D., Drugge, J., Herve, H., Birt, A., Boer, D. P.(2000), "Profiles of Psychopathy in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2): 216-233.
- Prentky, R. A., Lee, A. F. S., Knight, R. A., Cerce, D.(1997), "Recidivism Rates Among Child Molesters and Rapists: A Methodological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21(6): 635-659.
- Reiss, I. (1986), *Journey into Sexuality : An Exploratory Voyage*,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 Rice, M. E., Harris, G. T.(1997), "Cross-Validation and Extension of the Violence Risk

- Appraisal Guide for Child Molesters and Rapists." *Law and human behavior*, 21(2): 231-241.
- Riger, S. and M. Gordon (1981), 'The fear of rape : a study in social control', *Journal of Social Issues* 37:71-92.
- Russell, D. (1984), *Sexual Exploitation :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 : Sage.
- Sanday, P. (1981),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5-27.
- Santana, M. C., Raj, A., Decker, M. R., La Marche, A., Silverman, J. G.(2006), "Masculine Gender Roles Associated with Increased Sexual Risk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Adult Men." *Journal of Urban Health*, 83(4): 575-585.
- Saunders, P.(2005), "Traffic Violations: Determining the Meaning of Violence in Sexual Trafficking Versus Sex Work."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3): 343-360.
- Schubot, D. B.(2001), "Date Rape Prevalence Among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a Rural Midwestern State During 1993, 1995, and 1997."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4): 291-296.
- Schweitzer, R., Dwyer, J.(2003), "Sex Crime Recidivism: Evaluation of a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11): 1292-1310.
- Senn, C. Y., Desmarais, S., Verberg, N., Wood, E.(2000), "Predicting coercive sexual behavior across the lifespan in a random sample of Canadian m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7(1). 95-114.
- Silverman, J. G., Decker, M. R., Reed, E., Rothman, E. F., Hathaway, J. E., Raj, A., Miller, E.(2006), "Social Norms and Beliefs Regarding Sexual Risk and Pregnancy Involvement among Adolescent Males Treated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 Journal of Urban Health, 83(4): 723-735.
- Simonson, K., Subich, L. M.(1999), "Rape Perceptions as a Function of Gender-Role Traditionality and Victim - Perpetrator Association." *Sex roles*, 40(7): 617-634.
- Skibinski, Gregory J. (1995), "The influence of the family preservation model on child sexual abuse intervention strategies." *Child Welfare*, 74(5): 975-989.
- Smallbone, S. W., Dadds, M. R.(2001), "Further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Insecurity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in Non-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 22-35.
- Smith, W.R. and C. Monastersky(1986), "Assessing Juvenile Sexual Offender's Risk For Reoffend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2): 115-140.
- Soothill, K., Francis, B., Sanderson, B., and E. Ackerley(2000), "Sex Offenders: Specialists, Generalists-or both?-A 32-year Criminolog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56-67.
- Spohn, C., Spears, J.(1996), "The Effect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on Sexual Assault Case Processing Decisions ." *Justice Quarterly*, 13(4): 649-680.
- Stermac, L., Del Bove, G., Addison, M.(2004), "Stranger and Acquaintance Sexual Assault of Adult Ma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8): 901-915.
- Stormo, Karla J., Lang, Alan R.(1997), "Attributions about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alcohol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4): 279-305.
- Turvey, B. E.(2005), *Criminal Profiling*, Elsevier Academic Press.
- Ullman, S. E., Filipas, H. H.(2005),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reactions to abuse disclosures, post-abuse coping, and PTSD of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Child Abuse & Neglect*, 29(7): 767-782.
- Weeks, R. Spatz Widom, C.(1998), "Self-Reports of Early Childhood Victimization Among Incarcerated Adult Male Fel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3):

346-361.

- Wilcox, P., Jordan, C. E., Pritchard, A. J.(2006), "Fear of Acquaintance Versus Stranger Rape as a "Master Status": Towards Refinement of the "Shadow of Sexual Assault". *Violence and Victims*, 21(3): 355-370.
- Wilson, M. A., Leith, S.(2001), "Acquaintances, Lovers, and Friends: Rape Within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8): 1709-1726.
- Wilson, R. J., Stewart, L., Stirpe, T., Barrett, M., Cripps, J. E.(2000), "Community-based sexual offender management: Combining parole supervision and treatment to reduce recidivis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2(2): 177-188.
- Winick, Bruce, J. Lafond, John,Q.(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Law, Justice, and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lff, N., Blitz, C. L., Shi, J., Bachman, R., Siegel, J. A.(2006), "Sexual Violence Inside Prisons: Rates of Victimization ." *Journal of Urban Health*, 83(5): 835-848.
- Worling, J. R.(2001), "Personality-Based Typology of Adolescent Male Sexual Offenders:Differences in Recidivism Rates, Victim-Selection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Victimization Historie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3(3): 149-166.
- Wright, K. N., and K. E. Wright(1994), "A Policy Maker's Guide to Controlling Delinquency and Crime Through Family Interventions", *Justice Quarterly* 11(2): 189-206.
- Wyatt, G. E., Loeb, T. B., Solis, B., Carmona, J. V., Romero, G.(), "The Prevalence and Circumstances of Child Sexual Abuse: Changes Across a Decade." *Child Abuse & Neglect*, 23(1): 45-60.
- Zinsstag, E.(2006),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Armed Conflicts: Standard Responses and New Ideas." *Social Policy and Society*, 5(1): 137-148.
- Home Office U.K (2005), *National Service Guidelines for Developing Sexual Assault*

Referral Centres(SARCs), 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 in England.
HM Government, U.K. (2007), Cross Government Action Plan on Sexual Violence and
Abuse.

WHO(2003), Guidelines for Medico-legal Car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Geneva

부 록

부록 1. 전국 가족생활 실태조사표

부록 2. 전국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

부록 3. 전국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표

【부록 1-1】 가구공통조사표

【부록 1-2】 응답자조사표

【부록 1-3】 응답자배우자조사표

【부록 1-4】 미혼자조사표

【부록 2-1】 전국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1)

【부록 2-2】 전국 성폭력피해자 실태조사표(2)

【부록 3-1】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표

【부록 3-2】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실태조사표

【부록 3-3】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실태조사표

연구보고 2008-03

2007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

2008년 1월 일 인쇄

2008년 1월 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여성가족부

전화 / 02-2100-6600(代)

인쇄처 : 대명기획사

전화 / 02-2273-129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060100-000268-01

부록 557 558	부록 559 560	부록 561 562
부록 563 564	부록 565 566	부록 567 568
부록 569 570	부록 571 572	부록 573 574
부록 575 576	부록 577 578	부록 579 580
부록 581 582	부록 583 584	부록 585 586
부록 587 588	부록 589 590	부록 591 592
부록 593 594	부록 595 596	부록 597 598
부록 599 600	부록 601 602	부록 603 604
부록 605 606	부록 607 608	부록 609 610
부록 611 612	부록 613 614	부록 615 616
부록 617 618	부록 619 620	부록 621 622
부록 623 624	부록 625 626	부록 627 628
부록 629 630	부록 631 632	부록 633 634
부록 635 636	부록 637 638	부록 639 640
부록 641 642	부록 643 644	부록 645 646
부록 647 648	부록 649 650	부록 651 652
부록 653 654	부록 655 656	부록 657 658
부록 659 660	부록 661 662	부록 663

부록 667 668

부록 669 670

부록 671 672

부록 673 674

부록 675 676

부록 677 678

부록 679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

부록